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 (下)

1994. 12.

金 瑩 允 (民族統一研究院 研究委員)
諸 成 鎬 (民族統一研究院 研究委員)
朴 德 圭 (韓國教育開發院 企劃處長)
朴 秀 赫 (서울市立大 教授)
李 基 秀 (高麗大 教授)

民族統一研究院

序 文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신장된 國力을 바탕으로 和解·協力을 지향하는 세계사의 흐름에 부응하여 自由民主主義 理念의 구현을 근간으로 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統一方案에 따라 향후 추진해나아갈 통일은 남북한의 相異한 法體系를 自由民主主義에 기반한 법체계로 統合·再編하는 과정이라고 할 때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서독의 법체계로 통일을 이룩한 동·서독의 法制 統合過程에 대한 연구는 우리의 통일대비 연구에 꼭 필요한 資料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당 연구원은 法制的인 측면에서 민족공동체 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基礎資料開發을 위하여 독일통일조약 및 법령의 翻譯書를 시리즈로 발간한다는 계획하에 지난해에는 『독일통일조약 비준법률』을 발간한 바 있으며, 금번 그 후속 시리즈로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을 翻譯하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翻譯書가 남북한 統一問題를 연구하시는 사계의 전문가들과 統一政策 입안자들에게 적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研究調整室

목 차

〈公法分野〉

| | |
|-------------------------------------|-----|
| I.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 3 |
| II. 舊 동독헌법 | 72 |
| III. 정당법 | 107 |
| IV. 연방선거법 | 132 |
| V. 연방헌법재판소법 | 164 |
| VI. 연방행정절차법 | 201 |
| VII. 통독 難民 관련법 | 252 |
| VIII. 고용촉진법 | 281 |
| IX. 형사관련법 (형사복권법, 舊동독 국가안전부 문서법) | 317 |
| X. 재산법, 신탁법, 투자우선순위법 | 362 |

公 法 分 野

빈 면

I.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전 문

신과 인간 앞에 책임을 의식하고, 통합된 유럽 안에서 동등한 권리를 갖는 구성원으로서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에 고무되어 독일국민은 헌법제정권에 따라서 이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브레멘, 함부르크, 헤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자아르란트, 작센, 작센-안할트, 쉘레스비히-홀슈타인과 튀링겐 주의 독일인들은 자유로운 자결로써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성취하였다. 이로써 이 기본법은 전체 독일국민에게 적용된다.

제1장 기본권

제1조 인간의 존엄성의 보호

- (1)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 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책무이다.
- (2) 따라서 독일국민은 불가침의·불가양의 인권을 지상의 모든 인간공동체,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신봉한다.
- (3) 후속하는 기본권은 직접 적용되는 법으로서 입법, 행정 및 사법을 구속한다.

제2조 자유권

- (1) 누구든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질서나 도덕률에 반하지

* 1993년 5월 29일의 제39차 헌법.

않는 한, 그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 (2) 누구든지 성명과 신체불가침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사람의 자유는 불가침이다. 이 권리들은 법률을 근거로 해서만 침해 될 수 있다.

제 3 조 법률 앞의 평등

- (1) 모든 인간은 법률 앞에 평등하다.
- (2)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 (3) 누구도 성별, 가문, 인종, 언어, 출신지, 신분, 종교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천대받거나 우대받지 아니한다.

제 4 조 신앙과 양심의 자유

- (1) 신앙과 양심의 자유 및 종교적·세계관적 신조는 불가침이다.
- (2) 방해받지 아니하는 종교행위는 보장된다.
- (3) 누구도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받지 아니한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이 정한다.

제 5 조 언론, 출판의 자유, 예술과 학문의 자유

- (1) 누구든지 언어, 문서 및 모형으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하고 유포하며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알 권리를 가진다. 출판의 자유와 라디오 및 영화를 통한 보도의 자유는 보장된다. 경영은 행하여지지 아니한다.
- (2) 이 권리들은 일반법률들의 조항, 소년의 보호를 위한 법률규정 및 개인적 명예권으로 제한된다.
- (3) 예술과 학문, 연구와 교수는 자유이다. 교수의 자유는 헌법에 대한 충실의 의무를 벗어나지 아니한다.

제 6 조 혼인, 가족, 사생아

- (1) 혼인과 가족은 국가질서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2) 자녀의 부양과 교육은 양친의 자연적 권리이고, 그들에게 부과된 제일 차적 의무이다. 그 실행을 국가공동체는 감시한다.
- (3) 교육권자에게 사고가 있는 때 또는 그밖의 이유로 자녀가 유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자녀는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만 교육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족과 분리될 수 있다.
- (4) 모(母)는 누구든지 사회의 보호와 배려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5) 사생아의 육체적 및 정신적 성장과 사회적 지위에 관하여는 입법을 통하여 적출아의 그것과 동일한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 7 조 교육제도

- (1) 모든 교육제도는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
- (2) 교육권자는 자녀의 종교교육참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 (3) 종교교육은 종교와 관계가 없는 학교를 제외한 공립학교에서는 정규 교과목이 된다. 종교교육은 국가의 감독권과 관계없이 종교단체의 교리에 따라 행해진다. 어떤 교사도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교육을 행할 의사를 지지 않는다.
- (4) 사립학교설립의 권리는 보장된다. 공립학교를 대신하는 사립학교는 국가의 인가를 필요로 하며 주법률에 따른다. 사립학교가 그 교육목적, 설비 및 교사의 학력에 있어 공립학교에 뒤지지 않고, 학부모의 자산상태에 따라 학생을 차별하지 않는 한 인가되어야 한다. 교사의 경제적 및 법적 지위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때에는 인가되어서는 안된다.
- (5) 사립국민학교는 교육청이 특별한 교육상의 이익을 인정하는 경우, 교육권자의 신청에 따라 사립국민학교가 종파의 구별이 없는 연합학교, 특정의 종파학교 및 세계관학교로서 설립되어야 할 경우, 또는 이러한 공립학교가 그 지방에 없는 경우에만 인가되어야 한다.

(6) 예비학교는 폐지된다.

제 8 조 집회의 자유

- (1) 모든 독일인은 신고나 허가없이 평온하게 그리고 무기를 휴대하지 않고 집회할 권리를 가진다.
- (2) 실외집회의 경우에는 법률로써 또는 법률을 근거로 이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제 9 조 결사의 자유, 노동쟁의 제한조치의 금지

- (1) 모든 독일인은 단체와 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가진다.
- (2) 그 목적이나 활동이 형사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질서 또는 국제적 협조의 이념에 반하는 단체는 금지된다.
- (3) 노동조건과 경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위하여 단체를 결성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그리고 어떠한 직업에도 보장된다.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려는 협정은 무효이며, 이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는 위법이다. 제12조a, 제35조 2 항 및 3항, 제87조a 4항과 제91조에 의한 조치는, 제1항에서 말하는 단체가 노동조건과 경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위해서 하는 노동쟁의에 대항하여 취해질 수 없다.

제 10 조 신서, 우편 및 전신·전화의 비밀

- (1) 신서의 비밀과 우편 및 전신·전화의 비밀은 불가침이다.
- (2) 그 제한은 오로지 법률을 근거로 해서 규정될 수 있다. 그 제한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나 연방 또는 한 주의 존립 또는 안전의 보장에도움이 될 때에는, 그 제한을 관계자에게 통고하지 않는다는 것과 쟁송수단 대신 의회가 임명하는 기관과 보조기관으로 하여금 심사하게 하는 것을 법률이 규정할 수 있다.

제 11 조 자유이주

- (1) 모든 독일인은 전체연방영역에서 이주의 자유를 누린다.
- (2) 이 권리는 법률로써만 또는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서만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충분한 생활근거가 없고 이로 말미암아 일반에게 특별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나, 연방 또는 한 주의 존립이나 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위협의 방지, 전염병의 위험, 천재지변 또는 특별히 중대한 재해의 극복, 소년의 유기의 방지, 또는 범죄행위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제 12 조 직업의 자유, 강제노역의 금지

- (1) 모든 독일인은 직업, 직장 및 직업훈련소를 자유로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직업의 행사는 법률로써 또는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 규제될 수 있다.
- (2)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노동을 강요할 수 없다.
- (3) 강제노동은 법원이 명하는 자유박탈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제 12 조a 국방과 그 밖의 의무

- (1) 만 18세 이상의 남자에게는 군대, 연방국경수비대 또는 민방위대에 복무할 의무를 지울 수 있다.
- (2) 양심상의 이유로 징총병역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대역의무를 지울 수 있다. 대역(代役)의 연한은 병역의 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상세한 것은 법률이 정하며, 이 법률은 양심에 따른 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대역의 가능성도 규정해야 한다. 이 대역은 군대 및 연방국경수비대 소속의 기관과 관련이 없어야 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복무를 위해 집행되지 아니한 병역의무자에게는 방어전쟁의 경우에 법률로써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노동에 종사하는 민간인의 보호를 포함한 방어목적을 위하여 민간적 복무의무를 지

을 수 있다.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있어서의 책무는 경찰상의 임무의 수행 또는 공법상의 근무관계에서만 달성될 수 있는 공행정의 공권력적 임무의 수행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제1단에 의한 노동관계는 군대, 군보급분야에서 설정될 수 있다. 민간인의 부양분야에 종사할 노동의 무는 민간인의 생필품을 마련하거나 그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서만 허용된다.

- (4) 방어진쟁시 민간보건기관과 의료기관 및 특정지역의 의료기관의 민간복무수요가 지원으로 충족될 수 없는 때에는, 18세 이상 55세까지의 여자를 법률로써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징집할 수 있다. 여자는 어떤 경우에도 집총병역에 복무해서는 안된다.
- (5) 방어진쟁이전에는 제3항의 의무는 제80조 a 1항의 규준에 따라서만 부과될 수 있다. 특별한 지식과 숙련을 필요로 하는 제3항에 따른 복무에 대비하기 위하여 훈련행사에 참가할 의무가 법률로써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단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6) 방어진쟁시 제3항 2단에 규정된 분야에서 노동력의 수요가 지원으로 충족될 수 없는 때에는, 이 수요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업행사나 직장을 포기하도록 독일인의 자유가 법률로써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다. 방어진쟁이 개시되기 전에는 제5항 1단이 준용된다.

제 13 조 주거의 불가침

- (1) 주거는 불가침이다.
- (2) 수색은 판사에 의해서만 명하여진다. 지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된 다른 기관에 의해서도 명하여진다. 수색은 법률에 규정된 방식으로만 행하여 질 수 있다.
- (3) 그 밖의 침해와 제한은 공동의 위험이나 개인의 생명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만, 법률에 의거하여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주택난을 덜기 위해서, 전염병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위협에 처한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행하여 질 수 있다.

제 14 조 소유권, 상속권 및 수용

- (1) 소유권과 상속권은 보장된다.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2) 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그 행사는 동시에 공공복리에 봉사하여야 한다.
- (3) 공용징수는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다. 공용징수는 법률로써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만 행하여지며, 법률은 보상의 방법과 정도를 정한다. 보상은 공공의 이익과 관계자의 이익을 공정하게 형량하여 정해져야 한다. 보상액 때문에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일반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길이 열려 있다.

제 15 조 사회화

토지, 천연자원 및 생산수단은 사회화(社會化)를 위하여, 보상의 종류와 정도를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다른 형태의 공동관리경제로 옮겨질 수 있다. 보상에 관하여는 제14조 3항 3단과 4단이 준용된다.

제 16 조 국적박탈, 인도

- (1) 독일국적은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국적상실은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국적상실은 그것을 통해서 당사자가 무국적이 되지 않는 때에만 이루어 질 수 있다.
- (2) 어떠한 독일인도 외국에 인도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16 조a 망명권

- (1)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자는 망명권을 누린다.
- (2) 유럽공동체의 한 회원국 출신이거나 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정의 적용이 보장되어 있는 그 밖의 제삼국 출신인 사람은 제1항에 호소할 수 없다. 제1단의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유럽공동체 외부의 국가들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1단의 경우에 체류마감 조치들은 이에 맞서 제기된 법률적 이익과 관계없이 집행될 수 있다.

- (3) 법적 상황, 법 적용 그리고 일반적인 정치적 상황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정치적 박해도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벌이나 취급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보증된다고 생각되는 나라들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률로써 정할 수 있다. 그러한 나라 출신의 외국인, 박해받지 않는다는 추정에 대해서 자신이 박해받는다 가정을 뒷받침하는 사실들을 제기하지 않는 한, 박해받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 (4) 제3항의 경우와 명백하게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다른 경우에 체류마감조치의 집행은 조치의 합법성에 대한 심각한 의혹이 있는 경우에만 법원을 통해서 중지된다. 심사범위는 제한될 수 있으며 기한을 넘긴 청구는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상세한 것은 법률을 통하여 규정할 수 있다.
- (5) 제1에서 제4항까지는 유럽공동체 회원국들 서로 간에 맺은 국제법적 조약들과 대립하지 않으며, 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약 및 그 적용이 조약국들 안에서 보장되어 있어야 하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정에서 비롯되는 의무들을 고려하면서 망명결정에 대한 상호승인을 포함해서 망명요구의 심사를 위한 권한규정을 내리는 제삼국들과 맺은 국제법적 조약들과 대립하지 않는다.

제 17 조 청원권

누구든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문서로써 관할기관과의 회에 청원 또는 소원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 17 조a 군대 등의 소속원의 기본권제한

- (1) 병역과 대역에 관한 법률은 군대와 대역의 소속원에 대하여 병역 또는 대역복무 기간 중 구두, 문서 및 도형으로 자유로이 의견을 발표하고 유포할 기본권(제5조 1항 1단 전반), 집회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제8조) 및 다른사람과 공동으로 청원과 소원을 할 권리가 부여 될 때에는 청원권(제17조)이 제한되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 (2) 민간인 보호를 포함한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은 자유이주의 기본권(제11조)과 주거불가침성(제13조)의 기본권의 제한을 규정할 수 있다.

제 18 조 기본권의 상실

의견발표의 자유, 특히 출판의 자유(제5조1항), 교수의 자유(제5조 3항), 집회의 자유(제8조), 결사의 자유(제9조), 신서, 우편 및 전신·전화의 비밀(제10조), 재산권(제14조) 또는 망명자비호권(제16조a)을 자유민족적기본질서를 공격하기 위해 남용하는 자는 이 기본권을 상실한다. 상실과 그 정도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선고된다.

제 19 조 기본권의 제한

- (1) 이 기본법에 따라 기본권이 법률로써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는 때에는, 그 법률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개별적 경우에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 법률은 또한 기본권의 해당조항을 적시해야 한다.
- (2)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절대로 침해될 수 없다. (3) 기본권이 그 본질상 내국법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때에는, 기본권은 내국법인에게도 적용된다.
- (4) 공권력에 의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자에게는 소송의 길이 열려 있다. 다른 관할권이 입증되지 않는 한, 정규소송이 인정된다. 제10조 2

항 2단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 장 연방과 주

제 20 조 헌법의 기본윤리, 저항권

- (1)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사회적 연방국가이다.
- (2)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국가권력은 선거와 투표로 국민에 의해서 그리고 입법, 행정 및 사법의 특별기관에 의해서 행사된다.
- (3) 입법은 헌법질서에 구속되고, 행정과 사법은 법률과 법에 구속된다.
- (4) 모든 독일인은 이러한 질서를 폐지하려고 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불가능할 때에는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제 21 조 정 당

- (1)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협력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다. 정당의 내부질서는 민주적 재원칙에 합치해야 한다. 정당은 그 자금의 출처와 사용 그리고 재산에 관하여 일반에게 보고해야 한다.
- (2) 정당은 그 목적이나 당원의 행동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폐지하려 하거나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위헌이다. 위헌성의 문제에 관해서는 연방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 (3)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이 규정한다.

제 22 조 연방국기

연방의 국기는 흑·적·금색이다.

제 23 조 유럽연합

- (1) 통합유럽을 실현하기 위해서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주의적, 법치국가

- 적, 사회적, 연방적 원칙들과 보충의 원칙을 의무로 하여 이 원칙과 본질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본권 보호를 보증하는 유럽연합의 발전에 협력한다. 연방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은 법률로써 유럽연합에 주권을 이양할 수 있다. 이 기본법을 내용에 따라 개정 또는 보충하거나 그렇게 개정 또는 보충할 수 있게 하는 유럽연합의 창설 및 그 조약상의 토대의 변화 그리고 비교할 수 있는 규정들에 대해서는 제79조 2항과 3항이 적용된다.
- (2) 연방의회는 유럽연합의 문제에 협력하며, 주는 연방참의원을 통해서 협력한다. 연방정부는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에 포괄적으로 또 할수 있는 한 빨리 보고해야 한다.
 - (3) 유럽연합의 법률제정활동에 자신이 협력하는 데 대해서 연방정부는 연방의회에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준다. 연방정부는 법안 심의시에 연방의회가 표명한 의견을 고려한다. 상세한 것은 법률로 규정한다.
 - (4) 연방참의원은 상응하는 국내적인 조치에 협력해야 하거나 국내적으로 주에 그런 권한이 있는만큼 연방의 의사형성에 참여할 수 있다.
 - (5) 연방의 배타적인 관할 분야에서 주의 이해에 관련되거나 그밖에 연방이 입법권을 갖는 한 연방정부는 연방참의원이 표명한 의견을 고려한다. 주의 입법권한, 그 관할관청의 설치 또는 그 행정절차가 중심문제인 경우에는 연방의 의사형성시 연방참의원의 견해를 결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때 연방의 국가전체적인 책임은 유지되어야 한다. 연방의 세출증대나 세입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들의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동의를 필요하다.
 - (6) 주의 배타적인 입법권한이 중심문제인 경우에, 유럽연합의 구성원인 독일연방공화국에 속하는 권한의 행사는 연방에서 연방참의원이 지명하는 주의 대표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권한의 행사는 연방정부가 참여하고 찬성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때 연방의 국가전체적인 책임은 유지되어야 한다.
 - (7) 4-6항에 대한 상세한 것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률이 정한다.

제 24 조 주권의 이양, 집단안보체제에의 가맹

- (1) 연방은 법률로써 국제적 기구에 고권을 이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방은 유럽내의 그리고 세계각민족간의 평화적·항구적 질서를 초래하고 보장하는 고권의 제한에 동의할 것이다.
- (1a) 국가적 권한의 집행과 국가적 과제의 수행에 권한이 있는 한, 주는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 이웃하고 있는 기구에 주권을 이양할 수 있다.
- (2) 연방은 평화유지를 위하여 상호집단안전보장체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방은 유럽내의 그리고 세계 각 민족간의 평화적·항구적 질서를 초래하고 보장하는 고권의 제한에 동의할 것이다.
- (3) 국제분쟁의 규제를 위하여 연방은 일반적·포괄적·의무적·국제적인 중재재판협정에 가입할 것이다.

제 25 조 국제법의 연방법구성

일반적인 국제법규는 연방법의 일부가 된다. 일반적인 국제법규는 법률에 우선하고 연방영역의 주민에 대하여 직접 권리·의무를 낳게 한다.

제 26 조 침략전쟁의 금지

- (1) 국민간의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교란케 하기에 적합한 또는 교란할 의도로 행해지는 행동과 특히 침략전쟁수행의 준비는 위헌이다. 이런 것은 처벌되어야 한다.
- (2) 교전용으로 지정된 무기는 연방정부의 허가를 얻어야만 제조, 수송 그리고 거래될 수 있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이 규제한다.

제 27 조 상선대

전독일상선은 통일상선대를 구성한다.

제 28 조 주헌법의 연방적 보장

- (1) 주의 헌법질서는 이 기본법에서 의미하는 공화적·민주적 및 사회적 법치국가의 제원리에 합치하여야 한다. 주, 군 및 지방자치체의 주민은 보통, 직접, 자유, 평등 및 비밀선거로 선출된 의회를 가져야 한다. 군과 지방자치체 선거에서는 유럽공동체 회원국의 국적을 지닌 사람에게도 유럽공동체 법률에 따라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 (2) 지방자치체에는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그 지역공동체의 모든 문제를 자기책임 아래 규제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체연합도 법률적인 임무범위의 테두리 안에서 법률에 따라 자치권을 갖는다.
- (3) 지방자치체연합도 법률의 기준에 따른 그 법률상의 업무의 범위내에서 자치행정권을 가진다.
- (4) 연방은 주의 헌법질서가 기본권과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합치하는 것을 보장한다.

제 29 조 연방구역의 개편

- (1) 연방영역은 주들이 크기와 능력에 따라 부과된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증하기 위하여 개편할 수 있다. 그때 향토적 결합, 역사적·문화적 관련, 경제적 편의 및 지역개발계획과 국토계획의 필요를 참작해야 한다.
- (2) 연방구역을 개편하려는 조치들은 주민표결을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연방법률을 통해서 내려진다. 해당되는 주들은 이에 따라야 한다.
- (3) 주민표결은 자기 구역이나 구역의 일부가 새로운 주 또는 경계가 변경된 주를 구성하게 되는 주들에서 시행된다. 해당 주들이 지금까지처럼 존속해야 하는지 또는 새로운 주나 경계가 변경된 주가 형성되어야 하는지의 문제에 대해서 투표를 해야 한다. 그 주의 미래구역에서 그리고 같은 의미로 주적이 변경되어야 하는 해당 주의 구역이나 구역의 일부에서 전체적으로 과반수가 변경에 찬성하면 새로운 주 또는 경계

가 변경된 주를 형성하기 위한 주민표결은 성립한다. 해당 주들 가운데 어떤 주의 구역에서 과반수가 변경을 반대하면 주민표결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주 전체구역에서 3분의 2 과반수가 변경에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 그 소속이 해당 주로 변경되어야 하는 어느 한 구역의 일부에서 3분의 2 과반수가 변경에 찬성하면 그 반대는 무시된다.

- (4) 그 부분들이 여러 주에 걸쳐 있고 주민수가 최소한 100만명이며 서로 연관이 있으면서 경계가 나뉘어진 주거 및 경제지역에서 연방의회선거권자 10분의 1이 주민발안으로써 이 지역을 위해서 단일한 주적어도 도입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면, 본 29조 제2항에 따라 주적이 변경되는지를 아니면 해당 주들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된다는 것을 2년 이내에 연방법률을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
- (5) 주민투표는 그에 맞추어 법률에서 제기할 주적의 변경에 찬성하는지를 확정해야 한다. 법률은 주민투표에 서로 다른 제안을 할 수는 있으나 두 가지 이상의 제안은 할 수 없다. 과반수가 제안된 주적변경에 찬성하면 주적이 제2항에 따라 변경되는지를 2년 이내에 연방법률을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 주민투표에 제기된 제안이 제3항의 셋째, 넷째 문장에 따라 상응하는 찬성을 얻으면 주민투표 실시 이후 2년 이내에 제안된 주를 형성하기 위한 연방법률이 공포되어야 한다. 이 법률은 주민표결을 통해서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
- (6) 참가한 투표수의 과반수가 최소한 연방의회 선거권자의 4분의 1을 포함할 경우에 이는 주민표결과 주민투표에서 과반수가 된다. 그밖에 주민표결, 주민발안, 주민투표에 대한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을 통해서 정한다. 주민발안은 5년 이내에는 되풀이 될 수 없음을 이 법률은 예상할 수 있다.
- (7) 그밖에 주의 구역변경은, 참가된 주들의 조약을 통해서, 또는 그 주적이 변경되어야 하는 구역의 인구가 만명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연방참의원의 찬성을 얻은 연방법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상세한 것은 연방참의원의 찬성과 연방의회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이 정한다. 이법률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군의 청문을 규정하고 있다.

제 30 조 주의 기능

국가적 권능의 행사와 국가적 과제의 수행은 이 기본법이 다른 규정을 두지 아니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주의 소관이다.

제 31 조 연방법의 우선

연방법은 주법을 파기한다.

제 32 조 외교관계

- (1) 외국에 대한 관계의 처리는 연방의 소관이다.
- (2) 어떤 주의 특별한 사정에 관계되는 조약체결시에는 체결 전의 적당한 때에 그 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3) 주의 입법에 관한 권한을 갖는 때에는, 주는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33 조 독일인의 국민적 동등지위

- (1) 독일인은 누구나 모든 주에서 국민으로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2) 독일인은 누구나 그의 적성, 능력 및 전문적 업적에 따라 모든 공직에 균등하게 취임한다.
- (3) 시민적·국민적 권리의 향유, 공직취임의 허용, 그리고 공직근무에서 취득하는 권리는 종교적 신앙과 무관하다. 누구도 어떤 신앙이나 세계관에 소속 또는 무소속을 이유로 손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 (4) 고권적 권능의 행사는 일반적으로 공법상의 근무관계와 충실관계에 있는 공무원에게 영속적 임무로서 위탁되어야 한다.

- (5) 공근무법은 직업공무원제의 전통적인 제원칙을 감안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제 34 조 직무상의 의무위반의 경우의 직무상의 배상 책임

자기에게 위임된 공무집행중 제3자에 대한 직무의무를 위반한 자는, 국가나 그가 근무하는 단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을 진다.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구상권이 유보된다.

손해배상청구권과 구상권에 대해서는 정규소송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법적 및 직무상의 지원-재난상의 협조

- (1) 연방과 주의 모든 관청은 상호간의 법적 및 직무상의 지원을 한다.
- (2) 공공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거나 재건하기 위해서 특별히 중요한 경우에 주(州)는, 그 지원없이 경찰이 과제를 수행할 수 없거나 두드러진 어려움에 놓이게 되면 연방국경수비대의 병력과 장비를 주 경찰에게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 자연재난이나 특별히 커다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州)는 다른 주의 경찰력, 다른 행정기관 및 연방국경수비대와 군대의 병력과 장비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3) 자연적재난이나 사고가 한 주(州)이상의 영역을 위협할 때에 효과적인 진압을 위해 필요한 이상, 연방정부는 주정부에게 다른 주의 경찰력을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또한 경찰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방국경수비대와 군대의 단위부대들을 투입할 수 있다. 제1단에 따른 연방정부의 조치는 연방참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나, 그밖에도 위험이 제거된 후에는 지체없이 중지되어야 한다.

제 36 조 연방관청의 직원

- (1) 최고연방관청의 공무원은 모든 주(州)로부터 적당한 비율로 채용되어야 한다. 그밖의 연방관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그들이 근무

무하는 주(州)에서 채용되어야 한다.

- (2) 병역에 관한 법률도 연방이 제주(諸州)로 편성되고 있다는 점과 각 주의 특별한 동향적 관계를 감안해야 한다.

제 37 조 연방강제

- (1) 주(州)가 기본법이나 그밖의 연방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연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방정부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강제의 방법으로 그 주(州)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 연방강제를 관철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나 그 대리인은 모든 주와 그 관청에 대한 명령권을 가진다.

제 3 장 연방의회

제 38 조 선 거

- (1) 독일연방의회의 의원은 보통, 직접, 자유, 평등 및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그들은 국민전체의 대표자이고 위임과 지시에 구속되지 않으며 그 양심에 따를 뿐이다.
- (2) 만 18세에 달한 자는 선거권을 가진다. 성년의 연령에 달한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 (3)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이 정한다.

제 39 조 개회와 임기(Zusammentritt und Wahlperiode)

- (1) 연방의회는 4년마다 선출된다. 그 임기는 새 연방의회의 개회와 더불어 종료한다. 새 선거는 임기가 시작된 이후 빠르면 45개월, 늦으면 47개월만에 실시된다. 연방의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새 선거가 실시된다.

- (2) 연방의회는 늦어도 선거 끝난 뒤 30번째 날에 개최한다.
- (3) 연방의회는 회기의 종료와 재개를 결정한다. 연방의회의장은 더 조기에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의장은, 의원의 3분의 1, 연방대통령 또는 연방수상이 요구하면 소집해야 한다.

제 40 조 의장과 의사규칙

- (1) 연방의회는 의장, 의장대리 및 사무총장을 선출한다. 연방의회는 의사규칙을 갖는다.
- (2) 의장은 연방의회의 건물내에서 가택권과 경찰권을 행사한다. 의장의 동의 없이는 연방의회의 구내에서 수색이나 압수를 할 수 없다.

제 41 조 선거심사

- (1) 선거심사는 연방의회의 소관이다. 연방의회는 연방의회의 의원이 그 자격을 상실했는가의 여부도 결정한다.
- (2) 연방의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청을 할 수 있다.
- (3)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이 규정한다.

제 42 조 심의, 다수결 원칙

- (1) 연방의회는 공개로 심의한다. 의회의 10분의 1 또는 연방정부의 제의로 3분의 2의 다수가 찬성할 경우에는 공개가 배제될 수 있다. 이 제의는 비공개회의에서 결정한다.
- (2) 연방의회의 의결에는 이 기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투표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연방의회에 의해서 행해지는 선거에 관해서는 의사규칙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3) 연방의회가 그 위원회의 공개회의에서 행하는 진실한 보고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 43 조 연방정부의 출석

- (1) 연방의회와 그 위원회는 연방정부의 어느 구성원의 출석이라도 요구할 수 있다.
- (2) 연방참의원과 그 위원회의 구성원 및 그들의 대리인은 연방의회와 그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출석한다. 그들의 의견은 언제라도 청취되어야 한다.

제 44 조 조사위원회

- (1) 연방의회는 공개심으로 필요한 증거를 수집·조사할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권한을 가지며, 의원의 4분의 1의 제의가 있으면 설치하여야 한다. 공개는 배제될 수 있다.
- (2) 증거의 수집·조사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조항이 적절히 적용된다. 신서, 우편 및 전신·전화의 단에 관해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 (3) 법원과 행정관청은 법적 및 직무상의 지원을 할 의무가 있다.
- (4) 조사위원회의 의결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조사의 토대가 되는 사실의 평가와 판단에 관하여 법원은 자유이다.

제 45 조 유럽연합문제 위원회

연방의회는 유럽연합문제를 다룰 위원회를 둔다. 연방의회는 이 위원회에 제23조에 따라 연방정부에 대해서 연방의회의 권리를 행사할 자격을 준다.

제 45 조a 외교위원회와 국방위원회

- (1) 연방의회는 외교문제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둔다.
- (2) 국방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권한도 가진다. 그 구성원 4분의 1의 제의가 있으면 국방위원회는 일정한 사항을 조사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3) 제44조 1항은 국방의 영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45 조b 연방의회의 국방전권위원

기본권을 보장하고 의회의 통제권 행사시의 보조기관으로서 연방의회의 국방전권위원이 임명된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이 규정한다.

제 45 조c 청원위원회

- (1) 연방의회는 제17조에 따라 연방의회에 제출된 청원과 소원을 처리할 권한을 갖는 청원위원회를 둔다.
- (2) 소원을 심사할 위원회의 권한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 46 조 의원의 책임면제와 면책특권

- (1) 의원은 연방의회나 그 위원회에서 행한 투표 또는 발언을 이유로 어떤 경우에도 재판상 또는 직무상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연방의회의 외부에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것은 비방적 모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2) 의원은 연방의회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만 범죄행위를 이유로 책임을 지거나 체포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이나 그 익일중에 체포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3) 연방의회의 승락은 의원의 신체의 자유에 관한 그밖의 제한의 경우에도 언제나 필요하며 또 제18조에 따라 의원에 대해 소송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 (4) 제18조에 따라 의원에 대해 행해지는 일체의 형벌절차와 소송절차, 의원의 구금과 그 신체적 자유의 그밖의 제한은 연방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중지되어야 한다.

제 47 조 의원의 증언 거부

의원은 의원의 자격으로 비밀을 듣거나 알렸을 경우 그 사람과 사실 자체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 이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 때에는 서류의 압류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 48 조 의원의 제청구권

- (1) 연방의회에서 의석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에 필요한 휴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2) 누구든지 의원직을 인수하고 행사하는 것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유로 인한 사직이나 해직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3) 의원은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수청구권을 가진다. 의원은 모든 국가교통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상세한 것은 연방헌법이 규정한다.

제 49 조 삭 제

제 4 장 연방참의원

제 50 조 기 능

주는 연방참의원을 통하여 연방의 입법과 행정 그리고 유럽연합의 문제에 협력한다.

제 51 조 구 성

- (1) 연방참의원은 주정부가 임명하고 해임하는 주정부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그들은 그 정부의 다른 구성원에 의하여 대표될 수 있다.
- (2) 각 주는 최소한 투표권 3개를 갖는다. 인구가 2백만 이상인 주는 4개, 6백만 이상인 주는 5개, 7백만 이상인 주는 6개를 갖는다.
- (3) 각 주는 2 투표권과 동수의 구성원을 파견할 수 있다. 주의 투표권은 통일적으로 행사되고, 출석한 구성원이나 그 대리인에 의해서만 행사된다.

제 52 조 의장, 의결, 의사규칙, 유럽의회

- (1) 연방참의원은 매년 그 의장을 선출한다.
- (2) 의장은 연방참의원을 소집한다. 최소한 이개주의 대표자나 연방정부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연방참의원을 소집해야 한다.
- (3) 연방참의원은 최소한 투표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연방참의원은 의사규칙을 가진다. 그 심의는 공개한다. 공개는 배제될 수 있다.
- (3a) 유럽연합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연방참의원은 그 결의가 연방참의원의 결의로 간주되는 유럽의회를 구성한다. 제51조 2항과 3항의 둘째 문장이 준용된다.
- (4) 주정부의 다른 구성원이나 대리인이 연방참의원의 각종 위원회에 소속할 수 있다.

제 53 조 연방정부의 참가

연방정부의 구성원은 연방참의원과 그 위원회의 심의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며, 또 요구가 있으면 참여할 의무가 있다. 연방정부의 구성원의 의견은 언제든지 청취되어야 한다. 연방참의원은 연방정부로부터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빠짐없이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 4a 장 합동위원회

제 53 조a 합동위원회

- (1) 합동위원회는 연방의회의원의 3분의 2, 연방참의원 구성원의 3분의 1로 구성된다. 의원은 정파의 의석수에 비례하여 연방의회에서 선출된다. 그들은 연방정부소속원이 아니어야 한다. 각주는 주가 임명한 연방참의원구성원에 의하여 대표된다. 이들 구성원은 지시에 구속당하지 아니한다. 합동위원회의 조직과 그 절차는, 연방의회에 의해 결의되고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의사규칙으로 정한다.

- (2) 연방정부는 방어전쟁의 계획에 관해 합동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43조 1항에 따른 연방의회와 그 위원회의 권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5 장 연방대통령

제 54 조 연방회의에 의한 선거

- (1) 연방대통령은 연방회의에서 투의없이 선출된다. 피선거권자는 연방의회 의원의 선거권을 가지며 만 40세 이상의 전도이치 인이다.
- (2) 연방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연속재선은 1회에 한한다.
- (3) 연방회의는 연방의회의원과, 비례선거의 원칙에 따라 각주의 의회가 선출할 동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 (4) 연방회의는 늦어도 연방대통령의 임기만료 30일전에, 임기전에 사임한 경우에는 사임시로부터 늦어도 30일내에 집회한다. 연방회의는 연방의회의장에 의하여 소집된다.
- (5) 의원의 임기만료 후에는 제4항 1단의 기한은 연방의회의 첫 집회일로부터 시작된다.
- (6) 연방회의 구성원의 과반수의 투표를 얻은 자가 당선된다. 제2차투표에서도 이 과반수를 얻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삼차투표에서 다수표를 얻는 자가 당선된다.
- (7)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이 규정한다.

제 55 조 겸직제한

- (1) 연방대통령은 연방이나 주의 정부 또는 의회에 속할 수 없다.
- (2) 연방대통령은 그 밖의 어떠한 유급공직, 영업 및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이사회나 감사회에 속할 수 없다.

제 56 조 취임선서

연방대통령은 그 취임에 있어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의 구성원 앞에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독일 국민의 복리를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이며, 그 편익을 증진하며, 그 장애를 제거하며, 기본법과 연방의 법률을 유지하고 수호하며, 나의 의무를 양심껏 이행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정의를 행할 것을 선서한다. 신의 가호가 있으시기를」 선서는 종교적 선서없이도 행하여질 수 있다.

제 57 조 대 리

연방대통령의 권한은 그 유고시 또는 임기전의 사임시에는 연방참의원의장이 대행한다.

제 58 조 부 서

연방대통령의 명령과 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연방수상이나 주무장관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연방수상의 임면, 제63조에 의한 연방의회의 해산 및 제69조3항에 의한 건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59 조 국제법상의 대표권

- (1) 연방대통령은 국제법상 연방을 대표한다. 그는 연방의 이름으로 외국과 조약을 체결한다. 그는 사절을 선임하고 접수한다.
- (2) 연방의 정치적 관계를 규제하거나 연방의 입법사항과 관련을 갖는 조약은 연방법률의 형식으로 하되 그때마다 연방입법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동의나 관여를 필요로 한다. 행정협정에 관해서는 연방행정에 관한 조항이 준용된다.

제 59 조 a 폐 지

제 60 조 연방판사와 공무원의 임명, 사면권

- (1) 연방대통령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연방판사, 연방공무원, 장교 및 하사관을 임면한다.
- (2) 연방대통령은 연방을 위하여 개별적인 경우에 사면권을 행사한다.
- (3) 연방대통령은 이 권한을 다른 관청에 이양할 수 있다.
- (4) 제46조2항에서 4항까지는 연방대통령에 준용된다.

제 61 조 연방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 (1) 연방의회나 연방참의원은 기본법 또는 그밖의 연방법률의 고의의 침해를 이유로 연방대통령을 연방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할 수 있다. 탄핵소추는 최소한 연방의회의원의 4분의 1 또는 연방참의원의 투표의 4분의 1로 발의되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은 연방의회의원의 3분의 2 또는 연방참의원의 투표 3분의 2의 다수를 필요로 한다. 탄핵의 제소는 소추기관의 수입자가 대행한다.
- (2) 연방헌법재판소가 연방대통령이 기본법 또는 그밖의 연방법률을 고의로 침해한 책임이 있다고 확인하면, 연방헌법재판소는 대통령직의 상실을 선언할 수 있다. 연방헌법 재판소는 탄핵의 제소후 가처분으로 연방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 6 장 연방정부

제 62 조 조 직

연방정부는 연방수상의 연방장관들로 구성된다.

제 63 조 연방수상의 선출과 임명

- (1) 연방수상은 연방대통령의 추천으로 연방의회에 의하여 토의없이 선출된다.
- (2) 연방의회의원의 과반수의 표를 획득한 자가 선출된다. 당선자는 연방대통령이 임명한다.
- (3) 피추천자가 선출되지 않을 때에는, 연방의회는 위의 투표회 14일 이내에 의원의 과반수으로써 연방수상을 선출할 수 있다.
- (4) 선출이 이 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투표가 실시되고 최다득표자가 당선된다. 당선자가 연방의회의원의 과반수의 표를 획득한 때에는, 연방대통령은 선거후 7일 내에 그를 임명해야 한다. 당선자가 이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한 때에는 연방대통령은 7일내에 그를 임명하거나 아니면 연방의회를 해산해야 한다.

제 64 조 연방장관의 임명

- (1) 연방장관은 연방수상의 추천으로 연방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해임된다.
- (2) 연방수상과 연방장관은 취임에 있어 연방의회에서 제56조에 규정된 선서를 한다.

제 65 조 책임의 분담

연방수상은 시정방침을 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각 연방장관은 이 방침 내에서 그 소관사무를 자주적으로 그리고 자기책임하에서 처리한다. 연방장관간의 의견차이는 연방정부가 결정한다. 연방수상은 연방정부가 의결하고 연방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직무규칙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제 65 조a 군통수권

군대에 관한 명령과 지휘권은 국방장관이 행사한다.

제 66 조 결직제한

연방수상과 연방장관은 다른 유급공직, 영업 및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이사회나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는 그 감사회에도 속할 수 없다.

제 67 조 불신임투표

- (1) 연방의회는 그 의원의 과반수로 후임자를 선출하고 연방대통령에게 연방수상의 해임을 건의하는 방법으로서만 연방수상에 대한 불신임을 표명할 수 있다. 연방대통령은 이 건의에 따라야 하고 당선자를 임명해야 한다.
- (2) 발의와 선거에는 48시간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제 68 조 신임문제-연방의회의 해산

- (1) 신임을 요구하는 연방수상의 동의가 연방의회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연방대통령은 연방수상의 제의로 21일내에 연방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 연방의회가 그 의원의 과반수로써 다른 연방수상을 선출하면 해산권은 즉시 소멸된다.
- (2) 이 발의와 투표간에는 48시간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제 69 조 연방수상의 대리, 수상과 장관의 임기종료

- (1) 연방수상은 1인의 연방장관을 자기대리인으로 임명한다.
- (2) 연방수상이나 연방장관의 임기는 언제나 연방의회의 집회와 더불어 종료하며, 연방장관의 임기는 또한 연방수상의 임기가 다른 사유로 끝날 때 함께 종료한다.
- (3) 연방수상은 연방대통령의 건의로, 연방장관은 연방수상이나 연방대통령의 건의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사무를 계속 처리한다.

제7장 연방의 입법

제 70 조 연방과 주의 입법

- (1) 주는 이 기본법이 연방에 입법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법권을 가진다.
- (2) 연방과 주간의 관할의 한계는 배타적·경합적 입법권에 관한 이 기본법의 제조항에 따라 결정된다.

제 71 조 연방의 배타적 입법권 개념

연방의 배타적 입법영역에 관해서는 연방법률이 명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만 그리고 위임한 범위내에서만, 주는 입법권을 가진다.

제 72 조 연방의 경합적 입법권 개념

- (1) 경합적 입법영역에서는, 연방이 그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주가 입법권한을 갖는다.
- (2) 연방은 경합적 입법영역에서 아래의 사유로 연방법률의 규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입법권을 갖는다.
 1. 어떤 사항이 개개의 주입법으로는 효과적으로 규정될 수 없는 경우
 2. 어떤 사항을 주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다른 주나 전체주의 이익을 침해할는지 모를 경우
 3. 법적 통일이나 경제적통일의 유지 특히 일개주의 영역을 넘어 생활관계의 통일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 73 조 연방의 배타적 입법사항

연방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배타적입법권을 가진다.

1. 외교문제와 민간인보호를 포함한 국방
2. 연방에서의 국적

3. 자유이주, 여권제도, 국내외이주 및 범인인도
4. 통화, 화폐 및 조폐제도, 도량형과 시간규정
5. 관세구역과 통상구역의 통일, 통상조약과 항해조약, 화물교환의 자유, 관세와 국경보호를 포함한 외국과의 상품거래와 지불거래
6. 연방철도와 항공수송
7. 우편과 전신·전화제도
8. 연방과 연방직할의 공법상의 기관에 근무하는 자의 법적 지위
9. 영업상의 권리보호, 저작권 및 출판권
10. a) 사법경찰에 관한
 - b)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연방 또는 주의 존립과 안전의 보장(헌법보장)을 위한
 - c) 폭력의 사용이나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준비행위로써 도이치연방 공화국의 국제적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연방영역에서의 기도를 방지하기 위한 연방과 주의 협력 및 연방사법경찰관서의 설치와 국제적 범죄진압
11. 연방용 통계

제 74 조 경쟁적입법의 대상

경합적 입법은 다음 분야를 그 대상으로 한다.

1. 민법, 형법 및 행형, 재판소조직, 재판절차, 변호사, 공증인 및 법률상담소
2. 호적제도
3. 결사권과 집회권
4. 외국인의 체재권 및 정주권
- 4a. 총기(무기) 및 폭발물 단속법
5. 도이치 문화재의 해외반출방지
6. 망명자 및 추방된 자의 사무
7. 공공복지사업

8. 주에서의 국적
9. 전쟁재해와 복구
10. 전상자와 전쟁유족의 부양, 전쟁포획에 대한 부조
- 10a. 전몰자묘지와 전쟁희생자 및 폭력지배의 희생자묘지
11. 경제(광업, 공업, 동력산업, 수공업, 영업, 상업, 은행 및 주식제도, 사법상의 보험제도)에 관한 법
- 11a.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에너지의 생산과 이용, 위 목적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핵에너지의 자유화 또는 전리방사선에 의하여 야기되는 위험의 방지, 방사능물질의 제거
12. 경제제도, 노동력 보호 및 직업소개를 포함한 노동법과 실업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제
13. 직업훈련지원규정과 학술적 연구의 진흥
14. 제73조와 74조의 사항분야에서 문제되는 공용징수법
15. 토지, 천연자원 및 생산수단의 공유재산 또는 그밖의 공동관리 경제형태로의 전환
16. 경제적 세력의 남용예방
17. 농·임산의 진흥, 식량의 확보, 농·임산물의 수출입, 원양어업과 연안어업 및 연안보호
18. 토지부동산거래, 토지법 및 영업상의 임차제도, 주거제도, 이주제도 및 주택제도
19. 인간과 가축에 공통된 그리고 전염성이 있는 질병에 대한 조치, 의료업 및 그밖의 치료업의 허가, 약품, 약제 및 마약과 독약의 거래
- 19a. 병원의 경제적 안전과 병원관리원칙의 규제
20. 식량, 기호품, 생활필수품, 사료, 농·임업용의 종자 및 묘목의 거래의 보호, 식물의 병해보호 그리고 동물의 보호
21. 원양과 근해항행 및 항로표식, 내수항행, 기상업무, 해수항로 및 일반 운수에 이용되는 내수항로
22. 도로교통, 자동차제도, 장거리수송용 주도의 건설과 유지, 자동차에 의한 공로이용료의 징수와 배분

23. 연방철도가 아닌 산악철도 이외의 궤도

24. 쓰레기 제거, 공기정화 및 소음방지

제 74 조a 공무원의 급여에 관한 경합입법권

- (1) 제73조8호에 따라 연방이 배타적 입법권을 갖지 않는 한, 경합적 입법은 공법상의 복무 및 충실관계에 있는 공무원의 급료와 부양에도 미친다.
- (2) 제1항에 의한 연방법률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3) 제73조 8호에 의한 연방법률도, 그것이 공무원의 평가를 포함하여 그 급료 및 부양의 구조 또는 사정에 관해 제1항에 의한 연방법률과 다른 기준 또는 최소 최대액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4) 제1항과 2항은 주관사의 급료와 부양에 준용된다. 제98조1항에 의한 법률에는 제3항이 준용된다.

제 75 조 연방의 외곽조항

연방은 제72조의 전제하에서 다른 사항에 관하여 외곽조항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1. 제74조a가 다른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주, 지방자치체 및 그 밖의 공법상의 기관과 공근무관계에 있는 자들의 법률관계
 - 1a. 대학제도의 일반원칙
 2. 신문과 영화의 일반적 법률관계
 3. 수렵제도, 자연보호 및 풍치관리
 4. 토지분배, 국토계획 및 수의 보전
 5. 계출 및 신분증명서제도

제76조 법률안

- (1) 법률안은 연방정부, 연방의회의원 또는 연방참의원에 의하여 연방의회

에 제출된다.

- (2) 연방정부의 법률안은 우선 연방참의원에 송부되어야 한다. 연방참의원은 6주내에 이 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권한을 가진다. 연방정부는, 연방참의원에 송부할 시에 예외로 특별히 긴급을 요한다는 표시를 한 법률안을, 그에 대한 연방참의원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삼주내에 연방의회에 송부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연방참의원의 의견제출이 있으면 지체없이 그것을 연방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3) 연방참의원의 법률안은 연방정부를 통하여 3개월내에 연방의회에 송부되어야 한다. 이때에 연방정부는 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 77 조 법률의결의 절차 연방참의원의 이의

- (1) 연방법률은 연방의회에 의하여 의결된다. 연방법률은 채택 후 지체없이 연방의회의장에 의해 연방참의원에 송부되어야 한다.
- (2) 연방참의원은 법률의결을 수리 후 삼주내에, 법률안의 합동심의를 위하여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소집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위원회의 조직과 절차는 연방의회에 의하여 의결되고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의사규칙에 따른다. 이 위원회에 파견된 연방참의원의 구성원은 지시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어떤 법률에 대하여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할 때에는 연방의회와 연방정부도 그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의결된 법률의 변경을 제의하면 연방의회는 재의결해야 한다.
- (3)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법률인 경우에는, 연방참의원은 제2항에 따른 절차가 종결되었을 때에는 연방의회에 의해 의결된 법률에 대해 이주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기한은 제2항후단의 경우에는 연방의회에 의한 재의결의 성립과 동시에 시작되고, 그밖의 모든 경우에는 제2항에 규정된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위원회에서의 절차가 완결되었다고 하는 보고의 성립과 동시에 시작된다.
- (4) 전항의 이의가 연방참의원의 다수투표로 의결되면, 연방의회는 그 의

원의 다수의 의결로 그것을 각하할 수 있다. 연방참의원이 최소한 그 투표의 3분의 2의 다수로 이의를 의결한 경우에는, 연방의회에 의한 그 각하는 3분의 2의 다수 또는 최소한 연방의회의원의 과반수를 필요로 한다.

제 78 조 법률의 성립

연방의회에 의해 의결된 법률은 연방참의원이 동의할 때, 제77조 2항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할 때, 제77조 3항의 기한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의를 철회할 때 또는 이의가 연방의회에 의해 각하될 때에 성립한다.

제 79 조 기본법의 개정

- (1) 이 기본법은 기본법의 원문을 명시적으로 변경 또는 보완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평화규정, 평화규정의 준비 또는 점령에 관한 법질서의 폐지를 그 대상으로 하거나 연방공화국의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을 규정한 국제법적조약인 경우에는, 이 기본법의 제조항이 그러한 조약의 체결과 발효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이 해명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법의 원문의 보완으로써 충분하다.
- (2) 이러한 법률은 연방의회의원의 3분의 2의 찬성과 연방참의원의 투표의 3분의 2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 (3) 연방을 제주로 편성하는 것, 입법에 있어서 주의 원칙적인 협력 또는 제1조와 제20조에 규정된 제원칙에 저촉되는 이 기본법개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 80 조 법률명령의 제정

- (1) 연방정부, 연방장관 또는 주정부에게는 법률에 의하여 법규명령을 제정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때 위임한 권한의 내용, 목적 및 범위

는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 법규명령에는 그 법적근거가 명시되어야 한다. 수입한 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 있음을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수권의 위임을 위해 법규명령이 필요하다.

- (2) 연방철도, 우편 및 전신·전화시설의 이용에 관한 원칙과 요금 그리고 철도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연방정부 또는 연방장관의 법규명령은, 연방법상의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 또는 연방의 위임에 따라서 하거나 고유사무로서 주가 집행할 연방법률을 근거로 하는 법규명령도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제 80 조a 긴급상태에서의 법규명령의 적용

- (1) 이 기본법 또는 민간인의 보호를 포함한 국방에 관한 연방법률이 본조의 규준에 의해서만 법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한 때에는, 그 적용은 방어전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의회가 긴급상태의 발생을 확인한 경우 또는 그 적용에 특별히 동의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긴급상태의 확인과 제12조a 5항 1단 및 6항2단의 경우의 특별동의를 투표된 표의 3분의 2의 다수를 필요로 한다.
- (2) 제1항에 의한 법조항에 의거한 조치는 연방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중지되어야 한다.
- (3) 국제기구가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 연방조약의 범위내에서 하는 의결을 근거로 하고 그 규준에 따르는 법조항의 적용도 제1항에 상관없이 허용된다. 본항에 의한 조치는 연방의회가 그 의원의 다수결로 요구하는 때에는 폐지되어야 한다.

제 81 조 입법적 비상사태

- (1) 제68조의 경우에 연방의회가 해산되지 아니할 때, 연방정부가 법률안을 긴급한 것이라고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의회가 그 법률안을 거부하면, 연방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제의로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 법률안에 관한 입법적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 있다. 연방수상이 어떤 법률안을 제68조의 동의와 결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안이 부결된 때에도 또한 같다.
- (2) 입법적 비상사태의 선언 후 연방의회가 동법률안을 재차 부결하거나 동법률안을 연방정부가 수락할 수 없는 안으로 통과시킬 때에는, 동법률은 연방참의원이 동의하는 한 성립된 것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위 법률안이 재의에 붙여진 후 사주내에 연방의회에 의해 의결되지 않은 때에도 또한 같다.
- (3) 한 연방수상의 재임중 연방의회가 부결한 그밖의 모든 법률안도 제1항 및 2항에 의한 입법적 비상사태의 최초의 선언 후 6개월의 기간내에 의결될 수 있다. 동기간의 경과 후에는 동일한 연방수상의 재임중에는 재차의 입법적 비상사태의 선언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4) 이 기본법은 제2항에 따라 성립되는 법률에 의해서 개정될 수도 없고, 전부 또는 일부가 실효될 수도 없고 또 정지될 수도 없다.

제 82 조 법률의 공포와 시행

- (1) 이 기본법의 조항에 따라 성립한 법률은 부서후 연방대통령이 서명하고 연방법률공보로 공포된다. 법규명령은 그것을 발하는 관청이 서명하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연방법률 공보로 공포된다.
- (2) 법률과 법규명령은 어느것이나 시행일을 규정해야 한다.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연방법률공보가 발행된 일의 경과 후 14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8 장 연방법률의 집행과 연방행정

제 83 조 주행정의 원칙

주는 이 기본법에 따른 규정이 없거나 이 기본법이 허용하는 한, 연방법률을 그 고유사무로서 집행한다.

제 84 조 주행정과 연방감독

- (1) 연방법률을 고유사무로서 집행하는 때에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주가 관청조직과 행정절차를 규정한다.
- (2) 연방정부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일반행정규칙을 발할 수 있다.
- (3) 연방정부는 주가 연방법률을 현행법에 따라 집행하는가를 감독한다. 연방정부는 이 목적을 위하여 주상급관청에 위원을 파견할 수 있다. 또 주상급관청의 동의를 얻어, 이 동의를 거절되면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주의 하급관청에도 위원을 파견할 수 있다.
- (4) 연방정부가 주에서의 연방법률의 집행에서 확인한 흠결이 제거되지 아니할 때에는, 연방참의원은 연방정부나 주의 체의로 주가 법을 위반하였는가의 여부를 의결한다. 연방참의원의 의결에 대해서는 연방헌법 재판소에 출소할 수 있다.
- (5) 연방정부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의하여 연방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 지시를 할 권한을 가질 수 있다. 그 지시는 연방정부가 긴급한 경우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상급관청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

제 85 조 주의 연방위임행정

- (1) 주가 연방의 위임에 따라 연방법률을 집행할 때에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관청의 조직은 주의 관할이 된다.
- (2) 연방정부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일반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공무원과 용원의 통일적 훈련을 규정할 수 있다. 중급관청의 장은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어야 한다.
- (3) 주관청은 관할연방최고관청의 지시에 따른다. 그 지시는 연방정부가 긴급한 경우라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주상급관청에 대해 행해져야 한다. 지시의 실행은 주상급관청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 (4) 연방감독은 집행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미친다. 연방정부는 이 목적을 위하여 보고와 제안을 요구할 수 있고 모든 관청에 위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86조 (연방의 고유행정) 연방이 연방의 고유행정 또는 연방직할기관 또는 공법상의 영조물에 의해 법률을 집행할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방정부는 일반행정규칙을 발한다. 연방정부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관청의 조직을 정한다.

제 87 조 연방고유행정의 대상

- (1) 외교사무, 연방재무행정, 연방철도, 연방우편 및 제89조의 규준에 의한 연방운하 및 해운행정은 연방고유행정의 형태로 연방의 하급행정기구가 행한다. 연방국경수비관청, 경찰상의 정보 및 통신기구와 사법경찰에 관한 중앙관청, 헌법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폭력행사나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준비행위에 의하여 도이치연방공화국의 외교상의 권익을 위태롭게 하는 연방영역에서의 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중앙관청은 연방법률에 의해서 설치될 수 있다.
- (2) 일개주 이상을 그 관할영역으로 하는 사회보험담당자는 공법상의 연방직할기관으로 운영된다.
- (3) 또한 독립한 연방상급관청과 새로운 연방직할기구 및 공법상의 영조물이, 연방이 입법권을 갖는 사무를 위해서 연방법률로 설치될 수 있다. 연방이 입법권을 갖는 영역에서 연방에 새로운 임무가 발생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연방참의원과 연방회의원의 다수의 동의를 얻어 연방고유의 중급 및 하급관청이 설치될 수 있다.

제 87 조a 군대의 편성, 동원 및 임무

- (1) 연방은 국방을 위한 군대를 편성한다. 군대의 수와 조직의 대강은 예산안에 따라야 한다.
- (2) 국방을 위한 경우외에는 이 기본법이 명문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군대가 동원될 수 있다.

- (3) 군대는 방어전쟁과 긴급상태의 경우에 그 방어임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이상 민간인과 그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정리의 임무를 담당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방어전쟁과 긴급상태의 경우에는 경찰상의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인·민간재산의 보호가 군대에 이양될 수 있다. 이때 군대는 관할관청과 협력한다.
- (4) 연방과 주의 존립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위협의 방지를 위해 연방정부는, 제91조2항의 전제가 존재하고 경찰력과 연방국경수비대만으로는 불충한 경우에는, 민간인·민간재산을 보호하고 조직된 군사적 무장폭도들을 진압하는 경찰과 연방국경수비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 군대의 동원은 연방의회나 연방참의원의 요구가 있으면 중지되어야 한다.

제 87 조b 연방군정

- (1) 연방의 군무행정은 연방고유행정으로 고유의 하급행정기관에 의해 운영된다. 연방군정은 군대의 인적 업무와 그 물자수요의 직접적인 충당을 목적으로 한다. 피해자의 부양과 건축·토목의 업무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의해서만 연방군무행정에 이관될 수 있다. 또한 법률이 연방군무행정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권한을 위임하는 때에는, 이 법률도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인사업무분야에 관한 법률은 그렇지 아니하다.
- (2) 그 밖의 징병사무와 민간인 보호를 포함한 국방에 관한 연방법률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연방고유행정의 형태로 그 고유의 하급행정기관이나, 연방의 위임에 따라 주가 집행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이런 법률이 연방의 위임에 따라 주에 의해 집행될 때에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제85조를 연방정부와 관할연방최고관청이 갖는 권한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연방상급관청에 이관된다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이때 이들 관청은 제85조2항1단에 의한 일반행정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제 87 조c 행동력의 생산과 이용

제74조 11호a에 의거하여 제정되는 법률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그 법률이 연방의 위임에 따라 주에 의해 집행된다고 규정할 수 있다.

제 87 조d 항공운송행정

- (1) 항공운송행정은 연방고유행정으로 처리된다. 공법적 또는 사법적 조직 형식에 대해서는 연방법률을 통해서 정한다.
- (2)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의하여, 항공수송행정업 무가 위임행정으로서 주에 이관될 수 있다.

제 88 조 연방은행

연방은 연방은행으로서 통화은행과 대환은행을 설치한다. 그 과제와 권한은 유럽연합의 테두리 안에서, 독립적이고 불가안정의 확보라는 우선적인 목적을 의무로 갖는 유럽중앙은행에 이양될 수 있다.

제 89 조 연방운하

- (1) 연방은 종래의 제국운하의 소유자가 된다.
- (2) 연방은 그 관청을 통해 연방운하를 관리한다. 연방은 1개주 이상에 걸친 내수항행의 국가적 업무와 법률로 연방에 이관되는 해양항행의 업무를 관장한다. 연방은 1개주의 영역내에 위치하는 연방운하의 관리를 위임행정으로서 이주에 이관할 수 있다. 운하가 여러 주에 걸쳐 있으면 연방은 관계주 중에서 희망하는 주에 위임할 수 있다.
- (3) 운하를 관리하고 확장하고 신설함에 있어서는 각주와 협의하여 수리의 수요가 유지되어야 한다.

제 90 조 연방도로

- (1) 연방은 종래의 제국고속도로와 제국도로의 소유자가 된다.
- (2) 주 또는 주법상 관할권을 가진 자치단체가 연방의 위임에 따라 연방고속도로와 그 밖의 원거리수송용의 연방도로를 관리한다.
- (3) 연방은 주의 신청에 따라 연방고속도로와 그밖의 원거리수송용연방도로를, 그것들이 당해 주의 영역내에 있는 때에는, 연방고유행정으로 인수할 수 있다.

제 91 조 연방 또는 주의 존립에 대한 위협의 방지

- (1) 연방 또는 주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위협의 방지를 위하여 주는 다른 주의 경찰력과 다른 행정청 및 연방국경수비대의 병력과 시설을 징발할 수 있다.
- (2) 위협에 처한 주가 스스로 그 위협을 극복하려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연방정부가 이 주의 경찰과 다른 주의 경찰력을 지휘하고 연방국경수비대의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 징발은 위협이 제거된 후에는 중지되어야 하고 연방참의원의 요구가 있는 때는 언제든지 중지되어야 한다. 위협이 1개주 이상의 영역에 미칠 때에는 효과적인 진압을 위해 필요한 이상 연방정부는 주정부에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제1단과 2단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 8a 장 공동임무

제 91 조a 공동임무의 상세한 규정

- (1) 주의 임무가 전체주를 위해 중대한 것이고 생활관계의 개선을 위해 연방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공동취임)에는 연방은 다음의 분야에서 주의 임무수행을 위해 협력한다.
 1. 대학병원을 포함한 대학의 확장과 신축

2. 지역경제구조의 개선

3. 농업구조와 연안보호의 개선

- (2) 공동위임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의하여 상세히 규정된다. 동법률에는 공동임무의 수행에 관한 일반원칙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동법률은 공동외곽계획을 위한 절차와 시설에 관해 규정한다. 외곽계획중에 다른 계획이 포함될 때에는 관계주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4) 연방은 제1항 1호와 2호의 경우에는 모든 주에서의 비용의 반을 부담한다. 제1항3호의 경우에는 연방은 최소한 반액을 부담한다. 자본참가는 모든주에 대해 통일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상세한 것은 법률이 정한다. 예산확보는 연방과 각주의 예산안중의 확정된 항목에 유보된다.
- (5) 연방정부와 연방참의원은 공동임무실천의 요구에 관해 보고를 받아야 한다.

제 91 조b 교육계획 및 연구에 관한 연방과 주의 협력

연방과 주는 협의에 의거하여 교육계획과 초지역적 중대성을 띤 학문적 연구의 시설과 계획의 촉진에 협력할 수 있다. 비용분담은 합의에 따라 정한다.

제 9 장 사 법

제 92 조 성원의 조직

사법권은 재판관에게 맡긴다. 사법권은 연방헌법재판소, 이 기본법에 규정된 연방법원 및 주법원에 의해 행사된다.

제 93 조 연방헌법재판소와 그 관할권

- (1) 연방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에 관해 재판을 한다.

1. 연방최고기관의 권리·의무의 범위 또는 이 기본법이나 연방최고기관의 직무규칙에 의하여 고유의 권리를 가진 그밖의 관계자의 권리·의무의 범위에 관한 분쟁을 동기로 하는 이 기본법의 해석
 2.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연방의회의원 3분의 1의 신청에 따라 이 기본법과 연방법 또는 주법과의 형식적·실질적 양립성에 관한 또는 그밖의 연방법과 주법의 양립성에 관한 의견차이나 의문
 3. 특히 주에 의한 연방법의 집행과 연방감독의 행사에 있어서 연방과 주의 권리·의무에 관한 의견차이
 4. 다른 쟁송수단이 없는 한, 연방과 주간의 그리고 주상호간의 또는 주 내부에서의 그밖의 공법상의 쟁의
 - 4a. 누구나 공권력에 의하여 그 기본권 또는 제20조 4항, 33조, 38조, 101조, 103조 및 104조에 규정된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으로 제기될 수 있는 헌법소청
 - 4b. 제28조의 자치행정권이 법률에 의해 침해되었거나, 주헌법재판소에 소청이 제기될 수 없는 경우로서 주법률에 의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지방자치체와 지방자치체연합이 제기하는 헌법소청
 5. 기타 이 기본법이 규정한 경우
- (2) 연방헌법재판소는 그밖에 연방법률이 그에게 할당한 사건에 관하여 활동한다.

제 94 조 연방헌법재판소의 조직

- (1)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판사와 그밖의 구성원으로 조직한다. 연방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은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에 의해 각각 반수씩 선출된다. 연방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은 연방의회, 연방참의원, 연방정부, 그에 대응하는 주의기관에 소속할 수 없다.
- (2) 연방법률은 연방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절차를 정하고 그 판결이 법률상의 효력을 갖는 경우를 규정한다. 연방법률은 헌법소청에 관해 사전적 소송수단의 완료를 그 전제로 할 수 있고 특별한 수리절차를 규정

할 수 있다.

제 95 조 연방의 상급재판소와 합동부회

- (1) 연방은 일반, 행정, 재정 노동 및 사회재판의 영역에 상급법원으로서 연방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재정법원, 연방노동법원 및 연방사회법원을 설치한다.
- (2) 이 법원들의 판사의 임명은 각각 해당 분야를 관할하는 연방장관이, 각각 해당 분야를 관할하는 주장관들과 연방의회에 의해 선출되는 동수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판사선발위원회와 공동으로 결정한다.
- (3) 판결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1항에 열거된 법원의 합동부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이 규정한다.

제 96 조 연방법원

- (1) 연방은 영업상의 권리보호사건을 위한 연방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 (2) 연방은 연방법원으로서 군대를 위한 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군사법원은 방어전쟁의 경우와 외국에 파견되거나 군함에 승선한 군대의 소속원에 대해서만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이 정한다. 이 재판소들은 연방법무장관의 소관분야에 속한다. 그 전임판사는 판사직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 (3) 제1항과 2항에 연거된 재판에 관한 상급법원은 연방법원이다.
- (4) 연방은 연방에 대해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있는 자들에 대한 징계절차와 소청절차를 판결하기 위한 연방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 (5) 제26조 1항과 국가보호의 영역에서의 형법절차를 위해 연방법률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주법원이 연방의 재판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제 97 조 판사의 독립

- (1) 판사는 독립이고 법률에만 따른다.
- (2) 정원내의 전임판사는 법원의 판결과 규정된 사유와 방식에 의해서만 그 의사에 반하여 임기전에 면직되거나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정직되거나 타직에 전출되거나 은퇴될 수 있다. 임법권은 정년제를 규정할 수 있고, 정년에 달한 종신판사를 은퇴시킬 수 있다. 법원의 조직이나 구역이 변경될 경우에는 판사를 다른 법원에 전속되거나 퇴직당할 수 있다. 그러나 봉급의 전액이 지급되어야 한다.

제 98 조 판사의 법적지위

- (1) 연방판사의 법적 지위는 특별한 연방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 (2) 연방판사가 직무상 또는 직무외에서 기본법의 원칙이나 주의 헌법질서에 위반할 때에는,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의 청구에 따라 3분의 2의 다수로 그 판사의 전직이나 은퇴를 명할 수 있다. 그 위반이 고의인 경우에는 해직시킬 수 있다.
- (3) 주판사의 법적 지위는 특별한 주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연방은 제74조a 4항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외곽조항을 정할 수 있다.
- (4) 주는 주법무장관이 판사선발위원회와 공동으로 주판사의 임명을 결정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 (5) 주는 제2항에 준하는 규정을 주판사에게 적용할 수 있다. 현행주헌법은 관계가 없다. 판사탄핵에 관한 결정은 연방헌법재판소의 권한에 속한다.

제 99 조 주법상의 사항에 관한 관할의 연방헌법재판소 및 연방상급재판소로서의 이관

주법률로 주내의 헌법쟁의에 관한 판결은, 연방헌법재판소에, 주법의 적용이 문제되는 사항에 관한 최종심판결은 제95조 1항에 열거된 상급법원

의 관할로 할 수 있다.

제 100 조 규범통제

- (1) 재판소가 재판에서 그 효력이 문제되는 법률을 위헌이라 생각할 때에는 그 절차를 중지해야 하며, 또 주헌법의 침해가 문제될 때에는 그 주의 헌법쟁의에 관해 관할권을 갖는 재판소의 판결을 구해야 하고, 이 기본법의 침해가 문제될 때에는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구해야 한다. 주법에 의한 이 기본법의 침해가 문제되거나 연방법률과 주법률의 양립성이 문제될 때에도 또한 같다.
- (2) 어떤 소송에서 국제법의 규정이 연방법의 구성구분이 되는지의 여부와 그것이 개인에 대하여 직접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케 하는지(제25조)의 여부가 의문스러울 때에는, 재판소는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구해야 한다.
- (3) 주헌법재판소가 기본법의 해석시에 연방재판소 또는 다른 주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달리하고자 할 때에는 동헌법재판소는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구해야 한다.

제 101 조 특별법원 금지

- (1) 특별법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누구에게도 그 법률에 의한 판사를 막을 수 없다.
- (2) 특별사건에 관한 법원은 법률에 의해서만 설치될 수 있다.

제 102 조 사형의 폐지

사형은 폐지된다.

제 103 조 소급효법률의 금지, 일사부재리

- (1) 누구든지 법정에 서게되는 경우 법률상의 심문을 청구할 권리를 가

진다.

- (2) 어떤 행위는 그것이 행해지기 이전에 그 가벌성이 법률로 규정된 경우에만 처벌될 수 있다.
- (3) 누구도 동일행위를 이유로 일반형법에 의거하여 거듭 처벌되지 아니한다.

제 104 조 자유박탈의 경우의 권리보장

- (1) 신체의 자유는 형식적 법률에 의거해서만 그리고 거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서만 제한될 수 있다. 구금된 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확대되어서는 안된다.
- (2) 자유박탈의 허용과 계속은 판사만이 결정해야 한다. 판사의 지시에 의하지 않은 모든 자유박탈은 지체없이 판사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자기의 절대적 권력으로 누구도 체포의일이 종료한 후까지 구치할 수 없다. 상세한 것은 법으로 정한다.
- (3) 누구든지 범죄행위의 혐의 때문에 일시적으로 체포된 자는 늦어도 체포의일에 판사앞에 인치(引致)되어야 하며 판사는 체포된자에게 체포 이유를 알려야 하며 심문하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판사는 지체없이 이유를 첨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 (4) 자유박탈의 명령이나 계속에 대한 판사의 모든 결정은 지체없이 피구금자의 가족 또는 그가 신임하는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 장 재정제도

제 104 조a 연방과 주의 비용부담

- (1) 연방과 주는 이 기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그 업무관장에서 오는 비용을 따로 부담한다.
- (2) 주가 연방의 위임을 받아 행동할 때에는 거기에서 오는 비용은 연방이

부담한다.

- (3) 금전지출을 요하고 주가 집행하는 연방법률은 금전지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방이 부담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동법률의 비용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연방이 부담한다고 규정할 때에는 그 법률은 연방의 위임을 받아 집행된다. 동법률이 비용의 4분의 1 또는 그 이상을 주가 부담한다고 규정할 때에는 그 법률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4) 연방은 전체의 경제적 균형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또는 연방영역에서의 상이한 경제력의 조정을 위해, 또는 경제적성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와 지방자치체(지방자치체연합)의 특별히 중요한 투자를 위해서 각주에 재정원조를 해줄 수 있다. 상세한 것, 특히 촉진될 투자의 종류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이나 연방예산법에 의거한 행정협정으로 규정한다.
- (5) 연방과 주는 그 관청에 소요되는 행정비를 부담하고 일반행정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상세한 것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이 정한다.

제 105 조 재정입법의 관할권

- (1) 연방은 관세와 전매에 관한 배타적 입법권을 가진다.
- (2) 연방은, 그밖의 조세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에 귀속하든가 제72조 2항의 전제가 존재하는 때에는 그밖의 조세에 관한 경합적 입법권을 가진다.
- (3) 주나 지방자치체(지방자치체연합)에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이 귀속하는 조세에 관한 연방법률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한다.

제 106 조 조세의 분배

- (1) 전매수입과 다음의 조세수입은 연방에 귀속한다.

1. 관세

2. 제2항에 따라 주에 귀속하지 않고 제3항에 따라 연방과 주에 공동으로 귀속하거나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체에 귀속하는 소비세
 3. 운송세
 4. 자산거래세, 보험세 및 어음세
 5. 일회에 한한 재산양도세 및 부담조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징수되는 균합세
 6.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보충적 공과
 7. 유럽공동체의 범위내에서의 공과
- (2) 다음의 조세수입은 주에 귀속한다.
1. 고정자산세
 2. 상속세
 3. 자동차세
 4. 제 1항에 따라 연방에 귀속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라 연방과 주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통행세
 5. 맥주세
 6. 도박장의 공과.
- (3) 제5항에 따라 소득세의 수입이 지방자치체에 속하지 않은 한, 소득세, 법인세 및 매상세는 연방과 주에 공동으로 귀속(연합세)한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수입에 관하여는 연방과 주가 각기 반분한다. 매상세에 관한 연방과 주의 배분은 연방참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규정한다. 이 규정은 다음의 원칙에서 출발해야 한다.
1. 연방과 주는 통상수입의 범위내에서 각기 필요한 지출을 충당할 공평한 청구권을 갖는다. 이때 지출의 범위는 수년에 걸친 제정계획을 참작해서 정해져야 한다.
 2. 연방과 주의 충당요청은 공정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납세의무자의 초과부담이 회피되고 또 연방영역에서의 생활상태의 균형이 보장되도록 차례대로 조정되어야 한다.
- (4) 연방과 주의 매상세의 분배관계는 연방과 주의 수입 지출의 비율이 근본적으로 변경될 때에도 새로 정하여져야 한다. 연방법률에 의하여 주

가 추가지출을 부담하거나 수입이 삭감될 때에는, 과중부담은 단기간에 한한다면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의하여 연방의 재정할당과 조정될 수 있다. 이 재정할당의 기준과 주에의 분배 원칙은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 (5) 지방자치체는, 각주가 주민의 소득세납부를 근거로 지방자치체에 교부해야 할 소득세의 수입에서 할당을 받는다. 상세한 것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이 법률은 지방자치체가 그 지분에 관한 징수율을 정하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 (6) 대물세의 수입은 지방자치체에 귀속되고, 지역적 사용세 및 소비세의 수입은 지방자치체 또는 주입법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자치체연합에 귀속된다. 지방자치체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대물세의 징수율을 정할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어떤 주에 지방자치체가 없는 때에는 대물세, 사용세 및 소비세의 수입은 주에 귀속한다. 연방과 주는 할당액에 따라 영업세의 수입에 참여할 수 있다. 할당액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주입법의 기준에 따라 대물세와 지방자치체의 소득세수입지분이 징세율의 측정근거가 될 수 있다.
- (7) 연합세의 수입전체에 대한 각주의 배분관계로부터 지방자치체와 지방자치체연합에게는 주입법이 총체적으로 규정하는 백분율이 귀속된다. 또한 주입법은 주세의 수입이 지방자치체(지방자치체연합)에 귀속될 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어느 정도로 귀속될 것인가를 정한다.
- (8) 연방이 주 또는 지방자치체(지방자치체연합)에게 동주 또는 지방자치체(지방자치체연합)의 직접적인 과중부담이나 수입감태의 원인이 되는 (특별부담) 특별한 시설을하게 할 때에는, 연방은 1주나 지방자치체(지방자치체연합)가 그 특별부담을 하리라고 추정될 수 없는 때에는, 필요한 조정을 한다. 제3자의 보상금부와 동주나 지방자치체(지방자치체연합)가 시설의 결과로서 얻게 되는 재정적 이익은 조정의 경우에 참작된다.
- (9) 지방자치체(지방자치체연합)의 수입과 지출도 2조에서 말하는 주의

수입과 지출에 해당한다.

제 107 조 재정적 조정

- (1) 주세수입과 소득세 법인세수입에 관한 주의 지분은, 그 세가 주영역내의 재정관청에 의해 징수(지역적 수입)되는 때에는, 각주에 귀속한다. 법인세와 임금세에 관한 지역적 수입의 한계와 종류 및 그 배분범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로 정해야 한다. 이법률은 그밖의 지역적 세수입의 한계와 배분에 관해서도 규정할 수 있다. 매상세 수입에 관한 주의 지분은 주민수에 비례하여 각주에 귀속된다. 이 주의 지분의 일부, 최고 4분의 1까지를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의하여 주세와 소득세 및 법인세로부터의 그 주민당 수입이 다른 주의 평균수입이하인 주에 대해서는 추가지분으로 규정될 수 있다.
- (2) 법률에 따라 각주의 서로 다른 재정력은 지방자치체(지방자치체연합)의 재정력과 재정적 수요를 고려하기 위해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조정청구권과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주의 조정사무에 관한 전제 그리고 조정급부액의 기준은 법률에서 정해야 한다. 이법률은, 연방은 급부능력이 약한 주에 대해서는 그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충당시켜 주기 위해 연방의 재원으로 부터 교부금을 지급한다(보충적 교부)는 것도 규정할 수 있다.

제 108 조 재무행정

- (1) 관세, 전매, 수입매상세를 포함한 연방법률상의 소비세 및 유럽공동체의 범위내의 공과는 연방재정관청이 관리한다. 이 관청들의 조직은 연방법률로 규정한다. 그 중급관청의 장은 주정부와 협의하여 임명되어야 한다.
- (2) 그밖의 조세는 주재정관청이 관리한다. 이 관청들의 조직과 공무원들의 통일적 훈련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법률로 정할 수 있

- 다. 그 중급관청의 장은 연방정부의 양해를 얻어 임명되어야 한다.
- (3) 주재정관청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연방에 귀속하는 조세를 관리할 때에는 연방의 위임에 따라 활동한다. 제85조 3항과 4항은 연방재무부장관이 연방정부를 대리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적용된다.
 - (4) 조세관리에 있어서 조세법의 집행이 그 때문에 크게 개선되고 편리해질 때에는 그러한 한도내에서,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의하여 연방재정관청과 주재정관청의 협력이 규정될 수 있고, 제1항에 해당하는 조세에 관해서는 주재정관청에 의한 관리가, 그밖의 조세에 관해서는 연방재정관청에 의한 관리가 규정될 수 있다. 오로지 지방자치체(지방자치체연합)에 귀속되는 조세에 관해서는 주재정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주에 의한 관리의 전부 또는 그 일부가 지방자치체(지방자치체연합)에 이관될 수 있다.
 - (5) 연방재정관청에 의해 적용될 절차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주재정관청과 제4항 2단의 경우에 지방자치체(지방자치체연합)에 의해 적용될 절차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로 정할 수 있다.
 - (6) 재정재판은 연방법률이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 (7) 연방정부는 일반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조세관리가 주재정관청이나 지방자치체(지방자치체연합)의 의무일 때에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일반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재 109 조 연방과 주의 예산독립, 연방법률에 의한 전체의 경제적 균형의 유지

- (1) 연방과 주는 각자의 예산경제에 있어 자주적이고 상호독립적이다.
- (2) 연방과 주는 그 예산경제에 있어 전체의 경제적 균형의 요청을 고려하여야 한다.
- (3) 재정법과 경기에 상응한 예산경제 및 다년에 걸친 재정계획에 관하여 연방과 주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로 제시할 수 있다.

- (4) 전체의 경제적 균형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은
1. 지역단체와 목적단체의 수신의 최고액, 조건 및 기한과
 2. 독일은행에서의 무이식예금을 유지할 연방 및 주의 의무에 관한 규정이 제정될 수 있다. 법규명령을 발할 권한은 연방에게만 주어진다. 법규명령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연방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그 법규명령은 폐지되어야 한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이 정한다.

제 110 조 연방의 예산안

- (1) 연방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연방경영기업체와 특별재산에 관해서는 교부와 인도만을 명시하면 된다. 예산의 수입과 지출은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 (2) 예산은 일회계년도 또는 다회계년도별로 분리되어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예산법으로 확정된다. 예산의 각 부분에 관해서는, 기한이 상이한 것은 회계년도마다 분리되어 적용되는 것이 규정될 수 있다.
- (3) 제2항 1단에 의한 법률안과 예산법 및 예산안의 변경에 관한 제안은 연방참의원에 송부함과 동시에 연방의회에 제출된다. 연방참의원은 육주내에, 수정제안의 경우에는 3주내에 그 제안에 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 (4) 예산법에는 연방의 수입·지출과 예산안에 의해 의결된 기한에 관한 조항만이 규정되어야 한다. 예산법은, 그 법조항이 차기예산법의 공고와 더불어 비로소 효력을 상실하거나 제115조에 의한 수권의 경우에는 보다 늦게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제 111 조 예산승인전의 지출

- (1) 회계년도 종료시까지 차년도의 예산이 법률에 의하여 확정되지 아니하면, 연방정부는 그 법률의 시행시까지
 - a) 법률로 설치된 시설을 유지하고 법률로 의결된 조치를 수행하기 위

하여

- b) 법적근거가 있는 연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 c) 전년도의 예산안에 의해 그 액수가 이미 승인된 경우의 건축, 조달 및 그밖의 급부를 계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출할 권한을 갖는다.
- (2) 특별법에 근거를 갖는 조세, 공과 및 그밖의 재원 또는 사업용적립금으로부터의 수입이 제1항의 지출을 충당하지 못할 때에는, 연방정부는 그 경영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전년도예산안의 최종총액 4분의 1의 액까지 신용의 방법으로 자금화 할 수 있다.

제 112 조 예산초과

- (1) 예산초과 및 예산외지출은 연방재무장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는 오직 예견할 수 없었던, 또는 불가피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동의할 수 있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

제 113 조 지출의 증액

- (1) 연방정부가 제안한 예산안의 지출을 증액하거나 신비목을 포함하거나 예비비를 설치하는 법률은 연방정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수입감소를 포함하거나 장차 수입감소를 초래하는 법률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연방정부는 연방의회가 그 같은 법률의 의결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연방정부는 6주내에 연방의회에 대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 (2) 연방의회가 동법률을 의결한 후에는 연방정부는 4주내에 연방의회가 재의결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3) 법률이 제78조에 따라 성립되면, 연방정부는 6주내에 한해서만 그 동의를 거부할 수 있고 또 연방정부가 제1항3단과 4단이나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개시했을 때만 거부할 수 있다. 이 기간의 경과후에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114 조 결산보고, 회계검사원

- (1) 연방재무장관은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해 그리고 과년도의 자산과 채무에 관하여 연방정부의 책임면제를 위하여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에 결산을 보고해야 한다.
- (2) 그 구성원이 재판관적 독립성을 갖는 연방회계검사원은 결산과 더불어 예산집행 및 관리의 경제성과 합법성을 심사한다. 회계검사원은 매년 연방정부외에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에 직접 보고해야 한다. 연방회계검사원의 그밖의 권한은 연방법률로 규정한다.

제 115 조 신용제공

- (1) 수신업무와 더불어 차기회계년도 이후의 지출이 될 수 있는 보증, 저당 또는 그밖의 담보제공은 연방법률에 의한 일정한 수권에 따른 최고액의 수권을 필요로 한다. 수신으로부터의 수입은 예산안 중에 전적된 투자를 위한 지출 총액을 능가할 수 없다. 전체의 경제적 균형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만 예외가 허용된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이 정한다.
- (2) 연방의 특별자산에 관해서는 연방법률로 제1항에 대한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제 10a 장 방어전쟁

제 115 조a 방어전쟁의 개념과 확인

- (1) 연방의회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영역이 무력으로 공격받거나 급박한 무력공격의 위협이 있음(방어전쟁)을 확인한다. 이 확인은 연방정부의 제의로 행해지며 투표의 3분의 2의 다수이며 적어도 연방의회위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2) 사태가 즉각적인 행동을 불가피하게 요구하고 극복할 수 없는 장애 때

문에 연방의회의 적시의 집회가 불가능하거나 연방의회가 의결능력을 갖지 못할 때에는, 합동위원회가 투표의 3분의 2이며 최소한 구성원의 과반수로서 확인을 한다.

- (3) 이 확인은 제82조에 따라 연방대통령에 의해 공고된다. 이것을 적시에 할수 없는 때에는 다른 방법으로 공고한다. 사정이 허락하면 즉시 연방법률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 (4) 연방영역이 무력으로 공격받고, 권한을 가진 연방기관이 즉각 제1항 1단에 의한 확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동확인이 행해진 것으로 간주되고 공격이 개시된 시점에 공고된 것으로 간주한다.
- (5) 방어전쟁의 확인이 공고되고 연방영역이 무력으로 공격받게 되면 연방대통령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방어전쟁의 성립에 관한 국제법상의 선언을 할 수 있다. 제2항의 전제하에서는 합동위원회가 연방의회를 대신한다.

제 115 조b 방어전쟁에 있어서 군통수권

방어전쟁의 공고와 더불어 군의 명령 지휘권은 연방수상에게 이관된다.

제 115 조c 방어전쟁에 있어서 연방입법권의 확대

- (1) 연방은 방어전쟁을 위하여 주의 입법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결합적 입법권을 가진다. 이 법률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2) 방어전쟁 기간중 상황이 요구하면, 방어전쟁을 위하여 연방법률로
 - 1. 공용징수의 경우에 제14조 3항 2단과는 달리 보상이 잠정적으로 규정될 수 있고
 - 2. 자유박탈의 경우에 제104조 2항 3단과 제3항 1단과는 다른 기한이, 그러나 판사가 정상시에 적용되는 기한내에 활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4일의 기한이 규정될 수 있다.
- (3) 현재의 급박한 공경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방어전쟁을 위해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은 연방법률로 연방과 주의 행정 및 재정제도가

제8장, 제8장a, 제10장과는 달리 규정할 수 있다. 이때, 주, 지방자치체 및 지역목적체연합의 존속능력 특히 재정적인 면에서의 존속능력은 유지되어야 한다.

- (4) 제1항과 2항 1호에 의한 연방법률은 그 집행준비를 위하여 방어전쟁 개시 이전부터 적용될 수 있다.

제 115 조d 방어전쟁에 있어서 긴급한 법률안의 단축된 절차

- (1) 방어전쟁의 경우에는 연방의 입법권에 관해 제76조 2항, 제77조 1항 2단과 2항에서 4항까지, 제78조와 제82조 1항과는 달리 제2항과 3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 (2) 긴급한 것으로 표시된 연방정부의 법률안은 연방의회에 제출됨과 동시에 연방참의원에 송부된다.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은 이 법률안을 지체없이 공동으로 심의한다. 이 법률에 대해 연방 참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법률의 성립을 위하여 연방참의원의 과반수표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상세한 것은 연방의회가 의결하고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의사규칙이 정한다.
- (3) 법률의 공포에는 제115조a 3항 2단이 준용된다.

제 115 조e 합동위원회의 지위와 기능

- (1) 방어전쟁의 경우에 합동위원회가 최소한 그 구성원의 다수와 투표의 3분의 2의 다수로, 연방의회의 적시의 집회를 방해하는 극복할 수 없는 장애가 존재하고 연방의회가 의결할 능력이 없음을 확인하면, 공동위원회는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의 지위를 가지며 그들의 권한을 통일적으로 관장한다.
- (2) 기본법은 합동위원회의 법률에 의하여 개정될 수도 없고,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효력을 상실하거나 정지될 수도 없다. 합동위원회는 제23조 1항 2단, 제 24조 1항 또는 제29조에 따른 법률제정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제 115 조f 방어전쟁에 있어서 연방 정부의 비상권

- (1) 방어전쟁의 경우에 연방정부는 상황이 요구되는 한
 1. 연방국경수비대를 연방전역에 투입할 수 있고
 2. 연방행정청의에 주정부에 대해서도,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관청에 대해서 지시를 할 수 있고, 또 이 권한을 그가 정하는 주정부의 구성원에게 이양할수 있다.
- (2) 연방의회, 연방참의원 및 합동위원회는 제1항에 의하여 행해진 조치에 관하여 지체없이 보고를 받는다.

제 115 조g 방어전쟁에 있어서 연방헌법재판소의 지위

연방헌법재판소와 그 판사들의 헌법상의 지위와 헌법상의 임무의 수행은 침해될 수 없다. 연방헌법재판소법은, 연방헌법재판소 판사들의 견해에 의할지라도 동재판소의 기능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에 한해서 합동위원회의 법률로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법률이 재정되기까지는 연방헌법재판소는 동재판소의 활동능력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단과 3단에 의한 결의를 재석판사의 과반수로 행한다.

제 115 조h 방어전쟁에 있어서 임기

- (1) 방어전쟁기간중에 종료한 연방의회 또는 주의회의 임기는 방어전쟁의 종결후 6개월 후에 끝난다. 방어전쟁기간 중에 종료한 연방대통령의 임기와 그 임기전 사임으로 연방참의원의장에 의한 대통령 권한의 대행은 방어전쟁종결 후 9개월 후에 끝난다. 방어전쟁 기간중에 종료한 연방헌법재판소 판사의 임기는 연방전쟁 종결후 6개월후에 끝난다.
- (2) 합동위원회에 의한 연방수상의 새로운 선출이 필요한 때에는, 동위원회는 그 구성원과반수로 새 연방수상을 선출한다. 연방대통령은 합동위원회에 추천을 한다. 합동위원회는 그 구성원 3분의 2의 다수로 후

- 입자를 선임함으로써만 연방수상에 대해 불신임을 표명할 수 있다.
- (3) 방어전쟁기간 중에는 연방의회 의 해산은 배제된다.

제 115 조i 방어전쟁에 있어서 주정부의 비상권

- (1) 연방의 유권기관이 위협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고 사태가 각 영역에서 즉각적, 독자적인 행동을 불가피하게 요구할 때에는, 주 정부 또는 그것에 의해 지정된 관청이나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제 115조f 1항에서 말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 제1항에 의한 조치는 연방정부에 의해서, 그리고 주관청과 연방하급 관청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수상에 의해서도 언제든지 중지될 수 있다.

제 115 조j 방어전쟁에 있어서 의결된 비상입법의 지위와 효력기간

- (1) 제115조c, 115조e 및 115조g에 의한 법률과 이법률에 근거를 갖는 법규명령은 그 적용기간 중 그것들에 저촉되는 법을 정지시킨다. 제 115조c, 115조e 및 115조g에 의거하여 제정된 구법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 (2) 합동위원회가 의결한 법률과 그러한 법률에 의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은 늦어도 방어전쟁 종결후 6개월 내에 효력을 상실한다.
- (3) 제91조a, 91조b, 104조a, 106조 및 107조와 상이한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은 길어도 방어전쟁 후의 제2차회계연도의 종료까지 적용될 뿐이다. 동법률은 방어전쟁종결후 제8장a와 10장에 의한 규정에 이월하기 위하여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은 연방법률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제 115 조k 방어전쟁의 종결, 합동위원회의 법률의 폐지, 강화조약

- (1) 연방의회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지 합동위원회의 법률을 폐지할 수 있다. 연방참의원은 연방의회가 이에 관한 의결을 하도록

- 요구할 수 있다. 위협방지를 위해 취해진 합동위원회 또는 연방정부의 그밖의 조치는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의 의결이 있으면 폐지되어야 한다.
- (2) 연방의회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지 연방대통령에 의해 공고될 의결로써 방어전쟁이 종결되었음을 선언할 수 있다. 연방참의원은 연방의회가 이에 관한 의결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방어전쟁의 확인에 관한 전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때에는 방어전쟁은 지체없이 종결된 것으로 선언되어야 한다.
- (3) 강화조약의 체결은 연방법률로 결정한다.

제 11 장 경과 및 종결규정

제 116 조 “도이치인”의 개념 재귀화

- (1) 이 기본법에서 말하는 도이치인이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독일국적을 가진 자이거나, 1937년 12월 31일 현재 독일국영역내의 망명자 또는 피추방자 또는 그 배우자나 비속으로 받아들여진 자이다.
- (2) 1933년 1월 30일에서 1945년 5월 8일까지의 기간중 정치적·인종적 또는 종교적 이유에서 국적을 박탈당한 구독일국민과 그 비속은 신청에 따라 다시 귀화된다. 1945년 5월 8일 이후 독일내에 주소를 가졌고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이들은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 117 조 제3조 및 제11조에 관한 경과규정

- (1) 제3조 2항에 저촉되는 법은 그것이 이 기본법규정에 적용하기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1953년 3월 31일 이후부터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 (2) 현재의 주택난을 고려하여 자유이주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연방법률에 의하여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 118 조 바덴주와 뷔르템베르크주의 재편성

바덴, 뷔르템베르크·바덴 및 뷔르템베르크·호헨졸레른주를 포함하는 영역에서의 재편성은 제29조의 조항과 관계없이 관계주의 합의로 행해질 수 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재편성은 연방법률로 규정되며, 연방법률은 주민투표를 규정해야 한다.

제 119 조 망명자와 피추방자

망명자와 피추방자의 사무 특히 그들을 각주에 할당하기 위한 사무에 관해서는, 연방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까지 연방정부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이때 특별한 경우에는 연방정부에게 개별적 지시를 할 권한이 부여될 수 있다. 지시는 그 자체로 위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상급관청에 대해 행해진다.

제 120 조 전쟁결과의 부채

(1) 연방은 점령비의 지출과 연방법률의 상세한 규정에 따른 그밖의 내·외 전쟁부채를 부담한다. 이 전쟁부채가 1969년 10월 1일 까지 연방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때에는 연방과 주는 서로의 비율에 따라 이 연방의 기준에 의한 출비를 부담한다. 연방법에 규정되지도 않았고 규정되지도 않은 전쟁부채의 출비가 1965년 10월 1일까지 주, 지방자치체(지방자치체연합) 내지 주 또는 지방자치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그밖의 수입자에 의해 지출된 이상, 연방은 이 시기 이후에는 이같은 출비를 인수할 의무가 없다. 연방은 실업보험과 실업자구제를 포함한 사회보험부담을 위한 보조금을 부담한다. 본항에 의해 규정되는 전쟁부채의 연방 및 주에의 할당은 전쟁결과에 관한 보상청구권의 법적 규제와도 관계가 없다.

(2) 수입은 연방이 지출을 인수함과 동시에 연방에 이행한다.

제 120 조a 부담조정의 실행

- (1) 부담조정의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법률이 조정작업의 영역에서 일부는 연방에 의해 일부는 연방의 위임으로 주에 의해 집행된다는 것을 규정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이상 제 85조에 의거하여 연방정부와 관계연방최고관청에 귀속되는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방조정청에 이관한다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연방조정청은 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지시는 긴급한 경우외에는 주상급관청(주 조정관)에 대해서 행해져야 한다.
- (2) 제87조 3항 2단과는 관계가 없다.

제 121 조 다수의 개념

이 기본법에서 말하는 연방의회와 연방회의구성원의 다수란 그 법적 구성원의 다수를 말한다.

제 122 조 지금까지의 입법의 관할권

- (1) 연방의회의 집회일로부터는 법률은 오로지 이 기본법에서 인정된 입법권에 의해서만 의결된다.
- (2) 제1항에 따라 그 관할권이 소멸하는 입법기관과 입법참여기관은 이 시점부터 해산된다.

제 123 조 구법과 구조약의 효력의 존속

- (1) 연방의회의 집회 이전부터 있던 법은, 그것이 기본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 (2) 이 기본법상 주입법권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는 것으로서 독일제국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그것이 일반적인 법원리에 따라 유효하고 계속 효력을 갖는 것일 때에는, 관계자의 모든 권리와 이익을 유보

하여 계속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기본법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 기관에 의한 새로운 조약이 체결되거나 그 중에 포함된 조항에 따라 그 종결이 따로이 행해질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 124 조 배타적 입법권의 영역에서의 구법

연방의 배타적 입법권의 대상에 해당하는 법은 그 적용범위내에서 연방법이 된다.

제 125 조 경합적 입법권의 영역에서의 구법

연방의 경합적 입법권의 대상에 해당하는 법은,

- (1) 그것이 1내지 그 이상의 점령지역내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한,
- (2) 그것이 1945년 5월 8일 이후에 구제국법을 개정한 법에 관한 것인 한, 그 적용범위내에서 연방법이 된다.

제 126 조 구법의 효력존속에 관한 분쟁

법이 연방법으로 계속 효력을 갖는가에 관한 의견의 대립은 연방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제 127 조 통합경제지역의 법

연방정부는 관계주정부의 동의를 얻어 통합경제지역의 행정법을, 그것이 제124조 또는 125조에 따라 연방법으로서 계속 효력을 갖는 한 이 기본법의 공포 후 1년 이내에 바덴, 대베를린 라인란트 팔츠 및 뷤르템베르크 호엔졸레른 諸주에서 시행할 수 있다.

제 128 조 지시권의 존속

효력을 지속하는 법이 제84조 5항에서 말하는 지시권을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지시권은 다른 법률적 규정이 있기까지 존속한다.

제 129 조 수권의 효력의 계속

- (1) 연방법으로서 계속 효력을 갖는 법규 중에 법규명령이나 일반행정규칙을 제정할 수권과 더불어 행정행위를 할 수권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것은 이제 실제로 관할권을 가진 기관에 이행한다. 의문이 있을 때에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연방참의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그 결정은 공개되어야 한다.
- (2) 주법으로 계속 효력을 갖는 법규 중에 그같은 수권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것은 주법상 관할권을 가진 기관에 의해 행사된다.
- (3) 제1항과 2항에서 말하는 법규가 그 법규의 개정이나 보완을 위한 권한 또는 법률을 대신하는 법규를 제정할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때에는, 이 수권은 소멸된다.
- (4) 법규 중에 더 이상 효력이 없는 조항이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제도가 규정되고 있는 때에는 제1항과 2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 130 조 공법상의 단체

- (1) 주법이나 주간 협정을 근거로 하지 않는 행정기관 또는 그밖의 공공행정 사법을 위한 제도와 더불어 서남독일철도의 합동경영체와 프랑스 점령지역에서의 우편 전신 전화를 위한 관리이사회는 연방정부에 속한다. 연방정부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그 기관, 해산 또는 청산을 규정한다.
- (2) 이런 관리체와 시설의 소속원의 최고감독관청은 연방주무장관이 된다.
- (3) 주직할이 아닌 그리고 주간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공법상의 단체와 영조물은 관할최고연방관청의 감독을 받는다.

제 131 조 구공무원

망명자와 피추방자를 포함하여 1945년 5월 8일에 공직에 있었던 자로서 공무원법상 또는 임금법상 이외의 이유로 퇴직하여 오늘날까지 채용되지 않았다는가 그들의 이전의 지위에 상응하게 채용되지 아니한 사람들의 법적관계는 연방법률에 의하여 규정된다. 망명자와 피추방자를 포함하여 1945년 5월 8일에 부양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공무원법상 또는 임금법상 이외의 이유로 전혀 또는 적당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것이 준용된다. 주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연방법률의 시행시까지의 법률상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 132 조 공무원법의 잠정적인 정지

- (1) 이 기본법의 시행시에 종신직에 임명되었던 공무원과 판사는, 그들이 그들의 직을 위한 인적 또는 전문적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다면, 연방의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6개월내에 퇴직, 대기 또는 낮은 봉급의 직에 전직될 수 있다. 해직통고를 필요로 하지 않은 용원에 대해서도 이 규정이 준용된다. 해직통고를 필요로 하는 용원의 경우에 임금법상의 규정을 초과하는 해직통고기간은 위와 동일한 기간내에 폐지될 수 있다.
- (2) 전항의 규정은, 그 개인에 중대한 이유가 없는 한, 「국가사회주의와 군국주의로부터의 해방」에 관한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나찌스의 박해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3) 전항의 해당자에게는 제19조 4항에 따라 소송의 길이 열려 있다.
- (4) 상세한 것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정부의 명령이 규정한다.

제 133 조 통합경제지역, 권리승계

연방은 통합경제지역의 관리상의 권리와 의무를 계승한다.

제 134 조 구독일국재산에 관한 권리승계

- (1) 구독일국재산은 원칙적으로 연방재산이 된다.
- (2) 구독일국재산은 그 당초의 목적규정에 따를 때 이 기본법에서 연방의 임무가 아닌 행정임무를 위하여 주로 사용될 것으로 규정되었던 것이면 무상으로 당해임무의 담당자에게 이관된다. 또 일시적이 아닌 현재의 사용에 따를 때 이 기본법에서 이제 주가 수행해야 할 행정임무에 봉사하는 것이면 주에 이관된다. 연방은 그밖의 재산도 주에 이관될 수 있다.
- (3) 주와 지방자치체(지방자치체연합)가 무상으로 구독일국으로 하여금 자유로 사용케 했던 재산은, 연방이 그것을 고유의 행정임무를 위해 필요로 하지 않는 한 다시 주와 지방자치체(지방자치체연합)의 재산이 된다.
- (4) 상세한 것은 연방참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이 정한다.

제 135 조 영역변경시의 재산

- (1) 1945년 5월 8일 이후 이 기본법시행시까지의 어떤 지역의 주의소속이 변경된 때에는 그 지역이 당시 소속하고 있던 주의 재산은 현재 그 지역이 소속하는 주에 귀속된다.
- (2) 당초의 목적규정에 따를 때 주로 행정임무를 위하여 사용할 것이라고 규정되었던가, 또는 일시적이 아닌 현재의 사용에 따를 때 주로 행정임무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는 주와 그밖의 공법상의 단체 및 영조물의 재산은 현재 위의 임무를 수행하는 주 또는 공법상의 단체 내지 영조물에 이관된다.
- (3)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는 주의 재산부속물을 포함하는 부동산은, 그것이 제1항에서 말하는 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산소재지인 주에 이관된다.
- (4) 연방의 주요이익이나 한 지역의 특별한 이익이 필요로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3항까지와는 상이한 규정이 연방법률에 의하여 제정될 수

있다.

- (5) 그밖에 권리승계와 청산은, 1952년 1월 1일까지 관계주, 공법상의 단체나 영조물등의 합의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로 규정한다.
- (6) 구프로이센주의 사법상의 기업에의 참가자본은 연방에 이관된다. 상세한 것은 예외도 또한 규정할 수 있는 연방법률이 정한다.
- (7) 제1항에서부터 3항까지에 따라 주, 공법상의 법인 또는 영조물에 귀속하게 될 재산에 관하여 그것이 기본법의 시행시에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하여 또는 다른 방법으로 권리자가 처분한 때에는, 그 재산이전은 그 처분 이전에 행해진 것으로 간주한다.

제 135 조a 구 독일국과 구 프로이센 등의 특정의무의 폐지 또는 축소

- (1) 제134조 4항과 제135조 5항에서 유보된 연방의 입법권에 의하여
 1. 구 독일국의 의무와 더불어 구 프로이센주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그 밖의 공법상의 단체 및 영조물의 의무
 2. 제89조, 90조, 134조 및 135조에 따라 재산적 가치의 이관과 관계가 있는 연방 또는 그밖의 공법상의 단체와 영조물의 의무 그리고 제1호에서 지정된 권리주체의 조치에 근거를 가지는 의무
 3. 동권리주체가 1945년 8월 1일 이전에 점령당국의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또는 구독일국에 부과되거나 그로부터 계수한 행정임무의 테두리 안에서 전쟁에 조건된 비상사태의 극복을 위해 행한 조치에서 결과한 주와 지방자치체(지방자치체연합)의 의무를 전혀 또는 완전한 정도로 이행할 수 없음을 규정할 수 있다.
- (2) 제1항은 동독이나 그 법률적 담당자의 의무 및 동독재산을 연방, 주 그리고 지방자치체에 양도하는 것과 관계있는 연방 또는 그밖의 공법상의 단체와 시설(영조물)들의 의무 그리고 동독이나 그 법률적 담당자의 조치에 기인하는 의무들에 준용된다.

제 136 조 연방참의원의 최초의 집회

- (1) 연방참의원은 연방의회를 첫 집회일에 최초로 소집된다.
- (2) 최초의 연방대통령의 선출시까지 연방대통령의 권한은 연방참의원의 장에 의해 행사된다. 연방의회의 해산권은 그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 137 조 고무원의 피선거격

- (1) 연방, 주 및 지방자치체의 공무원, 사용인, 직업군인, 일시지원병 그리고 판사의 피선거격은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
- (2) 초대연방의회, 초대연방회의 및 연방공화국의 초대연방대통령의 선거에 관해서는 기본법제정회의에 의해 의결될 선거법이 적용된다.
- (3) 제41조 2항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에 귀속되는 권한은 그것이 설치되기까지는 통합경제지역을 위한 독일고등재판소가 관장한다. 독일고등재판소는 그 절차규정에 따라 판결한다.

제 138 조 공증인제도

바덴, 바이에른, 뷔르템베르크 바덴 및 뷔르템베르크 호엔촐레른주의 현재 공증인제도의 변경은 각각 주정부의 동의를 요한다.

제 139 조 나찌추방법

〈나찌즘과 군국주의로부터 독일국민의 해방〉을 위하여 제정된 법조항은 이 기본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제 140 조 바이마르 헌법조항의 적용

1919년 8월 11일의 독일헌법 제136조, 137조, 138조, 139조 및 141조의 규정은 이 기본법의 구성부분이 된다.

제 141 조 브레멘 조항

종교교육에 대한 예) 제7조3항1단은 1949년 1월 1일에 별단의 주법의 규정이 있는 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42 조 주헌법에서의 기본권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헌법의 규정은, 그것이 이 기본법 제1항에서 제18조까지와 일치하여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한, 역시 효력을 가진다.

제 142 조a 폐 지

제 143 조 잠정법률

- (1) 통합조약 제3조에서 말한 지역의 법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기본법 질서에 아직 완전하게 적용할 수 없는 한 또 적용할 수 없는 동안, 늦어도 1992년 12월 31일까지 이 기본법의 규정과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차이는 제19조 2항에 위배되어서는 안되며 제79조 3항에서 말한 원칙들과 합치되어야 한다.
- (2) 늦어도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제2장, 8장, 8장a, 9장, 10장, 11장과 차이가 나는 것을 허용한다.
- (3) 제1항과 2항에 상관없이 통합조약 제41조와 그 실행규정들은, 그것들이 동조약 제3조에서 말한 지역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취소될 수 없음을 규정하는 한 존속된다.

제 144 조 기본법의 비준-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에서의 베를린 대표

- (1) 이 기본법은 우선 적용될 독일제주의 3분의 2의 의회에 의한 수락을 필요로 한다.
- (2) 이 기본법의 적용이 제23조에 열거된 주의 하나에서 또는 이들 주의

일부에서 제한될 때에는, 당해 주 또는 주의 일부는 제38조에 의해 연방의회에, 그리고 제50조에 따라 연방참의원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제 145 조 기본법의 공포

- (1) 기본법제정회의는 대베를린 대표의 참여하에 공개회의에서 이 기본법을 확정하고 작성하며 공포한다.
- (2) 이 기본법은 공포일의 경과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 (3) 이 기본법은 연방법률공보에 게재된다.

제 146 조 기본법의 유효기한

독일의 통일과 자유가 성취된 이후에 전체 독일국민에게 적용되는 이 기본법은 독일국민의 자유로운 결정으로 제정된 헌법이 효력을 발하는 날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II. 舊동독헌법*

전 문

독일노동자 계급의 혁명적 전통을 계승하고, 파시즘으로부터의 해방에 기반을 둔 독일민주공화국의 인민은 우리 시대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발맞춰 사회, 경제, 국가, 민족적 자결의 토대위에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해 왔으며, 선진 사회주의 사회를 형성해 왔다.

독일민주공화국의 인민은 자신의 운명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평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국제평화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추구하려는 의지에서 이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었다.

제1편 사회주의, 사회질서와 국가질서의 기초

제1장 정치적 기초

제1조

독일민주공화국은 독일국민의 노동자와 농민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독일민주공화국은 도시와 농촌에서 노동계급과 그들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영도하에서 공동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근로자의 정치기구이다.

독일민주공화국의 수도는 베를린(Berlin)이다. 독일민주공화국의 국기는 흑-적-금색으로 되어 있고, 중앙부 양변 위에 독일민주공화국의 국장을 달고 있다.

독일민주공화국의 국장은 하부에 흑-적-금색의 띠가 둘러져 있으며 하나의 穗狀 월계관으로 둘러져 있는 망치와 원으로 되어 있다.

* 1974년 10월 7일 헌법.

제 2 조

- (1) 독일 민주공화국에 있어서 모든 정치 권력은 도시와 농촌의 노동자에 의하여 행사된다. 인간은 사회주의 사회와 그의 국가의 모든 노력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사회주의적 생산의 높은 발전 속도, 효율성의 증대, 학문적, 기술적 진보, 노동생산성의 증가등에 기초한 국민들의 물질적, 문화적 생활수준의 지속적인 상승은 선진 사회주의 사회의 과제이다.
- (2) 노동계급이 협동조합 농민계급, 지식층 및 인민의 기타 계급과의 확고한 결속, 생산수단의 사회소유 그리고 발달된 과학적 지식에 의한 사회발전의 계획과 지도는 사회주의 사회질서의 불가침의 기초를 이룬다.
- (3)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는 영원히 제거된다. 인간의 손에서 만들어진 것은 인민의 소유물이다. “각자는 각기 능력에 따라서, 각자에게는 자기 업적에 따라서”라는 사회주의 원칙이 실현 된다.
- (4) 근로자와 그들 집단의 정치적, 물질적 및 문화적 관계와 사회적 요구의 일치하는 사회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제 3 조

- (1) 인민 총역량의 결속은 독일 민주 공화국의 민족전선에서 그들의 조직적 표현이 나타난다.
- (2) 독일민주공화국의 민족전선에서 제정당과 인민 총역량의 대중조직은 사회주의 사회의 발전을 위한 공동행동을 취하도록 단결한다. 전체를 위하여 각자가 책임을 진다는 원칙에 따라서 사회주의 공동사회에서 모든 시민의 공동생활을 실현한다.

제 4 조

모든 권력은 인민의 복지에 이바지한다. 모든 권력은 인민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주의 사회를 보호하며, 인민들의 사회주의적 생활방식을 보증해 준다.

제 5 조

- (1) 독일민주공화국의 시민은 그의 정치적 권력을 민주적으로 선출된 인민대표기관을 통해서 행사한다.
- (2) 인민대표기관은 국가기관 조직의 기초이다. 그는 그의 활동면에서 그의 결의사항의 준비, 실행과 감독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거한다.
- (3) 언제나 또는 어떤 상황하에서도 합헌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관 이외에 국가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제 6 조

- (1) 독일민주공화국은 독일인민의 이해관계와 모든 독일인의 국제적 의무에 충실히 그 영토내에서 독일군국주의와 나치즘을 근절하였고 그리고 평화, 사회주의, 제민족간의 협조 및 안전에 기여하는 외교정책을 촉진한다.
- (2) 독일민주공화국은 항상 일관되게 소련과 연대한다. 소련과의 친밀한 형제관계는 독일민주 공화국 인민에게 사회주의와 평화의 길에서 계속적인 선두의 위치를 보장해 준다. 독일민주공화국은 사회주의 국가연합의 떼어 놓을 수 없는 일원이다. 독일민주공화국은 사회주의의 국제주의 원칙을 강화하는데 일조하며, 사회주의 연합에 소속된 모든 국가들과의 상호 원조와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 우호증진을 보장하고 발전시킨다.
- (3) 독일민주 공화국은 제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반대하고 민족적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우는 국가들의 사회적 진보를 위한 투쟁을 지원한다. 독일민주 공화국은 상이한 사회체제를 가진 국가들 사이의 평화로운 공존의 원칙을 옹호하며, 평등과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들과의 협력을 장려한다.

- (4) 독일민주 공화국은 유럽의 협력과 안전보장, 세계의 영속적인 평화체제, 그리고 군비축소를 위해서 노력한다.
- (5) 모든 형태의 군사적, 보복적 선전, 전쟁선동 그리고 신앙, 인종과 민족증오의 표시는 범죄로서 처벌된다.

제 7 조

- (1) 국가기관은 독일민주 공화국의 영토적 통합과 영공과 영해를 포함한 공화국의 국경선의 신성불가침과 공화국령의 대륙붕의 이용과 수호를 보장한다.
- (2) 독일민주공화국은 국방과 더불어 사회주의 질서와 시민의 평화적 생활의 수호를 편제한다. 국가인민군과 기타의 국방기관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대하여 사회주의 업적들을 방위한다. 국가인민군은 평화의 유지 및 사회국가의 안보상 소련 및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인민군들과 긴밀한 전우관계에 협력한다.

제 8 조

- (1)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평화와 제민족의 평화적인 협동에 이바지하는 국제법상의 제법규는 국권과 모든 시민을 구속한다. 독일민주공화국은 결코 어떤 침략전쟁을 일으키거나 혹은 그의 병력을 다른 국민의 평화에 반하여 투입하지 아니한다.
- (2) 평등권의 기초위에 양독일국가들의 정상적 관계의 수립과 노력 그리고 협동은 독일민주공화국의 국가적인 요망이다. 독일민주공화국과 시민은 그것을 넘어서 독일국민중에 제국주의에 의하여 강요된 독일분할의 극복과 양독일의 계급적 접근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기초위에서 통일이 될 때까지 노력한다.

제2장 경제적 기초, 학문, 교육과 문화

제9조

- (1) 독일민주공화국의 국민경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소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인민경제는 사회주의 생산관계와 사회주의 경제통합의 목표 실현을 기초로 사회주의 경제법에 의거하여 발전한다. 국민경제는 사회생활관계에 기초를 둔 사회주의 경제법칙에 따라서 발전한다. 사회주의 생산관계는 독점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공격적이고 모험적인 정책이 독일국민에게 지금까지의 불행을 초래시켰던, 그 경제체제에 대한 투쟁의 결과로서 성립되었다. 독점과 대지주의 무력화를, 그리고 자본주의의 수익경제의 폐지를 통해서 군사정책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의 원천이 제거되었다. 사회주의 재산은 참됨이 인정되었다.
- (2) 독일민주공화국의 국민경제는 사회주의 질서의 강화에, 시민의 물질적 및 문화적 욕구 충족의 개선에 그리고 시민들의 인격발전과 사회주의 사회관계의 발전에 기여한다.
- (3) 독일민주공화국은 인민경제와 여타 사회분야에 대하여 감독과 지도의 원칙에 의거한다. 독일민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사회주의계획경제이다. 사회발전의 기본 문제에 대한 중앙국가적 계획과 지도는 지방국가 기관과 기업의 자기책임 및 근로자의 근로의욕과 결합되어 있다.
- (4) 화폐 및 재정제도의 확립은 사회주의 국가의 사항이다. 공과조세는 법률에 의거하여 징수된다.
- (5) 해외무역과 금융경제를 포함하는 해외경제는 국가가 독점한다.

제10조

- (1) 사회주의 재산은 전체사회의 인민재산으로써 근로자 공동경영의 조합 공유재산으로써 그리고 시민의 사회제기관의 재산으로써 존재한다.
- (2) 사회주의 재산을 보호하고 증가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와 그 시민의 의무이다.

제 11 조

- (1) 시민의 개인재산과 상속권은 보장된다. 개인재산은 시민의 물질적 및 문화적 욕구의 충족에 기여한다.
- (2) 저작가와 발명가의 권리는 사회주의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3) 재산사용과 더불어 저작권 및 발명권의 행사는 사회의 복지에 반대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12 조

- (1) 지하매장물, 광산, 발전소, 댐 그리고 대하천, 대륙붕의 자연재, 대공업경영, 은행 그리고 보장제도, 인민소유의 재물, 교통로, 철도운송수단, 항해 및 항공, 우편국과 전신국은 인민재산이다. 개인재산은 여기에 허용되지 아니한다.
- (2) 사회주의 국가는 사회를 위하여 최고수익을 목표로 하는 인민소유물의 이용을 보장한다. 사회주의 통제경제와 사회주의 경제법이 여기에 기여한다. 인민재산의 이용과 관리는 원칙적으로 인민 고유한 경영과 국가의 설비를 통하여 행하여 진다. 그 이용과 관리는 국가가 조약에 의하여 공동조합 및 사회적 기구나 사단에게 위임한다. 그러한 위임은 일반복지와 사회의 부의 증가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 13 조

무기, 기계, 설비, 농업적, 수공업적 그리고 기타 사회주의 공동조합의 건축물 또한 산업생산조합의 가축 총수 그리고 공동조합의 토지이용 및 공동조합의 생산수단으로서 얻은 수확은 공동조합의 소유이다.

제 14 조

- (1) 영리목적으로 사적 경제기업과 그 시설의 이용 및 영업은 인민복지의 제고와 사회의 부의 증가에 기여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 (2) 인간의 노동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수공업 기업체와 다른 영업체들은 적법한 원칙에 따라 기업활동을 한다. 사회주의 국가를 위한 그들의 책임에 유의하면서 그들은 국가로부터 장려되어진다.

제 15 조

- (1) 독일민주공화국의 토지는 그의 가장 귀중한 자연재에 속한다. 그 토지는 수호되어야 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농업과 임업으로 이용된 토지는 소관 국가기관의 동의를 얻어서만 그 목적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 (2) 시민의 복지관계상, 국가와 사회는 자연을 보호한다. 하천과 공기의 청정유지 또한 식물과 동물계의 보호 그리고 향토의 자연미 보호는 관할권 있는 기관에 의하여 보장되며, 그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의 의무이다.

제 16 조

공용수용은 법적 근거위에서 공익의 목적으로만 그리고 적당한 보상에 의하여서만 허용된다. 공용수용은 다른 방법으로는 얻고자 노력하는 그 공익의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을 때에, 비로소 행하여질 수 있다.

제 17 조

- (1) 독일민주 공화국은 인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풍요롭게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학문과 연구, 교육을 촉진시킨다. 이를 위해 학문 및 기술적인 혁명과 사회주의의 장점이 소용된다.
- (2) 통일적인 사회주의 교육제도로서, 독일민주공화국은 모든 시민에게 항상 상승하고 있는 사회적 욕구에 적합한 고등교육을 보장한다. 독일민주공화국은 시민에게 사회주의 사회를 형성하고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의 발전에 창의적인 협동을 하는 권능을 부여한다.

- (3) 독일민주주의는 사회와 시민생활을 보호하며 풍부하게 하고, 과학적, 기술적인 혁명을 극복하고 또한 사회주의 사회의 항구적인 진보를 보장하려는 목표로서 학문과 교육을 장려한다.
- (4) 평화, 민족간의 이해, 인간생활과 인간의 존엄성에 반대하여 취하여진 모든 학문의 남용은 금지된다.

제 18 조

- (1) 사회주의 국민문화는 사회주의 사회의 기초이다. 독일민주공화국은 평화, 인도 및 사회주의 인간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주의 문화를 촉진시키고 보호한다. 독일민주공화국은 심리작전과 인간경시를 조장하는 제국주의적 야만과 투쟁한다. 사회주의 사회는 근로인의 문화생활을 촉진시키고, 민족적 문화 상속과 세계문화의 모든 인도적 가치를 보호하고, 그리고 사회주의 국민문화를 전체국민의 과제로서 발전시킨다.
- (2) 예술의 장려, 모든 근로인의 예술적 관심과 능력의 촉진 그리고 예술의 작품과 업적의 전파는 국가와 모든 사회구성원의 의무이다. 예술창작은 문화창작인이 인민생활과 밀접한 결합에 기인한다.
- (3) 사회적 문화의 요소로서 체육, 경기 및 여행은 시민의 각방면의 육체적 및 정신적 발전에 기여한다.

제 2 편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시민과 공동사회

제 1 장 시민의 기본권과 기본의무

제 19 조

- (1) 독일민주공화국은 모든 시민에게 그들의 권리행사와 사회발전의 지도에 협력을 보장한다. 그는 사회주의적 합법성과 권리안전을 보장한다.
- (2) 품위의 존중과 옹호 그리고 인격의 자유는 모든 국가기관, 사회단체

그리고 개개의 시민에 대한 계명이다.

- (3) 모든 시민은 착취, 압박과 경제적인 예속에서 해방되어, 그의 능력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그리고 그의 역량을 자유결정대로 사회의 복지와 자기 효용을 위하는데, 사회주의 사회에서 방해되지 않고 전개시키는데 동등한 권리와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와 같이 모든 시민은 그의 인격의 자유와 위신을 실현한다. 시민들의 관계는 상호간의 존중과 원조에 의하여, 사회주의 도덕의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4) 독일민주공화국의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조건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다.

제 20 조

- (1) 독일민주공화국의 모든 시민은 민족, 인종, 세계관 또는 종교고백, 사회적 혈통과 지위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와 업무를 가진다.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법률앞에 평등하다.
- (2) 남녀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국가적 그리고 개인적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직업적 자격부여에 있어서 여자의 장려는 사회적, 국가적 임무이다.
- (3) 청소년은 그들의 사회적, 직업적 발전을 특별히 장려받고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 질서의 발전에 책임을 자각하여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제 21 조

- (1) 독일민주공화국의 모든 시민은 사회주의 공동사회와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 생활을 넓게 공동으로 형성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다. “공동으로 노동하고, 공동으로 계획하고, 공동으로 통치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 (2) 공동결정 및 공동참정권은 시민들이 모든 권력기관을 민주적으로 선거하고, 그들의 활동, 계획, 지도, 그리고 사회생활의 형성에 협동하

로서, 시민들이 인민대표기관, 그들의 대의원, 국가와 경제기관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활동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그들의 사회제기구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요구를 표시하므로, 시민들이 그들의 관심사와 제안을 사회, 국가 및 경제기관과 공공시설에 의뢰할 수 있음으로서, 시민들이 인민투표에서 그들의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보장된다.

- (3) 공동결정 및 공동참정권을 실현하는 것은 동시에 모든 인민들을 위한 높은 도덕적 의무이다. 사회적 또는 국가적 기능의 집행은 사회와 국가의 승인과 지지를 얻어야 한다.
- (4) 사회적 및 국가적 기능의 행사는 사회와 국가와 인정과 지지를 받는다.

제 22 조

- (1) 선거일에 만18세가 되는 독일민주공화국의 모든 시민은 선거권을 갖는다.
- (2) 모든 인민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하여 18세가 되었을 경우에 인민의회와 지방인민 대표기관에 피선될 수 있다.
- (3) 민주적으로 구성된 선거위원회에 의한 선거관리와 정치의 기본문제에 대한 인민들의 토의 그리고 선거인에 의한 입후보자들의 신청과 심사는 포기되어질 수 없는 사회주의 선거원칙이다.

제 23 조

- (1) 평화, 사회주의조국과 그의 업적의 수호는 독일민주공화국 시민의 권리이며, 또한 명예로운 의무이다. 모든 시민은 법률에 따라서 독일민주공화국의 국방을 위하여 봉사와 사업을 해야할 의무를 진다.
- (2) 어떤 시민도 인민의 탄압에 기여하는 전쟁행위와 그 준비에 참가하여서는 아니된다.
- (3) 독일민주공화국은, 타국 혹은 무국적의 시민에게, 만일 그들이 평화, 민주주의, 근로인민의 이해관계의 옹호를 위한 정치적, 학문적 또는

문화적 활동 때문에, 혹은 사회주의와 민족해방투쟁에 참가함으로써 박해를 받으면, 피난처를 보증할 수 있다.

제 24 조

- (1) 독일민주공화국의 모든 시민은 노동할 권리를 가진다. 그는 일터와 사회적 요청 및 개인자질에 적합하게 그것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그는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남자와 여자, 성인과 소년은 동등한 노동능률에 대해서는 동등한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2) 사회적으로 유의한 활동은 모든 노동능률을 가진 시민에 대해서 명예로운 의무이다. 노동의 권리와 의무는 동일하다.
- (3) 노동의 권리는 생산수단을 사회소유화함으로써 공동체의 재생산과정에 사회주의적 계획과 지도를 함으로써, 사회주의 생산력과 노동생산의 영속적이고 계획적인 성장에 의하여 과학, 기술적인 혁명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지속적인 교육과 재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통일적 사회주의 노동법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 25 조

- (1) 독일민주공화국의 모든 시민은 교육을 받을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관은 모든 시민에게 개방된다. 통일적 사회주의제도는 모든 시민에게 항구적인 사회주의 지도, 교육 및 재교육을 보장한다.
- (2) 독일민주공화국은 사회주의 애국심과 국제주의 정신에 투철하고 고도의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을 받는 다방면에 교양있고 조화있게 성장한 인간의 사회주의 공동체에 대하여 인민의 선두지휘를 보장한다.
- (3) 모든 시민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그것은 과학기술적인 혁명과 정신적 요구의 증가의 여건하에 성장하는 의의를 갖는다. 사회주의 인격의 특색을 완전히 표시하기 위하여 문화적 관계와 요청의 충족을 증가시키며 문화생활, 체육 및 운동에 시민의 참가를 국가와 사

회는 이를 장려한다.

- (4) 독일민주공화국에는 10학급의 일반교육을 하는 공예학의 실업고등학교에 진학함으로써 이수할 수 있는 보통 10년제 의무실업고등학교제가 있다. 특정한 경우에는 실업고등학교교육은 직업교육 또는 근로자의 훈련과 보습기관에서 수료할 수 있다. 모든 청소년은 한가지 직업을 습득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5) 심리적 및 육체적 손상을 입은 아동들과 성인들을 위하여 특수학교 및 특수훈련시설이 있다.
- (6) 이 과업의 해결은 국가와 일반교육사업 및 양육사업의 제사회역량에 의하여 보증된다.

제 26 조

- (1) 국가는 능력원칙과 사회적 요청에 적합하게 그리고 주민의 사회구조의 고려하에 고등교육기관인 종합대학과 단과대학까지 차기 상급의 단계교육의 진로가능성을 보증한다.
- (2) 수업료는 면제된다. 훈련보조비와 장자금 면제는 사회적 견지에 따라서 보증된다.
- (3) 종합대학교, 단과대학 및 전문학교의 학생은 수업료를 면제받는다. 장학금과 학비보조비는 사회적 견지와 능력에 따라서 보증한다.

제 27 조

- (1) 독일민주공화국의 모든 시민은 이 헌법의 제원칙에 따라서 자기의사를 자유로이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직무관계 또는 노동관계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아무도 이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손해를 받지 아니한다.
- (2) 출판,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자유는 보장된다.

제 28 조

- (1) 모든 시민은 헌법의 원칙과 목적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집회할 권리를 가진다.
- (2) 이 권리를 방해받지 아니하고 행사하기 위한 물질적 조건인 집회건물, 도로와 시위운동장소, 인쇄소와 통신수단등의 이용은 보장된다.

제 29 조

독일민주공화국의 시민은 정당, 사회적 기구, 단체와 집단농업 경영에서 공동행동을 함으로써 그들의 이해관계를 헌법의 제원칙과 목적에 일치시켜 실현하기 위하여 연합을 하는 권리를 가진다.

제 30 조

- (1) 독일민주공화국의 모든 시민의 인격과 자유는 침해받지 아니한다.
- (2) 처벌행위 또는 치료행위와 관련이 있을 때 비로소 이 제한이 허용되며,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 시민의 권리는 법적으로 허용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
- (3) 자유와 인격의 불가침성을 옹호하기 위하여 모든 시민은 국가기관과 사회기관의 조력을 얻어 청구권을 가진다.

제 31 조

- (1) 우편 및 전신의 비밀은 침해받지 아니한다.
- (2) 그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안보와 형법상의 소추가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 의거하여 제한을 받는다.

제 32 조

독일민주공화국의 모든 시민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독일민주공화국의 국

가영역내에 이전의 자유권을 가진다.

제 33 조

- (1) 독일민주공화국의 모든 시민은 독일민주공화국의 외부에서 체류할 때 독일민주공화국의 기관에 의하여 법률상의 보호청구권을 가진다.
- (2) 독일민주공화국의 시민은 누구든지 외국의 권리에 인도될 수 없다.

제 34 조

- (1) 독일민주공화국의 모든 시민은 휴가와 휴업의 권리를 가진다.
- (2) 독일민주공화국의 모든 시민은 휴가 및 휴업의 권리는 1일 및 주간 노동시간의 법적 제한을 통해서, 전액 지불의 年暇를 통해서 그리고 인민소유 및 기타의 사회적 휴양지와 휴가지당을 계획적으로 증축함으로써 보장된다.

제 35 조

- (1) 독일민주공화국의 모든 시민은 자기건강 및 자기노동력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2) 이 권리는 노동 및 생활조건의 계획적인 개선을 통해서, 인민보건의 유지, 포괄적인 사회정책, 체육학교 및 인민스포츠 그리고 여행등의 장려를 통해서 보장된다.
- (3) 사회보장제도의 기초위에서 질병과 사고시에는 물질적 보장, 무료치료, 약품과 기타 의료품의 지급을 제공한다.

제 36 조

- (1) 독일민주공화국의 모든 시민은 노년 및 근로불능시에 사회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2) 이 권리는 노령이고 노동이 불가능한 시민에게 향상되고 있는 물질적

사회적 및 문화적 부양과 보호를 통해서 보장된다.

제 37 조

- (1) 독일민주공화국의 모든 시민은 국민경제적 가능성과 지방적 여건에 적합하게 자신과 자기가족을 위하여 주거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가 이 권리를 주택, 건축의 촉진, 기성주택의 가격유지, 그리고 주택의 정당한 분배에 관한 공공통제를 통해서 이를 실현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 (2) 해약고지의 경우에는 권리보호가 있다.
- (3) 모든 시민은 자기주거의 불가침권을 가진다.

제 38 조

- (1) 혼인, 가족과 모성신분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독일민주공화국의 모든 시민은 그의 혼인 및 가족의 존중, 보호와 부양하는 권리를 가진다.
- (2) 이 권리는 혼인과 가족에 있어서 남녀동등권을 통해서 그들의 혼인과 가족의 안정과 발전의 경우에 시민에게 사회적, 국가적 원조를 통하여 보장된다. 자녀가 많은 가족, 고립한 모와 부에게 특별조치에 의한 사회주의, 국가의 보호와 원조를 준다.
- (3) 모자는 사회주의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향유한다. 임신휴가, 특별의료상의 보호, 출산시에 물질적 경제적 원조 그리고 부양아 보조금이 제공된다.
- (4) 자기자녀를 건강하고 행복하고 유능하고, 다방면에 교양있는 인간으로 국가의식을 가진 시민으로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권리이고 가장 숭고한 의무이다. 부모는 사회적, 국가적 양육과 교육시설에 밀접하고 깊은 신뢰가 있는 협력의 요청권을 가진다.

제 39 조

- (1) 독일민주공화국의 모든 시민은 종교적 신앙을 고백하고 종교적 행위를 행하는 권리를 가진다.
- (2) 교회와 타종교단체는 그들의 행사를 관장하고 그 활동은 독일민주공화국의 헌법과 법규와 일치하여 행사한다. 그 세칙은 협정에 의하여 정해질 수 있다.

제 40 조

소르베민족출신의 독일민주공화국의 시민은 그들의 모국어와 문화를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의 행사는 국가로부터 장려된다.

제 2 장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경영체, 도시와 자치단체**제 41 조**

사회주의 경영체, 도시, 자치단체와 자치단체연합은 중앙집권적 국가계획과 관리의 범위내에서 시민이 노동하고, 그들의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자기책임의 협동체들이다. 이들은 시민의 기본권의 이용을, 개인관계를 사회관계에 효율적인 결합을, 또한 다방면으로 사회적 정치생활과 문화적 정신생활을 안전하게 한다. 이들은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이들의 권리 간섭은 법률의 기초 위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

제 42 조

- (1) 그 활동이 사회적 부의 조달과 증가를 위한 토대인 경영체에 있어서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또는 규약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 (2) 사회적 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관, 경영체와 동업조합에 의하여 통합 또는 협회가 조직될 수 있고 또한 다른 공동작업의 형태로 발전될 수도 있다.

제 43 조

- (1) 독일민주공화국의 도시, 자치단체와 자치단체연합은 시민의 물질적, 사회적, 문화적 및 기타의 공동욕구를 항구적으로 더 좋게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조건을 형성한다. 이 과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 지역내의 경영체와 동업조합에 협력한다. 모든 시민은 그들의 정치적인 권리행사에 의하여 거기에 참가한다.
- (2) 도시와 자치단체의 사회적 직무 실천에 대한 책임은 시민에 의하여 선출된 인민대표기관이 지고 있다. 그들의 업무에 관하여서는 그들이 법률의 기초 위에서 자기책임하에 결정한다. 그들이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인민재산의 모든 유가물의 이용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진다.

제 3장 노동조합과 그 권리

제 44 조

- (1) 자유노동조합은 자유독일노동조합연맹에 합병되어 있으며, 노동계급의 포괄적인 계급기구이다. 그것은 노동자, 종업원 및 지식층의 이익을 국가, 경제 및 사회에서 포괄적인 공동결정에 의하여 도모한다.
- (2) 노동조합은 독립체이다. 아무도 그것이 활동하는데 제한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3) 노동조합은 그것의 기구와 기관의 활동을 통해서, 선출된 국가권력기관내의 그것의 대표자를 통하여 그리고 그것의 제안을 통하여 국가와 경제기관에 권위있게 참가하고, 사회주의 사회의 형성에, 국가경제의 계획과 지도에, 과학적, 기술적 혁명의 실현에, 노동조건과 생활조건, 보건과 노동보호, 노동문화, 노동자의 문화적 및 스포츠적 생활등의 발전에 참가한다. 노동조합은 경영체와 계획완성기관에서 협동하고, 인민소유의 경영체연합의 사회심의회에서 그리고 경영체와 기업결합의 생산위원회에서 이를 대표한다. 그것은 항구적인 생산협의회를 조직한다.

제 45 조

- (1)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노동 및 생산조건에 관계되는 제문제에 관하여 국가기관, 경영지도체와 타경제지도기관과 함께 협정을 결합할 권리를 가진다.
- (2) 노동조합은 사회주의 법률질서 수립에 적극적인 참여를 한다. 그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보호에 관하여 법률발의권과 사회통제권을 가진다.
- (3) 노동조합은 피보험자의 자치의 기초위에서 노동자와 종업원의 사회보험을 감독한다. 그것은 질병, 작업중 부상, 작업불능, 그리고 노령시에 포괄적인 시민의 물질적, 재정적 부조와 보호에 참가한다.
- (4) 모든 국가기관과 경제지도체는 노동조합과 밀접하고 신뢰깊은 협동을 위하여 배려할 의무를 진다.

제 4 장 사회주의 생산협동조합과 그 권리

제 46 조

- (1) 농업생산협동조합은 공동사회주의 생산을 위하여, 그것의 물질적, 문화적 욕구의 향시 더 좋은 충족을 위해서, 인민과 인민경제의 부조를 위한 시민의 자유로운 연합체이다. 그것은 법률의 기초위에서 자기책임하에 그들의 노동 및 생산조건을 형성한다.
- (2) 그들의 조직체와 국가기관에 있어서 대표를 통해서 농업생산 협동조합들은 사회발전의 국가계획과 지도에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 (3) 국가는 사회주의 대생산을 진보적 과학과 기술의 토대위에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협동조합을 원조한다.
- (4) 어부, 원예사 및 수공업자의 사회주의 생산협동조합을 위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제 3 편 국가지도의 구조와 제도

제 47 조

- (1) 국가기관의 구조와 활동은 이 헌법에서 규정된 국가권력의 목적과 과업을 통해서 결정된다.
- (2) 민주적 중앙집권주의의 기초위에 실현된 노동인민의 주권은 국가구조의 주요원칙이다.

제 1 장 인민의회

제 48 조

- (1) 인민의회(Volkskammer)는 독일민주공화국의 최고국가권력기관이다. 인민의회는 총회에서 국가정책의 기본문제를 결정한다.
- (2) 인민의회는 독일민주공화국의 유일한 헌법제정 및 입법기관이다. 아무도 그의 권리를 제한할 수가 없다. 인민의회는 활동함에 있어서 의결과 실천으로 통일의 원칙을 실현한다.

제 49 조

- (1) 인민의회는 독일민주공화국의 발전의 목표를 법률과 의결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있게 규정한다.
- (2) 인민의회는 사회발전의 국가 체계화를 시행하는데 시민, 공동체와 국가권력의 협력과 그들의 과업을 위한 주요규정을 확정한다.
- (3) 인민의회는 그의 법률과 의결의 실시를 보장한다. 인민의회는 국가평의회, 각의, 국가방위위원회, 대법원과 검찰총장의 활동원칙을 규정한다.

제 50 조

인민의회는 국가평의회의 의장과 의원, 각의의 의장과 의원, 국가방위위

원회의 의장, 대법원의 원장과 판사 그리고 검찰총장을 선출한다. 이들은 언제든지 인민의회에 의하여 소환될 수 있다.

제 51 조

인민의회는 독일민주공화국의 국가조약을 비준하고 그리고 국제법상의 조약을, 그것에 의하여 인민의회가 법규가 개정되는 한 이를 비준한다. 인민의회는 이 조약의 공포에 반하여 결정한다.

제 52 조

인민의회는 독일민주공화국의 방위상태를 의결한다. 긴급사태시에는 국가평의회가 방위상태를 의결하는 권리를 가진다. 국가평의회 의장이 방위상태를 공고한다.

제 53 조

인민의회는 인민투표의 실시를 의결할 수 있다.

제 54 조

인민의회는 인민에 의하여 자유, 보통, 평등 및 비밀선거의 5년임기로 선출된 500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제 55 조

- (1) 인민의회는 의원임기 동안의 간부단을 선거한다. 간부단은 인민의회 의장 1명의 의장대리 및 그밖의 의원들로 구성된다.
- (2) 간부단은 인민의회 의사규칙에 따라 의회의 업무를 이끈다.

제 56 조

- (1) 인민회의의 대의원은 전체 인민의 이해관계와 복지를 위해서 책임있는 과업을 달성한다.
- (2) 대의원은 민주독일의 민족전선의 각 위원회, 사회제기구 및 국가기관과 함께 협력함에 있어서, 법률의 준비와 실시에 시민의 협력을 촉구한다.
- (3) 대의원은 그들의 선거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대의원은 그 선거인들의 제안, 지시와 비평을 존중하며, 양심적인 대우를 하는 의무를 진다.
- (4) 대의원은 시민에게 사회주의 국가정책을 해명한다.

제 57 조

- (1) 인민회의의 대의원은 규칙적인 면담시간과 논의를 실시하고 또한 선거인들에게 자기의 활동에 관하여 설명하는 의무를 진다.
- (2) 자기의무를 크게 위반하는 대의원은 선거인들에 의하여 법적으로 확정된 절차에 따라서 소환될 수 있다.

제 58 조

인민회의의 대의원은 지방인민 대표기관에 심의권을 가지고 참가하는 권리를 가진다.

제 59 조

인민회의의 모든 대의원은 각의에 대하여 질의와 그의 동료의 누구에게도 질의를 할 권리를 가진다.

제 60 조

- (1) 모든 국가 및 경제기관은 대의원들이 그들의 과업에 종사할 때 조력할 의무를 진다.
- (2) 인민회의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가진다. 개인적 자유의 제한, 가택수사, 압류 또는 형사소추는 인민회의의 동의를 얻어서 또는 그 회의기간 중에는 국가평의회 동의를 얻어서 비로소 인민회의의 대의원에 대하여 허용된다. 국가평의회 결정은 인민회의에 대한 비준이 필요하다. 인민회의의 대의원은 그 의원의 자격으로서 사실을 청취하고, 또는 그들에게 대의원이 자기들의 활동중에 그러한 사실을 누설하였던 사람에 대하여 대의원 또한 이 사실 자체에 관하여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 (3) 대의원 활동으로 인하여 결코 직업적 또는 기타 개인적 손해를 그 대의원에게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들은 대의원으로서 그들의 과업에 종사에 필요로 하는 한, 그들의 직업적 활동을 허용한다. 봉급과 임금은 계속 지급되어야 한다.

제 61 조

- (1) 인민회의는 그들의 동료 중에서 각 위원회를 설치한다. 선거인들과 긴밀한 협력하에 법률초안의 심의와 법률실시의 상임감독이 각 위원회에 일임되어 있다.
- (2) 각 위원회는 정보수여의 목적에서 심의중에 관할장관 및 그 이외 국가기관의 지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모든 국가기관은 각 위원회에 필요한 제정보를 분배하여 줄 의무를 진다.
- (3) 각 위원회는 전문가들을 상임 또는 임시협력자로 임명할 권리를 가진다.

제 62 조

- (1) 인민회의는 선거 후 늦어도 30일 이내에 집회한다. 그 1회째의 회의

는 국가평의회에 의하여 소집된다.

- (2) 이후의 인민회의는 인민회의 간부단에 의해서 소집되어진다.
- (3) 인민회의의 간부단은 인민회의가 회의를 결의하거나 최소한 1/3의 대의원들이 요구할 때는 인민회의를 소집할 의무가 있다.
- (4) 인민회의의 회의는 공개된다. 적어도 출석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요구로서 비공개될 수 있다.

제 63 조

- (1) 인민회의는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면 의결할 수 있다.
- (2) 인민회의는 다수결로써 결의된다. 헌법개정법률은 선출된 대의원이 적어도 3분의 2이상이 동의하면 결정된다.

제 64 조

- (1) 대의원 임기의 종료이전에 인민회의의 해산은 자체 결의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 (2) 그러한 결의는 선출된 대의원의 적어도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 (3) 대의원 임기의 종료 후 60일 이내에 또는 인민회의의 해산 후 45일 이내에 개선이 실시되어야 한다.

제 65 조

- (1) 인민회의를 대표하는 정당들 및 집단기구의 대의원들, 인민회의의 각 위원회, 국가평의회, 각료 그리고 자유독일노동조합 연합체는 법안제출권을 가진다.
- (2) 인민회의의 회의준비 동안에 국가평의회는 법률안을 취급하고 그것의 합헌성을 심사한다.
- (3) 인민위원회는 그 법률안을 심의하고 그 초안을 인민회의의 총회에 제

출한다.각 위원회는 활동중에 국가평의회에 조언을 받는다.

- (4) 기본적인 법률초안은 주민이 가결전에 토의하기 위하여 제출된다. 인민토론의 결과는 결정적인 문헌에서 평가된다.
- (5) 인민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은 국가평의회에 의장에 의하여 1개월 이내에 법률공보에 공포된다.
- (6) 법률은 다른 규정에 없는 한 공포 후 14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장 국가평의회

제 66 조

- (1) 국가평의회(Staatrat)는 인민회의의 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인민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위임된 과업을 실시한다. 국가평의회는 그 활동에 대해서 인민회에 책임을 진다.국가평의회에 위임된 과업의 실행을 위해서는 국가평의회는 결의를 얻어야 한다.
- (2) 국가평의회는 국제법상 독일민주 공화국을 대표한다. 국가평의회는 국가조약과 비준이 예견되어지는 다른 국제법상의 조약을 비준하고 공포한다.

제 67 조

- (1) 국가평의회는 의장, 의장대리, 의원 및 비서로 구성된다.
- (2) 국가평의회는 의장, 의장대리, 의원 및 비서는 개선후 최초의 회의때 인민회의에 의하여 4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 (3) 국가평의회 의장을 선거하기 위한 제안은 국민회의의 가장 강력한 정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제 68 조

국가평의회는 의장, 의장대리, 의원 및 비서는 취임에 즈음하여 인민의

회에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행한다. “나는 나의 힘을 독일민주공화국인민의 복지를 위하여 바치며, 그의 헌법과 법률을 옹호하고, 나의 의무를 양심적으로 지키며 누구에게 대하여서도 정의를 행할 것을 선서한다.”

제 69 조

의장은 국가평의회를 업무에 관장한다. 그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임된 국가평의회를 대표가 이 임무를 수행한다.

제 70 조

국가평의회는 인민회의의 명령을 받아 통일된 사회주의 국가권력 기관으로서의 지방인민 대표기관들을 지원하며, 선진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에 있어서 그들의 민주적 활동을 촉진시키고, 지방 인민대표기관의 활동에 있어서 사회주의 합법칙성의 영구적인 안정과 보존에 영향을 미친다.

제 71 조

- (1) 국가평의회는 법률 및 인민회의의 의결의 결과로서 생기는 기본적인 임무를 훈령으로서 규정한다. 그 훈령은 재가를 받기 위하여 인민회의에 제출된다.
- (2) 국가평의회는 훈령과 의결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 (3) 인민회의가 헌법과 법률을 스스로 해석할 수 없는 한, 국가평의회가 이것을 구속력 있게 해석한다.

제 72 조

국가평의회는 인민회의와 다른 인민대표기관의 선거를 공고한다.

제 73 조

- (1) 국가평의회는 국방과 안보문제에 대하여 기본적인 결의를 한다. 국가평의회는 국가방위위원회의 원조로써 국방을 편성한다.
- (2) 국가평의회는 국가방위위원회의 위원을 소집한다. 국가방위위원회는 그의 활동에 대하여 인민의회와 국가평의회에 책임을 진다.

제 74 조

국가평의회는 인민회의의 위임으로 대법원과 검찰총장의 활동의 합헌성과 합법성에 관하여 항시 감독한다.

제 75 조

- (1) 국가평의회 의장은 외국에 대하여 독일민주공화국의 전권대표자를 임명하고 또 그들을 소환시킨다. 그는 그에게 외국에서 전권을 수여하여 파견된 대표자의 신임장과 소환장을 접수한다.
- (2) 국가평의회는 군복무의 계급, 외교관의 관등과 기타 특별 칭호를 확정한다.

제 3 장 각료회의**제 76 조**

- (1) 각료회의(Ministerrat)는 인민회의의 기관으로서 독일민주 공화국의 행정부이다. 이것은 인민회의의 명령을 받아 공화국의 정책을 통괄적으로 집행하며, 정치, 경제 문화 및 사회와 국방의 임무의 실행을 조직한다.
- (2) 각료회의는 국민경제와 기타 다른 사회분야들을 지도한다. 각료회의는 계획적으로 배분된 국민경제의 발전과 사회 각 분야와 지형의 조화로운 형성 및 사회주의적 경제통합의 발전을 보장한다.

- (3) 각료회의는 헌법의 원칙에 따라 독일민주 공화국의 외교업무를 실행한다. 각료회의는 소련 및 다른 사회주의 국가과의 협력을 모든 분야에서 심화하며, 사회주의 국가들의 연대 강화를 위한 독일민주 공화국의 활발한 기여를 보장한다.
- (4) 각료회의는 그 관할권에 따라 국제조약의 해약고지와 종결을 결정한다. 각료회의는 국가조약을 준비한다.

제 77 조

각료회의는 국가의 내무와 외교분야의 해결해야할 과제를 처리하며, 법안과 결의를 인민회의에 제출한다.

제 78 조

- (1) 각료회의는 경제적인 관리방법의 적용을 촉진시키고, 근로자들을 사회주의 국가의 정책실현에 포함시킨다. 각료회의는 직할의 국가기관들과 경제지도 기관, 콤비나트 기업체 및 공공기관들이 법률과 기타 법률규정의 원칙에 따라 그 활동을 할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 (2) 법률과 인민회의의 결의의 테두리 내에서 각료회의는 명령을 발하며, 결의한다.

제 79 조

- (1) 각료회의는 법률과 인민회의의 결의 또한 국가평의회와 훈령과 결의에 의거하여 활동한다. 각료회의는 법률과 훈령의 범위내에서 명령을 발하고 결의한다.
- (2) 각료회의는 장관 기타 중앙국가기관과 지구위원회의의 활동을 기구론의 이론에 적합하게 지도, 조정, 감독한다.
- (3) 각료회의는 그의 명의로 체결되는 국제법상 조약의 체결과 폐기통고에 관하여 결정한다.

제 80 조

- (1) 각료회의의 의장은 국가평의회 의장에 의하여 인민의회에 추천되어 그로부터 각료회의의 구성을 위임받는다.
- (2) 각료회의의 의장과 의원은 인민회의의 개선후 인민의회에 의하여 4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 (3) 각료회의의 의장과 의원은 국가평의회 의장 앞에서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선서한다.
- (4) 각료회의는 의장대리 및 장관들로 구성된다. 각료회의는 각료회의의 의장에 의하여 운영된다.
- (5) 각료회의는 동료중에서 각료회의의 간부단을 구성한다. 각료회의는 각료회의의 의장에 의하여 운영된다.
- (6) 각장관은 그에게 위임되어 있는 과업을 책임지고 주도한다. 각료회의의 활동에 대하여 모든 의원들이 책임을 진다.
- (7) 각료회의는 인민의회에 책임이 있고 해명할 의무를 진다.
- (8) 인민회의의 의원임기의 종료후, 각료회의는 그의 활동을 인민의회에 의하여 새로운 각료회의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한다.

제 4 장 지방인민대표기관과 그 구성

제 81 조

- (1) 지방인민대표기관은 군, 시, 구, 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연합등에 있어서 선거권이 있는 시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가권력의 기관이다.
- (2) 지방인민대표기관은 그 지역과 그 시민이 관계되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자기책임하에 결정한다. 지방인민대표기관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및 사회적 생활 형성에 있어서 시민의 협동을 조직하고 근로자의 사회적 기구와 협력한다.
- (3) 지방인민대표기관의 활동은 사회주의 재산을 증가시키고, 시민의 노동 및 생활조건을 향시 개선시키고, 시민과 그들의 자할단체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을 촉진시키고, 시민의 사회주의 국가의식과 법의식을 높이며, 공공질서를 안전하게 하고, 사회주의 합법성을 확고히 하며,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게 한다.

제 82 조

- (1) 지방인민대표기관은 그 기구와 영조물 또는 인민대표기관, 자치단체와 그 지역의 시민을 의하여 의무가 있는 결의를 한다. 이들 결의는 공개되어야 한다.
- (2) 지방인민대표기관은 자체의 수입을 가지며 그것을 자유로이 사용한다.

제 83 조

- (1) 모든 지방인민대표기관은 그의 책임을 담당시키기 위하여 평의회와 위원회를 선출한다. 평의회의 의원은 가능한 한 의원이어야 한다. 위원회에 있어서는 의원이 아닌 자도 위임될 수 있다.
- (2) 평의회는 인민대표기관의 활동의 전개를 안전하게 하고, 그의 책임구역내의 사회발전의 지도를 체계화한다. 평의회는 인민대표기관에 대하여 그의 전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상급평의회에 해명할 의무가 있다. 평의회는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다.
- (3) 위원회는 인민대표기관의 결의의 준비와 실천의 경우에 시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협동을 조직한다. 위원회는 법률, 훈령, 명령과 인민대표기관의 결의의 실천을 평의회와 그의 전문기관을 통하여 조정한다.

제 84 조

지방인민대표기관은 그들의 임무를 공동적으로 담당하기 위하여 연합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 85 조

군, 시, 구, 자치단체 및 자치단체 연합에 있어서 지방인민대표기관, 그의 의원, 위원회 및 평의회 등의 임무와 기능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다.

제 4 편 사회주의 합법성과 사법**제 86 조**

사회주의 사회, 근로인민의 정치적 권력, 그의 국가 및 법률질서는 정의, 평등, 우의 그리고 인도의 정신하에서 헌법의 준수와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보장이다.

제 87 조

사회와 국가는 사법에 있어서 그리고 사회주의 법률의 준수에 관한 사회적 및 국가적 통제에 있어서 시민과 그들 공동사회의 관계를 통하여 합법성을 보장한다.

제 88 조

국가와 경제에 있어서 인민에 대한 모든 지도적 협력자의 책임은 해명의 의무가 있는 제도를 통하여 보장된다.

제 89 조

- (1) 독일민주공화국의 법률과 기타 일반적 구속력 있는 법규정은 법률공보 및 다른데서 공포된다.
- (2) 지방인민대표기관과 그들의 기구의 법규정은 적당한 형식으로 공포된다.
- (3) 법규정은 헌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각료회의와 기타 국가기관의

법규정의 합헌성에 대한 의혹에 관하여서는 국가평의회가 결정한다.

제 90 조

- (1) 사법은 사회주의 합법성의 실시, 독일민주공화국과 그 국가 및 사회 질서의 안보와 발전에 공헌한다. 사법은 자유, 평화적 생활,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을 옹호한다.
- (2) 범행과 기타 위법행위에 대한 투쟁과 보호는 사회주의 사회, 국가 및 모든 시민의 공동적인 원의이다.
- (3) 사법에 대한 시민의 참여는 이를 보장한다. 그 참여는 개개의 경우에 법률로써 규정한다.

제 91 조

평화와 인도에 반한 범죄와 전범의 처벌에 관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상의 규정은 직접 유효한 법이다. 이러한 종류의 범죄는 시효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92 조

재판은 독일민주공화국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임무의 범위내에서 대법원, 지구법원, 군법원과 사회법원을 통하여 행사된다. 군형사사건은 대법원, 군사고등법원 및 군사법원이 재판을 행한다.

제 93 조

- (1) 대법원은 사법의 최고기관이다.
- (2) 대법원은 독일민주공화국의 헌법, 법률과 기타 법규정의 기초 위에서 법원의 재판을 주도한다. 모든 법원을 통해서 통일적인 법적용을 보장한다.
- (3) 대법원은 인민의회에 대하여 그리고 회의 중에는 국가평의회에 대하

여 책임을 진다.

제 94 조

- (1) 판사는 인민과 그의 사회주의 국가에 충실하며, 지식과 인생경험이 인간적인 성숙과 지조 견고함이 표준 이상 구비된 자가 될 수 있다.
- (2) 사회법원의 모든 판사, 배석판사 및 그 구성원의 민주적 선거는 재판이 인민의 각계층의 남녀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것을 보장한다.

제 95 조

사회법원의 모든 판사, 배석판사 및 구성원은 인민대표기관 또는 인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다. 그들은 선거인에게 그들의 활동에 관한 보고를 행한다. 그들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든지 또는 기타 그들의 의무를 성실히 행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선거인에 의하여 소환될 수 있다.

제 96 조

- (1) 사회법원의 판사, 배석판사 및 그 구성원은 재판시에는 독립적이다. 그들은 독일민주공화국의 헌법, 법률 및 기타 법규정에만 구속된다.
- (2) 배석판사는 판사의 기능을 충분히 그리고 직업적인 판사와 같이 동등한 투표권을 가지고 행사한다.

제 97 조

사회주의 사회질서와 국가질서를 유지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검찰은 독일민주공화국의 법률과 기타 법률에 의거하여, 사회주의 합법성을 엄격히 수호한다. 그들은 법률 위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 검사는 범죄에 대한 투쟁을 지휘하고, 범죄와 위반을 범한 사람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법정에 소환되는 것을 보증한다.

제 98 조

- (1) 검찰청은 검찰총장에 의하여 지휘를 받는다.
- (2) 지구검사, 군검사 검사와 군검찰관은 검찰총장에 예속한다.
- (3) 검사는 검찰총장에 의하여 임명되고 소환된다. 그들은 그에게 책임을 지며, 그의 지령에 구속되어 있다.
- (4) 검찰총장은 인민의회에, 그리고 그 회의 중에는 국가평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99 조

- (1) 형사책임은 독일민주공화국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다.
- (2) 어떤 행위는 그것이 범하는 시점에 법적으로 확정되어 있으면, 그 행위자가 유죄행위를 하였을 때 그리고 그 죄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증명될 때에는 스스로 형사책임을 진다. 형법은 소급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3) 형사소추는 형법에 일치하여 비로소 가능하다.
- (4) 시민의 권리는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또한 불가피할 때 제한될 수 있다.

제 100 조

- (1) 미결구류의 허용에 관하여서는 판사만이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피구류자는 늦어도 체포 즉일에 판사에게 송치되어야 한다.
- (2) 판사와 검사는 그들의 책임 범위내에서 미결구류의 제전제조건이 아 적도 있는지의 여부를 항시 심사하여야 한다.
- (3) 검사는 제1회의 판사심문 후 24시간 이내에 피구류자의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통고를 함으로써 심리의 목적이 위태로우면 예외가 허용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험이유가 해소된 연후에 통고가 행하여진다.

제 101 조

- (1) 어느 누구도 법률이 정한 재판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2) 특별재판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 102 조

- (1) 모든 시민은 법정에서 청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2) 변호에 대한 권리는 전체형사소송 동안에 보장된다.

제 103 조

- (1) 모든 시민은 진정서(제안, 참고 간청 또는 항고)로 인민대표기관, 그들의 의원 또는 국가와 경제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사회기구와 시민의 공동체에도 적용된다. 이 권리의 사용으로써 그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야기되어서는 아니된다.
- (2) 판결의 책임이 있는 기관은 시민 또는 공동체의 진정서를 법적으로 규정된 기한내에 심리하여 제출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4 조

- (1) 각료회의의 중앙기관의 판결에 대한 항고는 각료회의의 권한에 속한다.
- (2) 각료회의, 대법원 또는 검찰총장의 지휘 판결에 대한 항고는 국가평의회에 속한다.

제 105 조

- (1) 지방국가기관의 판결에 대한 항고는 계쟁판결을 내린 기관장의 권한에 속한다. 그가 판결의 변경을 하지 않으면 그 항고인은 권한이 있는

인민대표기관의 소원위원회에 의뢰할 권리가 있다.

(2) 소원위원회의 임무와 권리는 규칙에 의하여 규정된다.

제 106 조

(1) 어느 시민에게 또는 그의 개인재산에 대하여 국가기관의 협력자의 불법조치로서 가하여진 손해는 그협력자가 손해를 야기시킨 그 국가기관의 책임을 진다.

(2) 국가책임의 전제조건과 절차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다.

제 5 편 종료규정

제 107 조

헌법은 직접 유효한 법이다.

제 108 조

헌법은 독일민주공화국의 인민의회에 의하여 헌법의 문구를 명백히 개정 또는 보충하는 법률을 통하여서만 개정될 수 있다.

Ⅲ. 정당에 관한 법률(정당법)*

제1장 총 칙

제 1 조 정당의 헌법상의 지위와 임무

- (1) 정당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의 헌법상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대한 자유롭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하여 기본법에 의하여 그에게 부과되고 또한 기본법에 의하여 보증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 (2) 정당은 공적인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특히 공공의사의 형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고 정치적 형성을 장려하고 강화하며 그를 통해 국민의 능동적인 정치생활에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공공의 책임의 인수를 위한 능력있는 시민을 배양하며 연방, 각주 및 시·군의 선거후보자를 내세움으로써 정당에 의하여 얻어진 정치적 목적을 국가적 의사형성의 과정에 도입함을 통해 의회와 행정부의 정치적 발전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또한 국민과 국가기관간의 항구적이고 활기있는 결속을 위해 노력한다.
- (3) 정당의 목적은 정치적 프로그램(정강)에 명시한다.
- (4) 정당의 재정은 기본법과 이 법률에 의해 부과된 임무를 위해서만 사용한다.

제 2 조 정당의 개념

- (1) 정당은 지속적으로 또는 상당기간동안 연방 또는 주의 영역에서 정치적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독일연방의회 또는 주의회의 국민대표 선거에 참여하려는 국민의 결사이다. 단, 정당이 사실상의 관계를 전

* 1994년 1월 31일 법률.

체적으로 파악할 때, 특히 정당조직의 범위와 확고성 및 정당구성원의 수 그리고 대중에 있어서의 정당의 지명도에 의하여 이러한 목적설정의 진지성에 대한 충분한 보장이 있는 경우라야 한다. 정당의 구성원은 자연인으로 한다.

- (2) 결사체는 6년동안 자신의 선거후보자를 통하여 연방의회선거 또한 지방의회 선거에 계속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당의 법적 지위를 상실한다.
- (3) 정치적 결사체는 각호의 경우에는 정당이 될 수 없다.
 1. 그의 구성원 또는 그의 간부구성원의 과반수가 외국인인 경우
 2. 그의 소재지 또는 그의 업무관리지가 이 법률의 적용지역외에 있는 경우

제 3 조 적극적 및 소극적인 자격

정당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소될 수 있다. 당헌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당시의 최고조직인 지역지부인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 4 조 명 칭

- (1) 정당의 명칭은 기존의 정당의 명칭과는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약칭인 경우에도 이와 같다. 선거운동 및 선거절차에 있어서는 당헌에 일치하는 명칭이나 그 약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추가된 칭호는 생략할 수 있다.
- (2) 지역지부는 정당의 명칭을 그의 조직상의 지위에 부가하여 사용한다. 지역 지부예의 부가는 오직 접속하여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유세나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그 부가는 생략될 수 있다.
- (3) 정당으로부터 탈퇴한 지역지부는 그 정당의 명칭의 계속사용권을 상실한다. 새로이 선정된 명칭도 종래의 명칭에 단순히 부가하여 사용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 5 조 평등대우

- (1) 공권력의 담당자가 정당들에 대하여 어떠한 시설을 사용 하게 하거나 기타의 공적인 급부를 제공해 주고자 할 때에는 모든 정당은 평등 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제공의 범위는 정당의 비중에 따라서, 정당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하는 최소한도로 차등을 둘 수 있다. 정당의 비중은 이전의 국민대표선거의 결과에 의하여서 측정된다. 연방의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모든 정당에 비하여 제공의 범위가 최소한 1/2이상 초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선거와 관련된 공적 급부의 제공에 관하여 제1항은 선거운동기간동안 후보자를 낸 정당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3) 제1항에 의한 공적 급부는 정당에 의해 이행될 수 있는 일정한 물적 요건에 결부시킬 수 있다.
- (4) 이 조는 제18조 및 제22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2 장 내부조직

제 6 조 당헌 및 정강

- (1) 정당은 서면의 당헌과 정강을 가져야 한다. 지역지 부는 직근상급지역지부의 규정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자체규정으로 사무를 규율한다.
- (2) 당헌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1. 명칭, 약칭이 사용될 경우에는 약칭, 정당의 소재지 및 활동지역
 2. 당원의 가입 및 탈퇴
 3. 당원의 권리 및 의무
 4. 당원에 대해서 허용되는 질서조치 및 당원의 제명(제 10 조 제 3항 내지 제5항)
 5. 지역지부들에 대해 허용되는 질서조치

6. 당의 일반적인 조직
 7. 집행기관 및 그밖의 기관의 구성과 그 권한
 8. 제9조에 의한 당원총회 및 대표자회의를 통해 의결을 요하는 사항
 9. 당원총회 및 대표자회의의 소집의 요건, 형식 및 기간과 의사록
 10.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대표선거에 후보자를 내세울 수 있는 지역지부 및 기관
 11. 정당대회가 당의 해산이나 지역지부의 해산 또는 다른 정당과의 합당을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의하는 경우 당원의 투표와 그 절차의 의결은 투표의 결과에 의하여 승인, 변경 또는 폐지된다.
 12. 이 법률 제6장의 규정에 합당한 재정규칙의 형성 및 내용
- (3) 대표는 연방선거위원회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당의 당헌 및 정강
 2. 정당 및 지역지부의 집행기관구성원의 성명과 직책명세서
 3. 정당 또는 지역지부의 해산

전단 제1호 및 제2호의 변경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연방선거 위원장은 모든 사람에게 이들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들 자료의 부분은 요청이 있을 경우 무료로 배부된다.
- (4) 당의 조직이 주의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정당(주정당)의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당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주지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조 조직

- (1) 정당은 지역지부로 조직된다. 지역정당의 규모와 구역은 당헌으로 정한다. 지역적인 조직구성은 개개의 당원들이 정당의 의사결정에 적절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정당의 조직이 도시 국가의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당의 조직은 지역지부를 가질 수 없다. 정당의 조직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정당으로 한다. 정당조직의 지역지부적인 구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다수의 지역적 지부의 조직상의 결합은 허용된다.

- (2) 정당에 있어 지역지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지역지부에 적용되는 정당에 관한 규정은次하급의 지역지부에 적용된다.

제8조 기 관

- (1) 당원총회 및 집행기관은 정당과 지역지부의 필수적 기관이다. 당원총회에 대신하여 다수지역에 걸친 지부에는 대표자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을 당헌에 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원은 최고 2년의 임기로次하급단체의 당원총회 또는 대표자회의에 의하여 선출된다. 지역지부가 없는 주정당(제7조 제1항 제4문)이 당원 250인 이상을 가진 경우에는 당원총회를 갈음하여 대표자회의를 둔다. 대표자회의는 당원 250인 이상의 지역지부나 공간적인 구역이 큰 지역지부에도 설치할 수 있다.
- (2) 당헌은 그밖의 각각의 지역지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게 되는 조직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 이들 조직은 당헌에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 당원총회 및 대표자회의(정당대회, 총회)

- (1) 당원총회 또는 대표자회의(정당대회, 총회)는 모든 지역지부의 최고 기관이다. 동 총회는 상급조직인 지역지부에서는 “정당대회”라고 하고 하급조직인 지역지부에서는 “총회”라고 한다. 이 법에서 정당대회에 관한 적용규정은 총회에도 적용된다. 정당대회는 최소한 매2년마다 1회 개최되어야 한다.
- (2) 집행기관의 구성원, 지역지부의 다른 기관의 구성원 및 제11조 제2항에서 제기한 인적범위에 속하는 자는 당헌에 의하여 대표자회의에 속하나, 이 경우 대표자회의구성원의 총수의 5분의 1 이하에만 표결권이 부여될 수 있다.
- (3) 정당대회는 정당의 내부에서의 지역지부의 소관범위에서 정당의 정강, 당헌, 당비에 관한 규정, 중재재판소규정, 해산 및 타당과의 합당에 관

한 사항을 의결한다.

- (4) 정당대회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 한 지역지부의 의장, 그의 대리인 및 집행기관의 구성원, 다른 임시적인 기관의 구성원과 상급지역지부의 기관의 대표자를 선출한다.
- (5) 정당대회는 최소한 매 2년마다 집행기관의 활동보고를 받고 또한 그에 관하여 의결을 한다. 보고서의 재정에 관한 부분은 정당대회에서 선출된 회계심사원에 의하여 보고에 앞서 정밀심사를 받는다.

제 10 조 당원의 권리

- (1) 정당의 소관기관은 당원의 입당에 관하여 당헌의 상세한 규정에 의하여 결정권을 가진다. 입당신청의 거부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제시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일반적인 기한부의 입당거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피선거권 및 선거권이 박탈된 자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 (2) 정당의 구성원과 대표자는 정당의 조직에 있어 동일한 투표권을 가진다. 투표권의 행사는 당헌의 상세한 규정에 의하여 그 구성원이 당비 의무를 이행하였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행하여질 수 있다. 당원은 항상 정당으로부터 즉시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3) 당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 1. 당원에 대한 허용된 질서조치
 - 2. 질서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 3. 질서조치를 명하는 정당의 기관당직의 면직이나 보직자격의 박탈의 경우에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4) 당원이 고의로 당헌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당의 기본원칙이나 질서를 위배한 때와 그로 인하여 당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제명할 수 있다.
- (5) 제명에 관한 결정은 중재재판소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 중재재판소 이행한다. 상급의 중재재판소에의 불복신청은 보장된다. 판결은 서

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행한다. 즉각적인 관여를 요하는 급박하고 중대한 경우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지역지부의 집행기관은 당원으로 하여금 중재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의 권리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 11 조 집행기관

- (1) 집행기관은 최소한 매 2년마다 선출된다. 이는 최소한 3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2) 선거로 보직을 맡거나 보직을 위임받은 정당소속의 의원 또는 기타 사람은 당헌에 따라서 집행기관에 속한다.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선출되지 아니한 당원의 허용비율은 집행기관소속당원 총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당의 당수와 재무담당과이 당해정당에 친숙한 정치재단에서 유사한 권능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3) 집행기관은 지역지부를 관리하고 법률 및 당헌이나 상급기관의 의결에 따라 업무를 통할한다. 집행기관은 민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당헌이 상이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한 지역지부를 대표한다.
- (4) 집행기관회의 의결의 실행과 통상의 업무 및 특히 긴급한 업무의 해결을 위하여 집행기관내에 업무수행집행기관을 둘 수 있다. 그 구성원은 집행기관에 의하여 선출되거나 또는 당헌에 정할 수 있다.

제 12 조 일반정당위원회

- (1) 당헌에 의하여 당의 정치적 및 조직상의 제문제에 대한 자문과 결정에 대한 포괄적인 관할권을 보유하는 일반정당위원회 및 이와 유사한 기구의 구성원은 次하급의 지역지부에 의하여서도 선출될 수 있다.
- (2) 제11조 제2항에서 열거한 인적범위에 속하는 자와 집행기관은 당헌에 의하여 위원회 등에 속할 수 있다. 선거에 의하지 아니한 구성원은 기관의 총 구성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심의권만을 갖는 구성원의 수는 증가할 수 있으나 당해기관구성원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3) 제 1항에서 제기한 기관의 선출된 구성원의 임기는 최대한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3 조 대표자회의의 구성

대표자회의 및 전부 또는 일부가 지역지부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는 그 밖의 기관의 구성은 당헌으로 정한다. 지역지부대표자의 수는 1차적으로 피대표구성원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잔여대표자수는 직전의 의회의원선거에서 지역지부가 획득한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해 지역지부에 배당할 것을 당헌에 정할 수 있다. 투표권은 지역지부의 분담금의무의 이행에 의존할 수 있다.

제 14 조 정당 중재재판소

- (1) 정당 또는 지역지부와 개개의 당원과의 분쟁 및 당헌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을 중재하고 심판하기 위하여 최소한 정당과 지역지부에 있어서는 그 최상부의 단계에 중재재판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군단계의 다수지역지부간의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서는 공동중재재판소를 설치할 수 있다.
- (2) 중재재판소의 구성원은 최대한 4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당해 구성원은 정당 또는 지역지부의 집행기관의 구성원이 될 수 없고 정당이나 지역지부에 관한 근무관계에 있을 수 없으며 그들로부터 일정한 수당을 받지 못한다. 중재재판소 구성원은 독립된 신분을 가지며 누구의 지시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
- (3) 중재재판소는 분쟁쌍방에 의하여 지명된 동수의 배심원으로 일반적 또는 개별적으로 구성할 것을 당헌에 규정할 수 있다.
- (4) 중재재판소의 활동에 대하여는 당사자에게 법적 청문, 정당한 절차 및 편견을 이유로 하는 중재재판소의 구성원에 대한 기피를 보장하는 중재재판소 규정을 발하여야 한다.

제 15 조 기관에 있어서의 의사결정

- (1) 법률 또는 당헌이 가중된 다수표결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한 기관은 단순다수표결제로 의결한다.
- (2) 집행기관 구성원에 대한 선거와 대표자회의 및 상급지역지부의 기관의 대표 자선거는 비밀로 한다. 기타의 선거에 있어서는 특별한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는 한 공개투표로 할 수 있다.
- (3) 제안권은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이 보장되고 특히 소수자의 제안도 충분한 토의대상이 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상급지역지부의 총회에 있어서는 최소한 2개의 하급조직인 지역지부의 대표자에게 제안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선거와 표결에 있어서 다른 기관의 의결에 구속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 16 조 지역지부에 대한 조치

- (1) 하급의 지역지부의 해산과 그 제명 및 전체 기구의 면직은 정당의 기본원리 및 그 질서에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당헌에는 다음의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1. 이 조에 의한 조치를 발할 수 있는 사유
 2. 당해조치의 대상이 되는 하급지역지부와 그 지역지부의 기관
- (2) 정당 또는 상급지역지부의 집행기관은 상급기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한다. 당해조치가 차기정당대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는 효력을 상실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대하여는 중재재판소예의 불복신청이 허용된다.

제 3 장 후보자의 추천

제 17 조 후보자의 추천

국민대표자의 선거를 위한 후보자의 추천은 비밀투표로 하여야 한다. 그 추천은 선거법과 정당의 당헌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 4 장 국고보조

제 18 조 국고보조의 원칙 및 범위

- (1) 국가는 정당에 대해 기본법에 따라 의무지워진 정당의 활동에 대해 부분재정지원으로 자금을 보조한다. 유럽의회선거, 연방의회선거 및 주의 회선거에서 각 정당이 선거인으로 부터 획득한 성과, 그 정당에게 부여된 기부금의 범위 및 당비의 총액이 국고보조금의 분배기준을 형성한다.
- (2) 모든 정당에게 지불될 수 있는 국고보조금의 연총액의 상한은 규정의 효력 발생 시점에서 2억3천만DM에 달한다.
- (3) 정당은 매년 국가의 분할보조금의 범위내에서 다음을 받는다.
 1. 당해의 투표인명부에서 획득한 유효투표당 1DM
 2. 주에 있어 정당에 대한 명부가 허락되지 않는 경우 한 선거구나 투표구에서 획득한 유효투표당 1DM
 3. 각 정당이 공급(당비 또는 합법적으로 얻어진 기부금)받은 각 1DM 당 0.5DM; 이 경우 공급은 자연인 1인당 6,000DM까지만 고려된다.
정당은 1호와 2호에 의해 지불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5백만표의 유효투표까지는 표당 1.30DM를 별도로 받는다.
- (4) 정당은 제3항 1호와 3호에 따라 최근의 유럽의회선거와 연방의회선거의 결과 최소한 0.5% 또는 주의회선거 결과 1%의 유효투표를 한 경우 국고보조금청 구권을 가진다. 제3항 1문 1호와 2문에 따른 지불을 위해서는 정당은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당이 최종의 선거결과에

따라 선거구나 투표구에서 10%의 유효득표를 한 경우는 제3항 2호에 따라 국고보조금청구권을 가진다. 1문과 2문은 소수민족정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5) 국고분할보조의 액수는 각 정당의 매년 자체수입(제24조 2항 1호 내지 5호와 7호)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상대적 상한) 모든 정당의 보조총액은 절대적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6) 연방대통령은 이 법률의 발효후에 독립의 전문가위원회를 소집한다. 동 위원회는 활동의 시점까지 정당에게 요구되는 전형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재화와 노무의 크기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정당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1991년을 기준으로 1995년에 최초로 적용되는 지출시의 물가상승을 확정한다. 위원회는 이 조사결과를 독일연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한다. 위원회는 연방대통령의 재직기간동안 수시로 소집된다.
- (7) 국고보조의 한도와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제6항에서 목표된 물가인상을 확정하기 위하여 제6항에서 제기한 위원회는 독일연방의회에 의견을 구한다. 이 규정은 적정한 비율로 변경되었는지의 여부, 총액의 적정성 및 국고의 부분보조의 구조변경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8) 정당은 해산하거나 금지되는 경우, 해산의 시점으로부터 국고의 부분보조에서 배제된다.

제 19 조 확정절차

- (1) 국고지원의 확정과 지급은 정당에 의해 매 당해연도 9 월 30일까지 서면으로 독일연방의회 의장단에게 신청되어야 한다. 그 이후의 신청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 (2) 독일연방의회 의장은 매년 12월 1일까지 모든 청구적격 정당에 대한 당해연도의 국고보조의 상한을 확정한다.
- (3) 국고보조의 상한확정의 계산근거는 청구적격 정당이 최근의 유럽의회,

연방 의회 및 주의회선거에서 획득한 유효투표수와 회계보고서에서 공개된 당해연도 전해의 지급액(제18조 3항 3호)이다. 독일연방의회 의장은 제18조 4항에 의해 고려되는 각 정당이 획득한 유효투표수를 합산하여 파악하고 이를 계속 기재한다.

- (4) 정당의 전해에 대한 회계보고서가 적시에 제출되지 않아 2항에 의한 확정에 고려되지 못한 경우에는 최후에 제출된 회계보고서에 의한 지급액이 잠정적인 근거가 된다. 최종적인 확정은 전해의 회계보고서의 제출에 따른다. 이것이 당 해연도 12월 31일 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한 지급액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최종적 확정이 이루어진다. 잠정적 확정과 최종적 확정 사이에 발생하는 상이한 액수는 이후의 정당에 대한 분할지급에도 오산될 수 있으며, 오산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할 수도 있다.
- (5) 상대적 상한(제18조 5항)의 계산은 당해연도의 전해에 대한 회계보고서에서 공개된 자체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 (6) 확정시에는 우선 절대적 상한(제18조 2항)이 고려되고 그 이후 각 정당에 대한 상대적 상한(제18조 5항)에 제한된다. 계산된 국고보조의 총액이 절대적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당의 국고보조에 대한 청구는 총액에 상응하는 배분을 한도로 한다.
- (7) 제20조에 의한 분할지급은 확정된 액수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 (8) 유효투표를 획득한 주의회선거에 대한 국고보조의 지급은 정당의 당해 주지부에 대해 1표당 1.00DM를 한도로 한다. 6항에 의한 불측의 삭감은 고려하지 않는다. 기타 국고보조의 지급은 정당의 연방지부에 대하여, 주정당의 경우에는 주지부에 대하여 배분된다.

제 20 조 분할지급

- (1) 독일연방의회 의장단에 의해 확정되어진 액수는 신청에 의해 청구적격정당에게 분할지급될 수 있다. 전년도에 각 정당에 대해 확정된 액수를 계산근거로 한다. 분할지급은 2월15일, 5월15일 및 8월15일에

지급된다. 이는 전년도에 당해 정당에 확정된 총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환급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허가는 담보제공에 의해 허용될 수 있다.

- (2) 분할지급에 대한 신청은 서면으로 독일연방의회 의장단에게 당해의 전월 15일까지 해야 한다. 그 이후의 신청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신청은 그 연도내의 다수의 분할에 대해서도 동시에 할 수 있다.
- (3) 분할지급은, 확정된 액수를 초과하거나 또는 신청이 없었던 경우에는 환급 되어야 한다.
- (4) 제19조 8항이 준용된다.

제 21 조 연방재정의 준비 및 지급절차

- (1) 제18조와 제20조에 의한 재정은, 제19조 8항 1문의 경우에는 주에 의해, 그외의 경우에는 연방에 의해 독일연방의회 의장단을 통해 정당에게 지급된다. 독일연방의회 의장은 정당의 주지부에 상응하는 액수를 각 주에 구속적으로 배분한다.
- (2) 연방회계원은 독일연방의회 의장이 자금관리기관으로서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조하였는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제 22 조 정당내부의 재정조정

정당의 연방지부는 주지부에 대한 적절한 재정조정을 위하여 배려하여야 한다.

제 5 장 精 算

제 23 조 공개정산의 의무

- (1) 정당의 집행기관은 당에 1년간(회계년도)에 제공된 자금의 출처 및 사용에 관하여, 당해연도말까지의 기타 정당재산에 관하여 회계보고서

에서 공개 정산하여야 한다.

- (2) 회계보고서는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법인에 의하여 제29조 내지 제31조에 따라 심사되어야 한다. 제18조 4항 1문 전단의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정당의 경우에는 회계보고서를 공인된 회계심사관에 의해 심사받을 수 있다. 회계보고서는 당해 회계년도의 다음해 9월 30일까지 독일연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하고 의장에 의하여 연방의 회인쇄물로 배포되어야 한다. 독일연방의회의 의장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제출기한을 3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당의 회계보고서는 이를 공개한 후에 개최되는 연방정당대회의 토의에 붙여야 한다.
- (3) 독일연방의회의 의장은 당해회계보고서가 제5장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의 결과는 제5항에 따라 보고서에 기재한다.
- (4) 독일연방의회 의장은 제5장의 규정에 합치하는 회계보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한 제18조와 제19조에 의해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를 확정해서는 아니된다. 제18조에 의한 지급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대해 제출되어야 할 회계보고서가, 제20조에 의한 지급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제출된 회계보고서가 기준이 된다. 정당은 회계보고서를 다음년도의 12월 31일 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고보조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없다. 기타 정당에 대한 확정과 지급도 이와 같다.
- (5) 독일연방의회 의장은 독일연방의회에 대하여 매년 정당재산의 추이 및 정당의 회계보고서에 관한 보고를 한다. 당해보고는 연방의회인쇄물로 이를 배포한다.

제 23 조의 a 위법하게 취득한 기부금

- (1) 정당이 위법하게 기부금을 취득하거나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자금을 사용하기 않은 경우 또는 회계보고서로 공개하기 아니한 경우에 (제25조 2항) 그 정당은 위법하게 취득한 기부금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사용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국고보조의 청구권을 상실하게 된다. 위법하게 취득한 기부금은 독일 연방의회 의장단에게 이전된다.

- (2) 제25조 1항 2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에서 제25조 3항의 규정에 반하여 독일연방의회 의장단에게 지체없이 이전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위법하게 취득한 기부금으로 본다.
- (3) 독일연방의회 의장단은 1년중에 공급된 자금을 다음해의 개시시까지 자선, 교회, 종교 또는 학술의 목적에 봉사하는 단체에 이전한다.
- (4) 정당은 주지부 또는 주지부의 하위조직인 지역지부에 의해 제1항의 조치가 야기하는 경우를 당헌에 규정하여야 한다.

제 24 조 회계보고서

- (1) 회계보고서는 수입 및 지출계정, 기타 자산계정으로 구성된다. 보고서는 법률목적의 고려하에서 질서에 적합한 장부기재원칙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 당전체의 회계보고서에는 연방지부 및 주지부에 따라 회계보고서가 구별되며 하위조직의 부분보고서를 수집하여 당해 주지부의 회계보고서의 자료로 보관하여야 한다.
- (2) 수입계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당비 및 이와 유사한 정기적 분담금
 2. 자연인에 의한 기부금
 3. 법인에 의한 기부금
 4. 재산수입
 5. 행사, 인쇄, 간행물의 판매수입, 기타 수입을 동반하는 정당활동에 의한 수입
 6. 국고보조
 7. 기타 수입
 8. 지부의 보조금
 9. 1호 내지 8호에 의한 총수입
- (3) 지출계정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인건비
 2. 경상운영비
 3. 일반적인 정치활동비
 4. 선거비용
 5. 이자
 6. 기타 지출
 7. 지부에 대한 보조금
 8. 1호 내지 7호에 의한 총지출
- (4) 자산계정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재산항목
 - a) 시설자산
 - ① 가옥 및 토지재산
 - ② 사무소시설
 - ③ 재정기금
 - b) 유동자산
 - ① 분담금청구권
 - ② 국고보조청구권
 - ③ 현금잔고
 - ④ 기타의 자산목적물
2. 부채항목
 - a) 예비비
 - ① 연금의무
 - ② 기타 예비비
 - b) 채무
 - ① 지부에 대한 채무
 - ②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 ③ 기타의 채무
 - c) 채무총합
3. 순자산(적극 또는 소극)

- (5) 회계보고서에서 자연인이 공급할 수 있는 총합은 6,000DM까지이며, 이를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되어야 한다.
- (6) 회계보고서에는 개요가 우선 기재되어야 한다.
1. 2항 1호 내지 7호에 의한 정당전체의 수입과 그 총합
 2. 3항 1호 내지 6호에 의한 정당전체의 지출과 그 총합
 3. 잔여금 또는 결손금
 4. 4항 1호 (1)과 (2) 2) 내지 4)에 의한 재산항목과 그 총합
 5. 4항 2호 (1)과 (2) 2)와 3)에 의한 부채항목과 그 총합
 6. 정당전체의 순자산(적극 또는 소극)
 7. 연방지부, 주지부 및 하위의 지역지부의 세조직의 총수입, 총지출, 잔여금 또는 결손금 및 순자산1호와 2호에 대한 절대액수와 함께 1호에 의한 수입총액과 2호에 의한 지출총액의 백분율이 명시되어야 한다.
- (7) 당해연도말까지 당비납부 의무가 있는 당원의 수는 명시되어야 한다.
- (8) 정당은 회계보고서에 개별항목에 대한 간단한 주석을 붙일 수 있다.
- (9) 정치적 산하조직에 대해 목적구속하에 제공되는 공적 보조금은 절대적, 상대적 한계설정에 있어 고려되지 않는다. 이는 개개 정당의 회계보고서의 보고에 의해 입증되고 정당의 수입과 지출계정에 고려되지 않는다.

제 25 조 기부금

- (1) 정당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다음 각호는 제외한다.
1. 정치재단, 의회의 교섭단체 및 의회집단
 2. 정관, 기부행위 또는 기타의 규칙에 따라서, 그리고 사실상의 업무집행에 따라서 배타적이고 직접적으로 공익, 자선 또는 교회의 목적에 봉사하는 단체, 사단 및 재단(조세통칙 제51조 내지 제68조)에 의한 기부
 3. 이 법률의 적용지역외에서의 기부로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a)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일인, 유럽연합의 국민 또는 그의 주식의 50% 이상을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재산으로부터 직접 정당에 들어온 기부
 - b) 독일연방공화국에 접경하고 동일민족에 속하는 국가로부터 본국의 소수민족정당에 제공된 기부금으로 취급되는 것
 - c) 1,000DM미만의 외국인의 기부로 취급되는 것
4. 정당에 이전될 것을 조건으로 직업단체에 증여된 직업단체에 의한 기부
 5. 1회에 1,000DM를 초과하는 액의 기부에서 그 기부자를 확정할 수 없거나 그 기부가 익명의 제3자에게 이전된다는 것외에는 알 수 없는 기부
 6. 일정의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기대하여 제공된 것이라고 인정된 기부
- (2) 하나의 정당 또는 하나 이상의 지역지부에 대한 기부에 있어서 1년(회계년도)내에 총액이 20,000DM를 초과하는 것은 기부자의 성명 및 주소 기타 기부금 총액을 회계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3) 제1항 2문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부는 정당에 의하여 독일연방의회 의장단에게 지체없이 이전되어야 한다.

제 26 조 수입의 개념

- (1) 개별수입의 종류(제24조 2항)에 관하여 달리 규정한 것이 없는 한수입은 외부로부터 공급된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있는 급부 등 정당의 모든 유입이다.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의 확정 및 행사와 조치의 인수도 수입으로 본다.
- (2) 모든 수입은 수입란에 전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 2항은 이로 인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 (3) 금전화되어 있지 아니한 경제재는 통상의 거래관계에서 동등한 또는

유사한 급부를 위하여 보통의 방법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4) 정당에 대한 국민의 협력은 원칙적으로 무상이다. 당원이 통상 무상으로 정당업무외에 사용하도록 제공한 현물, 노동 및 역무의 이행은 수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비용보상도 불필요하다.
- (5) 계속적 자금과 급부, 당비 및 다수의 지역지부에 배분되는 기타의 수입은 수입란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 27 조 개별적인 수입의 종류

- (1) 당비는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원이 납부하는 금전급부이다. 이외의 공급, 특히 가입비, 특별할당금 및 모금과 같은 모든 종류의 공급은 정당업무외에 사용하도록 제공되지 아니한 한 기부금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2) 순수익은 제24조 2항 4호와 5호에서 제기한 수입원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 24조 2항 2호와 3호 및 5호에 의한 명시적 의무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24조 2항 7호에 의한 기타 수입은 제24조 1항에 제기한 지부조직의 하나에 대하여 1호 내지 6호상의 수입총액의 5%를 초과하는 한도내에서 분류되며 주석을 붙여야 한다.
- (3) 정당의 당원이 업무집행외에 통상 대가없이 처리하거나 개별적으로는 1,000D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현물급여, 노동급부 및 역무제공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정당선전의 행사 및 조치의 수락에 대하여는 제1문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 28 조 기장의무

정당은 회계의무가 있는 수입 및 지출, 기타 자산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률의 목적을 고려하여 합법적인 기장원칙에 따라 행하여 져야 한다. 회계자료는 6년간, 장부, 영수증, 회계보고서는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기간은 회계년도의 개시로 기산한다.

제 29 조 회계보고서의 심사

- (1) 제23조 제2항 제1문과 제3항에 의한 심사는 연방당, 그의 주지부 및 심사원이 선택하는 최소한 4개의 하급조직인 지역지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 (2) 심사원은 집행기관과 집행기관에 의하여 수권된 사람들에 대하여 심사의무의 신속한 수행에 필요한 모든 설명과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그 한도내에서 심사원은 보고서작성의 자료, 장부 및 서류와 현금잔고 및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 (3) 심사를 받아야 하는 지역지부의 집행기관은 심사원에 대하여 회계보고서에는 모든 회계의무있는 수입, 지출 및 자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보증하여야 한다. 하급의 지역지부의 간부가 보증함에도 동 규정이 준용된다. 재정상의 문제에 관한 권한을 가진 집행기관소속의 재무담당당원이 보증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 30 조 심사보고서 및 심사표시

- (1) 심사의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된 심사보고서에 기입하여 정당의 집행기관 및 피심사지역지부에 송부되어야 한다.
- (2) 심사의 최종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면 심사원은 표시를 통하여 정당의 장부와 서류 및 집행기관에 의한 소명과 입증을 근거로 한 의무에 따른 심사에 의하여 당해 회계보고서가 심사된 범위내에서(제29조 1항) 이 법률의 규정에 합치한다는 사실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심사원은 심사표시로 승인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피심사지역지부는 심사표시에 기명하여야 한다.
- (3) 심사표시는 제출되어야 하는 회계보고서에 첨부되어야 하고 제23조 제2항 제 2문에 의하여 전문이 공개되어야 한다.

제 31 조 심사원

- (1) 집행기관의 구성원, 일반정당위원회의 구성원, 심사정당 또는 지역지부의 재심수탁자, 직원인 자 및 최근 3년내에 임명을 받은 자는 심사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 (2) 심사원, 그의 보조자 및 심사에 협력하고 있는 심사법인의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직무를 양심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하며 비밀준수의 의무를 진다. 주식법 제168조는 이 경우 준용된다.

제 6 장 위헌정당의 금지집행

제 32 조 집 행

- (1) 정당 또는 정당의 부분조직이 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헌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주정부가 정하는 행정청은 법률의 범위내에 있어서 판결의 집행 및 판결에 부가된 연방헌법재판소의 집행규정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최고주행정청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관할하는 주의 행정청 및 관공서에 대하여 무제한의 지시권을 가진다.
- (2) 위헌결정을 받은 정당 혹은 정당의 일부의 조직 또는 활동이 하나의 주의 영역외에 미치는 경우에는 연방내무부장관이 통일적 집행에 필요한 명령을 발한다.
- (3) 연방헌법재판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방헌법재판소법 제 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에 대해서 규율할 수 있다.
- (4) 집행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및 취소소송은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판결의 집행에 있어서 행정소송절차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중단하고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여야 한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자신이 명한 특별집행조치의 시행의 종류 및 방법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도 심판한다.
- (5) 재산몰수의 경우에는 1964년 8월 5일의 결사법(연방법전 제1권

593면) 제 10조 내지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금지행정청은 최고주행정청으로 하고 제2항의 경우는 연방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 33 조 대체조직의 금지

- (1) 연방헌법재판소법 제46조와 관련된 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정당의 위험적인 성향을 계속 추구하는 조직(대체조직)을 형성하거나, 기존의 조직을 대체조직으로 존치시키는 것은 금지된다.
- (2) 대체조직이 원정당의 금지이전부터 존재하였거나 연방의회 또는 주의 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인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가 금지된 대체조직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확정한다.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8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및 제46조 제3항과 동법 제32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 (3) 결사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금지된 정당의 대체조직인 다른 정당 및 결사에 대하여는 결사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7 장 종결규정

제 34 조 소득세법의 개정

제 35 조 법인세법의 개정

제 36 조 세법규정의 적용

제 37 조 민법규정의 적용 부적합성

민법 제54조 제2문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은 정당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

제 38 조 연방선거위원장의 강제수단

연방선거위원장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착수를 위하여 정당의 집행기관에 대하여 강제금으로써 강제할 수 있다. 행정집행법의 규정은 연방선거위원장이 시행관청 및 집행관청으로서 활동하는 한에서 충분히 의미를 가진다. 강제금액은 최하 500DM에서 최고 3,000DM까지이다.

제 39 조 종결규정

- (1) 199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정당법과 유럽의회선거법에 의한 기회균등화 조정금과 같은 선거비용의 보조는 다음과 같이 폐지한다.
 1. 유럽의회, 연방의회 또는 주의회선거에서의 결과에 따라 배분받은 정당과, 명부결합과 같은 기타의 정치적 결사체에는 이제까지 적용된 유럽선거법 제28조, 정당법 제20조 또는 정당법 제22조의 범위내의 주법적 규정에 의하여 신청에 의해 청산지급한다. 청산지급은 1993년 12월 31일까지의 최근의 선거기간동안 매년의 선거보조에서 최후의 확정액이 4년의 선거기간의 하나에서 25%, 5년의 선거기간의 하나에서 20%에 달하는 액수를 배분받은 경우에 할당된다. 그 경우 이제까지 적용된 정당법 제18조 6항에 의한 기본액에 상응하는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다. 1993년에 개시된 선거기간은 고려하지 않는다.
 2. 기회균등화 조정금은 1993년까지 시행된다.
 3. 청산지급에 대한 신청은 1994년 9월 30일 까지 독일연방의회 의장단에게 한다. 그 이후의 신청은 고려하지 않는다. 청산지급은 신청후 4주내에 지급한다.
 4. 1991년부터 1993년까지 계속된 선거비용보조액이 690D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는 모든 정당에 대한 청산지급은 귀속하는 액수에 비례하여 감축된다.
 5. 이제까지 적용된 정당법 제18조 7항이 규정한 선거비용보조의 한계는 1990년부터 1992년을 기초로 한다. 이를 초과하여 지불된 경우에는 이미 지불한 액수를 환수한다. 환수는 지급이 이행된 관계에서는

연방과 주에 적용된다.

6. 1호와 3호 내지 5호는 1993년 7월 21일의 법률(연방법전1, 1217, 1594면)을 통해 개정된, 1990년 10월 8일 연방선거법의 개정법률(연방법전1, 2141면) 제10조 2항이 규정하는 명부결합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7. 청산지급과 기회균등화 조정금의 지급은 절대적 상한(제19조 6항과 연결하여 제18조 2항)을 넘어 산정될 수 없다.
 8. 주의회선거에 근거한 청산지급은 주에 의해 정당의 주지부에, 그밖의 경우에는 연방의회 의장단을 통한 연방에 의해 정당에 지급된다. 제 21조가 준용된다.
- (2) 이제까지 적용된 정당법 제22조 1문에 근거한 주법적 규정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제 40 조 경과규정

- (1) 1994년의 국고보조의 확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제19조 3항과 관련하여 제18조 3항 3호에 의한 계산은, 1991년과 1992년에 제출된 회계보고서에 명시된 당비와 기부금의 평균액의 60/100을 기준으로 한다.
 2. 제18조 5항에 의한 상대적 상한의 설정은 1991년과 1992년에 제출된 회계 보고서에 명시된 자체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3. 제20조에 의한 분할지급의 설정은 1호를 준용한다.
 4. 1994년의 국고보조의 지급은, 1993년 12월 31일 까지 유효한 법률의 요구에 상응하는 회계보고서를 적용한다.
- (2) 제공자의 제공이 세금공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제24조 1항 4문과는 달리 1994년과 1995년 회계보고서에는 최고 200DM까지는 제공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 41 조 시 행

이 법은 공포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 내지 제16조는 196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제23조 내지 제31조는 1968회계년도에 최초로 적용된다.

IV. 연방선거법*

제1장 선거제도

제1조 독일연방하원의회의 구성과 선거법의 기본원칙

- (1) 독일연방하원의회의는 이 법이 예상하는 예외적 경우가 없는 한 65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의원은 선거권이 있는 독일인에 의하여 후보자에 대한 선거와 비례선거제가 연결된 방식의 보통, 직접, 자유, 평등 및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 (2) 의원중에 328인은 선거구에서 선거구후보자 추천명부에 따라, 그 나머지는 주후보자 추천명부에 따라 선출된다.

제2조 선거지역의 구분

- (1) 선거지역은 이 법률의 규율대상이다.
- (2) 선거지역을 선거구로 분할함은 이 법률의 별표에 따른다.
- (3) 각 선거구는 투표를 위하여 투표구로 분할된다.

제3조 선거구위원회와 선거구의 분할

- (1) 연방대통령은 상설적인 선거구위원회를 임명한다. 이 위원회는 연방통계청장, 연방행정재판소 판사 1인과 5인의 다른 위원으로 구성된다.
- (2) 선거구위원회는 선거구지역의 인구수 변동을 보고하고, 선거구 분할리변경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변경을 필요로 하는지를 설명할 임무를 띤다. 이 위원회는 그 보고서에서 다른 근거에 따라서도 선거구 분할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선거구 분할을 위한 제안시에는 다음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 1993년 6월 23일 법률

1. 주의 경계는 지켜져야 한다.
2. 한 선거구의 인구수는 선거구의 평균인구수와 비교하여 100분의 25를 상회하거나 하회하여서는 안된다. 특정선거구 인구수와 평균선거구인구수의 격차가 100분의 33과 1/3을 초과할 때에는 새로운 선거구의 구획이 행해져야 한다.
3. 각 주의 선거구의 수는 인구비례에 따라 할당되는 숫자와 가능한 한 최대한 부합되어야 한다.
4. 선거구는 전체가 하나의 연관된 지역을 구성하여야 한다.
5. 읍·면·군·시의 경계는 가능한 한 지켜져야 한다.

인구수를 조사할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는 고려되지 않는다(외국인법 제1조 제2항)

- (3) 선거구위원회의 보고는 독일연방하원의 임기가 시작된 후 15개월 이내에 연방내무부장관에게 행해져야 한다. 연방내무부장관은 이보고서를 즉시 연방하원의회에 제출하며 연방공보에 공표한다. 연방내무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선거구위원회는 보충보고를 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보고에는 제1문의 규정이 준용된다.
- (4) 주의 경계가 기본법 제29조 제7항에 근거한 주경계의 변경절차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 이와 관련된 선거구의 경우도 이와 상응하게 변경된다. 새로운 영역을 가지는 주에는 2개 이상의 선거구가 관여되거나, 전혀 새로운 구획이 형성된 경우, 새로운 주지역의 선거구의 귀속은 그 지역이 편성될 읍·면 또는 읍·면 구역의 선거구 귀속에 따른다.

제 4 조 투표권

모든 선거권자는 두 종의 투표권을 가진다. 제1표는 선거구위원의 선출을 위한 것이고, 제2표는 주명부의 선출을 위한 것이다.

제 5 조 선거구에 있어서의 선거

각각의 선거구에는 1인의 의원이 선출된다. 최대의 득표를 후보자가 선출된다.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선거구선거위원장이 제비를 뽑아 결정한다.

제 6 조 주명부에 의한 선거

- (1) 주명부에 다른 의석의 배정을 위하여 각주명부에 대해 행사된 제2표가 합산되어진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제3항에 따라, 그 주에서 주명부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정당에 의하여 추천되어 그 선거구에서 당선된 후보자에게 제1표를 투표한 선거인의 제2표는 고료되지 않는다. 제2문 또는 제6 항에 따라 고료될 필요가 없는 정당의 추천에 따라 당선된 선거구후보자의 수는 의원총수(제1조 제1항)에서 공제된다.
- (2) 제1항 제3문에 따라 배정되지 않은 의석은 제1항 제1문과 제2문에 따라 고료 하여야 할 제2표를 근거로 주명부에 다음과 같이 분배된다. 배정되지 않으나 의석의 총수는 어느 한 주명부가 획득한 제2표의 수와 곱하고, 고려하여야 할 모든 주명부에 행사된 제2표의 총수로 나누어진다. 모든 주명부는 우선 그에게 할당되는 모든 수의 의석을 분배받는다. 이에 따라 주어지는 의석은 각 주명부에 제2문의 계산방식에 따른 최고단수의 비율의 순서에 따라 배당되어야 한다. 최후의 의석을 배정함에 있어 동일한 최고단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방선거위원장이 제비를 뽑아 결정한다.
- (3) 제2항에 따른 의석의 배정에 있어 어느 주명부가 고려하여야 할 모든 주명부에 행사된 제2표의 총수의 과반수이상을 획득하고도 배정받아야 할 의석의 반이상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 제2항 제4문과 제5문에서 벗어나서, 이 연명부에 최고단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되는 의석중에서 한 의석이 우선 추가적으로 배정된다. 그 후에 배정되는 의석은 제2항 제4문과 제5문에 따라 배정된다.
- (4) 각 주명부를 위하여 조사된 의원수에서 각 주의 선거구에서 정당에 의

하여 획근된 의원수는 공제된다. 잔여의석은 각 주명부에서 획정된 순위에 따라 부여된다. 선거구에서 선출된 후보자는 주명부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주명부에 의석이 후보자보다 더 많이 배정된 경우에는 이 의석은 공석이 된다.

- (5) 어느 정당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정될 의석수보다 많은 의석을 선거구에서 획득하였을 경우, 그 정당은 획득한 의석을 그대로 보유한다. 이 경우는 이 의석수의 차이만큼 총 의석수(제1조 제1항)가 증가된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새로운 계산은 하지 않는다.
- (6) 주명부에 의석을 배정함에 있어서는 전 선거구에서 투표된 유효한 제2투표의 100분의 5 이상을 얻었거나 최소한 세계의 선거구에서한 의석을 얻은 정당만이 고려된다. 제1항은 소수민족의 정당들에 의하여 제출된 명부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7조 주명부의 연결

- (1) 동일 정당의 주명부들은, 하나 또는 수개의 참여된 주명부들이 주명부의 연결에서 제외된다고 선언되어지지 않은 한, 연결된 것으로 본다.
- (2) 연결된 명부들은 다른 명부들과의 관계에 있어 의석배정시에 하나의 명부로 본다.
- (3) 하나의 연결된 명부에 배정된 의석은 이에 참여한 주명부들에 제6조 제2항과 상응하게 분배되어진다. 제6조 제4항과 제5항은 준용한다.

제2장 선거기관

제8조 선거기관의 구분

- (1) 선거기관은 전선거지역에 대하여는 연방선거위원장과 연방선거위원회가, 각 주에 대하여는 1인의 주선거위원장과 각 주선거위원회가, 각 선거구에 대하여는 1인의 선거구선거위원장과 1개의 선거구선거위원회가, 각 투표구에 대하여는 1인의 선거위원장과 1개의 선거위원회가

되며 우편에 의한 투표결과를 확정하기 위하여 각 선거구에 대하여 최소한 1인의 선거위원장과 1개의 선거위원회를 둔다. 선거일중으로 우편에 의한 투표결과를 확정짓기 위하여 몇개의 우편선거위원회를 들 것인가는 선거구위원장이 결정한다.

- (2) 인접한 수개의 선거구에서는 1인의 공동 선거위원장과 1개의 공동선거위원회가 구성되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지시는 주선거위원장이 행한다.
- (3) 우편투표결과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각 선거구 대신에 하나 또는 수개의 시·읍·면 또는 선거구내의 소구역에 대하여 우편선거위원장 및 우편선거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상세한 것은 주정부 또는 그에 의하여 선임된 기관이 정한다.

제9조 선거기관의 구성

- (1) 연방선거위원장과 그 차장은 연방내무부장관에 의하여 임명되고, 주선거위원장 및 선거구위원장, 투표구선거위원장 및 그들의 직무 대리는 주정부에 의하여 또는 주정부가 지정한 기관에 의하여 임명된다.
- (2) 각 선거위원회는 선거위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그에 의하여 위촉된 6인의 선거권자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된다. 각 투표구선거위원회는 투표구선거위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그 차장과 의장에 의하여 위촉된 3인 내지 5인의 선거권자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된다; 주정부 또는 주정부가 정한 기관은 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을 시·읍·면 행정청이, 제8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구선거위원장이 임명할 우편선거결과의 확정을 위한 선거위원회위원을, 제8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이 있는 경우, 시·읍·면 행정청이, 또는 권역 행정청이 투표구선거위원장과 합의로서 위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는 당해 투표구를 대표하는 정당들이 가능한한 최대한 고려되어야 한다.
- (3) 누구도 하나이상의 선거기관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후보자와 그를 선거에 추천하기 위하여 선임된 신임인들과 부신임인들이 선거기관의 구성원으로 임명되어서는 안된다.

제 10 조 선거구 선거위원회와 투표구 선거위원회의 활동

각 선거구 선거위원회와 각 투표구 선거위원회는 공개회의에서 토의하고 결정한다. 표결시에는 다수결로 결정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행사한 표가 결정력을 가진다.

제 11 조 명예직

- (1) 선거구 선거위원회의 위원과 투표구 선거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적으로 그의 직무를 수행한다. 모든 선거권자는 명예직을 담당할 의무를 진다. 명예직은 오직 중대한 이유에 근거하여서만 거부되어질 수 있다.
- (2) 삭 제
- (3) 삭 제

제 3 장 선거권과 피선거자격

제 12 조 선거권

- (1) 기본법 제116조 제1항이 의미하는 모든 독일인은 선거일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선거권을 가진다.
 1. 만 18세에 달하였을 것
 2. 이 법의 적용지역에서 적어도 3개월이상 그 주거를 가지거나 그밖에 통상의 거주를 가질 것
 3. 이 법 제13조에 따라 선거권이 배제되지 아니하였을 것
- (2) 기본법 제116조 제1항이 의미하는 모든 독일인은 선거일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제시하는 경우 선거권을 가진다.
 1. 공무원, 병사, 공무에 종사하는 고용원 및 노무자로서 그 직무상 고용주의 명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와 그 세개의 소속원인 경우
 2. 그밖에 유럽의회의 구성국가지역에서 거주하는 자가 1949년 5월 23

일 이후 그의 퇴거시기까지 최소한 3개월이상 중단없이 이 법률의 적용지역에 하나의 주거를 가졌거나 통상적인 거주를 한 경우

3. 이 법의 적용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가 퇴거하기 전에 최소한 3개월이상 중단없이 이 법률의 적용지역에 하나의 주거를 가졌거나 통상적으로 거주하였고, 이 법률의 적용지역에 하나의 주거를 가졌거나 통상적으로 거주하였고, 이 법률의 적용부터 퇴거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독일연방의 국기를 게양하지 않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과 그 세대 소속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자가 이 법의 적용지역에 다시 들어올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에서 의미하는 3개월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이 법에서 말하는 주거라 함은 거주를 위하여 사용되는 둘러싸인 모든 공간을 의미한다. 거주자 및 거주선 등을 그것이 이동되지 못할 경우 또는 오직 드문 기회에 이동될 경우에만 거주로 본다.
- (4) 선거권자가 이 법의 적용지역내에서 주거를 갖지 못하거나 갖지 못하였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 제2호 또는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주거로 본다.
 1. 선원 및 그의 세대소속인에 대하여는 그들이 소속된 선박이, 연방과 보 제3부 9514-1번으로 공포·개정되고, 최종적으로 1978년 5월 10일 법률 제3조에 의하여(연방관보 제1부 613면) 개정된 기국법에 따라 연방국기를 게양할 권리를 가진 선박인 경우
 2. 내수면선원 및 그의 세대소속인에 대하여는 그들이 소속된 선박이 이 법의 적용지역내의 선박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유박탈의 형을 집행하기 위한 및 이에 상응하는 자의 수용을 위한 시설인 경우
- (5) 제1항 제2호와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3개월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거주 또는 주거의 첫 날을 그 기간에 산입한다.

제 13 조 선거권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자는 선거권이 배제된다.

1.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2. 금치산자 또는 정신적 결함때문에 후견관리를 받고 있는 자로서 후견 재판소의 증서를 통하여 후견관리가 그의 동의에 기하여 제시된 것임을 증명하지 않는 경우
3. 형법 제20조와 연결되어 형법 제63조에 따라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자
4. 삭 제

제 14 조 선거권의 행사

- (1)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거나 선거증서를 소득하는 자만이 선거를 할 수 있다.
- (2)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는 그가 등록된 선거인명부가 소속된 투표구에서만 선거할 수 있다.
- (3) 선거증서를 가진 자는 그 선거증서가 발행된 선거구에서의 선거에 다음 각목과 같이 참가할 수 있다.
 - 가. 선거구내의 임의의 선거구에서 투표함으로써 또는
 - 나. 우편투표를 통하여
- (4) 모든 선거권자는 그의 선거권을 1회에 한하여, 개인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제 15 조 피선거거자격

- (1) 선거일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는 피선될 수 있다.
 1. 적어도 1년이상 기본법 제116조 제1항의 의미에서의 독일인이고
 2. 만 18세에 달한 자
-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될 수 없다.

1. 제13조에 따라 선거권이 배제된 자
2.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피선거권 또는 공무담임권을 상실한 자
3. 기본법 제116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독일인으로서 독일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1955년 2월 22일자의 「국적문제의 규제를 위한 법률」에 따라 독일인의 지위를 부여받은 자

제 4 장 선거의 준비

제 16 조 선거일

연방대통령은 선거일을 정한다. 선거일은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로 한다.

제 17 조 선거인명부와 선거증서

- (1) 시·읍·면 행정청은 각투표구의 선거권자 명부를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60일부터 20일사이에 일반에게 공개열람 되어야 한다.
- (2) 선거권자는 그가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투표구에서 투표하는 것이 저해 되거나 또는 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선거증서를 받는다.

제 18 조 후보자 추천권, 참여통보

- (1) 후보자 추천은 정당에 의하여 또는 제20조에 따라 일반선거권자들에 의하여 제출될 수 있다.
- (2) 연방하원 또는 주의회에서 최종선거 이래 자신의 후보자 추천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5인이상의 의원으로 대표되고 있지 아니한 정당은 늦어도 선거 47일전에 연방선거위원장에게 선거참여를 통보하고, 연방선거위원회가 정당자격을 확인한 경우에 정당으로서 후보자 추천을 할 수 있다. 정당이 어떤 이름으로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지는 그 참

여통보에 명시되어야 한다. 통보는 연방당의장 또는 부의장을 포함한 최소한 3인의 연방당의장단 구성원에 의하여 자필로 개인적으로 서명 되어져야 한다. 어느 정당이 연방당의장단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 각 최고의 당기관이 연방당의장단의 위치에 선다. 서면으로 이루어진 당헌, 당의 프로그램 및 연방당의장단이 당헌에 합치되게 선출되었음에 대한 증명은 통보에 첨부 되어져야 한다.

(3) 연방선거위원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그 도착 즉시 지체없이 심사하여야 한다. 흠결이 확인되면 위원장은 즉시 연방당의장단에 이를 통지하고 치유할 수 있는 흠결을 제거하도록 요구한다. 통보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 자체로도 유효한 통보상의 흠결만이 치유되어 질 수 있다.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유효한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제2항의 기간 또는 형태가 준수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의 호칭이 없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요구되는 유효한 서명과 통보에 첨부되어야 할 첨부 서류가, 정당이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하여 첨부서류를 적시에 제출할 수 없는 예외적 상황이 없는 가운데 흠결된 경우
4. 연방당의장단 구성원이 흠결되게 표시되어 있어서 그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정당의 고유성의 확정에 관한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모든 흠결의 제거는 이루어질 수 없다. 흠결 제거절차에 있어서 연방선거위원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방당의장단은 연방선거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연방선거위원회는 늦어도 선거 37일전까지 모든 선거기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다음 사항을 구속적으로 확정한다.

1. 어느 정당이 연방하원 또는 어느 주의회에서 그 최종선거 이래 자신의 후보자 추천에 기하여 5인이상의 의원으로 대표되고 있는지의 여부
2. 제2항에 따라 참가를 통보한 단체 가운데 어느 단체가 선거에 있어서 정당으로 확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

- (5) 1개의 정당은 각 선거구에서 오직 1인의 후보자추천을 할 수 있고, 각주에서는 오직 1개의 주 후보자추천명부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 19 조 후보자추천서의 제출

선거구 후보자추천서는 선거구 선거위원장에게, 주 후보자추천명부는 주 선거위원장에게 늦어도 선거 34일전 18시까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제 20 조 선거구 후보자추천서의 내용과 형식

- (1) 선거후보자추천서에는 오직 한 입후보자의 성명만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각 후보자는 오직 한 선거구에서만 그리고 1개의 선거구 후보자추천에서만 지명될 수 있다. 이 후보자추천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한 자만이 후보자로서 지명될 수 있다. 이 동의는 취소하지 못한다.
- (2) 정당에 의한 선거구후보자추천은 주당의 의장단에 의하여 또는 주당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거구가 소속되는 정당 바로 밑의 지역당의장단에 의하여(정당법 제7조 제2항) 개인의 자필로 서명되어야 한다. 또한 제1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정당의 선거구후보자추천은 최소한 선거구내의 200명의 선거권자에 의하여 개인의 자필로 서명되어야 한다; 서명자의 선거권은 선거구후보자추천의 서명시에 증명되어야 한다. 200명의 서명이라는 요건은 소수민족을 대표하는 정당의 선거구 후보자추천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3) 기타의 선거구 후보자추천은 선거구의 최소한 200명의 선거권자에 의하여 개인의 자필로 서명되어야 한다. 제2항 제2단 제2문은 이에 준용된다.
- (4) 정당에 의한 선거구 후보자추천은 제출하는 정당명과 정당이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약칭도 포함하여야 한다.

제 21 조 정당후보자의 선정

- (1) 선거구 후보자추천에서는 선거구 후보자추천의 선출을 위한 당원총회에서 또는 이를 위하여 선출된 자만이 정당의 입후보자로는 지명되어 질 수 있다. 선거구후보자의 선출을 위한 당원총회라 함은 집회시에 연방하원에 대한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는 정당구성원의 총회를 말한다. 특별당대의원회라 함은 그러한 당원총회에 의하여 당원 가운데에서 선출된 대의원회의를 말한다. 일반대의원회의라 함은 당헌(정당법 제6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차기선거를 위하여 당원총회에서 지정된 회의를 말한다.
- (2) 수개의 선거구를 가지는 권역(Kreis) 또는 권역에 속하지 않는 도시(Kreisfreie Stadt)에서는 이들 선거구에 대한 수명의 후보자를 그 선거구구역별로 권역 또는 권역에 속하지 않는 도시를 분할하지 아니하고도 공동의 당원총회 또는 공동의 당대의원회의에서 선정할 수 있다.
- (3) 후보자와 당대의원회의의 대의원은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후보자선출은 연방하원의 임기개시 이후 32개월이 지난 후에야, 당대의원회의의 대의원의 선출은 연방하원의 임기개시 이후 23개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실시할 수 있다; 연방하원의 임기가 조기에 종료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주당의 의장단 또는 주당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거구가 소속된 주당 바로 밑의 지역당 의장단(정당법 제7조제2항) 또는 이를 위하여 당헌이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기관은 당원총회 또는 당대의원회의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의에 대하여는 투표를 다시 하여야 한다. 그 결과는 종국적이다.
- (5) 당대의원회의의 대의원선출, 당원총회 또는 당대의원회의의 소집과 정족수 및 후보자 선출절차의 세부사항은 정당이 당헌에 의하여 규율한다.
- (6) 회의장소와 시간, 소집의 형식, 출석한 당원의 수와 투표의 결과가 기재된, 후보자의 선출에 관한 의사록의 사본은 선거구 후보자추천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회의의 의장과 회의에서 선정한 2인의 관여자는 당후보자선거가 비밀투표에 의한 것임을 선거구선거위원장에게 선서로서 보증을 하여야 한다. 선거구선거위원장은 선서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보증을 담당한다; 그는 형법 제156조의 의미에 있어서 관청으로 본다.

제 22 조 신임인

- (1) 각 선거구후보자추천서에는 1인의 신임인과 1인의 부신임인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최초의 서명자는 신임인으로 보며 제2의 서명자는 부신임인으로 본다.
- (2)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신임인과 그 부신임인은 각자 스스로 선거구후보자 추천을 위한 구속력있는 설명을 행하고 또 수령할 권한이 있다.
- (3) 신임인과 그 부신임인은 선거구후보자추천서명자의 과반수가 선거구선거위원장에 대하여 서면으로 표시함으로써 해임되거나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다.

제 23 조 선거구 후보자추천의 철회

선거구 후보자추천은 당사자의 승인이 결정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신임인과 그 부신임인의 서면에 의한 공동표시로 철회될 수 있다. 200인이상의 선거권자에 의하여 서명된 선거구 후보자추천은 그 서명자의 자필로 서명함으로써 철회될 수 있다.

제 24 조 선거 후보자추천의 변경

선거구 후보자추천은 제출기간의 경과후에는 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그 피선거권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신임인과 그 부신임인 공동으로 서면상의 표시를 함으로써 변경될 수 있다. 제21조에 따른 절차는 준수될 필요

가 없으며, 제20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서명도 필요하지 아니하다. 선거구 후보자추천의 승인에 관한 결정(제26조 제1항 제1단)이 있는 후에는 어떠한 변경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 25 조 흠결의 보완

- (1) 선거구 선거위원장은 선거구 후보자추천서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심사하여야 한다. 선거구 후보자추천서에 흠결이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신임인에게 통지하여 제거할 수 있는 흠결을 적시에 보완할 것을 요구한다.
- (2) 제출기간의 경과후에는 그 자체로 유효한 후보자추천상의 흠결만이 보완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유효한 후보자추천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1. 제19조의 형식 또는 기간이 준수되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 제2항 제1문 및 제3항에 따라 요구되는 유효한 서명 및 서명자의 선거권의 증명이 없는 경우. 다만, 후보자 추천권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정에 의하여 적시에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정당후보자 추천서에 정당표시가 없거나 제18조 제2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당 자격의 확인이 기각되거나 또는 제21조의 증명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4. 후보자가 불완전하게 표시되어 그 인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5. 후보자의 동의표시가 없는 경우
- (3) 선거구 후보자추천의 수리가 결정된 후에는(제26조 제1항 제1단) 어떠한 흠결의 보완도 배제된다.
- (4) 흠결 보완절차에 있어서 선거구 선거위원장의 결정에 대하여 신임인은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26 조 선거구 후보자추천의 승인

- (1) 선거구 선거위원회는 선거일 30일전에 선거구 후보자추천의 승인에 관한 결정을 한다. 선거구 선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거구 후보자추천의 승인을 거부하여야 한다.
1.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또는
 2. 이 법에 따른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 법과 연방선거규칙이 요구하는 조건에 상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선거구 선거위원회의 결정은 공고되어야 한다.
- (2) 선거구 선거위원회가 선거구후보자추천에 대한 승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거부결정 이 공고된 후 3일이내에 주선거위원회에 불복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불복신청권자는 선거구피추천자의 신임인, 연방선거위원장 및 선거구 선거위원장으로 한다. 연방선거위원장과 선거구선거위원장도 선거구 후보자추천에 대한 승인결정에 반대하여 불복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불복신청의 심리에 있어서는 출석한 관계인들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불복신청에 관한 재결은 늦어도 선거일 24일전에 행하여져야 한다.
- (3) 선거구 선거위원장은 승인된 선거구후보자추천서를 늦어도 선거일 2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27 조 주명부

- (1) 주명부는 정당만이 제출할 수 있다. 주명부에는 주당의 의장단 또는 주당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주에 소속된 바로 밑의 지역당의장단(정당법 제7조 제2항)의 개인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하며 그 밖에도 제18조 제2항에 언급된 정당의 경우에는 직전연방하원선거시 당해 주의 선거권자중 1,000분의 1에 의하여 개인의 자필로 서명되어야 한다. 단, 서명인수는 2,000명이하여야 한다. 제18조 제2항에 언급된 정당이 제출한 주명부 서명자의 선거권은 주명부 제출시 증명되어야 한다. 이 부수적 서명의 요구는 소수민족을 대표하는 정당의 주명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2) 주명부에는 제출정당의 명칭과 해당 정당이 약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약칭까지도 기입하여야 한다.
- (3) 후보자의 성명은 식별할 수 있는 순위로 기입되어야 한다.
- (4) 후보자는 1개의 주에 한하거나 1개의 주후보자추천명부에 한하여 추천될 수 있다. 추천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선언한 자만이 주명부에서 지명될 수 있다. 이 동의는 취소하지 못한다.
- (5) 제21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22조 내지 제25조는 제21조 제6항 제2단에 따른 선서로써 주명부에서 후보자의 순위가 비밀투표로써 확정되었음의 보증에 대해 준용한다.

제 28 조 주명부의 승인

- (1) 주선거위원회는 선거일 30일전에 주명부의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선거위원회가 주명부의 승인을 거부하여야 한다.
 1.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되었거나 또는
 2. 이 법에 다른 규정에 없는 한, 이 법과 연방선거법규가 요구하는 조건을 미비한 경우

개별적인 후보자의 측면에서만 조건이 구비되지 못한 경우에 그 후보자의 성명은 주명부에서 삭제된다. 주선거위원회의 결정은 공고되어야 한다.
- (2) 주선거위원회가 주명부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결정이 공고된 후 3일이내에 연방선거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권자는 주명부를 승인한 결정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심리에 있어서는 출석한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은 늦어도 선거일 24일전에 내려져야 한다.
- (3) 연방선거위원장은 승인된 주명부를 늦어도 선거일 20일전에 공고하여

야 한다.

제 29 조 주명부의 연결의 배제

- (1) 주명부의 연결에 대한 배제(제7조)는 주명부의 신입인 및 부신입인 공동의 서면진술로써 늦어도 선거일 20일전 18시까지 연방선거위원회에게 통고되어야 한다.
- (2) 연방선거위원회는 늦어도 선거일 16일전까지 이 조 제1항과 제28조 제1항 제2단에 따른 진술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연방선거위원회의 결정은 공고되어야 한다.
- (3) 연방선거위원회장은 연결된 주명부와 이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주명부를 늦어도 선거일 1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0 조 투표용지

- (1) 투표용지, 이에 부속되는 봉합 및 우편투표용지봉합(제36조 제1항)은 공적으로 제작된다.
- (2) 투표용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1. 선거구선거에 있어서는 승인된 선거구 후보자추천에 다른 후보자선명, 정당에 의한 선거구 후보자추천의 경우에는 정당의 명칭, 정당이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약칭, 그밖에 선거구별 후보자추천의 경우에는 그 구호
 2. 주명부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의 명칭, 정당이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약칭 및 승인된 주명부중 최초 5명의 후보자의 성명
- (3) 최근 연방하원에서 의석을 가졌던 정당들의 주명부의 순위는 최근의 연방하원의원 선거시에 그 주에서 얻은 제2투표수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밖의 주명부의 순위는 정당명의 ABC순에 의한다. 선거구피추천자의 순위는 도일정당의 주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그밖의 선거구피추천자의 순위는 정당의 명부 또는 약칭의 ABC순에 의한다.

제 5 장 선거행위

제 31 조 선거행위의 공개성

선거행위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투표구선거위원장은 질서와 평온을 방해하는 자를 투표소에서 퇴장시킬수 있다.

제 32 조 허용되지 않는 선거구호, 서명의 모집, 선거여론조사의 공표

- (1) 투표기간 동안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내와 건물의 입구에서 직접적으로 말, 억양, 문서, 화보 등을 통하여 선거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금지된다.
- (2) 투표결정에 대하여 투표후에 투표자에게 문의한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투표시간의 종료 이전에는 금지된다.

제 33 조 투표비밀의 보장

- (1) 투표자가 투표용지에 타인이 알지 못하게 투표하고, 투표봉투에 넣을 수 있도록 예방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투표봉투의 수집에는 투표비밀이 보장될 수 있게 투표함이 사용되어야 한다.
- (2) 문맹 또는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투표용지에 기표할 수 없거나, 이를 봉투에 넣을 수 없거나 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에게 제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의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 34 조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

- (1) 투표는 공인된 봉투에 공인된 투표용지로서 행하여져야 한다.
- (2) 투표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투표한다.
 1. 투표용지위에 십자표를 함으로써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어떤 후보자에게 자신의 표가 유효하게 행사되었는가를 명백하게 식별시키는 방법으로 제1표를 투표한다.

2. 투표용지위에 십자표를 함으로써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어떤 주명부에 자신의 표가 유효하게 행사되었는가를 명백하게 식별시키는 방법으로 제2표를 투표한다.

제 35 조 투표기구에 의한 투표

- (1) 투표와 득표수의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투표용지, 투표봉투, 투표함 대신에 독자적인 계산기능을 가진 특별한 투표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 (2) 이 주 제1항의 투표기구는 투표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 기구는 연방하원선거 및 개별적 또는 전체적 선거에 사용되는 것이 승인되어야 한다. 연방내무부장은 투표기구 제작자의 신청에 따라 그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공적으로 승인하되 투표기구의 사용에 대하여는 연방내무부장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허가는 개별적 또는 전체적 선거에 대하여 행하여질 수 있다.
- (3) 연방내무부장은 연방상원의원의 동의없이 법규명령으로 다음 사항을 상세히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1. 투표기구제작에 대한 공적 허가 및 취소, 그 철회의 요건
 2. 제작의 허가에 대한 절차
 3. 허가된 기준에 상응하는지의 시험절차
 4. 사용이전에 투표기구의 공적실험
 5. 공적인 사용 허가 및 취소, 그 철회절차
 6. 투표기구의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선거와 관련되는 특수성

이 법규명령은 이 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연방경제부장의 동의하에 발하여진다.
- (4) 투표기구의 사용에 대하여는 제33조 제1항 제1단과 제2항이 적용된다.

제 36 조 우편투표

- (1) 우편투표에 있어서는 선거인은 선거증서를 교부받은 선거구의 선거위

원장에게 봉합된 우편투표용지 봉투속에 다음 각 호를 늦어도 선거일 18시까지 도달하도록 적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가. 선거증서

나. 특별히 봉한 봉투에 자신의 투표용지를 넣어서 제33조 제2항은 이에 준용된다.

- (2) 선거증서에는 투표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선거구 선거위원장에게 선서함으로서 투표용지가 본인이 직접 또는 투표자의 명시된 의사에 따라 표시되었음이 보증되어야 한다. 선거구 선거위원회위원장은 위와 같은 보증을 심사할 권한이 있다. 이 경우 선거구 선거위원회위원장은 형법 제156조의 관청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 (3) 주정부나 제8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의 지시가 있는 경우, 당해 읍·면이 속한 군의 행정청은 제1항 제1문의 선거구 선거위원장과 제2항의 선거증서를 발행한 읍·면 행정청의 지위에 선다.
- (4) 우편투표는 그것이 공인된 우편봉투에 넣어졌을 때에는 규격봉투로서 특별한 우송형태를 취하지 않는 경우 무료로 발송되어질 수 있다. 특별한 우송형태를 취하였을 경우, 발송자는 연방우편국에 통상우편 요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방은 연방우편국이 요구하는, 무료로 발송된 또는 특별한 우송형태에 의하여 송달된 공적인 우편투표봉투에 대하여 그에 상당하는 우편료를 지급한다.

제 6 장 선거결과와 확정

제 37 조 투표구에 있어서의 선거결과와 확정

투표의 종료후 투표구 선거위원회는 그 투표구에서 개별적인 선거구 피추천서의 주명부에 대하여 투표된 표수를 확인한다.

제 38 조 우편투표결과와 확정

우편투표를 위하여 설치된 우편투표 선거위원회는 개별적인 선거구 피추

천자와 주명부에 대하여 우편으로 투표된 표수를 확정한다.

제 39 조 무효투표, 우편투표의 무효, 해석규칙

(1) 투표용지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 투표를 무효로 한다.

1. 관제선거봉투속에 넣어지지 않은 상태로 투합되어 있는 경우
2. 명백히 선거비밀을 위협할 정도로 다른 것들과 상위하거나 분명히 감독할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선거봉투가 그대로 투합되어 있는 경우
3. 관청에서 발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다른 선거구역에 대하여 투합되어 있는 경우
4. 아무런 표시도 없는 경우
5. 선거인의 의사가 의문없이 확정되어질 수 없는 경우
6. 어떠한 첨가 또는 유보를 포함하는 것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양투표를 모두 무효로 한다.

(2) 일개의 선거봉투속에 다수인을 포함하고 있는 투표용지는 그것이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거나, 단지 그들중의 한 사람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투표용지로서 유효하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2개의 무효투표를 지닌 1개의 투표용지로 계산한다.

(3) 선거봉투가 비어있는 상태로 투합된 경우에는 양투표는 무효로 한다. 선거봉투 속에 단지 하나의 투표용지만을 포함하는 경우 그 나머지의 투표는 무효로 한다.

(4) 우편선거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의 우편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우편봉투가 기간내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2. 우편투표봉투에 선거증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무효한 선거증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
3. 우편투표봉투에 투표봉투가 첨가되어 있지 않는 경우
4. 우편투표봉투, 투표봉투 모두가 봉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5. 우편투표봉투가 다수의 투표봉투는 가지고 있으나, 동수의 유효한 그

리고 규정대로의 선서를 통한 보증을 구비한 선거증서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6. 투표인 또는 그 대리인이 우편투표에 있어서 규정되어 있는 선서를 통한 보증을 선거증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7. 관제의 선거봉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8. 명백히 선거의 비밀을 위협할 정도로 다른 것과 상위하거나 분명히 감축할 수 있는 물건을 포함한 투표봉투가 사용된 경우

무효인 우편투표를 송부한 자는 선거인으로 계산되지 아니한다. 그들의 투표는 행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5) 우편투표에 참가하였던 선거인의 투표는, 그가 선거일 이전에 사망하거나 이 법률의 효력범위를 벗어나거나, 제13조에 따라 자신의 투표권을 상실함으로써 하여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제 40 조 선거위원회의 결정

투표구 선거위원회는 행사된 투표의 유효선, 투표행위와 투표결과를 심사할 때에 발생하는 제문제로 결정한다. 선거구 선거위원회는 재심사권이 있다.

제 41 조 선거구에서의 선거결과의 확정

- (1) 선거구 선거위원회는 그 선거구에서 개별적인 선거구 피추천자와 주명부에 대하여 투표된 표수와 그 선거구의 당선자를 확정한다.
- (2) 선거구 선거위원장은 당선된 선거구위원에게 통지하고 그의 당선에 대한 수락여부를 서명으로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제 42 조 주명부선거 결과의 확정

- (1) 주선거위원회는 그 주에서 개별적인 주명부에 대하여 투표된 표수를 확정한다.

- (2) 연방선거위원회는 개별적인 주명부에 배당되는 의석수의 당선자를 확정한다.
- (3) 주선거위원회장은 당선자에 통지하여 그의 당선에 대한 수락여부를 일주내에 서면으로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제 7 장 연기된 선거의 재선거에 대한 특별규정

제 43 조 연기된 선거

- (1) 연기된 선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한다.
 - 1. 이러한 선거구 또는 투표구에서 선거가 실시되지 아니한 경우
 - 2. 어느 선거구후보자가 그의 후보자추천서가 승인된 후 선거전에 사망한 경우
- (2) 연기된 선거는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늦어도 총선거일후 3주 이내에,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늦어도 총선거일후 6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연기된 선거 일수는 주선거위원회장이 정한다.
- (3) 연기된 선거는 총선거와 동일한 규정과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제 44 조 재선거

- (1) 선거심사절차에서 어떠한 선거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무효라고 선언된 경우 그 선거는 그 결정조치에 따라 재실시되어야 한다.
- (2) 재선거는 총선거와 동일한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선거심사절차에서 다른 결정을 하지 아니한 총선거와 동일한 후보자추천서에 의하여 행하고 또한 총선거실시 이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선거인명부에 의하여 행한다.
- (3) 재선거는 선거가 무효라고 선언한 결정이 확정된 후 6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선거가 부분적으로 무효라고 선언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새로운 연방하원선거가 실시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재선거는 실시되지 아니한다. 재선거일은 주선거위원회장이 정하여 전선거구역

에서 재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연방대통령이 이를 정한다.

- (4) 제6장의 규정에 의한 선거결과는 재선거에 의거하여 새로이 확정된다. 이 경우에는 제41조 제2항과 제42조 제3항이 준용된다.

제 8 장 연방하원의원 자격의 취득과 상실

제 45 조 연방하원위원자격의 취득

당선된 후보자는 제41조 제2항 또는 제42조 제3항에 의한 통지에 따른 당선수락의 선언이 해당선거위원장에게 기한내에 형식에 맞게 도달됨과 동시에 독일연방의회의 의원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이전의 독일연방하원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는, 제44조 제4항의 경우에는 원래의 선거결과에 따라 피선된 후보자가 물러나기 이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선인이 법정기간내에 어떠한 선언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당선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조건이 딸린 수락선언은 거부로 본다. 수락 및 거부선언은 철회될 수 없다.

제 46 조 연방하원위원의 자격상실

(1) 의원은 다음의 경우 독일연방하원위 위원자격을 상실한다.

1. 의원자격의 취득이 무효로 된 경우
2. 선거결과가 새로이 확정된 경우
3. 피선거권을 상실한 경우
4. 포 기
5. 그가 속한 정당 또는 정당의 부속기관이 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단에 따라 헌법위반임을 연방헌법재판소가 확정한 경우

다른법에 의원자격상실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한다.

(2) 선거구에서 당선이 무효로된 경우에도 동시에 정당별 주후보자추천명부에서 당선되었다고 제6조 제2항 제3단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의원자

격은 그대로 보유된다.

- (3) 포기는 그것이 독일연방하원위원장, 이 법률의 효력범위내에 소재지를 가지고 있는 독일공증인, 또는 공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독일 외국대표부의 직원이 그에 서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공증인에게 또는 독일외국대표부에서 행한 포기선언은 해당위원이 독일연방하원의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포기선언은 취소될 수 없다.
- (4) 어느 정당 또는 정당의 부속기관이 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단에 따라 연방헌법 재판소에 의하여 헌법위반으로 선언되는 경우에 의원이 제소(연방헌법재판소에 관한 법률 제43조)와 그에 대한 선고(연방헌법재판소에 관한 법률 제46조)가 진행되는 기간중에 그 정당이나 부속기관에 속하여 있었을 때에는 그 위원은 독일연방의회의 의원자격을 상실하며 명부사의 후임자는 그의 승계권을 상실한다. 제1단에 따라 의원자격을 상실한 의원이 선거구에서 선출된 경우에는 그 선거구에서 제44조 제2호 내지 제4호를 준용하여 위원이 선거가 재실시된다; 제1문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이 위헌선언을 받는 정당이나 그 부속기관의 주명부에 위하여 선출된 경우에는 그 의석은 그대로 공석으로 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제48조 제1항이 적용된다.

제 47 조 의원자격상실에 관한 결정

- (1) 제46조 제1항에 의한 의원자격상실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1. 제1호의 경우에는 선거심사절차에 따라서
 2. 제2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독일연방하원의 장로회의 결의에 따라서
 3. 제3호의 경우에는 既판력있는 판결로 인하여 피선거권의 상실이 확정된 때에는 연방하원의 장로회의 결의에 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선거심사절차에 의하여
 4. 제4호의 경우에는 연방하원의장에 의하여 포기선언의 증명을 발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 진다.

- (2) 선거심의절차에 의하여 의원자격의 상실이 결정되는 경우, 해당의원은 그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연방하원에서 제명된다.
- (3) 연방하원의 장로회 또는 의장이 의원자격의 상실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의원은 그 결정에 따라 연방하원에서 제명된다. 그 결정은 즉시 직권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결정이 도달된 이후 2주내에 관계인은 연방하원의 의원자격 상실 결정에 대하여 선거심사절차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송달은 행정송달법에 의한다.

제 48 조 명부상의 승계인에 의한 의석취득과 보궐선거

- (1) 당선된 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선수락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의원이 사망하거나 후에 이르러 연방하원에서 제명된 경우에는 그의 의석은 그가 선거당시 소속하였던 정당의 주명부에서 승계된다. 의석을 승계함에 있어서는 주명부가 작성된 후에 그 정당에서 제명된 명부상의 후보자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그 명부상 승계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의석은 그대로 공석으로 둔다. 명부상 승계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의석은 그대로 공석으로 둔다. 명부상의 승계인의 확정은 주선거위원장이 처리한다. 이 경우에는 제42조 제3항과 제45조가 준용된다.
- (2) 제명된 자가 어떠한 추천인집단의 선거구의원으로 또는 명부를 제출한 자격이 없는 정당에 소속되는 선거구의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그 선거구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보궐선거는 늦어도 제명시로부터 60일이후에 실시되어야 한다. 다만, 6월내에 새로이 연방하원의원을 선거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보궐선거는 일반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보궐선거일은 주선거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에는 제41조 제2항과 제45조가 준용된다.

제9장 부 칙

제49조 취소

선거절차에 직접 관련되는 결정과 조치는 이 법과 이 법시행령에 규정된 법률상의 항변과 선거심사절차에 의하여만 취소될 수 있다.

제49a조 질서위반

(1)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질서위반으로 한다.

1. 제11조에 반하여 중대한 이유없이 명예직을 거부하거나 충분한 이유없이 그러한 명예직의 의무를 회피한 자
2. 제32조 제2항에 반하여 선거여론조사의 내용에 대하여 투표한 후 투표자에게 조회한 결과를 선거시간의 종료 이전에 공개한 자

(2) 제1항 제1호의 질서위반에 대하여는 최고 1,000마르크의 벌과금을, 제1항 제2호의 질서위반에 대하여는 최고 100,000마르크의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질서위반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행정관청은 다음 가호와 같이 한다.

- 가. 선거권자가 투표구선거구위원장, 그 부위원장 또는 투표구선거구위원회나 선거구 선거위원회의 위원의 직을 가졌던 경우에는, 주선거구위원장
- 나. 선거권자가 주선거위원회의 위원의 직을 가졌던 경우에는, 주선거구위원장
- 다. 선거권자가 연방선거위원회의 위원의 직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충분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회피한 경우에는, 연방선거위원장
2. 제1항 제2호의 질서위반의 경우에는 연방선거위원장

제 50 조 선거비용

- (1) 연방은 선거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경비를 각 주 및 시·군·읍(시·읍·명연합)에 그 대소에 따라 차등을 둔, 각 선거권자별로 정한 정액으로 지급한다.
- (2) 그 정액은 연방사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내무장관이 확정한다. 이를 확정할 때에는 인적 및 물적 경상비와 주와 시·읍·면(시·읍·면연합)의 장소 및 시설의 사용비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제 51 조 선거통계

- (1) 연방상원의 선거결과는 통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 (2) 주선거위원장과 주통계청과 협의하여 연방선거위원장이 정하는 투표구에서는 개별적인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기초로 하여 선거권자의 성별 및 연령에 관한 통계가 작성되어야 한다. 연령별 및 성별에 의한 선거의 분류는 개별적인 선거인의 투표가 그 분류로 인하여 식별될 수 없을 때에 한한다.

제 52 조 연방선거법시행령

- (1) 연방내무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방선거법시행령을 발한다. 연방내무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행령에 특별규정을 둔다.
 1. 선거구선거구위원장과 투표구선거위원장의 임명, 선거구선거위원회와 투표구선거위원회의 구성 및 선거기관의 직무, 의결중력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명예직의 위촉에 관한 사항, 명예직에 있는 자에 대한 배용변상에 관한 사항 및 벌과금절차에 관한 사항
 3. 투표시간에 관한 사항
 4. 투표구의 구성과 그 공고

5. 선거인명부의 작성, 열람, 수정 및 그에 대한 이의신청과 소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선거권자에 대한 통지에 관한 사항
 6. 선거증서를 발급하기 위한 개별적인 요건과 교부에 관한 사항, 선거증서의 교부거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원에 관한 사항
 7. 선거권의 요건에 대한 증명
 8. 제18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다른 절차
 9. 후보자추천 및 관계서류의 제출, 내용 및 형식에 관한 사항, 그 심사, 결함보전 및 그 승인에 관한 사항, 선거구 선거위원회와 주선거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소원 및 후보자추천의 공고에 관한 사항
 10. 투표용지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사항, 투표용봉투에 관한 사항
 11. 투표소의 준비, 설비 및 공고에 관한 사항, 그밖에 선거보호장치 및 기표장소에 관한 사항
 12. 투표에 관한 사항, 특별한 사정으로 특별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
 13. 우편투표에 관한 사항
 14. 병원, 요양원, 수도원, 격리된 거소, 사법집행기관 등에서의 선거에 관한 사항
 15. 선거결과의 확정, 그의 보도, 공고 및 당선자에 대한 통지에 관한 사항
 16. 연기된 선거,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실시, 정당별주선거후보자추천명부에 의한 의석의 승계취득에 관한 사항
- (2) 이 법규명령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 (3) 연방내무부장관은 연방하원의회가 해산될 경우 연방선거법과 연방선거법시행령에 규정된 기간을 연방상원의 동의없이 법규명령으로 단축시킬 권한을 가진다.

제 53 조 제12회기 독일연방하원선거를 위한 경과규정

- (1) 제6조 제6항 제1문 전단은 주명부에 의석을 배정함에 있어서 슬레스비히-홀슈타인, 함부르크, 니더작센, 브레멘, 노르트라인-베스트팔

렌, 헤센, 라인란트-팔츠,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과 자아르란트 및 베를린의 제249선거구부터 제256선거구까지의 지역에서 또는 맥켈른 부르크-포아폼메른, 브란덴부르크, 작센-안할트, 튀링겐과 작센 및 베를린 제257선거구부터 제261선거구까지의 지역에서 투표된 유효한 제2표중 최소한 100분의 5이상의 득표를 한 정당만이 고려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1a) 연방선거구위원회는 제9조 제1항 제1문과는 달리 연방선거구위원장과 그에 의하여 소집된 8인의 선거권자를 위원으로 한다.

(2) 1990년 10월 3일에 그 소재지를 맥켈른부르크-포아폼메른, 브란덴부르크, 작센-안할트, 튀링겐과 작센 및 베를린 제257선거구부터 제261선거구까지의 지역에 가졌던 정당과 다른 정치적 결사 또는 그 주당은 공동의 선거추천을 제출할 수 있다(명부의 통합). 이 경우는 한주에서 오직 한 통합명부에만 참가할 수 있다. 통합명부가 작성되면 참가한 정당과 다른 정치적 결사는 관계된 주안에서 독립한 명부 또는 독자적인 선거구 후보자추천을 할 수 없다. 제6조 제6항 제1문은 통합명부에도 적용된다. 제7조는 동일한 통합명부에 따른 주명부에도 적용된다. 이 법률의 규정이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계되는 경우, 그 규정은 그 뜻에 맞게 통합명부에도 적용된다.

추가적으로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1. 통합명부에 대한 의사는 늦어도 선거일 40일전까지 명부에 참여한 정당의 지도부의 서면형식을 띤 선언으로 연방선거구위원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2. 연방선거위원회는 통합명부를 위한 전제조건이 구비되어 있는지를 늦어도 선거일 37일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3. 후조자의 추천과 주명부상 추천된 후보자의 순서에 관하여는 공동의 당원 또는 의원총회가 확정하여야 한다.
4. 선거추천서는 모든 참여정당 또는 다른 정치적 결사의 각 관할지도부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한다.
5. 선거추천서는 모든 참여정당 또는 다른 정치적 결사의 최소한 과반수

이상이 인민의회 또는 주의회에 대표를 가졌던 경우에는 제20조 제2항 제2문과 제27조 제1항 제2문에 따른 지지서명의 첨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6. 주명부에 따라 선거하는 경우 통합명부의 경우에는 그 명칭 이외에도 그 약칭 또는 그 참여자의 식별기호도 투표용지에 기록되어야 한다.
- (3) 이 법률의 다음 각호에 언급된 조항에 확정된 기간은 제12회기 연방 하원선거를 위하여는 다음과 같이 단축되어진다.
1. 제18조에서는 다음 각목과 같이 한다.
 - 가. 제2항 제1문에 90일째 대신에 47일째로
 - 나. 제5항에 72일째 대신에 37일째로
 2. 제19조에는 66일째 대신에 34일째로
 3. 제26조에서는 다음 각목과 같이 한다.
 - 가. 제1항 제1문에 58일째대신에 30일째로
 - 나. 제2항 제5문 52일째 대신에 24일째로
 - 다. 제3항에 48일째 대신에 20일째로
 4. 제28조에서는 다음 각목과 같이 한다.
 - 가. 제1항 제1문에 58일째 대신에 30일째로
 - 나. 제2항 제5문에 52일째 대신에 24일째로
 - 다. 제3항에 49일째 대신에 20일째로
 5. 제29조에서는 다음 각목과 같이 한다.
 - 가. 제1항 제1문에 34일째 대신에 20일째로
 - 나. 제2항 제1문에 30일째 대신에 16일째로
 - 다. 제3항에 26일째 대신에 15일째로
- (4) 제18조 제2항 제1문은 인민의회의 대의원도 고려되며 “최소한 5인의 의원이상으로 대표할 것”이라는 문구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적용된다.

제 53a 조 기한과 기일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과 기일은, 기한의 최종일 또는 어느 기일이 토요일, 일요일, 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보호되는 공휴일등과 중복되더라도 연장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한다. 이전의 상태로의 재조정은 배제된다.

제 54 조 베를린-조항

이 법은 1952년 1월 4일자의 제3차 경과조치법(연방법률공보 제1권 제1면)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베를린주에 적용된다. 이 법에 의거하여 공포되는 법령은 제3차 경과조치법 제14조에 의하여 베를린주에 적용된다.

제 55 조 이 법 적용구역의 확장

삭 제

제 56 조 효력발생

삭 제

제10차 연방선거법개정법률 제3조 (1990년 10월 8일) (효력발생)
이 법률은 공포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다.

V. 연방헌법재판소법*

제 1 장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관할

제 1 조

- (1) 연방헌법재판소는 여타의 모든 헌법기관에 대하여 독자적이며 독립적인 연방의 재판소이다.
- (2) 연방헌법재판소의 소재지는 칼-스루헤르로 한다.
- (3) 연방헌법재판소는 합의체의 의결로 직무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 (1) 연방헌법재판소는 2개의 부로 구성한다.
- (2) 각 부는 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 (3) 각 부의 재판관 3인은 연방최고법원의 법관중에서 선출한다. 연방최고법원에 최소한 3년이상 근무한 법관만이 피선거격을 가진다.

제 3 조

- (1) 동 재판소의 재판관은 40세에 달하고 연방의회에 피선거권이 있으며 연방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이 될 의사를 서면으로 표명한 자라야 한다.
- (2) 재판관은 독일법관법상의 법관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 (3) 재판관은 연방의회, 연방참의원, 연방정부 기타 이에 상응하는 주의 기관등에 속할 수 없다. 재판관에 임명된 자는 상기의 기관에서 퇴직하여야 한다.
- (4) 재판관의 활동은 독일대학의 법학교수 이외의 여타의 직업적 활동과 양립할 수 없다.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의 활동이 대학교수로

* 1993년 8월 11일 법률.

서의 활동에 우선한다.

제 4 조

- (1) 재판관의 임기는 12년이며 정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2) 재판관은 연임이나 중임될 수 없다.
- (3) 정년은 법관이 68세에 달하는 월말로 한다.
- (4)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의 직무를 계속한다.

제 5 조

- (1) 각 부의 재판관은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에 의해 각기 1/2이 선출된다. 연방최고법원의 법관중에서 임명될 재판관에 관하여는 1인을 두 기관중 어느 한 기관이, 2인을 다른 한 기관이 선출하며, 잔여재판관에 관하여는 3인을 전술한 재판관중 1인을 선출한 기관이, 2인을 타 기관이 선출한다.
- (2) 재판관은 최대한 전임자의 임기만료 3월전에 또는 이 기간에 연방의회가 해산된 경우에는 연방의회의 첫 집회후 1월내에 선출된다.
- (3) 재판관이 조기에 사직한 때에는 그 재판관을 선출한 전기의 연방기관이 1월 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제 6 조

- (1) 연방의회가 임명할 재판관은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 (2) 연방의회는 비례대표의 규칙에 따라 그 의원중에서 12인을 선출인으로 선출한다. 각 정당은 하나의 후보자추천명부를 제출할 수 있다. 각 명부에 대한 총투표중 최고수절차로 각 명부에서 선출되는 의원의 수가 산정된다. 의원은 명부기재순으로 선거인으로 선출된다. 선거인이 사직하거나 유고시에는 동일 명부상 차순위로 추천된 자가 대신한다.

- (3) 추천인중 최연장자는 1주의 소집기간을 엄수하여 즉각 선거인을 소집하여 선거를 실시케하고 모든 재판관이 선출될 때까지 계속하여 의회를 주재한다.
- (4) 선거인단의 구성원은 선거인단에서의 활동으로 지득한 후보자의 개인적사정 및 선거인단서 논의된 사항 및 표결에 관하여 묵비의무를 진다.
- (5) 8인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재판관으로 선출한다.

제 7 조

연방참의원에 의해 임명되는 재판관은 연방참의원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제 7 조의 a

- (1) 재판관의 임기만료 또는 조기 사직후 2월내에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후임자의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거인중 최연장자는 헌법재판소에 지체없이 후보자명부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2) 연방헌법재판소의 합의체는 단순다수결로 재판관선출을 위하여 추천할 자를 정한다. 재판관 1인만을 선출할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는 3인을 추천한다. 동시에 2인이상의 재판관을 선출해야 할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는 재판관으로 선출될 자의 2배수를 추천한다. 제16조 제2항이 준용된다.
- (3) 연방참의원이 재판관을 선출할 경우에는 연방참의원의 의장 또는 부의장이 선출인중 최연장자의 지위를 갖는 것외에는 ①항과 ②항이 준용된다.
- (4)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추천되지 아니한 자를 선출할 수 있는 선출기관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8 조

- (1) 연방법무장관은 제3조 제1항과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연방법관의 명부를 작성한다.
- (2) 연방법무장관은 제3조 제1항과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연방의회의 정당,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에 의해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추천된 모든 자를 기재한 또 다른 명부를 작성한다.
- (3) 이 명부들은 계속하여 보완되어야 하며 늦어도 선거전 1주일내에 연방의회 및 연방참의원 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제 9 조

- (1)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은 교대로 연방헌법재판소의 소장과 부소장을 선출한다. 부소장은 소장이 속하지 아니한 부에서 선출된다.
- (2) 최초선거에 있어서는 연방의회가 소장을, 연방참의원이 부소장을 선출한다.
- (3)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은 준용된다.

제 10 조

연방대통령은 당선자를 임명한다.

제 11 조

- (1)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취임시 연방대통령에게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인은 정의로운 재판관으로 항상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을 충실하게 수호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한 재판관으로서의 의무를 양심에 따라 이행할것을 선서합니다. 신이여, 저를 지키소서”
- (2) 재판관이 어떤 종교를 신봉한다고 밝히고 법률이 그 종교의 신도에게 다른 선서형식을 허용할 경우에는 재판관은 그러한 선서를 한다.
- (3) 선서는 종교적인 맹서없이도 할 수 있다.

제 12 조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언제든지 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연방대통령은 그 사표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 13 조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더우기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다.

1. 기본법의 실효(기본법 제18조)
2. 정당의 위헌여부(기본법 제21조 제2항)
3. 선거의 실효 또는 연방의회 의원직의 得·喪과 관련한 연방의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 (기본법 제41조 제2항)
4. 연방대통령에 대한 연방의회 또는 연방참의원의 탄핵(기본법 제61조)
5. 연방최고기관 또는 기본법이나 연방최고기관의 직무규정상으로 고유의 권리가 부여된 여타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에 관한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기본법의 해석(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
6. 연방법 또는 州법의 기본법과의 형식적 또는 실체적 합치성 또는 연방정부, 주정부, 기타 연방의회의원 1/3이 제기한 주법과 그밖의 연방법과의 합치성 등에 관한 견해대립이나 의문(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2호)
7. 연방과 주의 권리·의무에 관한 견해대립, 특히 주에 의한 연방법의 시행과 연방감독권행사시의 연방과 주의 권리·의무에 관한 견해대립(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84조 제4항 제2문)
8.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없는 경우에 연방과 주간의, 서로 다른 주간의 또는 주내부의 기타의 공법상 분쟁(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4호)
- 8a. 헌법소원(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4a호, 제4b호)
9. 연방법관 및 주법관에 대한 탄핵(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5항)
10. 주법률에 의해 연방헌법재판소의 관할하에 놓인 주내의 헌법분쟁(기

본법 제99조)

11. 법원의 제청에 기한 연방헌법 또는 주법률의 기본법과의 합치여부 또는 주법률, 기타주법의 연방법률과의 합치여부(기본법 제100조 제1항)
12. 법원의 제청에 기한 국제법의 규정이 연방법의 구성부분인지의 여부 및 동 규정이 개개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지의 여부 등에 관한 분쟁(기본법 제100조 제2항)
13. 주헌법재판소의 제청에 기하여 기본법의 해석에 있어서 주헌법재판소가 연방헌법재판소 또는 여타 주의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견해를 달리 할 경우 (기본법 제100조 제3항)
14. 연방법으로서 법의 계속적 적용에 관한 견해대립(기본법 제126조)
15. 기타 연방법률이 연방헌법재판소의 관할하에 둔 사항(기본법 제93조 제2항)

제 14 조

- (1) 연방헌법재판소의 제1부는 기본법 제33조, 제101조, 제103조 그리고 제104조상의 기본권 또는 권리와 어떤 규정과의 불합치성이 주장 되는 규범통제절차(제13조 제6호, 제11호) 및 제91조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외한 헌법소원과 선거법상의 헌법소원 등에 관하여 관할을 가진다.
- (2) 연방헌법재판소의 제2부는 제13조 제1호에에서 제5호, 제7호에서 제9호, 제12호와 제14호의 사항과 그밖에 제1부의 관할하에 놓이지 않은 헌법 소원과 규범통제 절차에 대하여 관할을 가진다.
- (3) 제13조 제10호와 제13호의 사항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칙에 따라 관할부가 결정된다.
- (4) 한 부의 일시적이 아닌 과중한 부담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의 합의체가 차업무년도의 개시시로부터 부의 관할을 제①항에서 제③항까지와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구두변론

또는 결정의 평의가 행하여지지 않은 係屬중인 절차에도 적용한다. 동 재판소의 결정은 연방관보에 공고된다.

- (5) 특정절차의 관할부가 문제된 경우에는 소장, 부소장 및 각 부가 업무년도 동안 각기 2명씩 임명한 4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관할을 결정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15 조

- (1) 연방헌법재판소의 소장과 부소장은 각부의 의장이 된다. 부의 출석 재판관중 최고참자, 근무년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고연장자가 부의 의장을 대리한다.
- (2) 각부는 6인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한 때 결정할 수 있다. 긴급을 요하는 절차에 있어서 부가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의장은 배당절차를 명하여 결정정족수에 달하는 재판관이 출석할 때까지 다른 부의 재판관을 대리인으로 결정한다. 부의 의장을 대리인으로 정할 수 없다. 상세한 것은 직무규정으로 정한다.
- (3) 제13조 제1호, 제2호, 제4호와 제9호에 의한 절차에 있어서 피청구인에 불리한 판결에는 어떤 경우에도 부의 소속재판관 2/3이상의 다수를 필요로 한다. 그밖에 법률에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결에 참여하는 재판관의 다수로 결정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기본법 그밖의 연방법에 대한 저촉으로 확정되지 아니한다.

제 15 조의 a

- (1) 부는 업무년도 기간중 다수의 소부를 두며 소부는 3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소부의 구성은 3년내에 변경하지 못한다.
- (2) 부는 업무년도개시전에 업무년도기간중의 서기들에 대한 헌법소원의 분배 (제93조, 제93조의 b), 소부의 수와 구성 및 그 대표자 등을 결정한다.

제 16 조

- (1) 부가 어떠한 법적 문제에 있어서 다른 부의 판결에 내포된 법이해와 견해를 달리 할 경우에 이에 관하여는 연방헌법재판소의 합의체가 결정한다.
- (2) 합의체는 각 부의 재판관이 각기 2/3이상 출석한 때에 결정할 수 있다.

제 2 장 일반절차규정**제 17 조**

이 법률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공개, 법정경찰, 법정용어, 평의와 표결 등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14장에서 제16장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 18 조

-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연방재판소의 재판관은 그 직무수행에서 제척된다.
 1. 재판관이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이거나 이었던 자 또는 직계로는 혈족 또는 인척, 방계로는 3촌까지의 혈족 또는 2촌까지의 인척인 경우
 2. 직무 또는 직업상 당해사안에 관여하였던 경우
- (2) 재판관의 가족상황, 직업, 가문, 정치, 정당에의 소속 등을 이유로 또는 유사한 일반적 관점에서 절차의 결과에 이해있는 자는 제척된다.
- (3) 제1항 제2호의 관여에는 입법절차에의 참여, 절차상 중요할 수 있는 어떤 법적 문제에 대한 학문적 견해의 표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19 조

- (1)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편견에 치우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피

되며, 재판소는 기피된 재판관의 배제하에 결정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2) 기피는 그 사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기피된 재판관은 이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기피는 늦어도 구두변론 개시까지 사유가 소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 (3) 기피되지 아니한 재판관이 스스로 편견을 시인한 경우에도 제1항이 준용된다.
- (4) 연방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의 기피 또는 회피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배당을 통하여 타부의 재판관을 대리인으로 정한다. 부의 의장은 대리인으로 될 수 없다. 상세한 것은 직무규정으로 규율한다.

제 20 조

당사자는 문서열람권을 갖는다.

제 21 조

절차가 인적 단체에 의해서 또는 인적 단체에 대해서 제기된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는 인적 단체가 1인 또는 다수의 대리인을 통해 그 권리, 특히 기일에 출석할 권리를 행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 22 조

- (1) 당사자는 절차의 어떠한 단계에서라도 독일법원이 인정한 변호사 또는 독일대학의 법학교수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연방헌법재판소에서의 구두변론에서도 당사자는 상기방법으로 대리하도록 해야 한다. 헌법상 또는 직무규정상으로 고유의 권한을 갖는 입법기관과 그 일부는 그 구성원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그 밖에 연방, 주 그리고 주의 헌법기관은 그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단, 그 소속공무원이 법관의 자격을 갖고 있거나 법정 국가시험

에 의거 고도의 행정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취득한 자라야 한다. 연방 헌법재판소는 제3자도 당사자의 보조인으로 허가할 수 있다.

- (2) 대리권의 수여는 문서로 해야 한다. 대리권은 당해절차에 관한 것임을 명시 해야 한다.
- (3) 대리인이 정해지면 법원의 모든 통고는 그에게 하여야 한다.

제 23 조

- (1) 절차를 제기하는 신청은 서면으로 연방헌법재판소에 제출되어야 한다. 신청의 사유가 제시되어야 하며 필요한 입증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 (2) 부의 의장은 신청서를 피신청인과 그밖의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송달 하여 일정 기간내에 의견을 밝히도록 최고한다.
- (3) 부의 의장은 일정 기간내에 재판소와 그밖의 당사자수 만큼의 문서사본을 제출케하여 모든 당사자에게 송부할 수 있다.

제 24 조

재판소는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명백히 이유없는 신청을 만장일치의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다. 신청인이 신청의 허용성 또는 이유의 타당성에 대한 이의를 고지받은 경우에는 재판소가 별도의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

제 25 조

- (1) 달리 정하는 바가 없는 한 연방헌법재판소는 구두변론을 기초로 판결한다. 단, 모든 당사자가 구두변론을 명시적으로 포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구두변론에 기초한 재판은 판결로, 구두변론없는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 (3) 일부 및 중간판결은 허용된다.

(4)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민의 이름으로” 행한다.

제 26 조

- (1) 연방헌법재판소는 진리의 발견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한다. 연방헌법 재판소는 구두변론 이외의 증거조사를 재판소의 구성원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특정된 사실에 한정하여 다른 법원에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 (2) 개개의 증거의 채택은, 이의 이용이 국가안전에 반할 경우에는 재판소 투표의 2/3이상의 다수결의 결정에 의거하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27 조

모든 법원과 행정청은 연방헌법재판소에 법상 그리고 직무상의 공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모든 법원과 행정청은 그 최고책임자를 경유하여 소송기록과 문서를 연방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8 조

- (1) 증인과 감정인에 대한 심문에 있어 제13조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 (2) 증인과 감정인에 대한 심문이 상급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연방 및 주의 공공복리상 필요한 경우에만 상기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연방헌법 재판소가 투표의 2/3이상의 다수결로 허가의 거부를 이유없다고 판시한 경우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은 묵비의무를 주장할 수 없다.

제 29 조

당사자에게 모든 증거조사기일을 통보하여 증거조사에 입회하게 할 수 있다. 당사자는 증인과 감정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질문에 이의가 제기되

면 법원이 결정한다.

제 30 조

- (1) 연방헌법재판소는 심리의 내용과 증거조사의 결과에서 얻은 자유로운 확신에 따라 비밀평의를 거쳐 판결한다. 결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이유를 밝혀야 하며 담당재판관이 서명해야 한다. 구두변론이 있던 경우에 결정은 본질적인 결정이유를 고지하면서 공개적으로 선고되어야 한다. 결정선고의 기일은 구두변론중에 통고하거나 또는 평의종결후에 확정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기일은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결정의 선고는 구두변론의 종결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기일은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연기할 수 있다.
- (2) 재판관은 평의에서 주장된 결정 또는 결정이유에 대한 자신의 소수의견을 부기할 수 있다. 소수의견은 결정에 첨부된다. 부는 그 결정에서 표결관계를 고지할 수 있다. 상세한 것은 직무규정에서 규율한다.
- (3) 모든 판결은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제 31 조

- (1)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연방과 주의 헌법기관 및 모든 법원과 행정청을 구속한다.
- (2) 제13조 제6호, 제11호, 제12호와 제14호의 경우에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연방헌법재판소가 어떠한 법률을 기본법에 합치하거나 또는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또는 무효로 선고한 경우에는 제13조 제8a호의 경우에도 위와 같다. 법률이 기본법 또는 그밖의 연방법에 합치하거나 또는 모순되는 것으로 또는 무효로 선고된 경우에는 연방법무장관이 판결주문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2호와 제14호의 경우의 판결주문에도 준용한다.

제 32 조

- (1) 연방헌법재판소는 중대한 손실의 방지, 임박한 권력행사의 저지,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요청되는 경우에, 가처분을 통하여 분쟁의 상태를 잠정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
- (2) 가처분은 구두변론없이 발할 수 있다.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연방헌법재판소는 본안절차의 당사자, 참가권자 또는 의견진술권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생략할 수 있다.
- (3) 가처분은 결정으로 발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소원의 절차에 있는 소원제기자에게는 위의 사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구두변론을 거쳐 이의에 대해 결정한다. 구두변론은 이의신청이유서가 제출된 후 2주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 (4) 가처분에 대한 이의는 연기적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가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 (5) 가처분은 6월의 경과로 효력을 상실한다. 가처분은 연방헌법재판소의 투표의 2/3이상의 다수결로 반복되어질 수 있다.
- (6) 부가 결정을 할 수 없으면, 긴급한 경우의 가처분은 3인이상의 재판관의 출석과 출석재판관의 전원일치의 합의에 의한 결정으로 발할 수 있다. 이 가처분은 1월의 경과로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부가 동 처분을 승인한 경우에는 동 처분일로부터 6월의 경과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 33 조

- (1) 연방헌법재판소는 다른 법원의 확정 또는 결정이 자신의 결정에 중요한 경우에 다른 법원에 係屬중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2) 연방헌법재판소는 직권으로 진실을 조사할 수 있는 절차에서 내려진 확정력있는 판결의 사실확인을 그 결정의 기초로 할 수 있다.

제 34 조

- (1) 연방헌법재판소의 절차는 무료로 한다.
- (2) 헌법소원의 수리가 거부되었거나 (제93조의 b 제1항 또는 제93조의 c)헌법소원 또는 기본법 제41조 제2항에 의한 소원이 각하되면(제24조) 연방헌법재판소는 소원제기인에게 1,000마르크이하의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비용과 비용의 액수에 관한 결정은 모든 상황 특히 주장된 이유의 경중, 소원제기인에 대한 절차의 의의,소제기인에 대한 재산 및 소득관계등을 고려하여 선고되어야 한다. 연방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의 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제1문과 제2문의 기준에 따라 소원제기인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 (3) 비용의 부과가 부당할 경우에는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
- (4) 헌법소원의 제기 또는 기본법 제41조 제2항에 의한 소원의 제기가 남용되었거나 가처분을 구하는 신청이 남용된 경우에는 연방재판소는 5,000마르크 이하의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 (5) 연방재정법 제59조 제1항은 비용징수에 준용한다.
- (6) 서기는 소원제기인에게 1월내에 제2항 제1문의 비용의 공탁금을 납부하라고 명할 수 있다. 소원제기인이 자신의 개인적 및 경제적 사정으로 공탁할 수 없거나 그 일부밖에 공탁할 수 없거나 분할불로 납부할 수 밖에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서기는 명령을 폐기하거나 변경한다. 서기의 명령은 다룰 수 없다.

제 34 조의 a

- (1) 기본권의 실효신청(제13조 제9호) 연방대통령(제13조 제4호) 또는 법관(제13조 제9호)에 대한 탄핵등이 이유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피신청인 또는 피탄핵인에게 변호비용을 포함한 필요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 (2) 헌법소원이 이유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소원제기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 (3) 그 밖의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상을 명할 수 있다.

제 35 조

연방헌법재판소는 그 결정안에 누가 결정을 집행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고, 집행의 방법과 수단을 개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

제 3 장 특별절차규정

제 1 절 제13조 제1호 사건의 절차

제 36 조

연방의회,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는 기본법 제18조 2문에 따른 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제 37 조

연방헌법재판소는 피신청인에게 일정 기간내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불충분한 것으로 각하할 것인지의 여부 또는 심리를 진행할 것인지의 여부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 38 조

- (1) 신청이 수리되면 연방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압류 또는 수색을 명할 수 있다.
- (2) 연방헌법재판소는 구두변론의 준비를 위하여 예심을 명할 수 있다. 예심의 수행은 본안결정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부의 재판관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제 39 조

- (1) 신청이 이유있는 것이면 연방헌법재판소는 피신청인의 어느 기본권이 실효되는가를 확정한다. 연방헌법재판소는 1년 이상의 특정된 기간으로 실효의 시한을 정할 수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피신청인에게 실효된 기본권 이외의 타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방법과 기간이 정확하게 지정된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신청인에 대한 행정부의 조치에는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한다.
- (2)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실효기간동안 피신청인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에는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 40 조

실효의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또는 1년이상의 기간으로 실효가 선고된 경우에 연방헌법재판소는 실효선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종전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신청으로 실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또는 실효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연방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

제 42 조

연방헌법재판소가 신청의 본안에 대하여 공평하게 결정하였을 경우, 동일한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은 새로운 사실로 뒷받침되는 때에만 다시 제기될 수 있다.

제 43 조 삭 제

제 2 절 제13조 제2호의 절차

제 43 조

- (1) 정당의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의 신청은(기본법 제21조 제2항)연방 의회, 연방참의원 또는 연방정부에 의해서 제기된다.
- (2) 주정부는 정당의 조직이 주의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만 정당을 상대로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제 44 조

정당의 대표는 법률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보조적으로 정당의 규약에 따라 정해지기도 한다. 대표권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대표권자가 연방헌법재판소에 신청이 수리된 후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의 원인이 된 활동시의 정당업무를 최종적으로 사실상 수행한 자가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 45 조

연방헌법재판소는 제 44 조의 대표권자에게 일정기간내에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며, 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또는 이유가 불충분한 것으로 기각하거나 또는 심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정한다.

제 46 조

- (1) 신청이 이유가 있으면 연방헌법재판소는 그 정당이 위헌임을 확정한다.
- (2) 확정은 정당의 법상 또는 조직상의 독립적인 기관에 국한시킬 수 있다.
- (3) 확정으로 정당의 해산 또는 정당의 독립기관의 해산과 대체조직의 결성금지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그밖에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경우 연방과 주를 위하여 정당 또는 정당의 독립기관의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몰수를 선고할 수 있다.

제 47 조

제38조와 제41조의 규정은 준용한다.

제 3 절 제13조 제3호의 절차**제 48 조**

선거의 유효성 또는 연방의회 의원직의 상실 등에 관한 연방의회의 결의에 대한 소원은 자신의 의원직이 다투어지고 있는 의원, 자신의 이의신청이 연방의회에 의하여 기각되었지만 100인 이상의 유권자의 찬성을 받은 유권자 또는 재적 의원수의 1/10이상을 포함하는 연방의회의 소수파 등에 의해 연방 의회의 의결로부터 1월내에 연방헌법재판소에 제기될 수 있다.

제 4 절 제13조 제4호의 절차**제 49 조**

- (1) 기본법 또는 기타의 연방법률의 고의적 위반을 이유로 하는 연방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연방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된다.
- (2) 양입법기관중 어느 한 기관의 결의에 의거하여 해당기관의 의장은 소추장을 작성하여 1월내에 이를 연방헌법재판소에 발송한다.
- (3) 소추장에는 탄핵의 원인이 된 작위 또는 부작위, 증거자료, 위반된 헌법 또는 법률의 규정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소추장에는 연방의회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또는 연방참의원의 투표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소추의결이 내려졌다는 확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제 50 조

소추권 있는 기관이 탄핵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3월 이내에

만 탄핵을 제기할 수 있다.

제 51 조

절차의 개시와 진행은 연방대통령의 사직, 퇴직 또는 연방의회의 해산 또는 의원임기의 만료 등으로 영향받지 아니한다.

제 52 조

- (1) 판결의 선고가 있기까지 소추기관의 결의로 그 탄핵을 취하할 수 있다. 이러한 결의는 연방의회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찬성 또는 연방참의원의 투표의 과반수를 요한다.
- (2) 소추기관의 의장은 소추취하의 결의의 정본을 연방헌법재판소에 발송함으로써 소추를 취하할 수 있다.
- (3) 탄핵소추의 취하는 연방대통령이 1월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제 53 조

연방헌법재판소는 탄핵제기후 가치분으로 연방대통령이 직무수행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확정할 수 있다.

제 54 조

- (1) 연방헌법재판소는 구두변론의 준비를 위하여 예심을 명할 수 있다. 탄핵의 대리인 또는 연방대통령이 예심을 신청할 때에는 연방헌법재판소는 예심을 명하여야 한다.
- (2) 예심의 수행은 본안결정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부의 재판관에게 위탁되어야 한다.

제 55 조

- (1) 연방헌법재판소는 구두변론을 근거로 결정한다.
- (2) 심리를 위해 연방대통령을 소환할 수 있다. 이때 면책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불참하거나 또는 충분한 이유없이 미리 퇴장하는 경우에는 결석심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대통령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3) 심리에 있어서 소추기관의 수임자는 먼저 소추장을 낭독한다.
- (4) 그다음 연방대통령은 소추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가진다.
- (5) 이어서 증거조사를 행한다.
- (6) 끝으로 탄핵의 대리인은 논고를, 연방대통령은 변론을 한다. 연방대통령은 최후진술권을 갖는다.

제 56 조

- (1) 연방헌법재판소는 판결에서 연방대통령이 기본법의 고의적 위반 또는 특정한 연방법률의 고의적 위반에 유책한지 여부를 확정한다.
- (2) 유죄판결의 경우에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대통령의 해임을 선고할 수 있다.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파면된다.

제 57 조

이유가 기재된 판결의 정본은 연방의회, 연방참의원 그리고 연방정부에 송달되어야 한다.

제 5 절 제13조 제9호의 절차**제 58 조**

- (1) 연방의회가 연방법원에 대하여 기본법 제98조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제기하면 제49조 제3항 2문, 제55조와 제52조 제1항 2문을 제외한 제49조에서 제55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 (2) 연방법관이 직무상의 위반으로 비난받더라도, 연방의회는 재판절차의 확정력있는 종결전 또는 동일한 위반을 이유로 이미 정식의 징계절차에 繫屬중인 때에는 징계절차의 개시전에 의결할 수 없다. 연방법관의 유책적인 위반을 인정한 재판절차의 확정력있는 종결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신청은 더이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 (3) 위반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제2항의 경우와는 별도로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4) 연방헌법재판소에의 신청은 연방의회의 수임자에 의해 대리된다.

제 59 조

- (1)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9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조치중의 하나 또는 무죄를 선고한다.
- (2) 연방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선고하면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해임된다.
- (3) 전직 또는 퇴직이 선고되면 연방법관의 임면권 있는 기관은 집행을 하여야 한다.
- (4) 이유를 기재한 판결의 정본을 연방대통령, 연방의회 그리고 연방참의원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 60 조

연방헌법재판소에 절차가 계속중인한, 동일사실을 이유로 징계법원에 계속중인 절차는 정지된다. 연방헌법재판소가 파면 또는 전직명령 또는 퇴직명령을 선고하면 징계절차는 취해진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속행한다.

제 61 조

- (1) 재심은 유죄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그리고 그 자의 신청 또는 그의 사후 배우자의 신청 또는 형사소송법 제359조와 제364조의 요건하의 그 혈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행하여진다. 신청에는

- 재심의 법적근거와 증거자료가 명기되어야 한다. 판결의 효력은 재심 신청에 의해서 방해받지 아니한다.
- (2) 연방헌법재판소는 구두변론없이 신청의 허가에 관하여 결정한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69조 제1·2항과 제370조 및 제371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준용한다.
- (3) 새로 본안심리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종전의 판결을 유지하던가 또는 감경처분 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제 62 조

본절의 규정은 기본법 제98조 제5항 2문에 따라 현행 주헌법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주법관에 관한 주법률이 기본법 제98조 제2항에 상응하는 규율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 6 절 제13조 제5호의 절차

제 63 조

연방대통령, 연방의회, 연방참의원, 연방정부 그리고 기본법상 또는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의 직무규정상으로 상기 기관의 독자적 권한을 가진 부서만이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될 수 있다.

제 64 조

- (1)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소속한 기관의 기본법이 위임한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였다거나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허용된다.
- (2) 신청에는, 피신청인의 이의가 제기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의해 침해된 기본법의 조문이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3) 신청은 이의가 제기된 처분 또는 부작위를 피신청인이 안 때로부터 6

월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 (4) 이 법의 시행시에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청은 이법의 시행후 3월이내에 제기될 수 있다.

제 65 조

- (1) 제63조에서 열거된 신청권한 있는 자는 결정이 그들의 관할의 확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때에는,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라도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참가할 수 있다.
- (2) 연방헌법재판소는 절차의 개시에 관하여 연방대통령, 연방의회, 연방 참의원 그리고 연방정부에 통지한다.

제 66 조

연방헌법재판소는 계속중인 절차를 병합하고 병합된 것을 분리할 수 있다.

제 67 조

연방헌법재판소는 결정에서 피신청인의 이의가 제기된 처분 또는 부작위가 기본법의 규정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한다. 기본법의 규정은 특정하여야 한다. 동시에 연방헌법재판소는 판결주문에서 1문에 따른 확정을 좌우하는 기본법 규정의 해석에 중요한 법적 문제를 판단할 수 있다.

제 7 절 제13조 제7호의 절차

제 68 조

연방에 대해서는 연방정부, 주에 대해서는 주정부만이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될 수 있다.

제 69 조

제64조에서 제67조까지의 규정은 준용한다.

제 70 조

기본법 제84조 제4항 1문에 의한 연방참의원의 결의는 결의한 때로부터 1월 이내에만 취소할 수 있다.

제 8 절 제13조 제8호의 절차**제 71 조**

(1) 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다.

1. 연방과 주간의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법상의 분쟁인 때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한다.
2. 주간의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법상의 분쟁인 경우에는 주정부로 한다.
3. 주내의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법상의 분쟁인 경우에는 주의 최고기관 그리고 소송물에 의해서 그의 권리와 관할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우에는 주헌법상 또는 주최고기관의 직무규정상 독자적인 권한있는 최고기관의 부서로 한다.

(2) 제64조 제3항의 규정은 준용한다.

제 72 조

(1) 연방헌법재판소는 결정으로 다음을 선고한다.

1. 처분의 허용여부
2. 처분의 부작위, 취소, 실행 또는 수인하여야 할 피신청인의 의무
3. 이행의무

(2) 제71조 제1항 제3호의 절차에 있어서 연방헌법재판소는 피신청인의

이의가 제기된 처분 또는 부작위가 주헌법의 규정을 위배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한다. 제67조 2문과 3문은 준용한다.

제 9 절 제13조 제10호의 절차

제 73 조

- (1) 주내의 헌법쟁송에는 당해 주의 최고기관과 주헌법상 또는 주최고기관의 직무규정상으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진 최고기관의 부서만이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2) 제64조 제3항의 규정은 준용한다. 단, 주법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4 조

주법이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떠한 내용과 효력을 가지는지를 정하지 않은 경우 제72조 제2항이 준용된다.

제 75 조

이 법의 제2장의 총칙은 동 절차에 준용한다.

제 10 절 제13조 제6호의 절차

제 76 조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연방의회 의원의 1/3의 신청은 다음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즉, 신청권자주의 어떠한 자가 연방법 또는 주법이, 기본법 또는 기타의 연방법과의 형식적 또는 사실상의 불일치를 이유로 무효라고 간주하는 경우 또는 법원, 행정청, 연방기관 또는 주기관이 그 법을 기본법 또는 그 밖의 연방법과 불일치하는 것

으로 적용하지 아니한 후에 유효하다고 간주하는 경우이다.

제 77 조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법의 유효성에 관한 견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연방의회, 연방참의원,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게도, 주의 법규범의 유효성에 관한 견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규범이 공포된 주의 의회와 정부에게, 일정 기간내에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 78 조

연방헌법재판소가 연방법이 기본법과 또는 주법이 기본법 또는 그밖의 연방법과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확신에 이르게 되면, 연방헌법재판소는 그 법의 무효를 선언한다. 동일한 근거로 유사한 법률의 규정들이 기본법 또는 그밖의 연방법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는 마찬가지로 그 규정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제 79 조

- (1) 기본법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선언된 규범이나 제78조에 의해 무효로 선언된 규범 또는 규범의 해석에 근거한 확정력있는 형사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재심이 허용된다.
- (2) 그 밖에 제95조 제2항이나 특별한 법률규정을 조건으로 제78조에 따라 무효로 선언된 규범에 근거한 취소할 수 없는 결정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이러한 결정에 기초한 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실행해야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767조가 준용된다.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권은 제외된다.

제 11 절 제13조 제11호의 절차

제 80 조

- (1) 기본법 제100조 제1항의 요건들을 갖춘 경우에 법원은 직접 연방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구할 수 있다.
- (2) 법원의 결정이 어느 정도까지 법규정의 유효성에 좌우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법규정이 어떤 상위 법규범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소송기록이 첨부되어야 한다.
- (3) 법원의 신청은 소송당사자에 의한 법규정의 무효의 비난에 영향받지 아니한다.

제 81 조

연방헌법재판소는 법적 문제만을 판단한다.

제 82 조

- (1) 제77조에서 제79조까지의 규정은 준용한다.
- (2) 제77조에서 언급된 헌법기관은 절차중 어떠한 단계에도 참가할 수 있다.
- (3) 연방헌법재판소는 재판소에 제소한 소송의 당사자에게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구두변론에 당사자들을 소환하며, 출석 소송대리인에게 진술권을 준다.
- (4)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최고법원과 주최고법원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통고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즉 다툼있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기본법을 해석하여 온 동 법원의 방법과 형량근거, 동 법원에서의 그의 유효성이 다투어진 법규정을 동 법원의 판결에 적용하였는지의 여부와 적용방법 및 이와 관련된 어떤 법적 문제가 결정에 관여되는지의 문제이다. 그 밖에도 결정에 중요한 법적 문제에 대한 동 법원의 형량

을 설명해 주도록 동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진술 권한이 있는 자에게 진술기회를 준다.

제 12 절 제13조 제12호의 절차

제 83 조

- (1) 기본법 제100조 제2항의 경우에 연방헌법재판소는 그 결정에서 국제법이 연방법의 구성부분인지의 여부와 그것이 직접적으로 개인의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지의 여부를 확정한다.
- (2) 연방헌법재판소는 사전에 연방의회, 연방참의원 그리고 연방정부에게 일정 기간내에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들은 절차의 어떠한 단계에서도 참가할 수 있다.

제 84 조

제80조와 제82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3 절 제13조 제13호의 절차

제 85 조

- (1) 기본법 제100조 제3항 1문에 의한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여야 할 경우 주헌법재판소는 자신의 법적 견해를 밝히면서 소송기록을 제출한다.
- (2)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참의원, 연방정부 그리고 주헌법재판소의 결과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동 재판소에게 일정기간내에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다.
- (3) 연방헌법재판소는 법적 문제만을 결정한다.

제 14 절 제13조 제14호의 절차

제 86 조

- (1) 신청권자는 연방참의원, 연방의회, 연방정부 및 주정부로 한다.
- (2) 재판절차상 어떠한 법률이 연방법으로 통용될 것인지 여부가 다툼이 되며 중요한 경우에는 법원은 제80조를 의미에 맞게 적용하여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구하여야 한다.

제 87 조

- (1) 연방참의원,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신청은 연방기관, 연방행정청, 주기관 또는 주행정청의 이미 집행되었거나 직접적으로 당면해 있는 처분들의 허가가 결정에 좌우되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2) 신청의 이유에서 제1항에서 특정한 요건의 준부가 판명되어야 한다.

제 88 조

제82조의 규정은 준용한다.

제 89 조

연방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연방전체 또는 연방의 특정지역에서 연방법으로 통용되는지의 여부를 선고한다.

제 15 절 제13조 제8a항의 절차

제 90 조

- (1) 모든 국민은 공권력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 또는 기본법 제20조 제4항 제33조, 제38조, 제101조, 제103조와 제104조에서 내포된 권리가 침

해되었음을 주장함으로써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 (2) 권리침해에 대하여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어 있는 경우 헌법소원은 이 권리 구제절차를 거친 후에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소원이 일반적인 의의를 갖거나 먼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게 하면, 소원제기인이 중대하고 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는 권리구제절차의 종료전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 (3) 주헌법의 권리에 의해 주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91 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연방 또는 주의 법률이 기본법 제 2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주의 법에 따라 자치행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을 주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는 한 연방헌법재판소에 대한 헌법소원은 배제된다.

제 91 조 a 삭제

제 92 조

소원의 이유에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권리, 소원제기인이 침해의 원인으로 간주하는 기관, 또는 관청의 작위 또는 부작위 등을 특정하여야 한다.

제 93 조

- (1) 헌법소원은 1월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이 기간은 결정이 해당 절차법상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내려진 경우에는 완전한 형식을 갖춘 결정의 송달로부터 또는 형식을 갖추지 않은 통고로부터 개시한다. 그 밖

의 경우에는 이 기간은 결정의 공고로부터 또는 결정을 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원제기인에 대한 기타의 고지로부터 개시된다. 이 때 완전한 형식을 갖춘 결정의 답본이 소원인에게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 1문의 기간은 소원제기인이 서면으로 또는 서기과의 조서로 완전한 형식으로 작성된 결정문의 교부를 요구함으로써 중단된다. 중단은 완전한 형식을 갖춘 결정문을 법원이 소원제기인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또는 절차의 당사자에 의해 소원제기인에게 송달될 때까지 계속된다.

- (2) 헌법소원이 법률에 대하여 또는 권리구제절차가 없는 기타의 고권행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경우, 헌법소원은 법률시행후 또는 고권행위를 발한 이후 1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 (3) 법률이 1951년 4월 1일 이전에 시행된 경우 헌법소원은 1952년 4월 1일까지 제기할 수 있다.

제 93 조의 a

헌법소원은 결정을 위해 수리를 필요로 한다.

제 93 조의 b

- (1) 다음의 경우에 소부는 전원일치의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1. 헌법소원인이 자신에게 부과된 공탁금(제34조 제6항)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시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승소의 가망이 없는 때.
 3. 부가 제93조의 c 2문에 따라 헌법소원을 수리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경우 그 결정은 취소할 수 없다.
- (2) 소부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이에 관해 기준이 되는 헌법적 문제를 이미 결정하였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명백하게 이유있는 경우에는 전원일치

의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결정은 부의 결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어떠한 법률이 기본법 또는 그밖의 연방법과 합치 또는 불합치한다거나 또는 무효라고 선고하는 제31조 제2항의 효력을 갖는 결정은 부에 유보되어 있다.

- (3) 소부의 결정은 구두변론없이 내린다. 헌법소원의 수리를 거부하는 결정의 이유로 거부의 기준이 되는 법적인 관점을 지적함으로써 충분하다.

제 93 조의 c

소부가 헌법소원의 수리를 거부하지도 헌법소원을 허용하지도 않았을 경우 부가 수리에 관하여 결정한다. 최소한 2인 이상의 재판관이 결정에 의해 어떠한 헌법적 문제의 해명이 기대된다거나 또는 본안에 대한 결정의 거부로 소원제기인에게 증대하고 피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견해를 취한 경우에는 부는 헌법소원을 수리한다. 제93조의 b 제3항은 준용한다.

제 94 조

- (1)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에 있어, 그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연방 또는 주의 헌법기관에게 일정기간내에 진술할 권리를 준다.
- (2) 연방 또는 주의 장관 또는 행정청에 의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행하여지면 관할장관에게 진술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 (3) 헌법소원이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 연방헌법재판소는 그 결정의 수익자에게도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4) 헌법소원이 법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제기된 경우 제77조가 준용되어야 한다.
- (5)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서 언급된 헌법기관은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구두변론에 의해서는 더이상의 절차속행을 기대할 수 없고 절차에 참여한 진술권한이 있는 헌법기관이 구두변론을 포

기한 경우에는 구두변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95 조

- (1) 헌법소원이 허용되면 결정에서 침해된 기본법의 조항과 기본법의 조항을 침해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동시에 연방헌법재판소는 이의가 제기된 처분을 반복할 때마다 기본법을 침해한다고 선고할 수 있다.
- (2)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연방헌법재판소는 결정을 파기하고 제90조 제2항 1문의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법원에 환송한다.
- (3)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그 법률의 무효를 선언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때에도 그와 같은바 이는 파기된 결정이 위헌법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79조의 규정은 준용한다.

제 95 조의 a

제94조 제2항, 제3항, 그리고 제95조 제1항과 제2항은 제93조 b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준용한다.

제 96 조

제41조의 규정은 준용한다.

제 16 절

제 97 조 삭 제

제 4 장 종결규정

제 98 조

- (1)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임기의 만료와 함께 퇴직한다.
- (2)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직무수행 불능상태가 지속될 경우 퇴직시킬 수 있다.
- (3)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6년이상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 재직하였으며 동시에 65세에 달하였거나 또는 중장애자취업법 제1조의 의미의 중장애자이며 60세에 달한 경우에는 직무수행불능의 입증 없이 신청으로 퇴직하여야 한다.
- (4) 제3항의 경우에 제4조 제4항은 의미에 맞게 준용한다.
- (5) 퇴직재판관은 연금을 받는다. 연금은 연방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판관이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이는 유족보호에도 준용된다.
- (6) 공무원보호법 제70조가 준용된다.

제 99 조 삭 제

제 100 조

- (1) 제12조에 따라서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직무가 종료하면 의원 퇴직재판관은 그가 2년이상 재판관으로 재직하였을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라 1년간 자신의 급여액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받는다. 제98조에 의해서 퇴직된 경우에는 이 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2) 재판관의 사망당시에 퇴직금을 수령한 전직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유족은 사망위로금 및 퇴직금 수령기간의 잔여기간동안 미망인수당과 유자녀수당을 받는다. 사망위로금, 미망인수당, 유자녀수당은 퇴직금에서 산출한다.

제 101 조

- (1)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선출된 공무원과 재판관은 독일법관법 제70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임명과 동시에 종전의 직을 상실한다.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의 재직기간 동안은 공무원 또는 법관으로서의 근무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정지된다. 공무원 또는 법관이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경우에 치료청구권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2)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의 직무가 종료하면 공무원 또는 법관이었던 자는 다른 직무가 부여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무원 또는 법관으로서의 복무기간을 합산하여 그가 종전의 직무에서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을 받는다. 연방공무원 또는 연방법관이 아닌 공무원 또는 법관의 경우에는 연방은 임면권자에게 연금 및 유족수당을 지급한다.
- (3) 제1항과 제2항은 독일대학의 현직 법학교수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학교수로서의 근무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가 정지된다. 대학교수로서의 근무관계에서 발생하는 급여의 2/3는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 지급받는 보수에 산입된다. 연방은 대학교수의 임면권자에게 타인을 고용함으로써 증가한 실제의 비용을 산입된 금액만큼 보상해야 한다.

제 102 조

- (1) 전직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제101조에 의한 연금청구권을 갖게 된 경우, 이 연금청구권은 제98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서 이러한 급여의 총액에 달하는 연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동안은 정지된다.
- (2) 제100조에 의해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전직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공직에 재임명되면 이로부터 생기는 소득은 퇴직금에 합산된다.
- (3) 전직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의

재직전 또는 재직기간동안에 대학교수로서의 근무관계에서 발생한 봉급, 명예퇴직금 또는 연금을 받은 경우, 봉급이외에 퇴직으로 인한 연금 또는 퇴직금은 그 합계가 제101조 제3항 3문에 의해 산입되지 않은 액수만큼 증액된 직무수당을 초과하는 한도내에서 정지된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근무기간 및 직무수당을 기초로 제101조 제3항 3문에 의해 산입되지 않은 금액을 합하여 산출되는 연금을 수령하게 될 때까지 대학교수로서의 근무관계에서 발생한 명예퇴직금 또는 연금이외에 재판관직으로부터의 연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는다.

- (4)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조항은 유족에게 준용된다. 공무원보호법 제54조 제3항과 제4항 2문은 의미에 맞게 준용한다.

제 103 조

제98조에서 제102조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연방법관에게 적용되는 보호법상의 규정은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관에게 적용한다.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관직을 수행하기에 편리한 활동시간은 공무원보호법의 제11조 제1항 제3호의 a의 의미의 시간이다. 연방헌법재판소의 소장이 보호법상의 결정을 내린다.

제 104 조

- (1) 변호사가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임명되면 그 직무기간동안 허가로부터 나오는 그의 권리는 정지된다.
- (2) 공증인이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관에 임명되면 제101조 제1항 2문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 105 조

- (1)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대통령에게 다음의 권리를 수권할 수 있다.
1. 지속적인 직무수행 불능으로 인한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퇴직

2.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명예손상행위를 하였거나 6월 이상의 자유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또는 중대한 의무위반으로 더이상 직무수행을 하게 할 수 없는 경우의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파면
- (2) 연방헌법재판소의 합의체는 제1항에 의한 절차개시에 관하여 결정한다.
 - (3) 제54조 제1항과 제55조 제 1, 2, 4, 5, 6항은 준용한다.
 - (4) 제1항에 의한 수권은 법원의 2/3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 (5) 제2항에 의한 절차개시후 연방헌법재판소의 합의체는 당해재판관을 잠정적으로 면직한다. 범죄행위로 인한 본안절차가 개연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잠정적인 면직은 연방헌법재판소법 재판관 2/3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 (6) 제1항 제2호에 의한 파면으로 재판관은 그의 직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청구권을 상실한다.

제 106 조

기본법이 베를린주에 적용되거나 이 법률과 합치하는 베를린법률에 의해서 연방헌법재판소의 관할이 인정되는 한 이 법률은 베를린에도 적용된다.

제 107 조 실 시

Ⅵ. 독일연방행정절차법

제1장 적용범위·토지관할·직무원조

제1조 적용범위

- (1) 이 법은 다음 각호의 관청의 행정작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연방, 연방직속의 공법상의 사단, 재단 및 영조물
 2. 주, 시읍면, 및 시읍면조회 기타 주의 감독을 받고 공법인으로서 연방의 위임으로 연방법을 집행하는 관청. 다만 연방법이 특별한 규정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이 법은 연방법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제1항 제2호에 계기된 관청의 공법상 행정행위에도 적용한다. 다만 주가 연방의 배타적인 또는 경합적인 입법의 대상인 연방법을 고유의 업무로서 집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법 시행후 산정된 연방법의 실시에 대하여는 연방법률이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이 법률의 적용을 선언한 경우에 한하여 이 법률이 적용된다.
- (3) 주에 의한 연방법 시행에 있어서는 관청의 공법상의 행정작용이 주법상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률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4) 이 법에서 관청이라 함은 공공행정을 수행하는 모든 관공서를 말한다.

제2조 적용범위의 예외

- (1) 이 법은 교회, 종교단체 및 신앙단체 그 연합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2) 이 법은 다음 각호에 대하여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조세기본법에 의한 연방 또는 주의 세무관청의 절차
 2. 형사소추, 질서위반의 소추와 징벌, 형사 및 민사사건에 있어서의 위

국민에 대한 권리구제와 제80조 제4항에 관련없는 법관직무법상의 조치에 대한 권리구제

3. 독일특허청과 이에 설치된 중재기관의 절차
4. 사회법원법 제51조에 계기된 사항과 직업훈련촉진법, 중상병자법, 주택자금법 및 사회부조·청소년부조·전쟁희생자원호법
5. 부담조정법
6. 손실보상법

(3) 다음 각호의 행위는 동규정에 의한다.

1. 법원의 행정행위와 사법행정관청 및 그 감독하에 있는 공법상의 사단의 작용은 그 작용이 행정재판권을 가진 재판법의 절차에서 재심사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이 법이 적용된다.
2. 직원의 능력·적성 및 이에 준하는 검사에 관한 관청의 행위는 제4조 내지 제13조, 제20조 내지 제 27조, 제29조 내지 제38조, 제40조 내지 제52조, 제79조, 제80조, 제96조의 규정에 한하여 적용된다.
3. 외국에서의 연방대표부의 작용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독일연방의 우편관청의 작용에 대하여는 우편 및 전신제도의 시설이 용 범위내에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3 조 토지관할

(1) 토지관할권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부동산이나 장소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이나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
2. 기업이나 그 공장의 경영 또는 직업에 종사하거나 그 밖에 계속적인 활동에 관련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그 기업이나 공장을 경영하고 있거나 직업 또는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구역은 관할하는 관청
3. 기타사항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a. 자연인이 관련된 사항은 자연인이 통상의 거소 또는 최후의 거소를 관할하는 관청

- b. 법인 또는 사단에 관련된 사항은 당해 법인 또는 사단의 본점소재지 또는 최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관할권이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직무행위의 동기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관청
- (2) 제1항에 의하여 수개의 관청이 관할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처음 사건에 관계한 관청이 관할권의 귀속을 결정한다. 다만, 공통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감독관청이 다른 토지관할을 가지는 관청이 결정한다는 것을 지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일사무가 경영 또는 기업의 복수의 영업소에 관련하는 경우로서 관여인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통일적 결정을 필요로 할 때에는 감독관청은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관청중의 하나를 공통관할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이 감독관청은 복수의 관청이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할 때 또는 관할이 다른 이유로 불분명할 때에도 토지관할을 결정한다. 공통 감독관청이 없는 경우에는 전속관할을 가지는 감독청이 공동으로 결정한다.
- (3) 행정절차의 진행중에 관할권의 근거가 된 상황이 변경된 경우 지금까지 관할권을 가진 관청이 절차를 계속하는 것이 관계인의 이익보호의 견지에서 절차가 간편하고 합목적적 시행에 기여된다고 인정되며 또한 새로 관할권을 가지게 되는 관청이 동의할 때는 종전의 관할 관청이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 (4) 지체로 인한 위험이 있는 경우 유예할 수 없는 조치에 대하여는 동기가 발생된 구역을 관할하는 각관청을 직각적인 조치에 관하여 토지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토지관할권을 가지는 관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조 직무원조의무

- (1) 모든 관청은 요청이 있으면 다른 관청에 보충적인 원조를 제공한다.
- (2)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직무원조를 하지 아니한다.

1. 현존하는 훈령관계의 범위내에서 관청상호간 원조하는 경우
2. 원조제공이 원조받은 관청의 고유한 업무일 경우

제 5 조 직무원조의 요건 및 한계

- (1) 관청은 특히 다음 각호의 경우에 직무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률상의 이유로 직무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때
 2. 사실상의 사유, 특히 직무수행을 위한 인력·설비 등의 부족으로 직무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때
 3. 관청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또는 스스로 조사할 수도 없는 사실의 인식이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때
 4. 업무수행에 있어 요청받은 관청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 또는 기타 증거자료가 필요한 때
 5. 직무수행에 있어 요청하는 관청이 요청받은 관청보다 현저하게 많은 비용을 들여야만 될 때
- (2) 원조요청을 받은 관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원조를 제공할 수 없다.
 1. 요청받은 관청이 법률상의 이유로 원조를 제공받을 수 없을 때
 2. 원조로 말미암아 연방이나 주의 복지에 불이익을 초래할 때 원조를 요청받은 관청은 법률에 의하여 또는 그 성질상 당해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문서나 기록의 제출과 정보제공을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3) 원조를 요청받은 관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원조를 하지 아니한다.
 1. 다른 관청이 현저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원조를 할 수 있을 때
 2. 요청받은 관청이 과도한 비용을 들여서만 원조를 할 수 있을 때
 3. 요청받은 관청이 요청한 관청의 업무를 고려하여, 원조를 함으로써 그 관청의 고유한 임무수행에 상당한 위해가 미치게 된다고 인정할 때
- (4) 요청받은 관청은 당해 요청이 제3항에 제기된 이외의 사유로 말미암

아 비합목적적이라고 인정되거나 원조에 의하여 시행되는 조치가 비합목적적이라고 인정할 때는 원조를 거부할 수 있다.

- (5) 요청받은 관청이 원조의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견해를 요청한 관청에 통지한다. 요청한 관청이 직무원조의 제공을 주장할 경우에는 공통의 감독관청이 직무원조의무에 관한 결정을 하며 감독관청이 없을 때에는 요청한 관청의 감독관청이 이를 결정한다.

제 6 조 관청의 선정

직무원조에 대하여 수개의 관청이 고려될 경우에는 가급적 요청을 하는 관청이 속하는 행정부문의 최하위 행정계층의 관청에 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 7 조 직무원조의 실시

- (1) 직무원조로 말미암아 실현되어야 하는 조치는 원조를 요청한 관청에 적용되는 법률에 의하며 직무원조의 시행은 요청한 관청에 적용되는 법률에 의한다.
- (2) 요청을 한 관청은 요청을 받은 관청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의 합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요청을 받은 관청은 직무원조의 시행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제 8 조 직무원조 비용

- (1) 요청을 한 관청은 요청받은 관청에 대하여 당해 직무원조에 소요된 행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요청을 한 관청은 개개의 경우에 실비가 50 도이취마르크를 초과하는 경우에 청구에 따라 요청받은 관청에 변상하여야 한다. 동일한 법률상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관청이 상호 원조를 할 경우에는 실비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 (2) 요청을 받은 관청이 직무원조를 하기 위하여 비용지급 의무가 있는 직

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이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은 요청을 받은 관청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 2 장 행정절차통칙

제 1 절 절차의 원칙

제 9 조 행정절차의 개념

이 법에서 말하는 행정절차는 행정행위의 요건심사, 준비 및 발동 또는 공법상의 계약 체결을 의도하여 대외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관청의 작용을 말한다.

제 10 조 행정절차의 무형식성

행정절차는 형식에 대한 특별한 법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특정한 요식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행정절차는 간단하고도 합목적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제 11 조 참여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절차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1. 자연인과 법인
2. 권리가 귀속될 수 있는 사단
3. 관청

제 12 조 행위능력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절차행위에 참여할 능력이 있다.

1. 민법에 의하여 행위능력이 있는 자연인
2. 민법에 의하여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연인으로서 절차의 대상에 있어

- 서 행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법인과 사단(제11조 제2호)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표 또는 특별 수임자
 4. 관청의 경우에는 그의 책임자·대표 또는 수임자
- (2) 전항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3조 및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3 조 관계인

- (1) 관계인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
 2. 관청이 발동하려고 하거나 발동한 행정행위의 상대방
 3. 관청이 공법상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거나 체결한 상대방
 4. 제2항에 따라 관청이 절차에 참여시킨 자
- (2) 관청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이 있으면 절차의 결과로 말미암아 권리상의 이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관계인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절차의 결과가 제3자에게 권리를 형성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제3자는 신청에 의하여 관계인으로서 당해 절차에 참여하여야 한다. 관청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절차의 개시를 당해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의견을 듣는 자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로 말미암아 관계인이 되지 아니한다.

제 14 조 대리인 및 보좌인

- (1) 관계인은 대리인에 의하여 대리될 수 있다. 대리권은 수권의 내용으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행정절차에 관계된 모든 행위를 할 권리를 가진다. 대리인은 요청이 있으면 자신의 대리권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대리권의 철회는 철회의 사실이 관청에 통지된 경우에만 당해 관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 (2) 대리권은 수권자의 사망이나 수권자의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소멸되지 아니한다. 다만, 대리인은 행정절차에 있어 권리승계인의 편에서 행동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으면 대리권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3) 절차를 위하여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대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관계인이 참여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관청은 관계인을 직접 상대할 수 있다. 관청이 관계인을 직접 상대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리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대리인에 대한 송달규정은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4) 관계인은 심리 및 협의에 보좌인을 대동할 수 있다. 보좌인이 행한 진술은 관계인이 직시 이에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관계인이 행한 것으로 본다.
- (5) 대리인과 보좌인은 자신이 권한없이 타인의 법률사건을 업으로 취급할 경우에는 거부되어야 한다.
- (6) 대리인과 보좌인은 자신이 서면상의 진술을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아닐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자신이 적절한 진술을 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구두상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타인의 법률사건을 업으로 취급할 권한을 가진 자는 이의 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
- (7) 제5항과 제6항에 의한 거부는 대리인이나 보좌인에 의하여 거부당한 관계인에게도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대리인이나 보좌인이 거부후 행한 절차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 15 조 수령대리인의 선임

이 법에 의한 토지관할내에 주소나 통상의 거소 또는 본사나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관계인은 관청의 요청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내에 이 법에 의한 토지관할내에 잇는 자 중에서 1인의 수령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관계인이 이를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관계인에 대한 서류는 이것이 수령자에게 속달되지 아니하거나 추후의 시기에 송달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편으로 발송된 후 7일 또는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

다. 대리인지정 불이행에 대한 법적 효과는 관계인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제 16 조 직권에 의한 대리인 선임

- (1) 대리인이 없을 때에는 후견법원은 관청의 요청이 있으면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적당한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 신원을 알 수 없는 관계인을 위하여
 2.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자신의 사업처리에 장애를 받고 있는 부재중에 있는 관계인을 위하여
 3. 이 법에 의한 토지관할내에 거소를 두지 아니한 관계인이 법정기간내에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관청의 요구에 불응하는 관계인을 위하여
 4.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행정절차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관계인을 위하여
 5. 절차에 관계된 권리가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당해 사건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의 보전을 위하여
- (2)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관계인의 주소지나 주소가 없을 때는 거소를 관할하는 후견법원이 대리인의 선임권을 가진다. 그 밖의 경우에는 요청을 한 관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후견법원이 그 권한을 가진다.
- (3) 대리인은 대리인의 선임을 요청한 관청에 대하여 적절한 보수와 실비 보상의 청구권이 있다. 관청은 피대리인으로부터 그 비용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관청은 보수를 결정하며 실비를 확정한다.
- (4) 그 밖에 대리인의 선임과 직업에 관하여는 후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 17 조 공동신청대리인

- (1) 행정절차에서 서명록에 의하여 50인 이상이 서명하였거나 동일내용의 원문을 복사한 형식으로 제출한 신청에 있어서는 그 속에 자신의 성명, 직업 및 주소를 대리인으로서 표시한 서명자는 당해 절차에서 다른 서명자의 대리인으로 간주된다. 대리인은 자연인만이 될 수 있다.

- (2) 관청은 서명란에 제1항 제1단에 의한 표시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표시가 제1항 제2단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동신청은 고려에 넣지 아니할 수 있다. 관청은 위의 조치를 취하려고 할 때는 이를 공고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관청은 또한 서명자로서 자신의 성명이나 주소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판독이 불능하게 표시된 공동신청은 고려에 넣지 아니할 수 있다.
- (3) 대리권은 대리인이나 피대리인이 관청에 서면으로 그 소멸의 뜻을 표시한 즉시 소멸하며 대리인은 그러한 의사표시를 모든 피대리인을 위하여서만 할 수 있다. 피대리인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피대리인은 관청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를 고수할 것인지의 여부와 대리인을 선임할 것인지의 여부를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 (4) 대리인의 대리권이 종료된 때에는 관청은 적당한 기간내에 공동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00인 이상에게 위의 요청을 할 때는 이를 공고로써 할 수 있다. 기간내에 이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청이 직권으로 공동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 18 조 동일한 이해관계가 있을 때의 대리인

- (1) 하나의 행정절차에서 동일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50인 이상이 대리인이 없이 참여한 경우에는 관청은 이들에 대하여 공동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들이 기간내에 위의 요청에 불응할 때는 관청은 직권으로 1인의 공동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자연인만이 공동대리인이 될 수 있다.
- (2) 대리권은 대리인이나 피대리인이 대리권 소멸의 뜻을 관청에 서면으로 표시하는 즉시 소멸하며 대리인은 전체의 피대리인을 위하여서만 그러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피대리인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는 피대리인은 관청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를 고수할 것인지의 여부와 대리인을 선임할 것인지의 여부를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 조 대리인의 공통규정

- (1) 대리인은 신중하게 피대리인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한다. 대리인은 행정절차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대리인은 지시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 (2) 제14조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3) 관청이 선임한 대리인은 관청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와 실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관청은 피대리인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관청은 보수를 결정하고 실비를 확정한다.

제 20 조 제 척

-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절차에서 관청을 위하여 활동할 수 없다.
 1. 자신이 관계인이 된 자
 2. 관계인의 친족인 자
 3. 법률이나 대리권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또는 행정절차에서 관계인을 대리하는 자
 4. 당해 절차에서 관계인을 대리하는 자의 친족인 자
 5. 보수를 받고 관계인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이사회 감사역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자. 이 경우 관계인이 임용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직무상의 자격을 떠나서 당해 업무상의 감정을 하였거나 기타의 활동을 하였던 자

어떠한 활동이나 결정으로 인하여 직접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자는 관계인과 동일하게 본다. 특정인이 어떠한 업무로 인하여 공동의 이해에 영향을 받게 되는 직업 또는 주민별 그룹에 소속하는 사실만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제1항의 규정은 명예직의 피임과 면직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제1항에 의하여 제척된 자는 지체로 인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4) 위원회(제88조)의 구성원은 자신이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사료되거나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는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이 제척에 관하여 결정한다. 관계인은 이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척되는 구성원은 그 후의 심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5)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말하는 친족은 다음과 같다.
1. 약혼자
 2. 배우자
 3. 직계혈족과 인척
 4. 형제자매
 5. 형제자매의 자
 6.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형제자매
 7. 부모의 형제자매
 8. 장기간의 부양관계로 인하여 부모 및 여자와 같이 가족공동체로 상호 결합되는 자(양부모와 양자)
- (6) 제1단에 계기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도 친족으로 본다.
1. 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경우 관계의 기초가 된 혼인관계가 이미 소멸된 때
 2. 제3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양자낙조에 인한 혈족 및 인족관계가 소멸된 때
 3. 제8호의 경우 가정이 없어진 후에도 부모와 자녀처럼 상호 결합되어 있을 때

제21조 기 피

- (1)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의혹이 있을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관계인이 이러한 이유의 존재를 주장할 때에는 행정절차에

서 당해 관청을 위하여 활동할 자는 그 관청의 책임자 또는 수임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그 지시에 따라 활동을 중지하여야 한다. 관청의 책임자에게 불공정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스스로 활동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한 그 감독관청이 이에 대한 지시를 한다.

- (2) 위원회(제88조)의 구성원에 대하여는 제20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2 조 절차의 개시

관청은 기속재량에 따라 행정절차를 할 것인지의 여부와 그 시기를 결정한다. 이는 관청이 법률에 근거하는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직권에 의하여 또는 신청에 의하여 활동을 하여야만 할 때
2. 신청에 의하여서만 활동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신청이 없는 때

제 23 조 관용어

- (1) 관용어는 독일어로 한다.
- (2) 관청에 외국어를 사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외국어를 사용하여 청원서, 증서, 문서 또는 기타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청은 지체 없이 번역서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명된 전역문 또는 공적으로 임명되었거나 선서한 통역자나 번역자가 작성한 번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된 번역문이 즉시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청이 직접 관계인의 비용으로 번역을 요구할 수 있다. 관청이 통역자 번역서를 위촉한 경우에는 이들은 증인 및 감정인의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을 받는다.
- (3) 신고, 신청 또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관청이 일정한 활동을 하여야만 되는 기간이 진행되는 경우 이것이 외국어로 제시된 때에는 관청에 번역문이 제출된 시점부터 기간이 진행된다.
- (4) 신고, 신청 또는 의사표시가 외국어로 제출된 경우 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처리기간이 준수되어야 할 때, 공법상의 청구권이 주장될 때, 급부의 요구를 하는 때 등의 경우에 관청이 요구한 상당한 기간내에 번역문이 제출되었을 때는 등의 경우에 관청이 요구한 상당한 기간내에 번역문이 제출되었을 때는 위의 신고·신청 또는 의사표시등은 번역문이 도달되었을 때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국제협정으로 다르게 정하지 아니한 한 번역서가 제출된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위의 기간을 정할 때는 그 법률효과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

제 24 조 직권조사

- (1) 관청은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다. 관청은 조사의 방법 및 범위를 결정하며 관계인의 제의 및 증거신청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 (2) 관청은 개개의 경우에 중요한 관계인에 대하여도 유리한 상황을 모두 고려에 넣어야 한다.
- (3) 관청은 당해 사건에 있어서 의견진술이나 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관할권내에 속한 의견진술이나 신청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제 25 조 조언 및 정보제공

관청은 명백한 과오로 또는 지식의 결여로 말미암아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잘못 제출한 의견진술이나 신청서는 이를 보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청은 필요한 범위내에서 행정절차에서 관계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와 그가 부담하고 있는 의무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제 26 조 증거방법

- (1) 관청은 기속재량에 따라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방법을 사용한다. 관청은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할 수

있다.

1. 모든 종류의 정보수집
 2. 관계인으로부터의 의견청취, 증인과 감정인의 심문 또는 관계인·감정인 및 증인의 서면에 의한 의견청취
 3. 문서 및 기록의 수집
 4. 검증
- (2) 관계인은 사실관계의 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관계인은 특히 자신이 지득한 사실과 증거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 이상의 사실관계 조사시에 협력할 신고의무, 출두의무 또는 의견진술의무는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3) 증인 및 감정인은 법규에 규정된 경우에는 증언 또는 감정의 의무가 있다. 관청이 증인 및 감정인을 소환한 경우에는 요구에 따라 증인 및 감정인의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을 한다.

제 27 조 선서에 갈음한 보증

- (1) 관청은 사실관계를 조사함에 있어서 선서에 갈음한 보증의 수리가 법률 또는 법규명령에 규정되어 있고 당해 관청에 관할권이 귀속된 경우에만 보증을 요구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선서에 갈음한 보증은 진실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른 수단이 없거나 다른 수단으로는 성과를 얻을 수 없거나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만 요구되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93조에서 말하는 선서 무능력자로부터는 선서에 갈음한 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 (2) 관청이 선서에 갈음할 보증을 조서로서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청의 책임자 그의 포괄적인 대리인, 공직자로서 법관의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독일법관법 제11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만이 이를 수리할 수 있다. 기타의 공직자는 관청이 책임자 또는 그의 포괄적인 대리인으로부터 포괄적 또는 개개의 경우에 문서로 이에 대한 권한을 수임받을 수 있다.

- (3) 보증은 보증인이 당해 대상에 관한 의견진술의 정확성을 입증하고 또한 “나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를 숨김없이 말할 것을 선서에 갈음하여 보증하겠습니다”라는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대리인과 보좌인은 선서에 갈음한 보증의 수취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
- (4) 선서에 갈음한 보증을 받기에 앞서 보증인에게 선서에 갈음한 보증의 의의와 부정확 또는 불완전한 보증의 형법상의 효과에 관하여 교시하여야 한다. 교시는 조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 (5) 조서에는 출석자의 성명과 조서기재의 장소 및 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조서는 선서에 갈음한 보증을 한 자에게 확인을 받기 위하여 낭독하거나 요청이 있으면 열람을 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조서는 다음으로 선서에 갈음한 보증인 및 서기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제 28 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 (1) 관계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는 이를 발동하기에 앞서 결정에 따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관하여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관계인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 (2) 개개의 상황으로 보아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는 특히 다음경우에 해당될 때 그러하다.
 - 1. 즉시 결정하는 것이 지체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고 또는 공익상 필요할 때
 - 2. 청문으로 말미암아 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준수가 곤란할 때
 - 3. 관계인이 신청 또는 진술에서 주장한 것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아니할 때
 - 4. 관청이 일반처분이나 동종의 다수인에 대한 행정행위 또는 자동장치를 이용한 때
- (3) 의견청취가 필요한 공익에 배치되는 때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한다.

제 29 조 관계인의 기록열람

- (1) 관청은 관계인이 법률상의 이익을 주장하거나 방어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절차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1단의 규정은 결정을 위한 초안과 행정절차의 직접적인 준비를 위한 작업에 대하여는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할 경우에는 대리인만이 기록열람 청구권을 가진다.
- (2) 관청은 기록열람을 허용함으로써 인하여 관청업무의 질서있는 실시가 저해되거나 기록내용의 공개나 연방이나 주의 복지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관계인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비밀유지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당해 기록의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기록열람은 당해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 관청에서 행한다. 개개의 경우에 다른 관청이나 외국에 있는 독일연방 공화국의 외교대표부나 영사 대표부에서도 열람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기록을 관리하는 관청은 그 밖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제 30 조 비밀유지

관계인은 자신의 비밀 특히 개인적인 생활범위에 속하는 비밀과 경영상의 비밀 및 거래상의 비밀을 관청이 권한없이 누수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2 절 기간·기일·원상회복

제 31 조 기간 및 기일

- (1) 기간의 계산 및 기일의 규정에 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민법전 제187조 내지 제193조를 준용한다.
- (2) 관청이 정한 기간의 진행은 당사자에게 다르게 통지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기간이 고지된 다음날 부터 개시된다.

- (3) 기간의 만료일이 일요일, 법정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음 평일이만료함과 동시에 당해 기간이 만료한다. 이 규정은 당사자에게 특정일을 기간의 만료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관청이 일정한 기일에만 급부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에 그 기일이 일요일, 법정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때에도 그 최종일이 만료함과 동시에 당해 기일이 종료된다.
- (5) 관청이 정한 기일은 이것이 일요일, 법정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한다.
- (6) 시간으로 기간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일요일, 법정휴일 또는 토요일을 계산에 넣는다.
- (7) 관청이 정한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특히 기간 만료로 인하여 발생될 법적효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급하여 연장할 수 있다. 관청은 제36조에 의한 기일의 연장에 부관을 부칠 수 있다.

제 32 조 원상회복

- (1) 과실없이 법정기간의 엄수를 방해받은 자에 대하여는 신청이 있으면 그에게 원상회복을 허용하여야 한다. 대리인의 피대리인에게 귀속된다.
- (2) 신청은 방해가 제거된 후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청에 근거되는 사실은 신청서 제출시에 또는 신청에 관한 절차에서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기간내에는 해태된 행위를 보완하여야 한다. 보완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이도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 (3) 해태된 기간이 종료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기간의 만료전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없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상회복을 그 이상 요구할 수 없거나 해태된 행위를 보완할 수 없다.
- (4) 원상회복에 관한 신청에 대하여는 해태된 행위를 발견한 관청이 결정

한다.

- (5) 법규상 원상회복이 배제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 3 절 공적 인증

제 33 조 등본·복사·복제 및 사진원판의 인증

- (1) 모든 관청은 자신이 교부한 문서의 등본을 확인할 권한이 있다. 그 밖에 연방정부가 법규명령으로 지정한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관청과 주법률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는 관청은 원본이 행정관청에 의하여 교부되었거나 관청에 제시하기 위하여 원본이 필요한 경우에 다른 관청이 공부 및 기록의 인증 원본의 교부권을 배타적으로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등본을 인증할 권한이 있다. 위의 법규명령은 연방상원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2) 등본이 인증되어야 할 서류의 원래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히 당해 서류가 탈문, 삭제, 삽입, 정정, 판독할 수 없는 문자·수자·기호, 문자·수자 또는 기호를 삭제한 흔적이 있는 경우, 또는 수매로 철하여진 서류의 연결부분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원본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등본은 당해 등본 아래에 표시하는 인증표기에 의하여 인증한다. 이 표기에는 다음 각항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등본이 인증되는 서류의 정확한 명칭
 2. 인증되는 등본이 제시한 서류와 일치한다는 확인
 3. 관청이 원본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된 관청에 제출하기 위하여서만 인증사본을 발급하였다는 언급
 4. 인증의 장소와 일시, 인증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서명과 직인
-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인증에 준용한다.
1. 복사, 인쇄 및 이에 준하는 기술적인 처리로 적성된 복제
 2. 서류를 사진찍어 만들어서 관청이 보관하고 있는 사진원판인증된 복

제와 사진원판은 인증된 등본과 동일하게 본다.

제 34 조 서명의 인증

- (1) 연방정부가 법규명령으로 지정한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관청과 주법률에 의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관청은 법규에 근거하여 서명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관청 또는 기타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서명된 서류가 필요할 경우에는 서명을 인증할 권한이 있다. 이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해당되는 원문이 없는 서명
 2. 공증(민법제119조)이 필요한 서명
- (2) 서명은 그것이 인증하는 공무원의 면전에서 하거나 승인된 경우에만 인증된다.
- (3) 인증표기는 서명 바로 옆에 하여야 한다. 인증표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정한 서명이라는 확인
 2. 당해서류의 명칭, 인증관의 확인여부, 면전서명여부 또는 승인여부
 3. 인증이 특정관청에 제출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의 명시
 4. 인증장소, 시일 및 인증관의 서명 및 직인
-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수결 인증에 준용된다.
- (5)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규명령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행정행위

제 1 절 행정행위의 성립

제 35 조 행정행위의 개위

행정행위라 함은 공법영역에 속하는 구체적인 경우를 규율하기 위하여

관청이 발동하는 모든 처분, 결정이나 기타 권력적인 조치로서 대외적으로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처분이라 함은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정하여 지며 또는 특정한 인적 범위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물의 공법적인 특성 또는 일반인의 이용에 관련된 행정행위를 말한다.

제 36 조 행정행위의 부관

- (1) 청구권이 있는 행정행위는 법규에 부관이 허용되어 있거나 부관에 의하여 행정행위의 법률상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때에는 부관을 부칠 수 있다.
- (2) 기속재량에 의한 행정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부관을 부칠 수 있다.
 1. 일정한 시기에 이익 또는 불이익이 발생 또는 소멸하거나 일정한 기간 유효하다는 것을 정하는 것(기한)
 2. 이익 또는 불이익의 발생·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결부시키는 것(조건)
 3. 철회권의 유보
 4. 수익자에게 작위·부작위 또는 수인의무를 명하는 것(부담)
 5. 부담의 추가·변경 또는 보완의 유보
- (3) 부관은 행정행위의 목적에 반하여 부칠 수 없다.

제 37 조 행정행위의 명확성 및 형식

- (1) 행정행위는 그 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
- (2) 행정행위는 문서, 구두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구두에 의한 행정행위는 이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이 있고 또한 당사자가 적시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 (3) 문서에 의한 행정행위는 이를 발한 관청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관청의 책임자, 대리인 또는 수임자의 서명이 있거나 성명이 표기되어야 한다.

- (4) 자동장치를 이용한 문서에 의한 행정행위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명과 성명표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정행위의 대상이 된, 또는 행정행위와 관련을 가지는 자가 첨부된 설명에 의하여 행정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을 경우에는 내용표시를 위하여 부호를 사용할 수 있다.

제 38 조 확 증

- (1) 관할관청이 행한 약속으로서 일정한 행정행위를 추후에 발동하거나 발동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증은 그것이 발생하게 하기 위하여는 문서상의 형식을 요한다. 법규에 근거한 행정행위를 하기에 앞서 관계인의 의견청취나 위원회 또는 타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관청 또는 협력이 있는 후에 확인할 수 있다.
- (2) 확증의 무효에 대하여는 제1항 제1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4조의 규정을, 관계인의 의견청취나 타관청 또는 위원회의 협력에 있어서의 하자치유에 대하여는 제45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와 동조제2항의 규정을, 확증의 취소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을, 확증의 철회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3) 확증을 한 후, 관청이 그 후에 발생한 변경을 알았다더라면 그 확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법적 상태가 변경된 때는 관청은 그 이상 확증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제 39 조 행정행위의 이유제시

- (1) 문서에 의한 행정행위 또는 문서에 의하여 입증된 행정행위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유를 제시함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주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이유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재량결정의 이유에는 재량권을 사용함에 있어 관청의 시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관청의 신청이나 기술에 따라 그에 상응하게 행정행위를 하였고 또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 때
2. 행정행위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사실상 및 법률상의 상태에 관한 관청의 견해를 이미 알고 있거나 문서에 의한 이유가 아니라도 바로 알 수 있을 때
3. 관청이 동일한 종류에 행정행위를 여러차례 하였거나 자동장치를 이용하여 행정행위를 하고 또한 개개의 경우 사정에 따라 이유제시가 불필요할 때
4. 법규상 이유제시가 불필요하다는 규정이 있을 때
5. 일반처분이 공고된 때

제 40 조 재량권

관청이 자신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그 재량권을 수권의 목적에 상응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재량권의 법적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41 조 통 지

- (1) 행정행위는 그 상대방이나 이와 관련된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임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통지할 수 있다.
- (2) 기본법의 시행범위내에서 우편으로 통지된 문서에 의한 행정행위는 그것이 도달되지 아니하였거나 늦게 도달된 것이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송된 후 3일에 통지된 것으로 본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관청이 도달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한다.
- (3) 행정행위는 법규에 허용된 경우에는 공고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일반처분은 관계인에 대한 개별통지를 하기 곤란한 때에도 공고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
- (4) 문서에 의한 행정행위의 공고는 처분의 주문이 통상의 방법으로 고지됨으로써 효력이 있다. 공고에는 당해 행정행위와 그 이유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행정행위는 공고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날에 고지된 것으로 본다. 일반처분에 있어서는 이와 다른 일자에 빨라도 고지한 다음날에 고지된 것으로 할 수 있다.

(5) 송달에 의한 행정행위의 고지에 관한 규정은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 42 조 명백한 오류

관청은 행정행위에 있어서의 오기, 오산 및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언제든지 정정할 수 있다. 관계인에게 정당한 이익이 있을 때에는 정정하여야 한다. 관청은 정정할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 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 43 조 행정행위의 효력

- (1) 행정행위는 특정인 또는 관계인에게 고지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행위는 고지된 내용에 따라 효력을 발한다.
- (2) 행정행위는 취소, 철회, 폐지 또는 기간만료나 기타방법으로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지속한다.
- (3) 무효의 행정행위는 효력을 발하지 아니한다.

제 44 조 행정행위의 무효

- (1) 행정행위가 특별히 중대한 하자가 있고 또한 그 하자가 관련한 제반사정으로 판단하여 명백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행위는 제1항의 조건의 존재여부를 불문하고 무효로 한다.
 1. 문서로 한 처분으로서 처분청을 알 수 없을 때
 2. 법규상 문서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형식이 충족되지 못한 때

3. 관청이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할범위 밖에서 수권을 받지 아니한 행정행위
 4. 사실상의 이유로 누구라도 행할 수 없는 행정행위
 5. 형벌 또는 과태료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요구하는 행정행위
 6.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정행위
- (3) 행정행위는 다음 각호의 이유만으로는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1. 제2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관할권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2. 제16조 제1항 제1단 제1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제척되는 자를 참여시켰다는 이유
 3. 법규에 의하여 참여할 권한이 있는 위원회가 행정행위의 발동을 위하여 규정된 의결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의결능력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이유
- (4) 행정행위의 일부만이 무효로 된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이 없었던들 관청이 그 행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리 만큼 하자가 중대한 때에는 당해 소정행위는 무효로 한다.
- (5) 관청은 언제든지 무효를 선언할 수 있으며 신청이 이에 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경우에 신청이 있으면 이를 선언하여야 한다.

제 45 조 하자의 치유

- (1)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행위가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절차법규 또는 형식법규의 위반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를 문제로 삼지 아니한다.
1. 행정명령의 발동에 필요한 신청을 사후에 제출한 경우
 2. 필요로 하는 사유가 사후에 제시된 경우
 3. 필요로 하는 관계인의 청문을 사후에 보완한 경우
 4. 행정행위의 발동을 위하여 참여하여야 할 위원회의 결의를 사후에 행한 경우

5. 필요로 하는 다른 관청의 협력을 보완한 경우

- (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또는 예비절차(전치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 종료시까지만 보완될 수 있다.
- (3) 행정행위에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관계인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진술을 듣지 아니하였거나 관계인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진술을 듣지 아니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당해 행정행위에 대한 적시의 취소청구가 도과된 때에는 법적 구제기간의 태만은 유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2조 제2항에 의한 원상회복에 대하여 표준이 되는 사실은 부작위의 절차행위자가 보완된 시기에 발생한다.

제 46 조 하자의 효과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행정행위는 사안에 따라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없었던 경우에는 절차나 형식 또는 토지관할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성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폐지를 요구할 수 없다.

제 47 조 하자의 전환

- (1)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처분청에 의하여 종전의 절차상의 방법과 형식으로 적법하게 발동될 수 있고, 행정행위의 발동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고 다르 나행정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 (2) 전환된 행정행위가 처분청에 인식될 수 있는 의도에 반한 것이거나 그 법적 효과가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보다 당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의 전환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3) 법률에 기속되어서 발할 수 있는 결정은 재량결정으로 전환할 수 없다.
- (4)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8 조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

- (1) 위법한 행정행위는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도 장래 또는 과거에 향하여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권리 또는 법률상의 중대한 이익을 설정하거나 제2항 내지 제4항의 제한 아래에서만 취소할 수 있다.
- (2) 위법한 행정행위로서 1회 또는 계속적인 금전급여나 분할할 수 있고, 물적급여를 제공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는 행정행위는 수익자가 행정행위의 존속을 신뢰하고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그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지급받은 급여를 사용하였거나 수익자가 이미 돌이킬 수 없거나 막대한 불이익을 받고서만 돌이킬 수 있는 재산상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신뢰는 일반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뢰를 주장할 수 없다.
1. 간계에 의한 사기 또는 강박이나 증수죄에 의하여 행정행위를 유발한 때
 2.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실한 신고를 함으로써 행정행위를 유발한 때
 3.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제3단의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과거에 소급하여 취소된다. 행정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급여는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상의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반환업무자는 그가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득의 멸실을 주장할 수 없다. 반환된 급여의 금액은 행정행위의 취소와 동시에 당해 관청에 의하여 확정된다.
- (3)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위법한 행정행위를 취소한 경우에는 당해 관청은 신청이 있으면 당사자가 행정행위의 존속을 신뢰함으로써 인하여 받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

퇴가 공익을 고려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에는 제2항 제3단의 방법을 적용한다. 재산상의 불이익은 당사자가 행정행위의 존속으로 받게 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상될 수 없다. 보상될 재산의 불이익은 관청이 결정한다. 청구권은 1년내에서만 할 수 있고 기간은 당해 관청이 당사자에게 통지한 때로부터 진행된다.

- (4) 관청이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1년내에서만 취소가 허용된다. 제2항 제3단 제1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5)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 관청이 이를 결정한다. 취소하여야 할 행정행위가 다른 관청에 의하여 발동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금액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받을 재산상의 불이익에 관한 재송에 대하여는 수용과 유사한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보상이 고려되지 아니하는 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49 조 적법한 행정행위의 철회

- (1) 적법과 비수익적 행정행위는 불가쟁력이 생긴 후에도 동일한 내용의 행정행위를 다시 발하여야 하거나 또는 다른 사유로 철회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 (2) 적법과 수익적 행정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행정행위가 불가쟁력을 발생한 후에라도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1. 철회가 법규에 의하여 허용되었거나 행정행위로 유보된 경우
 2. 행정행위로 부담이 부과된 것을 수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법정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후일에 발생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관청이 행정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행위를 철회하지 않는 경우
 4. 개정된 법규에 근거하여 관청이 행정행위를 할 수없게 된 경우로서 수익자가 수익내용을 아직 이용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행위에 근거한 급부를 아직 받지 못한 경우에 철회를 하지 아니하면 공공의 이익에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
 5.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이 경우에는 제48조 제3항을 준용한다.
- (3) 철회되는 행정행위는 관청이 그 철회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철회가 효력을 발생함과 동시에 무효로 된다.
- (4)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생긴 후의 철회에 관하여는 제3조에 의한 관할관청이 결정하여 철회되는 행정행위가 다른 관청에 의하여 발하어진 경우에도 또한 같다.
- (5) 이익을 주는 행정행위가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철회되는 때에는 행정행위의 존속의 신뢰가 보호될 가치가 있는 한 관청은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가 행정행위의 존속을 신뢰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48조 제3항 제3단 내지 제5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상에관한 쟁송에 대하여는 통상의 소송절차에 의한다.

제 50 조 구제절차에 있어서의 취소 및 철회

제48조 제1항 제2단, 제2항 내지 제4항, 제6항, 제49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자로부터 취소신청이 있는 수익적 행정행위가 전치절차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 폐지된 경우 이의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용인될 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51 조 절차의 재심

- (1) 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행

위의 폐지나 변경에 관하여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사실상태 또는 권리상태를 사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2.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3. 민사소송법 제508조에 준하는 재심의 사유가 부여된 경우
- (2) 위의 신청은 당사자가 증대한 과실없이 종전에 대한 재심사유 특히 이의제기를 통하여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3) 신청은 3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당사자가 재심에 관한 사유를 인식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 (4) 신청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가진 관청이 결정한다. 폐지 또는 변경이 요구된 행정행위가 다른 관청에 의하여 발하여진 경우에도 또한 같다.
- (5) 제48조 제1항 제1호와 제49조 제1항의 규정은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52 조 문서 및 물건의 반환

행정행위가 다룰 수 없게 철회 또는 취소되었거나 행정행위의 효과가 다른 사유에 의하여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그 이상 발생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관청은 당해 행정행위에 의하여 교부된 문서나 물건으로서 행정행위에 의한 권리의 입증을 위하여 또는 그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증서 또는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증서나 물건의 소유자와, 소유자가 점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점유자도 이를 반환할 의무를 진다. 소유자와 점유자는 당해 증서나 물건을 관청이 무효한 것으로 표시한 후에 다시 수교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표시를 할 수 없거나 필요한 내용을 명백하고 영구하게 나타낼 수 없는 물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 절 행정행위의 시효

제 53 조 시효의 중단

- (1) 공법상의 권한있는 자의 청구권의 행사를 위하여 발하여진 행정행위는 청구권의 시효를 중단시킨다. 시효중단은 행정행위가 불가쟁력을 발생할 때까지 또는 행정행위의 발동에 기여하는 행정절차가 다른 방법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계속한다. 이 경우에는 민법전 제2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2) 제1항의 행정행위가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는 민법전 제2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공법상의 계약

제 54 조 공법상 계약의 내용

공법영역에 있어서의 권리관계는 법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계약에 의하여 발생·변경 또는 소멸된다. 특히 관청은 행정행위를 갈음하여 당사자와 공법상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55 조 화해계약

제54조 제2단에서 말하는 공법상의 계약으로서 사실관계나 권리관계를 평가함에 있어 존재하는 불확실한 것은 상대방과의 타협을 통하여 제거하게 되는 화해는 관청이 기속재량에 따라 화해계약의 체결이 합목적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체결할 수 있다.

제 56 조 교환계약

- (1) 제54조 제2단에서 말하는 공법상의 계약으로서 관청이 계약당사자에게 반대급부의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은 특정목적을 위한 반대급부가

- 계약으로 합의되고 관청이 자신의 공공업무수행이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체결할 수 있다. 반대급부는 전체의 상황에 적절하여야 하며, 또한 관청의 계약상의 급부와 실질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2) 관청의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발동시에 제36조에 의한 부관의 내용으로서 부칠 수 있는 반대급부에 한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 57 조 서면형식

공법상의 계약은 법규에 다른 형식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 58 조 제3자 및 관청의 동의

- (1)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의 계약은 제3자가 서면으로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 (2) 법규에 다른 관청의 특허, 동의나 협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행정행위에 갈음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유효하다.

제 59 조 공법상 계약의 무효

- (1) 공법상의 계약은 민법전 규정의 준용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2) 제54조 제2단에서 말하는 공법상의 계약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도 무효로 한다.
1. 상응하는 내용의 행정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
 2. 상응하는 내용의 행정행위가 단순히 제46조에서 말하는 절차상 또는 형식상의 하자만의 이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법으로 된 것으로서 또한 그러한 사실이 계약당사자에게 고지되었을 때

3. 화해계약의 체결을 위한 요건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또한 상응되는 내용의 행정행위가 제46조에서 말하는 절차상 또는 형식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서만 위법으로 된 것이 아닌 경우
 4. 관청이 제56조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반대급부를 약속한 경우
- (3) 계약의 일부만이 무효로 된 경우에 당해 계약이 무효의 부분이 없으면 체결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전부 무효로 한다.

제 60 조 계약의 조정과 해지

- (1) 계약내용의 결정에 기준이 된 상황이 계약체결후 한쪽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원래 계약상의 규정을 이행하여 줄 것을 기대할 수 없을만큼 변경된 경우에는 다른 계약당사자는 변경된 상태로 계약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조정이 불가능한 때 또는 이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관청은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 해지는 법규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해지는 그 사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61 조 즉시집행의 복종

- (1) 각 계약체결자는 제54조 제2단에서 말하는 공법상의 계약에 의한 즉시집행에 복종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관청은 관청의 책임자, 그의 포괄적 대리인 또는 독일법원법에 의한 법관직을 담당할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동법 제110조 제1단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원에 의하여 대행된다. 즉시집행의 복종은 계약체결관청의 관할 감독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 허가는 연방최고관청 또는 주최고관청으로부터 선언되었을 때에는 필요하지 아니한다.
- (2) 제1항 제1단에서 말하는 공법상의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자가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관청일 경우에는 연방의 행정집행법을 준

용한다. 자연인이나 사법상의 법인 또는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 금전 채권을 이유로 집행하려고 할 때에는 행정법원법 제17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조 제1항에서 말하는 관청에 대하여 작위, 수인 또는 부작위를 시행하기 위하여 집행을 할 경우에는 행정법원법 제1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2 조 법규의 보충적용

제54조 내지 제61조에서 다르게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기타규정을 적용한다. 민법전의 규정은 보충적으로 준용한다.

제 5 장 특별절차

제 1 절 정식행정절차

제 63 조 정식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의 적용

- (1) 이 법에 의한 정식행정절차는 법규에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행한다.
- (2) 정식행정절차에 관하여는 제64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 이 법률의 기타의 규정을 적용한다.
- (3) 제17조 제2항 제2단에 의한 고지와 제17조 제4항 제2단에 의한 요청은 정식행정절차로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는 당해 관청이 관보에 게재하는 동시에 결정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범위로 배포되는 지역일간신문에 고시함으로써 행한다.

제 64 조 신청형식

정식행정절차가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은 서면으로 또는

조서에 기재하여 관청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 65 조 증인 및 감정인의 협력

- (1) 정식행정절차에서는 증인은 증언을 하고 감정인은 감정을 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에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고 감정인으로서 감정을 하는 의무에 관한, 감정인의 기피에 관한,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서의 공무원의 심문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2) 증인 또는 감정인이 민사소송법 제376조, 제383조 내지 제385조 및 제408조에 계기된 사유가 없음에도 증인이나 또는 감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청은 당해 증인이나 감정인의 주소지나 거소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대하여 심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법원의 소재지나 특별히 설치된 심판부의 소재지에 증인이나 감정인의 주소나 거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구법원에 대하여는 심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함에 있어서는 심문할 사항을 열거하여야 하고 관계인의 성명과 주소를 명기하여야 한다. 법원은 관계인에게 증거조사기일을 고지하여야 한다.
- (3) 관청은 증인의 증언 또는 감정인의 감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또는 진실대로의 증언을 받기 위하여 선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 대하여 선서에 의한 심문을 요청할 수 있다.
- (4) 법원은 증언거부, 감정거부 또는 선서거부의 적법성에 관하여 결정을 한다.
- (5)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한 법원에 대한 요청은 관청의 책임자 그의 포괄적 대리자 또는 독일법관법에 의하여 법관직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공무원만이 할 수 있다.

제 66 조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 (1) 정식행정절차에 있어서는 결정에 앞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

술할 수 있는 기회를 관계인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 (2) 관계인에게는 증인 및 감정인의 심문과 검증에 입회하고 또한 이에 대하여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서면에 의한 감정은 관계인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67 조 구두심리

- (1) 관청은 구두심리를 거쳐 결정을 내린다. 이를 위하여 서면으로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을 소환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인이 출두하지 아니할 때에 관계인이 없어도 심리를 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소환될 자가 300인 이상일 때는 소환은 공고에 의하여 갈음할 수 있다. 공고는 제3단에 의한 명시를 포함하여 심리기일의 적어도 2주일전에 관보 및 결정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범위로 배포되는 지역일간신문에 고시함으로써 행한다. 제5단에 의한 기간에 관하여는 관보에 의한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 (2) 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두심리 없이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 모든 관계인의 협의를 거쳐 완전하리만큼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2. 관계인이 규정된 기간내에 예정된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관청이 관계인에게 구두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결정을 하겠다는 통지를 한 경우에 관계인이 규정된 기간내에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4. 모든 관계인이 구두심리를 포기한 경우
 5. 지체될 우려가 있어 이로 인한 급해를 막기 위하여 즉시결정이 필요한 경우
- (3) 관청은 가능한 한 심리기일내에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제 68 조 구두심리의 진행

- (1) 구두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감독관청의 대리자와 교육훈련을 위하여 관청에서 수습중인 자는 구두심리에 참여할 수 있다. 심리책임자는 관계인이 이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타의 자를 구두심리에 참석시킬 수 있다.
- (2) 심리책임자는 당해 사안에 관하여 관계인과 충분히 토론을 하여야 한다. 심리책임자는 불명확한 신청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적절한 제의를 하며 불충분한 진술을 보완하고 또한 사실관계의 확정에 중요한 관련성을 가지는 모든 설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심리책임자는 질서유지에 책임을 진다. 심리책임자는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를 퇴장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자가 없어도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
- (4) 구두심리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리장소와 일시
2. 심리책임자의 성명, 출석한 관계인, 증인 및 감정인
3. 처리된 절차상의 대상과 제출된 신청
4. 증인과 감정인의 중요한 증언내용
5. 검증의 결과

조서는 심리책임자가 서명하여야 하고 서기가 입회한 경우에는 서기도 서명을 하여야 한다. 별첨으로써 조서에 첨부되거나 그러한 것으로 표기된 문서의 작성과 동일하다고 본다. 심리조서에는 첨부서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 69 조 결 정

- (1) 관청은 절차의 모든 결과의 평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 (2) 정식행정절차를 종결하는 행정행위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제시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유의 제시를 요하지 아니한다. 300인 이상에게 송달을 할 경우에는 이를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공고는 행정행위의 내용과 권리구제에 대한 교시를 관보 및 결정의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일간신문에 고시함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에 행정행위는 관보에 공고된 후 2주 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내용은 고시를 언급하여야 한다. 관계인은 공고후 권리구제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당해 행정행위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도 고시에서 언급하여야 한다.

- (3) 정식행정절차가 다른 방법으로 종료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항 제3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70 조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정식행정절차에 의하여 행한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은 소의 제기애 앞서 전치절차로서의 심사는 요하지 아니한다.

제 71 조 위원회의 정식절차에 대한 특별규정

- (1) 정식행정절차가 위원회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은 적절한 질문을 할 권리를 가진다. 관계인이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허용에 대한 결정을 한다.
- (2) 심의와 표결에 있어서는 구두심리에 참여한 위원회 구성원만이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가 구성된 관청에서 교육훈련을 위하여 수습중인 자도 위원회의 장으로부터 출석을 허용받은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표결 결과는 명기하여야 한다.
- (3) 모든 관계인은 그 행정절차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된 위원회의 구성원과(제20조) 불공정의 우려가 있는 위원회의 구성원을(제21조) 기피할 수 있다. 구두심리에서의 기피는 서면으로 또는 조서에 기재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관계인이 그가 지득한 기피사유를 주장함이 없이 구

두심리에 참여한 경우에는 기피에 대한 결정에는 제20조 제4항 제2단 내지 제4단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2 절 계획확정 절차

제 72 조 계획확정 절차에 관한 규정의 적용

- (1) 계획확정 절차가 법규에 규정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제 73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위의 규정에서 별다른 규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기타규정을 적용하고 제51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제29조의 규정은 서류열람이 기속재량에 의하여서만 허용될 것을 기준으로하여 적용한다.
- (2) 제7조 제2항 제2단에 의한 통지와 제17조 제4항 제2단에 의한 요청은 계획확정 절차에서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는 당해 관청이 통지 또는 요청사항을 판보와 지역일간신문에 고시함으로써 시행한다.

제 73 조 청문절차

- (1) 계획담당자는 당해 계획서를 청문절차의 시행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계획서는 세부계획, 계획의 동기 및 계획과 관련된 토지와 시설이 명시된 도면과 설명을 내용으로 한다.
- (2) 관련관청은 계획으로 말미암아 사무범위에 영향을 받게되는 관청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 (3) 계획은 청문행정청의 권유에 따라 기업안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지방공공단체에 한달간 열람에 붙여야 한다. 관계자의 범위가 알려져 있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들에게 계획을 열람할 기회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단의 열람제공을 아니할 수 있다.
- (4) 기업안에 의하여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게 되는 자는 누구든지 열람기간만료 후 2주간내에 서면으로나 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청문행정청이나 지방공공단체에 계획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항 제2단

의 경우에는 청문행정청이 이의신청기간을 정한다.

(5) 계획을 열람할 지방공공단체는 열람을 적어도 1주일전에 그 지방의 관행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이 언급되어야 한다.

1. 계획을 열람에 제공할 장소와 시기
2. 혹시 이의가 있으면 공고에 제기된 기관에 이의신청기간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
3. 관계인이 토의기일에 출두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인 없이도 변론될 수 있다는 것 및 지체된 이의신청은 토의시나 결정시에 고려될 수 없다는 것
4. 300인 이상에 대한 통지나 송달을 할 때, 이의신청을 제기한 자에 대한 토론키일은 공고에 의하여 고시될 수 있다는 사실과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의 송달은 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는 사실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분과 주소를 알고 있거나 적당한 기간내에 알 수 있는 당사자로서 당해 시읍면에서 정주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청문관청의 요구가 있으면 전시의 사실을 제2단에 의한 고시사항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6) 청문관청은 이의신청기간이 지나면 적시에 제기된 당해 계획과 그 계획을 위한 관청의 방침에 대한 이의신청을 당해 계획의 담당자, 관청, 관계인 및 이의신청을 제기한 자와 함께 토론되어야 한다. 또한 청문관청은 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도 검토할 수 있다. 토론신청은 적어도 토론키일 1주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관청과 계획의 주체 및 이의신청을 제기한 자에게는 토론키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관청과 관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외에 300인 이상에게 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공고는 제3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보에 고시하는 외에 지역일간신문에도 고시하여야 한다. 관보에 의한 고시는 제1단에 의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토론에 있어서는 정식행정절차의 구두심리에 관한 규정(제67조 제1항 제3단, 제2항 제1호 및 제4호와 제3항, 제68조)을 준용한다.

- (7) 제5항 제2단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서는 제6항 제2단 내지 제5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론기일을 미리 정할 수 있다.
- (8) 종람을 위하여 전시된 계획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 이로 말미암아 관청의 사무범위나 제3자의 이해에 영향을 주게 되는 때에는 이들에게 변경의 사실을 토지하여야 하며 또한 이들에게 2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른 시읍면지역에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읍면에서 전시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9) 청문관청은 청문절차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결정하고 미결된 이의신청과 함께 늦어도 토론종결후 2주일 이내에 계획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 74 조 계획확정 재결

- (1) 계획확정관청은 계획을 확정한다. 이 경우에는 정식행정절차(제69조 및 제70조)에서의 결정과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2) 계획확정관청은 계획확정을 함에 있어서 청문관청에서의 토론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이의에 관하여 결정을 한다. 계획확정관청은 계획의 주체에게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또는 타인의 권리에 대한 불이익한 효과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대책이나 시설의 설치와 유지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책이나 시설을 할 수없거나 이러한 것이 계획과 합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사자는 적절한 금전상의 보상청구권을 가진다.
- (3) 종국적인 결정을 아직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획확정재결에서 이를 유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획담당자에게 아직 부족한 자료 또는 계획확정관청이 지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4) 계획확정 재결은 계획의 주체, 알려진 관계인 이의결정을 받는 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재결의 정본은 권리구제의 교시 및 확정된 계획의

정본과 함께 당해 시읍면에서 2주일 동안 열람을 위하여 전시되어야 한다. 전시의 장소와 일시는 공고되어야 한다. 전시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그 밖에 당사자에 대하여 재결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이는 공고할 때에 명시하여야 한다.

- (5) 계획의 주체 이외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300인 이상에게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송달은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공고는 관보와 지역일간신문에 계획확정 재결의 내용, 권리구제의 고시 및 제4항 제2단에 의한 전시에 관한 사항을 고시함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에 부담에 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 재결은 종람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당사자와 이의신청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대하여는 공고시에 언급하여야 한다. 당사자와 이의신청자는 공고된 후 권리구제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당해 계획확정 재결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도 공고시에 언급하여야 한다.

제 75 조 계획확정의 법적 효과

- (1) 계획에 관련된 모든 공공의 이해를 고려하고 기타의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포함하여 계획의 허용성이 확정된다. 계획확정에 부가하여 다른 관청의 결정, 특히 공법상의 허가, 특허, 인가, 승인, 동의 및 계획확정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계획확정으로 인하여 계획의 주체와 계획에 관련된 당사자간의 모든 공법상의 관계는 권리설정적으로 제정된다.
- (2) 계획확정 재결이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는 계획의 불시행, 시설의 제거나 변경, 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 등에 관한 청구권은 배제된다. 계획이 불가쟁력을 발생한 후에 계획이나 확정된 계획에 상응하는 시설이 타인의 권리에 대하여 예측하지 아니한 효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당사자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할 대책이나 시설의 설치와 유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는 계획확정관청의 재정에 의하여 계획의 주체에게 명하여 진다. 이러한 대책이나 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이

러한 것이 계획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적절한 금전 보상청구권을 가진다. 계획확정절차가 종료한 후에 인접한 토지에 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제2단에서 말하는 대책이나 시설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이로 말미암아 발생된 비용은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적인 사고나 불가항력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제4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제2항 제2단 및 제4단에 의한 시설의 설치 또는 보상청구권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신청은 서면으로 계획확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의 신청은 당사자가 불가쟁력이 발생된 확정계획에 상응한 계획 또는 시설의 불이익을 인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만 허용된다.
- (4) 계획이 불가쟁력이 생긴 후 5년 이내에 시행이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획은 무효로 한다.

제 76 조 계획의 변경

- (1) 계획이 실현되기 전에 확정된 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획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 (2) 중요성이 없는 계획변경의 경우에 타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이 없거나 관계인이 변경에 동의한 때에는 계획확정관청은 새로운 계획확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경우 또는 기타 중요한 의미가 없는 계획변경에 있어서의 계획확정 절차는 청문절차 및 계획확정 재결공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 77 조 확정된 계획의 폐지

시행이 개시된 계획이 최종적으로 폐기된 경우에는 계획확정관청은 계획확정재결을 폐지하여야 한다. 폐지재결을 함에 있어서 공공복리 또는 타인의 권리에 대한 불이익이 평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주체에 게 원상회복이나 적당한 다른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계획확정 절차가 종

료된 후 인접한 토지에 변동이 있음을 이유로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확정관청의 결정으로 계획주체에게 적당한 대책을 세울 업책을 세울 업무를 부과할 수 있고, 그 비용은 당해 변동이 자연적인 사고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78 조 계획의 경합

- (1) 계획확정 절차의 시행에 있어 수개의 계획이 단일한 결정이 가능한 정도로 내용이 일치하고 계획확정 절차중 하나라도 연방법에 규정된 때에는 하나의 계획확정절차만을 시행한다.
- (2) 제1항의 관할권 및 절차는 보다 넓은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계획확정 절차에 의한다. 어느 법규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에 다수의 연방최고관청의 직위가 다수의 관청에 관할권이 있을 때는 연방정부가 정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연방최고관청이 정한다. 어느 법규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의 연방청과의 하나의 주관청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연방최고관청 주최고관청이 협의하고 그 협의가 합의되지 아니하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6 장 권리구제절차

제 79 조 행정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행정행위에 대한 정식권리구제에 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방재판소법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발한 법규를 적용한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80 조 전치절차의 비용보상

- (1) 異誤심사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는 다툼이 있는 행정행위를 한 관청은

이의심사를 청구한 자에게 목적에 상응한 권리의 추구 및 보호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절차 또는 형식규정의 위반이 제 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려되지 아니하는 이유만으로 인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의심사청구가 인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심사를 청구한 자는 다툼이 있는 행정행위를 발동한 관청에 대하여 목적에 상응한 권리추구나 권리보호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재 또는 과거의 공법상의 근무관계 또는 직무관계
 2. 현재 또는 과거의 법률상의 근무의무나 법률상의 근무의무에 갈음하여 제공할 수 있는 근무활동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과실로 인하여 소요된 비용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한다. 대리인의 과실은 피대리인에게 귀속된다.
- (2) 전치절차에 있어서의 변호사 또는 대리인의 수수료와 실비는 당해 대리인의 참여가 필요하였던 경우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 (3) 비용결정을 내린 관청은 신청이 있으면 보상될 비용이 금액을 확정한다. 위원회나 심의회(자문기관)가 비용을 결정한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나 심의회가 조직되어 있는 관청이 비용을 확정할 의무가 있다. 비용결정은 변호사 또는 대리인의 조력의 필요성 여부도 결정한다.
-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법관 직무법인의 조치에 대한 전치절차에도 적용한다.

제 7 장 명예활동 및 위원

제 1 절 명예직활동

제 81 조 명예직활동에 관한 규정의 적용

행정절차에 있어서의 명예직활동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제82조 내지 제8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82 조 명예직활동의 의무

법규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명예직활동의 수락의무가 있다.

제 83 조 명예직의 활동

- (1) 명예직에 종사하는 자는 자신의 활동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2) 명예직종사자는 업무를 수락함에 있어 성실하고 공정한 활동을 할 의무와 특히 비밀을 엄수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의무를 지울 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 84 조 비밀엄수의무

- (1) 명예직종사자는 그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자신이 지득한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직무상의 연락에 의한 통지 또는 공개되었거나 그 내용으로 보아 비밀이 엄수될 필요가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명예직종사자는 비밀을 엄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원 또는 법원의외에서 증언을 하거나 진술을 할 수 없다.
- (3) 증언이 연방 또는 주의 복리에 불이익을 주게 되거나 공공업무 수행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거나 또는 현저한 곤란이 생기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증인으로서 증언의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 (4) 명예직종사자가 법원의 절차에서 관계인이 되는 경우 또는 지득한 사항의 제출이 자신의 정당한 이익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도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는 공공이익상 그 거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 허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명예직종사자에게 공익이 허용하는 보호를 하여야 한다.

- (5)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명예직종사자를 임명한 관청의 관할 감독관청이 부여한다.

제 85 조 실비보상

명예직종사자는 필요한 실비와 자신의 수익손실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다.

제 86 조 무 직

명예직에 위촉된 자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을 위촉한 관청에 의하여 면직될 수 있다. 특히 명예직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자신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하였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자신의 활동을 규정된 대로 더이상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 87 조 질서유지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질서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1. 명예직활동을 맡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맡지 아니하는 자
2. 명예직활동을 맡을 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그 직을 사퇴한 자

(2) 질서위반에 대하여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제 2 절 위원회

제 88 조 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적용

위원회, 심의회(자문기관) 및 기타 합의제의 조직이 행정절차상의 활동을 할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89조 내지 제9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89 조 회의질서

의장은 회의를 개최하고 주재하며 또한 폐회한다. 의장은 질서유지에 책임을 진다.

제 90 조 의결능력

- (1) 위원회는 모든 구성원에게 회의소집이 통보되어 표결권이 있는 위원의 과반수(다만, 적어도 3인 이상)가 출석해야 의결능력이 있다. 의결은 구성원의 반대가 없는 경우는 서면에 의한 절차로도 할 수 있다.
- (2) 어떠한 안건이 의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유보되고 또한 위원회가 동일한 안건을 다루기 위하여 재소집된 경우에 출석한 구성원수에 구애 없이 의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집시에 통지된 때에는 출석한 구성원수에 관계없이 의결할 수 있다.

제 91 조 의결방법

의결은 과반수의 표결로 행한다.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표결권을 가지고 있으면 의장이 결정한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가부동수는 부결로 본다.

제 92 조 위원회에 의한 선거

- (1) 위원회의 구성원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박수 또는 기호(신호)에 의하여 선거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의한다. 구성원의 요구가 있으면 질밀선거를 하여야 한다.
- (2) 최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93 조 회 의

회의의 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장소 및 일시
2. 의장 및 출석한 구성원의 성명
3. 처리안건과 제시안건
4. 결정된 의결
5. 선거의 결과 회의록은 의장이 서명하고 서기가 입회한 경우에는 서기도 서명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 94 조 업무의 위임

주정부는 법규명령으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읍면에서 수행할 책임이 있는 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행정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상응하는 규정을 이미 가지고 있는 주의 법규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95 조 방위사무에 관한 특별규정

- (1) 방위사태나 긴급사태의 확인후에는 방위사무에 대하여, 관계인의 청문(제28조 제1항), 서면에 의한 확정(제73조 제2항 제2단) 및 행정행위의 서면에 의한 이유부기(제39조 제1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행정행위는 제41조 제4항 제3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고한 익일에 고지된 것으로 본다. 기본법 제80조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기타의 법규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2) 제1항의 규정은 베를린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96 조 경과규정

- (1) 이미 개시된 절차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종결되어야 한다.
- (2) 이 법 시행전에 발하여진 결정에 대한 권리구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 시행전에 진행이 개시된 기간은 종전의 법규에 따라 계산한다.
- (3) 이 법 시행전에 진행이 개시된 기간은 종전의 법규에 따라 계산한다.
- (4) 전치절차의 비용보상에 관하여는 당해 전치절차가 이 법 시행전에 종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97 조 행정소송법의 개정

(IC 10에 개정되어 있다.)

제 98 조 연방장거리도로법의 개정

(VI C21에 개정되어 있다.)

제 99 조 연방 [이미시온]방지법의 개정

(IL 10에 개정되어 있다.)

제 100 조 주법률상의 규정

각주는 법률로써 다음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 1. 제16조에 상응하는 규정을 설정하는 것
- 2. 주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계획확정에 있어서 제75조 제1항 제2단의 법적 효과가 연방법에 의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결정에 대하여 유효한 규정을 두는 것

제 101 조 Stadtstaaten 조항

베를린, 브레멘 및 함부르크주의 주행정청(Senata)은 지역관할권을 제3조와 달리 이들 주의 특별행정조직에 상응하게 규율할 권한을 가진다. 이들 주에는 제61조 제1항 제3단에 의한 인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 102 조 베를린 조항

본법은 1952년 1월 4일의 제3차 이양법(연방법률관보 I 1면)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베를린주에도 적용된다. 본법에 근거하여 발하여진 법규명령은 제3차 이양법 제14조에 따라 베를린주에 적용된다.

제 103 조 시 행

- (1) 본법은, 제2항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2) 제33조 제1항 제2단과 제34조 제1항 제1단에 규정된 권한, 제34조 제5항 및 제100조는 공포한 다음 날부터 시행된다. 위의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Ⅶ. 통독 난민 관련법

피추방자와 탈주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1 절 총 칙

제 1 조 피추방자

- (1) 피추방자라 함은 독일국적인 또는 독일민족에 속하는 자로서 다른 국가의 관리하에 있는 동독지역 또는 1937년 12월 31일의 영토상태에 의하여 독일제국의 국경선밖에 놓인 지역에 자신의 주소를 두었다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와 관련한 추방 특히, 축출이나 도피등으로 인하여 그 주소를 상실한 자로 한다. 수개의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개인적인 생활관계를 위한 것으로 정해진 그러한 주소를 상실한 때라야 한다. 가족들이 살고 있는 주소는 제2문에서 규정한 정해진 주소로 간주한다.
- (2) 독일국적인 또는 독일민족에 속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도 피추방자로 한다.
 1. 나치주의에 대해 정치적으로 대항하였다는 이유로 또는 인종, 신념이나 세계관을 이유로 자신에 대해 나치주의에 의한 물리적 조치가 행사되었거나 행사될 우려를 이유로 1933년 1월 1일 이후 제1항에서 규정한 지역을 떠나 독일제국 밖에 주거지를 가진 자
 2. 제2차 세계대전의 기간중 독일지역밖에서의 국가간조약에 근거하거나 같은기간 중 독일군부에 의하여 점령된 지역의 독일본부에 의한 조치에 근거하여 이주된 자(이주자)
 3. 1990년 7월 1일 이전 일반적인 추방조치의 종결 후 또는 1990년 7월 1일 이후 수용절차의 방법으로 1993년 1월 1일 이전에 과거 다른

* 1993년 9월 2일 법률.

국가의 관리하에 있었던 독일의 동부지역, 단찌히, 에스트란트, 렛트란트, 리트아우엔, 구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유고슬로비아, 알바니아 또는 중공을 떠났던 자. 다만, 이 지역에서 추방되어 1952년 3월 31일까지 그 지역으로 귀환되지 아니한 채로 1945년 5월 8일 이후에 이지역에 주소를 가진 자(강제이주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주소없이 제1항에서 규정한 지역에서 자신의 영업이나 직업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추방의 결과 이러한 활동을 포기하게 된 자
 5. 혼인으로 인하여 민법전 제10조에 따라 이조의 제1항에서 규정한 지역에서의 자신의 주소지를 상실하였으나 그 지역에서 유지하였던 자신의 주소지를 추방의 결과로 포기하게 되었던 자.
 6. 민법전 제11조에 따라 제5호에 해당하는 부의 혼인중의 자로서 제1항에서 규정한 지역에 주소를 갖지 아니하였으나 가졌던 주소지를 추방의 결과 포기하게 된다.
- (3) 본인이 독일국적인 또는 독일민족에 속하는 자가 아니면서 피추방자의 배우자로서 자신의 주소 또는 제2항 제5호의 경우에는 독일국적인 또는 독일민족에 속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제1항에서 규정한 지역의 주소지를 상실한 자도 피추방자로 한다.
- (4) 전쟁영향력의 결과로 제1항에서 규정한 지역에 거주하였던 자는 전쟁후에도 그 지역에 정착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1989년 12월 31일 이후에 그 지역을 떠난 경우에 한하여 피추방자로 된다.

제 2 조 고향피추방자

- (1) 고향피추방자라 함은 1937년 12월 31일에 또는 그 전에 자신이 추방되었던 국가의 지역에 자신의 주소를 가졌다가(추방지역), 1993년 1월 1일 전에 이 지역을 떠난 피추방자로 한다; 1914년 1월 1일에 독일제국이나 오스트리아-헝가리왕국 또는 그 후에 폴란드, 에스트란트,

랫트란트 또는 리트아우엔에 속하였던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역의 전체는 동일한 추방지역으로 간주한다.

- (2) 타방의 배우자 또는 비속의 경우에는 부모일방이 1937년 12월 31일에 또는 그전에 추방지역에 주소(제1항)를 갖고 있었던 경우에는 피추방자의 배우자 또는 1993년 1월 1일 전에 추방지역을 떠난 피추방자의 비속도 고향피추방자로 한다.

제 3 조 소련점령지 탈주자

- (1) 소련점령지 탈주자라 함은 소련점령지역이나 소련점령 베를린구역에 자신의 주소를 갖거나 가지고 있다가 1990년 7월 1일 이전에 그곳을 탈출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거나 정치적인 관계에 의하여 조건지워진 특수한 강제적인 상황을 면하게 된 독일국적인이나 독일민족에 속하는 자로 한다. 특수한 강제적인 상황이라 함은 생명과 삶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또는 인격적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있는 경우로 한다. 심각한 양심의 갈등도 특수한 강제적인 상황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생존기초가 파괴되거나 현저하게 침해된 경우 또는 그 파괴나 현저한 침해가 목전에 임박해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인 사유도 특수한 강제적인 상황으로 본다.
- (2) 다음 각호의 자는 소련점령지 탈주자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소련점령지 또는 소련점령 베를린구역에서 지배체제에 현저하게 협력하였던 자.
 2. 나치주의의 지배기간 중에 또는 소련점령지역이나 소련점령 베를린구역에서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 인본주의원칙 또는 법치국가원리를 침해한 자.
 3. 베를린주를 포함한 독일연방공화국의 자유민주주의적인 기본질서에 대항한 자.
- (3) 제1조 제1항 제2문과 제3문, 제2항 제4호 내지 제6호, 제3항과 제4항은 이를 유추적용한다.

제 4 조 후기강제이주자

- (1) 후기강제이주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이 있을 때부터 사전에 강제이주지역에 자신의 주소를 가졌던 자로서 1992년 12월 31일 이후에 수용절차의 방법으로 구소련연방공화국, 에스트란트, 렛트란트 또는 리트아우엔을 떠나 6월 내에 이 법률의 적용지역내에 주소지를 가지게 된 독일민족에 속하는 자로 한다.
1. 1945년 5월 8일 이후
 2. 1952년 3월 31일 이래 자신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추방된 이후
 3. 부모 또는 조부모가 자신의 주소를 1952년 3월 31일 이후에야 강제이주지역으로 옮긴 경우를 제외한 1993년 1월 1일 전에 출생하고 자신의 출생 이후 제1호에 의한 1945년 5월 8일의 기준일요건 또는 제2호에 의한 1952년 3월 31일의 기준일요건을 갖춘 자의 후손인 경우에는 자신의 출생 이후
- (2) 제1항의 그 밖의 요건을 갖추고 자신은 1992년 12월 31일에 또는 그 후에 독일민족이라는 이유로 박해 또는 그전의 박해의 여파를 받았다는 것을 소명한, 제1항에서 규정한 국가 이외의 제1조 제2항 제3호의 강제이주지역에서 온 독일민족에 속하는 자도 후기강제이주자로 한다.
- (3) 후기강제이주자는 기본법 제11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독일인으로 한다. 강제이주지역을 떠날 당시에 결혼이 최소 3년간 존속된 경우에 비독일인인 그의 배우자와 그 후손은 이 법률의 적용지역내에 수용됨으로써 이러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 이들은 신청을 하면 일련번호 102-5로 연방 관보 제3부에 공포되고 1977년 6월 29일의 법률(BGBl. I S. 1101) 제3조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개정된 “국적 문제의 규율을 위한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

제 5 조 제 외

다음 각호의 자는 제4조 제1항 또는 제2호에 의한 법적지위를 취득하지 아니한다.

1. 강제이주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1을 한 자
 - 가. 나치주의자 또는 다른 지배권자에게 현저하게 협력하였던 자
 - 나.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인본주의원칙 또는 법치국가원리를 침해한 자
 - 다. 자신의 이익 또는 타인의 불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지위를 지나칠 정도로 남용하였던 자
 - 라. 전체주의체제와의 특수한 관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도달할 수 없는 정치상 또는 직업상의 특출한 지위를 차지한 자 또는 자신의 부모, 비독일인인 자신의 배우자나 그 부모의 이와같은 지위로 혜택을 받은 자
2. 형사상의 범행을 근거로 임박한 형사 소추 때문에 강제이주지역을 떠난 자

제 6 조 민족해당여부

- (1) 이 법률에서 정한 독일민족에 속하는 자라 함은 자신의 본적지에서 독일민족으로 인정받은 자로 한다. 다만, 그 인정은 혈통, 언어, 양육, 문화와 같은 특정한 징표를 통하여 증명된 경우라야 한다.
- (2) 1923년 12월 31일 이후에 출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일민족에 속하는 자로 한다.
 1. 독일국적인 또는 독일민족에 속하는 자로부터 출생한 자
 2. 언어, 양육, 문화와 같이 본인으로부터 부모, 부모일방 또는 다른 친척을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을 매개하는 자
 3. 강제이주지역을 떠날 때까지 독일국적을 밝히고 그때까지 다른 방법으로 독일민족임을 인정받았거나 출생지국가의 법에 의하여 독일국적을 취득한 자

출생지역에서의 관계로 인하여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의 매개가 불가능하거나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요건은 갖추어진 것으로 본다; 독일민족의 인정을 받게 되면 생존의 위협이나 중대한 직업상

또는 경제상의 불이익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상황에 근거할 때 독일민족집단에 속하고 다른 집단에는 속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의심할 바가 없는 경우에는 제3호에 의한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본다.

제 2 절 배당, 권리와 혜택

제 7 조 원 칙

- (1) 후기강제이주자에 대하여는 독일연방공화국내에서의 직업생활, 문화생활 및 사회생활에의 편입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후기강제이주로 인하여 조건지워진 불이익을 완화시켜야 한다.
- (2) 제10조와 제11조는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수용절차의 방법으로 강제이주지역을 떠난 배우자와 그 후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는 이를 유추 적용한다.

제 8 조 할 당

- (1) 각주는 후기강제이주자와 그 배우자 및 비속이 제7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한도에서 이들을 수용한다. 연방관리청은 수용주를 확정한다(할당절차). 이러한 수용주의 확정이 있을 때까지 연방은 이들 사람들에 대해 숙식을 제공한다.
- (2) 후기강제이주자에 일치하는 후기강제이주자의 가족구성원은 제7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어도 할당절차에 포함시킬 수 있다.
- (3) 각주는 협정을 통하여 할당을 위한 해식을 확정할 수 있다. 이러한 협정이 성립될 때까지 또는 협정의 폐지시에 할당은 다음의 해식에 따른다.

예정백분을

바덴-뷔르템베르크

12.3

바이에른

14.4

| | |
|--------------|------|
| 베를린 | 2.7 |
| 브란덴부르크 | 3.5 |
| 브레멘 | 0.9 |
| 함부르크 | 2.1 |
| 헤센 | 7.2 |
| 메클렌부르크-보아폼머른 | 2.6 |
| 니더작센 | 9.2 |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 21.8 |
| 라인란트-팔츠 | 4.7 |
| 자아르란트 | 1.4 |
| 작센 | 6.5 |
| 작센-안할트 | 3.9 |
| 슐레스비히-홀스타인 | 3.3 |
| 튀링엔 | 3.5 |

- (4) 연방관리청은 그 해석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후기 강제이주자의 희망과 상이한 주에 대해 수용의 의무를 지을 수 있다. 제1문과 제2문에 의하여 상이한 확정이 명령되지 아니하는 한 제26조에서 규정한 수용결정을 받은 자는 그 수용결정에 동의한 주에 배정되어야 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연방내무부장관이 주의 양해를 얻은 준칙으로 정한다.
- (5) 연방관리청의 확정과 상이하게 또는 연방관리청의 확정없이 어떠한 주에 상주한 자는 그 주에 수용되어야 한다.
- (6) 제5항에서 규정한 자는 제15조에 의한 증서의 발급에 관하여 결정한 주에 산입된다.
- (7) 제8차 사회법전 제45조(1990년 6월 26일의 법률 제1조, BGBl. I S. 1163)는 후기강제이주자의 수용시설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9 조 보조금

(1) 후기강제이주자는 다음 각호를 받을 수 있다.

1. 연방의 일회적 곤란배제보조금
2. 시설대부금
3. 강제이주비용을 위한 조정금

세부적인 사항은 연방내무부장관이 준칙으로 정한다.

(2) 종전의 소비에트연방에서 온 1956년 4월 1일 이전에 출생한 강제이주자는 신청을 하면 자신이 겪은 억류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4,000도이치 마르크의 편입보조금을 일괄금으로 받는다. 1946년 1월 1일 이전에 출생한 강제이주자의 경우에 편입보조금은 6,000도이치 마르크로 한다.

제 10 조 심사와 자격입증

(1) 1945년 5월 8일 까지 후기강제이주자가 1937년 12월 31일의 영토상태에 의한 독일제국의 영토내에서 합격하였거나 취득하였던 시험이나 자격증서는 이 법률의 적용지역 내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후기강제이주자가 강제이주지역 내에서 합격하였거나 취득하였던 시험이나 자격증서가 이 법률의 적용지역내의 대응하는 시험이나 자격증서와 동가치적인 것인 경우에는 그 시험이나 자격증서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후기강제이주자가 자신의 직업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자신의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용도의 문서정보(시험증서 또는 자격증서)과 대체문서의 발급에 필요한 자료를 분실한 경우에 신청인이 시험에 합격하였다는 것과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입증한 후에 대응하는 문서정보의 발급을 관할하는 행정청과 기관은 신청에 따라 그 강제이주자에 대해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의한 증서를 발급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호를 통한 확증으로 한다.

1. 신청인의 관내에 있는 자신의 종전 근무처에서 시험의 합격 또는 자격 증서의 취득을 알고 있는 자가 맹세 대신에 서면으로 행한 의사표시
 2. 시험의 합격 또는 자격증서의 취득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2인 이상의 자가 맹세 대신에 서면으로 행한 의사표시
- (5) 제3항에 의한 증서는 법률생활에 있어서 합격한 시험이나 취득한 자격에 관한 문서정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 11 조 질병시의 급부

- (1) 강제이주지역에서 온 후기강제이주자로서 그 강제이주지역을 떠난 후 2월 내에 이 법률의 적용지역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둔 자는 체류한 날에 급부사유가 있었거나 그 후 3월내에 급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회법전의 제5차법전 제53조 내지 제57조에 의한 급부를 제외한 법정의료보험의 피보험자와 같이 1회의 급부를 받는다. 권한있는 자가 제1문에 의한 급부를 받고 있던 기간중에 사망하면 장례비용을 부담한 자는 사회법전 제5차법전 제59조에 의한 장례비용에 대한 보조금 청구권(장례수당)을 갖는다.
- (2) 사회법전 제5차법전 제27조 내지 제43조의 a에 의한 질병급부와 이러한 급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여비(사회법전 제5차법전 제60조)는 이 법률의 적용지역내에 체류한 날부터 길어도 최초 78주의 기간동안, 제국보험법(Reichsversicherungsordnung) 제200조에 의한 질병수당 및 모성수당 길어도 156일의 기간동안, 그밖의 급부는 제1항 제1문에 의한 3월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급된다. 모성수당 또는 분만수당을 포함하는 분만을 위한 급부는 그 분만이 제1항 제1문에 의한 3월의 기간내에 있게 되는 경우에만 이를 지급한다.
- (3) 질병수당(사회법전 제5차법전 제44조 내지 제51조)과 모성수당(제국보험법 제200조)은 제1항에서 규정한 지역을 떠날 때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한있는 자만이 이를 받는다.

1. 근로관계에 있었던 자
2. 역류되어 있고 구급자부조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권한있는 자
3. 자립인으로서 또는 공동부조하는 가족구성원으로서 직업활동을 한 자
4. 법정병역의무를 완수한 자
5. 자신의 민족성, 강제이주계획이나 이주계획 또는 자유민주주의적인 이해에 의하면 자신에게 귀책될 수 없는 사유로 제1호에 의한 취업이나 제3호에 의한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자

권한있는 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권을 갖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급부를 구한 청구권은 갖지 아니하나, 실직수당이나 실업부조의 수령자가 그 급부를 수령할 당시에 이미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있어서 근로촉진법 제155조에 의한 의료보험에 근거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4) 권한있는 자는 근로촉진법 제62조의a 제2항에 따라서 강제이주자를 위한 편입부조금의 액수에 상당하는 질병수당과 모성수당을 받는다. 근로촉진법 제112조 제8항, 제112조의a, 제134조 제1항 제3호, 제137조와 제138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5) 그 급부는 권한있는 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일반지역의료금고가 제공한다. 그 권한있는 자가 그전에 다른 의료금고에 가입하였으면 권한있는 자는 그 다른 의료금고에 급부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 (5a)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급부를 받는 권한있는 자는 급부의 청구전에 제5조에 의하여 관할있는 의료금고의 권한증서를 급부제공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권한증서는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 의사, 치과의사, 병원, 약사와 그 밖의 급부제공자는 제1항의 급부를 위하여 후기강제이주자가 범정의료보험의 피보험자이었다라면 받았을 사례비만을 청구할 수 있다.
- (6) 의료금고가 부담한 비용은 연방재원에서 변상된다. 관리비용의 변상으로서 의료금고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지급된 급부를 위한 비용의 100분의 8을 받는다.

- (7) 급부를 제공할 경우에는 추가지불과 그밖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에 관한 사회법전 제5차법전의 제61조와 제62조를 준용한다. 그밖에 의료금고에 대한 비용과 관리비용의 변상에 대하여는 사회법전 제1차법전과 제10차법전을 준용하며 사회법전 제10차법전 제110조를 유추적용하여 다수의 사항에 대한 청구액을 합산한 결과 사회법전 제10차법전 제110조 제2문에서 규정한 금액에 달하는 경우에는 의료금고가 그 금액을 한도로 제6항에 의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 (7a) 급부의 지급에 대하여는 후기강제이주자를 위한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용주로 확정되거나 확정되었던 주 또는 확정없이 강제이주자를 받아들인 주에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8) 제1항 내지 제7항의a의 규정에 근거한 권리다툼에 대하여는 사회재판관할권의 재판소에 출소할 수 있다.

제 13 조 법전 연금보험, 법정 사고보험

법정 연금보험과 법정 사고보험에 있어서 후기강제이주자의 법적 지위는 외국인연금법에 따른다.

제 14 조 자립적인 수입활동의 촉진

- (1) 후기강제이주자에 대하여는 농업, 영업 및 자유직에서 자립적인 수입활동의 터전을 잡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유리한 금리조건, 상환조건과 담보조건에 의한 신용의 제공을 규정할 수 있다.
- (2) 공적인 손을 통하여 지시를 후기강제이주자가 위임할 경우에는 강제이주지역을 떠난 후 최초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후기강제이주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자본참여와 업무협력이 최소 6년간 보장되어 있는 한도에서 후기강제이주자가 자본의 2분의 1이상을 참여한 기업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 (3) 공적인 손의 재정부조는 이러한 부조의 소령자가 지시를 위임할 때에

는 제2항에 따라 절차밧을 의무를 질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담하에 행해져야 한다.

- (4) 종전의 자신의 경제적 및 사회적인 관계에 의하여 기대할 수 있는 정도로 이 법률의 적용지역내에서의 경제적 및 사회적 생활에 편입된 자는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후기강제이주자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더이상 행사 할 수 없다.
- (5) 강제이주전에 고정된 영업으로서 수공업을 독자적으로 경영하였거나 도제의 지도권한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한 후기강제이주자는 자신이 상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수공업회의소에 신청을 하면 수공업명부에 등록된다. 소명에 대하여는 제10조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제 15 조 증 서

- (1) 후기강제이주자는 신청을 하면 후기강제이주자신분의 입증을 할 수 있는 증서를 받는다. 이러한 증서의 발급에 관한 결정은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후기강제이주자로서의 권리와 혜택의 보장을 관할하는 모든 행정청과 기관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 어떠한 행정청이나 기관이 그 증서의 발급에 관한 관할행정청의 결정을 부당한 것으로 생각하면 그 행정청이나 기관은 발급행정청을 통한 그 증서의 변경이나 취소만을 청구할 수 있다. 발급행정청이 신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이에 관하여는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본부 또는 중앙본부가 지정한 그 증서를 발급한 주의 행정청이 결정한다.
- (2) 후기강제이주자의 배우자 또는 비속은 신청을 하면 제7조 제2항의 요건의 성립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를 받는다.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3) 증서의 취소와 철회에 관하여는 발급행정청이 결정한다.

제 16 조 데이터보호

제15조에 의한 절차에 대하여는 제29조 제1항을 준용한다. 이러한 절차에서 저장된 데이터는 이법률에 의한 급부의 보장 또는 기본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한 독일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의 실행을 구하는 신청에 따라 이를 전송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한 행정청내에서의 회람에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 제1항 제1문 또는 제15조 제2항 제1문에 의한 신청이 취소되거나, 전부 또는 일부 거부된 경우 또는 제15조에 의한 결정이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되거나 철회된 경우에는 제1조 내지 제4조에서 규정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혜택 또는 급부를 보장하는 모든 기관과 통행증과 신분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에 그 결정에 관하여 통보한다. 이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도 통보된다.

1. 종전의 이름을 포함한 이름
2. 출생의 연월일과 장소
3. 주소지
4. 결정일과 법적효력의 발생

제 17 조 내지 제 20 조 삭제

제 3 절 행정청과 자문단

제 21 조 주탈주자 관리청

모든 주는 이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본부에 연락할 의무를 진다. 독자적인 권한이 없는 한 중앙본부는 이 법률의 시행을 위한 조치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 22 조 자문단의 구성과 과제

(1) 연방내무부장관에 피추방자, 탈주자 및 후기강제이주자를 위한 자문단

을 둔다.

- (2) 자문단은 피추방자, 탈주자 및 후기강제이주자의 문제에 관해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할 과제를 갖는다. 자문단은 일반적인 규율과 조치에 따라야 한다.
- (3) 모든 주는 '피추방자, 탈주자 및 후기강제이주자를 위한 자문단'을 중앙본부에 두어야 한다. 자문단의 구성원의 구성, 임명 및 임기는 주가 정한다.

제 23 조 연방내무부장관의 자문단의 구성

- (1) 연방내무부장관의 자문단은 주의 중앙본부에 구성된 자문단(제22조) 또는 주의 중앙본부의 대표자 각1인, 연방차원에서 활동하는 『피추방자, 탈주자 및 후기강제이주자의 조직』의 대표자 16인, 신교와 구교의 대표자 각1인, 자치단체총연합회의 대표자 각1인, 자유복리단의 승인 받은 총연합회 및 『공적 및 사적 복지 사업을 위한 독일인 협회』의 대표자 각1인, 사용자총연합회의 대표자 2인 및 피용자총연합회의 대표 2인으로 구성된다.
- (2) 자문단의 모든 구성원을 위하여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 (3) 연방내무부장관은 자문단의 의장직을 수행한다.

제 24 조 연방내무부장관의 자문단의 임명과 임기

연방내무부장관의 자문단의 구성원과 대리인은 제23조에서 규정한 조직의 추천이 있으면 4년의 임기로 임명된다. 자문단의 구성원이 임기의 만료로 시임하거나 구성원이 제23조에서 규정한 조직의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면 연방내무부장관은 이러한 조직의 추천으로 잔여임기를 위한 충당직원을 임명한다.

제 25 조 삭 제

제 4 절 수 용

제 25 조 수용결정

이 법률의 적용지역에 상주할 목적으로 후기강제이주자로서 강제이주지역을 떠나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이하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용결정이 주어진다.

제 27 조 청 구

- (1) 강제이주지역을 떠난 후 후기강제이주자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강제이주지역에 주소를 둔 자에 대하여는 신청이 있으면 수용결정이 행하여진다. 제1문에서 규정한 자의 배우자와 비속은 신청이 있으면 그 수용결정에 포함될 수 있다. 부부가 강제이주지역을 떠나기 전에 혼인이 해소되었으면 수용결정은 그 한도에서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에 의한 신청이 거부되고 제1문에 의한 승계신청을 위하여 신청자가 강제이주지역에 새로운 주소를 설정하였던 경우에 강제이주지역내의 주소는 계속 존재한 것으로 한다.
- (2) 거부를 하게 되면 가혹한 것이 되고 그 밖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용결정없이 이 법률의 적용지역내에 체류한 자에 대하여는 수용결정이 부여되거나 제1항 제2문에 의한 등록이 보완될 수 있다.
- (3) 매년도 마다 수용결정을 하여 수용하여야 할 후기강제이주자, 배우자와 비속의 수가 1991년과 1992년의 평균으로 연방관리청에 의하여 할당된 제1조 제2항 제3호와 제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자의 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연방관리청은 그 수에서 100분의 10만큼 상, 하회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수용결정서에는 신청인과 수용결정에 포함된 자가 입국할 수 있는 최초시점을 기재할 수 있다.

- (4) 최초의 입국시점은 신청인의 희망에 의하여 제3항의 기준에 따른다.
희망한 시점을 연기하여야만 할 경우에는 특히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생명에 대한 위협 또는 인격적 자유에 대한 위협에 노출된 지역에서 살고 있는지 여부
 2. 신청인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이 법률의 적용지역내에 통상의 주소를 갖고 있는지 여부
 3. 신청인이 일반적인 추방조치의 개시 당시에 이미 살고 있었는지 여부

제 28 조 절 차

- (1) 연방관리청은 수용결정차를 시행하며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 (2) 수용결정은 수용주의 동의가 있어야 비로소 행하여질 수 있다. 수용주는 제27조 제1항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 (3) 연방관리청은 수용절차를 위하여 제8조의 준용을 받는 수용주를 정한다.

제 29 조 데이터보호

- (1) 연방관리청과 수용절차에 관여하는 행정청은 제27조에 의한 요건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음 각호의 1을 할 수 있다.
 1. 후기강제이주자격을 천명하고 있는 제출된 개인데이터의 이용. 다른 목적을 위하여 그 개인데이터가 수집 또는 저장된 경우에도 이와같다.
 2. 당사자에 대한 개인데이터의 수집동일한 요건하에 연방관리청과 수용절차에 관여하는 행정청은 제1문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가 당사자의 신청에 관한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도에서 당사자의 협력없이 공공기관과 비공공기관에서 이 법률의 적용지역 밖에서도 개인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정보

제공할 의무를 진다. 특별한 법률의 사용규율이 나보다 우위에 있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대립하는 경우에 제1문 제1호와 제2문과 제2문에 의한 이용과 인도는 중단된다.

- (2) 수용절차와 할당절차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법률이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주에 의한 임시 숙식제공을 포함한 수용 및 할당절차의 목적, 제15조에 의한 절차와 기본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한 독일인으로서의 법적지위확인을 위한 절차 및 이 법률에 의한 급부의 보장을 위한 절차를 위해서만 이를 사용하거나 인도할 수 있다.

제 30 조 내지 제 93 조 삭제

제 5 절 이름작성, 상담

제 29 조 가족이름(姓)과 이름

- (1) 자신의 배우자와 비속이 기본법 제11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독일인인 피추방자와 후기강제이주자는 할당절차중에 있는 연방관리청 또는 호적사무소에 대한 의사표시로 다음 각호를 할 수 있다.

1. 독일이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름의 일부에 대한 정리
2. 가족이름이 성별 또는 친척관계에 의하여 문장상으로 변화를 겪은 경우에 자신의 가족이름에 대한 남성형식의 채택
3. 자신의 가족이름 또는 이름에 대한 독일어 표기형식의 채택: 이름의 그러한 형식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새로운 이름을 채택할 수 있다.

제3호의 경우에 혼인이름으로서 가족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혼인의 계속중에 있는 쌍방배우자만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이름변경은 만 5세에 달한 비속이 할당절차중에 있는 연방관리청 또는 호적사무소에 대한 의사표시를 통하여 이름변경에 동의한 경우에만 그 비속의 출생이름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친다. 만 14세에 달한 취업자격이 제한된 자녀는 본인만이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필요하다.

- (2) 제1항에 의한 의사표시는 공적으로 인증되거나 공증되어야 한다; 할 당절차에서 연방관리청도 그 의사표시를 공적으로 인증하거나 공증할 수 있다. 수수료나 입체금은 정수되지 아니한다.

제 95 조 무료상담

- (1) 그 목적이 경제적 사업경영에 있지 아니한 「피추방자, 탈주자 및 후기 강제이주자의 조직」은 자신의 과제영역내에서 피추방자, 탈주자 및 후기 강제이주자에 대해 법문제, 조세문제 및 경제문제에 관한 무료상담을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별도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 (2) 남용이 있을 경우에는 조직에 대해 이러한 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 세 부적인 사항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은 법규 명령으로 연방정부가 정한다.

제 6 절 문화, 연구 및 통계

제 96 조 피추방자와 탈주자의 문화재의 관리 및 학문적 연구의 촉진

연방과 주는 기본법에 의하여 설정된 자신의 관할에 따라 피추방자와 탈주자가 알고 있는 추방지역내의 문화재, 전체독일민족과 외국인의 문화재를 보존하고 건축물, 박물관과 도서관을 보전, 보완, 이용확대하여야 하며 예술창작과 교육의 시설물을 보존·촉진하여야 한다. 연방과 주는 추방과 피추방자와 탈주자의 편입으로 발생한 과제를 이행함에 있어서의 학문과 연구 및 피추방자와 탈주자에 대한 문화급부의 계속적 발전 등을 촉진하여야 한다. 연방정부는 연방상원에 매년 그 실적을 보고한다.

제 97 조 통 계

연방과 주는 후기강제이주자 거주지역에 필요한 통계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연방과 주는 통계를 작성하여 후기강제이주자를 편입시킬 목적으로 발령된 규칙의 시행을 위한 통계 자료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절 벌 칙

제 98 조 혜택의 횡령

사실적인 종류의 부당하거나 불완전한 신고를 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하여 후기강제이주자에게 유보된 권리나 혜택을 횡령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

제 99 조 관리직원의 의무위반

이 법률을 집행하는 관리직원으로서 증서를 발급받을 권리가 없는 자임을 알면서도 그자를 위하여 증서를 발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

제 8 절 경과 및 종결규정

제 100 조 종전법의 적용

- (1) 제1조 내지 제3조에서 규정한 자에 대하여는 이 조의 제2항 내지 제8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1993년 1월 1일 이전에 적용된 규정을 적용한다.
- (2) 1993년 1월 1일 이전의 법률 제15조에 의한 신분증명서는 1993년 1월 1일에 신청된 경우에만 발급된다. 1990년 10월 2일 이후 1993년 1월 1일 이전에 이 법률의 적용지역내에 주소지를 둔 강제이주자는 1993년 12월 31일 까지 신분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에 촉탁이 있으면 피추방자와 탈주자에 대한 권리와 혜택의 보장을 관할하는

행정청은 피추방자 및 탈주자의 자격을 확인한다.

- (3) 제16조는 1993년 1월 1일 이전의 법률 제15조 내지 제19조에 의한 절차에 적용한다.
- (4) 제1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조의 그밖의 요건이 성립한 때에는 1990년 7월 1일 이전에 연방관리청의 인수허가를 받은자는 제26조에 의한 인수결정이 자신에게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후기강제이주자로 된다. 제8조 제4항 제3문은 이를 준용한다.
- (5) 1993년 1월 1일 이전에 제26조에 의한 수용결정을 받은 자는 제1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후기강제이주자로 된다.
- (6) 1990년 6월 30일 이후 1991년 7월 1일 이전에 통일조약 제3조에서 규정한 지역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는 이 법률의 행정청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고 제1조 제2항 제3호의 그밖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제26조에 의한 수용결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강제이주자로 된다.
- (7) 제90조의a 제2항은 1992년12월의 시기에 실업부조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존속한 경우에 1993년 6월 30일까지는 199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 법률로 계속하여 적용된다.
- (8) 제90조의a 제1항, 제3항과 제4항은 199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 법률로 계속하여 적용된다.

제 101 조 특정자본의 사용

1983년 2월 25일의 농업이주 재정지수를 위한 법률(BGBl. I. S. 199) 제1조와 제2조에 의한 이율과 상환율의 인상에 근거한 이자급부와 상환급부에 대한 초과납부수입은 농민출신인 피추방자, 탈주자와 후기강제이주자의 편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 102 조 통일조약에 대한 관계

1990년 9월23일의 법률(BGBl. 1990 II S. 885, 918) 제1조와 1991

년 12월 20일의 법률 (BGBl. I. S. 2270) 제1조와 관련한 1990년 8월 31일의 통일조약 부칙1 제2장 대상D 제3절 제1호 a목에 관계없이 다음 각목과 같이 한다.

- 가. 이 법률은 1992년 12월 31일 이후 통일조약 제3조에서 규정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이 법률 제4조의 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나. 1993년 1월 1일 이전의 법률 제90조 내지 제90조의b는 1990년 10월 2일에 이미 통일조약 제3조에서 규정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이 법률 제1조의 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다. 1993년 1월 1일 이전의 법률 제92조는, 시험 또는 자격증서와 동등시 하는 것에 대해 긴급한 직업상의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 1990년 10월 2일에 이미 통일조약 제3조에서 규정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이 법률 제1조의 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 103 조 비용부담

연방은 이 법률 제9조에 의한 비용을 부담한다.

제 104 조 일반행정규칙

연방내무부장관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이 법률의 시행을 위한 일반행정규칙을 발령할 수 있다.

제 105 조 내지 제 107 조 삭제

연방영토내로의 독일인 수용법

제 1 조

(1) 소련점령지역이나 베를린의 소련점령구역에 거소나 주소울 가지고 있

거나 가졌던 독일국적인과 독일민족에 속하는 자가 이 법의 적용지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경우에는 특별허가를 얻어야 상주할 수 있다.

- (2)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에 대한 급박한 위협으로 인하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영역을 떠나야만 하였던 자들에 대하여는 특별허가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 조

제1조에서 규정한 자들은 이들을 위해 지정된 수용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체류허가에 대하여는 수용위원회가 결정한다. 수용위원회는 어떠한 경우가 이 법 제1조 제2항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결정한다.

제 3 조

수용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고위원회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위원회가 이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결정한다.

제 4 조

연방정부는 법규명령을 통하여 수용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수용절차 및 체류허가를 받은 자들의 할당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 5 조

연방정부나 연방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기관은 제2조에 따라 수용된 자가 자신의 최초의 거소를 갖게 되는 주를 지정한다. 이 경우에는 수용주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는 이들을 수용할 의무를 진다. 수용된 자의 정착지는 수용된 자의 기존의 가정 및 생활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정되어야 한다.

제 6 조

연방정부는 수용된 자를 주에 할당함에 있어서 탈주자와 피추방자로 인한 각주의 부담이 균등해지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 7 조

수용된 자를 인도받기까지 수용주에서 발생한 비용은 기본법 제120조에 따라 규율되기까지는 연방이 부담한다.

제 8 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탈주자 부조법***제 1 절 총 칙****제 1 조 인적 범위**

- (1) 소련의 점령하에 있는 독일영토 또는 베를린의 소련점령지구내에 거주 또는 주소지를 둔 독일의 국적인 또는 독일민족에 속하는 자가 피해지역의 점령진행중에 또는 점령후에 그리고 1990년1월1일 이전에 이 법률의 적용지역 내로 이주하였고 이 법률의 적용지역내에 상주하였던 경우에 앞의 독일국적인 또는 독일민족에 속하는 자는 신청이 있으면 이하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 급부를 받는다. 그밖에 앞의 독

* 1965년 6월 15일 법률.

일국적인 또는 독일국민에 속하는 자는 다른 규정에 의한 유사한 급부를 받을 수 없다. 1950년 8월 26일 이후에 이주한 신청인의 경우에는 그 신청인이 긴급수용 또는 유사한 절차로 수용되었음을 별도의 요건으로 한다.

- (2) 피추방자와 탈주자의 업무에 관한 법률(연방난민법 이라고도 함) 제1조 제1항 제2문과 제3문 및 제3항과 제6조 및 부담조정법 제230조의 a는 이를 준용한다.

제 2 조 제외사유

부담조정법 제301조 제2항 제2문 또는 제359조 제1항 또는 제3항에서 규정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 이 법률에 의한 급부는 제공되지 아니한다: 피해지역의 점령후에 그 지역에서 성립한 관계를 완전하게 이용하여 얻어진 경제재화의 손실에 대하여는 부담조정법 제359조 제3항 제3호를 준용한다.

제 2 절 시설부족

제 3 조 내지 제 9 조 폐 지

제 3 절 경상보조금 (생계보조금, 특별경상보조금)

제 10 조 총 칙

- (1) 규정된 연령에 있거나 질병 또는 육체적 결함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제1절에 의한 권한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하에 경상보조금을 받는다.
1. 권한자와 부담조정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하여 고려대상이 되는 그의 배우자는 등기보전 및 확정법 제3조에서 규정한 손해 또는 피해지역에 두고 온 것에 의하여 피해지역에서의 자신의 생존기초를 상실하였

던 경우

2. 그 손해의 발생당시에 그 생존기초의 대부분이 다음 각호에 근거하고 있어야 한다.

가. 독자적인 생계능력의 행사

나. 생계활동에 제공되는 재산의 양도, 그밖의 이용이나 임대로부터 얻어진 청구권이나 보상물

다. 생계활동이 소득에 근거를 두고 있는 양로수당

3. 권한자와 부담조정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하여 고려의 대상이 되는 그의 배우자가 피해지역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가재도구는 이 규정의 재산상의 손해로 하지 아니한다. 독자적인 생계능력으로 최소 2,000라이히마르크의 수입을 제공하는 직업상의 또는 그밖의 생전기초를 상실함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의 재산상의 손해로 본다: 독자적인 생계능력외에 다른 유상활동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제한된 범위에서만 행사하고 생계가 다른 수입에 의존하지 아니하거나 지극히 경미하게만 의존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요건은 갖추어진 것으로 한다.

4. 권한자의 소득 및 재산관계에 의하면 권한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없거나 권한자가 그러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에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있는 만기가 도래한 급부청구권의 실현이 가능한 경우 그 한도에서 이 청구권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직업상의 또는 그 밖의 생존기초와 이와 관련하여 유예조건부로 된 사법상의 수당청구권을 상실한 권한자는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서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한도에서 제1항의 요건하에 경상보조금을 받는다.

1. 정년의 도달 또는 생계무능력의 면에서 수당청구권을 위한 조건이 성립한 경우

2. 「기본법 제1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법적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법률」에 의한 수당청구권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족공동체의 가족구성원과 함께 피해지역에서 살았고 경제적으로 가

족공동체에 의존한 권한자는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 제1항의 자신의 생존기초 및 재산 상실을 겪고 그 권한자를 배려할 수 없게 된 한도에서 제1항의 요건 하에 생계보조금을 받는다.

- (4) 재산상의 손해를 그 종류와 액수에 따라 고려하게 되는 범위의 손해의 계산방법, 수입의 계산방법과 개개의 직업에 대한 소득수준율의 채택 대상은 부담조정법 제301조 제4항에 대한 법규명령으로 정한다.
- (5) 이 법률, 부담조정법 및 할당손해법에 의한 급부의 여건을 동시에 갖춘 경우에는 부담조정법 제261조 제4항을 적용한다.

제 11 조 양로수당과 생계무능력: 신청기간

- (1) 권한자가 신청당시에 만65세(여성의 경우 만60세)에 달한 경우에만 규정된 정년을 이유로 하는 경상보조금이 지급된다. 그 밖에 권한자가 1907년 1월 1일(여자의 경우 1912년 1월 1일) 이전에 출생한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
- (2) 부담조정법 제265조 제1항 제2항, 제3항과 제5항에서 규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지속적인 생계무능력을 이유로 하는 경상보조금이 지급된다. 그 생계무능력은 늦어도 1971년 12월 31일에 있어야 한다.
- (3) 피해자가 1906년 12월 31일 이후에 출생하였거나 1971년 12월 31일 이후에 부담조정법 제26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생계능력을 상실하였으면 제10조 제1항과 제3항에 의한 생계보조금은 이 규정에 의한 생존기초가 만16세에 달한 후 이 생존기초를 상실할 때까지 최소 10년간 계속된 경우에 지급된다. 제1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한 생존기초를 상실한 때에는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생존기초의 존속기간을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생존기초를 상실한 때에는 제1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한 생존기초의 존속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별경상보조금은 생계를 위한 경상적이거나 연금적인 보조금외에 제1문의 요건하에서만 지급된다.

- (4) 경상보조금을 신청할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는 부담조정법 제264조 제2항과 제265조 제4항을 유추적용하여 신청기간이 197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 12 조 소득최고금액과 경상보조금의 액수

소득금액과 생계보조금의 액수에 대하여는 부담조정법 제267조 내지 제270조의a, 제275조와 제277조의a의 규정을, 특별경상보조금에 대하여는 부담조정법 제301조의a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담조정법 제269조의a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주배상의 최종기초액 대신에 부담조정법 제301조a 제3항에 의한 법령의 준용을 받는 제10조 제1항 제3호 제1문에서 규정한 재산상의 손해에서 계산되는 기초액에서 출발해야 한다.

제 13 조 경상보조금의 지급

- (1) 이 법률에 근거하여 경상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자에 대하여는 이 법률의 시행후 1년내에 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시행 다음 달의 초일부터 빨라도 보조금의 지급을 위한 요건이 발생한 달의 초일부터 효력을 갖는 경상보조금이 지급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부담조정법 제287조 제1항 제2문, 제3문과 제4문과 제4문을 준용한다.
- (2) 권한자의 신분상 지급을 위한 요건이 성립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경상보조금은 중단된다. 권한자가 기본법의 적용지역내에 상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경상보조금은 중단된다. 부담조정법 제287조 제3항과 제4항은 이를 준용한다.

제 14 조 권한자의 사망후의 경상보조금

제10조에 의한 권한자의 사망후에 경상보조금은 부담조정법 제261조 제2항의 기본율에 따라 지급된다. 생계를 위한 보조금은 부담조정법 제272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특별경상보조금은 제2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추가지급된다.

제 15 조 생계보조금을 위한 별도의 급부

부담조정법 제276조, 제276조의a와 제277조의 준용을 받는 급부는 생계보조금을 위하여 지급된다.

제 16 조 변경의 효력, 신고의무, 배상의무, 건축대부와 사회부조를 위한 관계

부담조정법 제288조 내지 제292조는 이를 준용한다.

제 4 절 편입대부

제 17 조 내지 제 19 조 폐 지

제 5 절 다른 법률의 적용

제 20 조와 제 20 조의a 폐 지

제 6 절 그밖의 규정

제 21 조 재원의 조달

연방은 제3절에 의한 급부를 위한 경비를 부담한다.

제 22 조 시 행

법률의 시행에 대하여는 부담조정법 제3부 제1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2 조의a 경과규정

1992년 7월 31일 이전에 권한자가 가졌던 난민부조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청구권은 1995년 7월 23일까지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제 23 조 수 권

어려움의 경감을 위하여 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은 법규명령으로 소련점령으로 인하여 분할된 자치단체 또는 그러한 자치단체나 그 법률의 적용지역과 직접적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는 자치단체에 있는 피해지역에서 제3조, 제10조 또는 제18조에서 규정한 손해를 당하고 손해의 발생당시에 분할된 자치단체 또는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피해지역에 소재하는 그 손해가 발생한 자치단체와 직접적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는 자치단체 내의 이 법률의 적용지역에 거소 또는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 법률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급부와 수익부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공된다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사한 규정에 따라 별도의 거주요건은 부담조정법 제301조에 대하여 발령된 법규명령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 법률의 그밖의 요건은 이를 갖추어야 한다.

제 24 조 베를린조항

이 법률은 1952년 1월 4일의 제3차과도법률 제13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베를린주에도 적용한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발령된 법규명령은 제14차 과도법률에 의하여 베를린에 적용한다.

제 25 조 시 행

이 법률은 공포한 다음날에 시행한다.

Ⅷ. 독일고용촉진법(요약)*

제1장

제1조 고용촉진법의 목표

고용촉진법의 제수단들은 연방정부의 사회정책 및 경제정책의 범위내에서 높은 고용수준이 달성되고 유지되며, 고용구조가 지속적으로 향상되며, 그리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조 노동시장의 정책적 목표

고용촉진법의 제수단들은 특히 다음에 기여해야 한다.

1. 실업, 본인 교육수준보다 낮은 직장에서의 취업 또는 노동력부족이 발생하거나 지속되지 않도록 하며
2. 취업자의 직업간 이동이 촉진되며
3. 기술개발이나 경제적 구조변화가 근로자에게 줄 수 있는 불리한 결과를 예방, 상쇄 또는 제거하며
4. 신체적, 정신적 부자유자들의 직장편입을 촉진하며
5. 성차별로 인한 교육기회나 노동시장의 어려움이 극복되며, 노동시장의 일반적 조건으로는 취업하기가 어려운 여성들이 직장생활에 편입되고 직업적으로 촉진되도록 하며
6. 노동시장의 일반적 조건으로는 취업하기가 어려운 노령 및 기타 근로자들이 직장에 편입되며
7. 지역, 산업별로 고용구조가 향상되며
8. 불법취업을 퇴치하며 이를 통해 노동시장 질서가 유지되도록 한다.

* 1993년 5월 29일의 제39차 헌법.

제 3 조 연방고용청의 과제

- (1) 고용촉진법에 따른 과제는 연방정부의 사회정책 및 경제정책의 범위 내에서 연방고용청이 수행한다.
- (2) 연방고용청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직업상담
 2. 직장알선
 3. 연방고용청에 위탁된 직업교육의 촉진
 4. 연방고용청에 위탁된 재할교육의 촉진
 5. 현존하는 직장의 유지 및 새로운 직장창출의 촉진
 6. 실업수당의 지급
 7. 도산수당의 지급 또한 연방고용청은 학문적으로 노동시장 연구 및 직업연구를 해야 한다.
- (3) 연방고용청은 연방정부의 위탁으로 실업부조를 지급한다.
- (4) 연방정부는 연방고용청에 고용촉진법에 따른 본래의 과제와 관련한 추가의 과제를 시행규칙을 통해 위임할 수 있다. 또한 연방정부는 행정합의를 통해서 한시적 노동시장과제를 수행하도록 연방고용청에 위탁할 수 있다.

제 2 장 고용과 노동시장

제 1 절 총 칙

제 4 조 연방고용청의 독점적 관할권

고용촉진법 제18조 1항, 제23조 1항 그리고 제29조 4항에 다르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직업상담, 직업교육알선 및 직장알선은 연방고용청에 의해서만 관장될 수 있다.

제 5 조 알선 및 촉진의 우선성

직업교육알선, 직장알선 및 직업교육촉진 수단들은 제3장 및 제4장의 급부보다 우선된다.

제 6 조 노동시장관할, 노동시장연구와 직업연구, 보도 및 통계

- (1) 연방고용청은 고용의 규모, 종류, 그리고 노동시장, 직업과 직업교육 가능성에 대한 현재상황과 변화과정을 종합적으로 뿐만 아니라 각 산업분야, 지역별 및 사회구성원 구조에 따라 조사하며, 연방고용청의 과제를 수행하도록 평가해야 한다(노동시장 연구 및 직업연구)
- (2) 연방고용청은 노동시장연구 및 직업연구에 필요한 조직적, 기술적 기본조건을 창출해야 한다.
- (3) 연방고용청은 특히 근로자의 고용 및 실업에 관한 통계를 제공해야 한다. 실업통계는 직장알선을 위해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 7 조 연방고용청에 대한 신고의 의무

- (1) 기업소유자, 관공서 및 취업자들은 연방고용청이 요청할 경우 제6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2) 이러한 정보는 진실되고, 완전하며, 기간내에, 그리고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 9 조 결원된 자리의 통보

연방노동사회성 장관은 시행규칙을 통해서 고용주가 그들 기업의 결원된 자리 및 직업양성자리를 관할 지방고용사무소에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이같은 통지가 직장알선, 직업양성자리의 알선, 또는 노동시장연구와 직업연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같은 통지의 의무는 한 시적으로, 그리고 특정산업분야, 지역, 직업 및 피용자집단으로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통지의 의무는 노동쟁의의 결과 결원된 자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 10 조 사회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피용자의 통보

고용주는 사회보험의 가입대상인 피용자를 통보해야 한다.

제 11 조 사회보험 담당기관의 통보

- (1) 사회보험 각출료의 수령을 담당하는 의료보험은 매달 연방고용청에 피보험대상자 수를 통보해야 한다. 연방고용청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할 경우 위 기관의 업무문서 및 통계를 열람할 수 있다.
- (2) 연방고용청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며 연방고용청이 이를 요구할 경우 사회보험 담당기관들은 그들의 업무문서 및 통계를 제시해야 한다.

제 2 절 취업알선

제 13 조 직장알선의 개념

- (1) 고용촉진법에서의 직장알선은 노동관계가 성립되도록 직장을 구하는 사람과 고용주를 만나게 하거나 가내근로법 의미에서의 가내근로관계가 성립되도록 직장을 구하는 사람과 위탁자 또는 중간상인을 만나게 해주는 행위이다.
- (2) 직장알선에는 구인 및 구직에 대한 명단의 발행, 판매 및 게시도 포함된다. 또한 명단과 동등하다고 간주되는 정기간행물의 별쇄(別刷) 및 발간도 이에 포함된다. 하지만 신문, 잡지, 전문지 및 유사한 정기간행물을 통한 구인 및 구직 그리고 라디오, 텔레비전 및 화면을 이용하는 것은 이에 의해 규제받지 않는다.

제 15 조 정보를 제공할 의무 및 직장상담

- (1) 연방고용청은 피용자 및 고용주가 요구할 때 직장알선과 무관하게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 직업별 변화과정, 직업교육 및 축진의 필요성과 가능성, 그리고 취업축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직장을 선택하거나 피용자를 고용하는데 있어서 상담해야 한다(직장상담).
- (2) 실업수당이나 실업부조를 수령하지 않는 구직자의 직장알선은 3개월 간 이루어지며 구직자는 이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3) 직장알선을 반복해서 시청하는 실직상태의 구직자에게 연방고용청은 직장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직장알선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수단의 참여를 통해서 촉진될 수 있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제 17 조 노동쟁의의 신고

- (1) 노동쟁의의 발생 및 종료시 고용주는 이를 관할 지방고용사무소에서 면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노동조합은 신고할 권한이 있다.
- (2) 1항에 의거한 노동쟁의 발생이 신고되어 있는 경우 노동쟁의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 대한 연방고용청의 직장알선은 노동쟁의 사실을 명시적으로 언급함에도 불구하고 구직자와 고용주가 이를 요구할 때에만 가능하다.

제 20 조 중립성

- (1) 직장알선 및 직업상담은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2) 기업이나 직장의 특성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정치단체, 노동조합 또는 유사한 단체에 대한 가입여부를 질문할 수 있다.
- (3) 만일 연방고용청의 위탁으로 노동조합 산하단체가 직장알선을 하며 노동조합 규정상 단지 그 회원에게만 직장알선이 가능할 경우에는 구

직자 또는 조연을 구하는 사람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가를 질문해도 된다.

- (4) 직장알선시 종교집단의 가입여부와 세계관에 관한 질문은 첫째, 기업이나 직장의 특성상 이것이 정당화되거나, 둘째, 고용주가 구직자를 채용하려고 하며 특정집단의 가입여부를 채용조건으로 명시적으로 제시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 (5) 연방고용청은 피용자가 채용되지 않도록 불리하게 표시하거나, 처분하거나, 불이익이 가도록 해서는 안된다.

제 21 조 무료의 원칙

- (1) 연방고용청의 직장알선 및 직장상담은 무료이다. 다만 이에 필요한 비용이 평균 이상일 경우 연방고용청은 고용주로부터 평균비용 이상분의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2) 연방고용청은 고용주가 국가간의 합의에 의해 연방고용청을 이용하여 외국인 피용자를 알선받을 경우 고용주가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시행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수수료는 연방고용청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는 외국 고용자가 독일의 경제 및 사회에 적응하는데 드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조치들에 대한 비용도 포함된다. 한편 고용주는 직장알선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나 제3자에게 이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제 23 조 연방고용청의 위탁에 의한 직장알선

- (1) 연방고용청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이것이 직장알선의 목적이 있을 경우 고용주와 피용자 관련단체의 의견을 청취한 후 개별직업 또는 개별 집단에 대한 직장알선을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2) 직장알선을 위탁받은 단체나 개인은 연방고용청의 감독 및 훈령을 받는다. 1항에 의한 위탁기간은 1년이며 이 위탁은 제약조건을 가지고 승인 될 수 있다. 이 위탁은 취소될 수 있는데 이는 위탁받은 단체나

개인이 이를 신청하거나, 반복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나 개인이 직장알선 및 업무집행에 있어서 연방고용청이 공포한 규정이나 훈령에 따르지 않거나, 위탁을 승인할 제반조건이 제시되지 않거나 소멸된 경우이다.

- (3) 무료로 직장알선을 하고자 하는 자연인은 이를 서면으로 연방고용청에 통고해야 한다. 이 자연인은 이를 통고한 날로부터 직장알선에 위탁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24 조 수수료

- (1) 제23조 1항에 따른 직장알선에서 구직자 및 구인자로부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만큼의 수수료가 징수될 수 있다.
- (2) 1항에 따른 것보다 높은 수수료징수는 효율적인 직장알선을 위하여 이것이 필요한 직업에 속해 있는 근로자에게만 가능하다.

제 3 절 직업상담

제 25 조 직업상담의 개념

- (1) 고용촉진법에서 말하는 직업상담은 직업을 바꾸려는 것을 포함한 직업 선택에 관한 질문에 조언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직업에 대한 계몽, 각각의 직업교육 촉진에 대한 설명 및 직업양성 교육장소의 알선을 통하여 보완된다.

제 26 조 직업상담의 과제

- (1) 연방고용청은 직장생활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거나 직장생활 중인 청소년과 성인의 직업선택 및 직업적 장래에 관한 모든 상담에 응해야 한다. 여기서 연방고용청은 노동시장과 직업의 현재 상황 및 변화과정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제 27 조 직업상담의 원칙

- (1) 직업상담에 있어서 조언을 구하는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성격적 특성 및 취향 뿐만아니라 그의 개인적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 (2) 연방고용청은 이것이 직업적 적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할 경우 조언을 구하는 사람의 동의하에 심리학적 및 의학적으로 조사와 검사를 할 수 있다.

제 28 조 직업교육촉진에 대한 설명

연방고용청은 개개의 조건하에서 직업교육촉진의 가능성을 설명해야 한다.

제 29 조 직업양성교육 자리의 알선

- (1) 고용촉진법 의미에서의 직업양성교육의 알선은 직업양성교육관계가 성립되도록 하는 것이다.

제 4 절 직업훈련촉진

I. 총 칙

제 33 조 담당기관

- (1) 연방고용청은 제4절의 규정에 따라 직업양성교육, 향상교육 및 재교육을 촉진한다. 연방고용청은 각각의 경우에 적절한 재량하에 이 조치의 종류 및 규모를 규정하며, 여기서 특히 직업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의 목표, 촉진교육의 목적, 노동시장의 상황과 변화과정, 교육의 내용과 편성, 그리고 경제성 및 절약성의 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서 연방고용청은 직업교육 담당기관과 협조해야 한다. 이들의 권한은 제 4장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받지 않는다.

- (2) 연방고용청은 향상교육과 재교육을 다른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또는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한편 연방고용청은 제34조 1항에 맞는 적당한 교육과정이 적절한 기간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이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

제 34 조 직업교육의 과정

- (1) 제4절에 의한 직업교육의 축진은 고용축진법의 적용범위 내에서 실시되는 금일수업, 반일수업, 직장생활을 수반하는 수업 및 통신교육의 제과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교육참여는 이 과정이

1. 실시기간, 교육과정의 편성, 수업방법, 교육담당자들의 교육정도 및 직업경험을 고려할 때 성공적인 직업교육을 기대할 수 있게 하며
 2. 적절한 참가조건을 제시하며
 3. 경제성 및 절약성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어 실시되며, 특히 비용이 적절한 경우에만 축진된다.
- (2) 실시기간 및 내용이 직업양성교육 규정이나 시험규정에 정해져 있는 중간실습기간은 직업교육의 과정의 구성요소이다. 하지만 국가의 인정을 받거나 직업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국가의 허가를 받을 목적의 직업교육과정 후의 기간은 이 교육과정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 (3) 시험이 수업종료후 3개월 이내에 완료되면 수업종료와 수업종료 사이의 기간은 직업교육과정의 구성요소로 간주된다.
- (4) 전문대학, 대학 또는 유사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은 제4절의 의미에서의 직업교육이 아니다.

제 36 조 급부조건

직업교육의 개별근로자 축진을 위한 급부의 수령은

1. 신청자가 고용축진법의 적용범위 내에서 각출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취업을 시작하거나 지속할 의사가 있으며

2. 신청자가 목표하는 직업에 적합하며 성공적으로 교육과정에 참여할 것이 기대되며
3. 교육과정 참여가 제2조의 목표달성 및 노동시장의 현재상황과 변화과정은 고려할 때, 바람직할 때에만 가능하다.

만일 신청자가 직업교육 이수 후 목표로 하는 직종에 종사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될 경우 향상교육이나 재교육은 촉진되지 않는다. 또한 노동력이 부족한 분야의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은 중대한 개인적 사유가 존재할 때만 촉진될 수 있다.

제 37 조 다른 급부의 우선성

개별근로자 교육촉진의 급부는 다른 공공기관이 이러한 급부를 제공할 의무가 없을 때에만 제공된다. 하지만 연방사회부조법 제2조 2항에 따라 사회부조가 우선되지 못함은 이 규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39 조 시행규칙을 받을 수 있는 권한

연방고용청은 시행규칙을 통해 제4절에 의거한 직업교육촉진의 선행조건, 종류 및 규모를 규정한다. 여기서 고려할 것은

1. 개별근로자 촉진에 있어서는 신청자나 교육담당자들의 개인적 상황, 이들이 추구하는 직업교육의 목표, 교육촉진의 목적, 노동시장의 현재 상황 및 변화과정, 그리고 교육과정에서의 경제성 및 절약성
2. 직업교육촉진기관에 있어서는 이 기관에서 수행되어 질, 교육과정의 종류 및 교육참여자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직업교육의 목표이다.

II. 개별근로자 지원 또는 고용촉진

A. 직업양성교육

제 40 조 직업양성교육의 촉진

- (1) 고용촉진법과 연방고용청의 시행규칙에 따라 실시되는 직업양성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다른 방법으로 충당되지 못할 경우, 연방고용청은 기업내나 기업밖의 교육장소에서 실시되는 직업양성교육 및 직업양성교육을 준비하거나 취업에 기여하며 주정부 교육법 적용을 받지 않는 직업교육 과정에 참여하도록 직업양성부조를 지급한다.

이러한 직업양성부조는 다음의 경우에만 지급된다;

1. 훈련생이 부모와 같이 거주하지 않으며
2. 교육장소가 부모집에서 적절한 시간내에 도달할 수 없을 때이다.

위의 두번째 규정은 훈련생이 18세 이상이며, 결혼한 상태이거나 결혼한 적이 있으며, 최소한 한명 이상의 자녀와 같이 살거나, 또는 부모와 함께 살도록 요구하는것이 중대한 사회적 요인때문에 부당할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부모가 운영하는 기업에서 양성교육이 수행될 경우 양성교육 보수는 노사간 단체협약금액의 75% 이상, 또는 이것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다른 기업의 양성교육에서 동일한 직종에 지급하는 그 지방에 일반적인 총양성교육 보수의 75% 이상이어야 한다. 양성교육준비 과정 참가자에게도 연방고용청은 수업료, 교통비, 교재비 및 작업복 구입비를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직업양성부조는 보조금이나 융자금 형태로 지급된다.

- (1a) 직업양성교육부조는 생활 및 양성교육을 위하여, 또는 양성교육준비 과정 참여를 위하여 필요할 때 지급된다. 이것이 (1b)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연방고용청의 시행규칙에 의해 결정된다.

- (1b) 미혼이며 21세 미만인 직업양성교육 준비과정 참가자에게는

1. 부모집에서 기거할 경우 연방직업훈련촉진법 제12조 2항 1번의 학

- 생에 적용되는 것에서 215 DM가 감소된 금액이 적용되며
2. 부모집 밖에서 숙박할 경우 연방고용촉진법의 12조 2항 1번의 학생에게 적용되는 것에 연방고용촉진법 14a조 1항 2번에 의거한 거주 비용이 이에 첨가된다.

B. 향상훈련

제 41 조 촉진되는 교육과정

- (1) 연방은 직업상의 지식 및 숙련을 습득, 유지, 확대하며 기술발전에 적응하거나 승진을 가능하게 하며, 직업양성교육이나 적절한 직업경험을 전제로 하는 직업교육과정의 참가를 지원한다(향상교육)
- (2) 적당한 향상교육과정이 없거나 이에 대한 참가가 기대되어 질 수 없으며 이 과정이 신청자에게 향상교육을 보장할 경우 1항 의미에서의 향상교육이 아닌 교육과정의 참여도 촉진된다.
- (2a) 기업내에서 실시되는 향상교육의 참여는 이 과정이 직업교육법 46조나 수공업 시행령 42조나 45조 의미의 시험으로 종료되거나, 또는 이론지식의 전달이 전체수업의 1/4이상일 경우에만 촉진된다.
- (3) 향상교육과정의 참여는 이 과정이 2주 이상일 때, 그리고 신청자가 임금계속 지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 과정이 4주 이상일 때에만 촉진된다. 전일수업의 향상교육은 기간이 2년 이상일 때에만 촉진된다.
- (4) 교육과정 일부분의 반복이 불가피할 경우 이는 참가자가 해서이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이 반복부분이 6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을 때만 촉진된다. 이에 의해서 2항에 명시된 최장촉진기간이 초과될 경우에도 이는 가능하다.

제 42 조 촉진되는 사람

- (1) 촉진되는 사람은

1. 직업양성교육을 이수했을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신청자 및
2. 직업양성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6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신청자이다.

이 근무기간은 신청자가 6개월 이내의 전일수업에 참가하거나, 24개월 이내의 반일수업이나 직장과 병행하는 수업에 참여할 경우 2년씩 단축된다. 향상교육에의 참가가 제44조 2항 2번째 문장 1~3번의 의미에서 절대로 필요할 경우 직업경험의 조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 (2) 이미 고용촉진법에 의해 향상교육이나 재교육이 촉진되었던 근로자가 신청할 때에는 그가 이 교육을 이수한 후 3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만 촉진된다. 이 기간은 1항 2번째 문장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1년 단축된다.

근무경험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1. 신청자가 3개월 이내에 전일 수업이나, 12개월 이내의 단일수업 또는 직장과 병행하는 수업의 향상교육이나 재교육과정에 참여해서 이것이 촉진되었거나, 현재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2. 이러한 교육과정의 참여가 제44조 2항 2번째 문장 1~3번의 의미에서 절대로 필요한 경우이다.
- (3) 1항 및 2항에서 요구되는 근무기간에는 신청자가 실업되어 있던 기간도 포함된다. 하지만 1항에서 요구되는 근무기간은 반이상 단축될 수는 없다.
- (4) 연방노동사회성 장관은 고용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시행령을 통하여 1년 동안 1항 및 2항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신청자도 촉진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제 43 조 촉진대상

- (1) 향상교육이 촉진되는 것은 특히 다음을 목표로 할 때
1. 승진

2. 지식과 능력을 직업적 요구에 적응시킴
 3. 여성 구직자의 취업이나 재취업
 4. 직업교육 이수를 위한 졸업시험
 5. 교육담당자의 양성 및 향상교육
 6. 고령실업자의 재취업의 경우이다.
- (2) 향상교육참여가 주로 신청자가 속해 있는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이는 촉진되지 않는다. 이는 특히 교육과정이 직,간접적으로 신청자가 속해 있는 기업에 의해 관장되거나 주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경우이다. 하지만 이를 촉진할 특별한 노동시장적 이유가 존재할 때 이는 촉진된다.

제 44 조 생활비

- (1) 생활비는 전일수업의 향상교육 참가자에게 지급된다.
- (2) 생활비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간호를 해야하기 때문에 취업할 수 없을 때는 제112조의 의미에서 피용자가 일반적으로 부담하는 법적 공제액 만큼 감소된 임금의 73%,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이의 65%에 해당한다.

1항에 따른 생활비 보조의 조건은 교육과정의 참여가

1. 실업상태의 신청자가 취업할 수 있거나
2. 실업에 직접 직면해 있는 신청자가 실업자가 되지 않거나
3. 직업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 이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일 경우이다.

실업에 직접 직면해 있는 피용자는 특히 이미 해고가 발표되어 있거나, 고용주 자신에 대한 도산절차의 개시가 신청되어 있는 경우이다.

- (2a) 2항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신청자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교육 과정에 참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 제112조의 의미에서 피용자가 일반적으로 부담하는 법적 공제액만큼 감소된 임금의 58%에 해당하는 생활비가 용자될 수 있다.

- (2c) 연방노동사회성장관은 2항 및 2a항에 따른 현금급부수준을 매년 시행규칙을 통해 정한다.
- (3) 생활비 금액은
1. 직업교육과정에 참가하기 바로 전에 실업수당이나 실업부조를 수령한 참가자에게는 실업수당이나 실업부조가 마지막으로 지급되는데 사용된 급여를 사용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2. 측정기간 동안 직업양성교육에 참여했으며 이의 졸업시험을 합격한 참석자에게는 제112조 7항에 따른 임금의 75%에 해당하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이는 직업양성교육 동안 받았던 보수보다 많아 야 한다.
- (4) 생활비 수령자가 교육과정에 참가하는 것 이외에 자영적 또는 비자영적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이것의 금액이 세금, 사회보험각출료, 연방고용청 각출료 및 자영지출비를 공제한 후 주당 30DM 이상일 경우 생활비 계산에 고려된다.
- (5) 생활비 수령자가 교육과정 참여때문에 고용주로부터, 또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이전이나 현재의 고용관계 때문에 교육과정 참여기간 동안 받거나 요구할 수 있는 현금급부는, 이에서 세금, 사회보험 각출료 및 연방고용청 각출료를 공제한 후의 금액에 생활비 보조를 합한 것의 액수가 현금급부수준 결정에 기준이 되는 제111조에 의한 급여보다 많을 경우 생활비 보조 계산에 고려된다.
- (6) 2항에 의거한 생활비 수령자가 중대한 이유없이 교육과정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또는 중대한 이유없이 교육과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교육과정에서 제외되는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 연방고용청은 그가 이 교육기간 동안 실업수당 뿐만 아니라 실업부조를 수령할 권한이 없었던 것처럼 계산해서 지금까지 지급되었던 생활비 보조 전체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만일 그가 연방고용청과 상담한 후 지속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시작할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 (7) 실업수당에 대한 제4장의 규정은 생활비 지급의 특성이 이에 반하지

않는한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 45 조 촉진규모

연방고용청은 항상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특히 수업료, 교재비, 교통비, 작업복 구입비,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비와, 이 교육에 참가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의 거주가 피할 수 없을 때는 거주비 및 추가되는 식사비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

제 46 조 추가적인 급부를 수령할 조건, 반환

- (1) 제44조 2항, 2a항과 제45조에 의한 급부는 교육과정이 시작하기 전 지난 3년 중 최소한 2년간 당연가입대상이 되는 직종에 종사했거나, 최소한 156일간 실업수당을 받았거나 실업수당 수령후 실업부조를 받았던 신청자에게 지급된다. 이 3년의 기간은 생활비 조달을 위해 취업해야 하며, 주로 자녀양육을 위해 취업할 수 없었던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2) 1항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제44조 2항 2번째 문장 1번의 조건을 충족시키며 교육과정이 시작될 때까지 실업수당이나 실업부조를 수령한 신청자에게는 실업수당이나 실업부조로 마지막에 수령한 액수만큼의 생활비가 지급된다. 실업수당이나 실업부조가 신청자가 직업교육에 참가하는 기간동안 인상되면 생활비도 동일한 날부터 이에 맞추어 인상된다.
- (3) 1항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제44조 2항 2번째 문장의 조건을 만족시키며 교육과정 이수후 최소한 3일간 당연가입대상인 분야에 취업할 것을 약속하는 신청자에게는 제45조에 의한 급부가 지급된다. 만일 신청자가 교육과정 이수후의 4년중 특별한 이유없이 3년 이상 당연가입대상의 분야에 취업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급부는 반환되어야 한다.

C. 재교육

제 47 조 재교육과정

- (1) 연방고용청은 다른 적당한 직업으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며, 특히 직업적 이동을 보장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에 구직자가 참가하는 것을 촉진한다. 제41조 4항, 제42조와 43조 2항 및 제44~46조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 (2) 재교육을 통해서 현재 고용되어 있는 구직자의 실업이 방지될 수 있으면, 이는 가능한한 빨리 실시되어야 한다. 재교육 참가는 일반적으로 교육기간이 2년 이내일 경우에만 촉진된다.

III. 직업훈련의 지원

제 50 조 촉진되는 기관, 촉진의 종류 및 신고

- (1) 연방고용청은 직업양성교육, 향상교육, 또는 재교육 목적에 사용되는 기관의 건설, 확장 및 시설설비를 위하여 용자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 기관의 유지역시 보조될 수 있다.
- (2) 연방고용청은 직업교육기관이 적절한 수준에서 자기재원으로 비용을 부담하거나 또는 이 비용을 부담할 법적 의무가 없을 때만 촉진한다.
- (3) 교육기관촉진의 목적이 용자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없을 때만 보조금은 지급되어도 된다.
- (4) 연방고용청은 용자나 보조금의 지급을 연방고용청이 이 기관에서 직접 직업교육을 실시하거나 다른 직업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과 연계시킬 수 있다.

제 51 조 촉진되지 않는 기관

직업교육기관이 직업학교에서의 직업양성교육, 또는 주로 기업이나 단체의 목적이나 이익에 기여할 경우 이는 촉진되지 않는다. 하지만 교육과정 이 다른 방법이나 충분한 규모로, 또는 적시에 실행되지 않을 때는 위에 열거한 기관도 예외적으로 촉진될 수 있다.

제 52 조 교육기관의 설립

(1) 연방고용청은 급박한 수요 상황에서 적절한 교육기관이 부족하면 제 33조에 따라 다른 교육기관과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교육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제 5 절 취업 및 자영업 촉진

제 53 조 취업촉진을 위한 급부

- (1) 연방고용청은 실업상태에 있거나 실업에 직면해 있는 근로자가 취업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급부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원에 수반되는 제비용
 2. 여행 및 이사비용에 대한 보조
 3. 장비구입
 4. 타지역에서의 취업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할 경우 별거보조
- (2) 연방고용청은 1항의 급부를 직업양성교육 신청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 (3) 제1항 및 2항의 급부는 근로자가 이러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할 수 없을 때에만 지급된다.

제 54 조 편입보조

(1) 연방고용청은 일반적인 노동시장 조건으로 취업하기가 어려운 실업자

와 실업에 직면해 있는 근로자의 취업을 위해 고용주에게 용자나 보조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급부는 단체협약 임금이나 이것이 없을 경우 그 지역에 일반적인 해당직업 임금의 50%를 넘어서는 안된다. 또한 이것은 2년 이상 지급되지는 않는다. 6개월 이상 임금이 보조될 때 이것은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최소한 전체 임금의 10%이상 감소되어야 한다.

- (2) 연방고용청은 시행규정을 통하여 1항의 급부를 지급하기 위한 조건, 종류 및 규모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제 55a 조 자영업 지원을 위한 급부

- (1) 연방고용청은 최소한 4주 이상 실업수당이나 실업부조를 수령한 실업자가 주당 18시간 이상의 자영업을 시작할 때 최대한 26주간 과도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과도기수당 지급에 대한 조건은 자영업의 성공여부에 대한 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제시하는 것이다.
- (2) 과도기수당은 최대한 신청인이 실업수당이나 실업부조로 최근에 수령한 금액까지만 지급된다.

제 6 절 재활을 위한 직업촉진 급부

제 56 조 직업촉진 급부 및 보완적인 급부

- (1) 연방고용청의 재활을 위한 직업촉진 급부는 육체적, 정신적 부자유자들의 능력에 맞는 취업의 조성 및 유지, 그리고 부자유자들이 지속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보조이다.
- (2) 직업촉진급부는 본질에 다른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특히 제2절 ~ 제5절에 언급되어 있는 급부이다.
- (3) 직업촉진급부는 다음과 같은 급부에 의해 보완된다;
1. 생계비보조
 2. 의료보험, 산재보험 및 연금보험 각출료

3. 재활을 위한 직업촉진 급부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비용의 부담, 이에
 는 특히 수험료, 시험비용, 교재비, 작업복 및 작업공구, 그리고 이것
 이 기업내에서 실시될 경우 고용주에 대한 양성교육부조.
- (3a) 재활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지체부자유자의 특성상 담당기관에 대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할 때만 이루어진다.
- (4) 향상교육 및 재교육에 대한 급부는 전일수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교육
 기관이 2년 이내 일때만 지급된다.

제 59 조 생계비보조

- (1) 부자유자가 향상교육이나 재교육에 참여하기 때문에 전일 근무를 할
 수 없으면 그는 생계비보조를 받을 권한이 있다. 부자유자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일 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
 다;
 1. 부자유자가 직업준비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2. 직업양성교육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생계비보조는 부자유자가 지난 5년중 2년 이상 각출료를 납부했거
 나, 또는 최소한 156일 이상 실업수당이나 실업수당 수령후 실업부조
 를 수령했을 때 가능하다. 이 5년의 기간은 생활비 조달을 위해서 취
 업해야 하며 주로 자녀양육 때문에 취업할 수 없었던 신청자에게는 적
 용되지 않는다.
- (2) 생계비보조는 상실되는 임금의 80% 만큼, 최대한 상실되는 순임금만
 큼 지급된다.

제 59b 조 생계비보조의 조정

생계비보조는 연금조정법에 의해 지난해 공적 연금액이 인상된 만큼 매
 년 인상된다.

제 3 장 현존하는 직장유지와 직장창출을 위한 급부

제 1 절 단축근로수단

제 63 조 지급대상

- (1) 조업단축 수당은 1명 이상 고용되어 있는 기업에서 일시적 조업단축이 발생할 때 조업단축수당의 지급을 통하여 근로자는 직장을 유지하며, 기업은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 (2) 조업단축 수당은 정규근무시간이 없는 기업, 흥행업 및 연극업 등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제 64 조 기업의 조건

- (1) 조업단축 수당이 지급되기 위한 기업의 조건은
 1. 기업의 구조 변화를 포함한 경제적 원인이나 불가피한 사태로 조업단축이 발생하고
 2. 조업단축이 피할 수 없으며
 3. 연속 4주 이상 실제 종사자의 1/3이상이 근무시간의 1/10 이상을 조업단축해야하며
 4. 고용단축이 지방고용사무소에 신고되어 있어야 한다.
- (2) 고용주 잘못에 기인하지 않는 행정조치로 조업단축이 발생할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태로 간주된다. 조업단축이 계절적 변화에 기인할 경우 불가피한 사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 (3) 조업단축이 주로 해당 산업분야에 일반적이거나, 기업에 일반적이거나, 계절에 기인하거나, 또는 단지 기업조직적 원인에 기인할 때에는 조업단축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제 65 조 개인의 조건

- (1) 조업단축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1. 제64조에 의하여 조업단축수당이 지급되는 기업에서 조업단축이 발생한 이후에 고용보험의 당연가입대상이 되는 직종에 지속적으로 취업하며
 2. 조업단축의 결과 임금이 줄어들거나, 또는 전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이다.
- (2) 비직업적이거나 비정규적으로 근무하거나, 또는 직업교육참가로 생활비 보조나 생계비보조를 받는 사람은 조업단축수당을 받을 권한이 없다.
- (2a) 조업단축 수당은 조업이 단축되는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제 67 조 지급기간

- (1) 조업단축 수당은 조업단축이 시작된 후 6개월 동안만 지급될 수 있다. 이 6개월의 지급기간은 조업단축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날만큼 연장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지급되지 않는 날이 연속으로 1달을 초과하면 전체 지급가능기간은 이 기간만큼 연장된다.

제 68 조 조업단축 수당의 측정

- (1) 조업단축 수당은 조업단축이 발생한 시간동안 지급되며, 본래의 임금에 조업단축된 시간을 곱하여 계산된다.

제 2 절 건설업 항시고용촉진

1. 일반적인 규정

제 74 조 일반적인 것

- (1) 연방고용청은 건설업 항시고용촉진을 통하여 날씨가 좋지 못한 계절

에도 공사가 실시되며, 날씨에 기인하는 공사중단시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 (2) 연방고용청은 생산적인 겨울철공사 촉진의 급부와 악천후 수당을 통하여 건설업 항시고용을 촉진한다.

제 75 조 개념에 대한 규정

- (2) 촉진기간은 12월 1일~3월 31일이며, 악천후 기간은 11월 1일~3월 31일이다.

제 76 조 허용된 기업

- (1) 1항에 따라 항시고용이 촉진되는 기업의 고용주와 이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이 절에 따른 급부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
- (2) 연방노동사회성 장관은 시행규칙을 통하여 항시고용이 촉진되는 건설업분야를 정한다. 여기서 그는 생산적인 겨울철공사 촉진과 악천후 수당에 대해 다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 생산적인 겨울철공사 촉진

제 77 조 기계와 설비를 위한 보조 및 임대

- (1) 건설업의 고용주에게는 악천후 기간에 실시되는 공사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계와 설비의 구매와 임대에 보조금이 지급된다. 비용이 적게 드는 기계와 설비의 구매와 임대는 촉진되지 않는다. 기계와 설비의 구매를 위하여 융자금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다.

제 78 조 추가비용보조-일반적 조건

- (1) 건설업의 고용주에게는 촉진기간에 실시되는 공사에서 날씨에 기인하는 추가비용에 대한 보조가 지급된다.

제 79 조 추가비용보조시작 및 액수

- (1) 추가비용보조는 빠르면 제81조 2항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이 지방고용 사무소에 이루어진 날부터 지급된다.
- (2) 추가비용보조는 촉진기간동안에 이루어진 피용자의 근무시간 및 촉진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 (3) 연방노동사회성 장관은 시행규칙을 통하여 2항에 따른 촉진비율을 정한다. 이 비율은 촉진되는 공사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의 1/3 ~2/3에 해당한다.

제 80 조 겨울철 수당

- (1) 제83조의 조건이 충족되는 기업에서 날씨에 영향을 받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촉진기간에 행하여지는 근무에 대해 겨울철 수당이 지급된다. 겨울철 수당은 시간당 2DM이다.

3. 약천후 수당**제 83 조 일반적인 조건**

약천후 기간동안의 날씨에 기인하는 조업단축시에도 고용관계가 지속되면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약천후 수당이 지급된다.

제 84 조 기업의 조건

- (1) 약천후 수당은
 1. 조업단축이 단지 기후적 원인에 기인하며
 2. 조업단축시간이 하루에 1시간 이상일때 지급된다.

제 85 조 개인의 조건

- (1) 약천후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1. 조업단축발생시 당연가입대상이며 기후에 의존하는 직종에서 노동자로 근무하며
 2. 조업단축의 결과 조업단축시간에 대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이다.
- (2) 약천후 수당에 대한 청구는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기간동안에만 가능하다.

제 86 조 약천후 수당의 측정

- (1) 약천후 수당의 측정에는 제68조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 3 절 고용창출책

1. 일반적인 고용창출책

제 91 조 연방고용청 재원으로의 촉진

- (1) 고용창출은 연방고용청의 재원으로 촉진된다.
- (2) 공익에 부합되는 사업은, 이것이 연방고용청에 의해 촉진되지 않을 경우 시행되지 않거나, 또는 훗날에야 시행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촉진이 노동시장 상황상 바람직할 때, 사업의 수행기관에 대한 보조를 통하여 촉진될 수 있다.
- (3) 촉진이 선호되는 사업은
1. 실업자가 지속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는데, 특히 구조변화나 기술변화의 부정적 결과를 상쇄하는데 또는
 2. 구조개선을 준비하거나,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보완하는데 또는
 3. 장기실업자가 취업할 기회를 창출하거나 또는

- 4. 국민복지를 위한 사회간접시설을 향상시키거나 또는 자연보호에 기여하는데 적당한 사업이다.
- (4) 전국 평균보다 취업상황이 좋은 지방고용사무소 관할 지역에서는 촉진되지 않는다.

제 94 조 보조액

- (1) 보조는 최소한 단체협약임금 또는 이것이 없을 때 그 지역에 일반적인 해당 분야 임금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 (2) 지난 6개월간의 실업률 평균이 전국치보다 30% 이상 높으며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조건으로 취업하기가 어려운 근로자가 주로 거주하는 지방고용 사무소에서는 90%까지의 보조가 가능하다.

제 4 장 실업 및 도산발생시의 급부

제 1 절 실업수당

제 100 조 청구요건

- (1) 실업상태에 있으며, 연방고용청의 직장알선에 응하며, 일정기간 각출료를 납부했으며, 지방고용사무소에 실업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실업수당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
- (2) 65세 이상의 사람은 실업수당 청구권이 없다.

제 101 조 실업의 개념

- (1) 동법 의미에서의 실업자는 당분간 고용관계에 있지 않거나, 또는 제한된 시간의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이다.

제 102 조 제한된 고용관계

- (1) 제101조 1항의 의미에서의 단시간 근로시간은 주당 18시간 미만의 고용을 의미한다. 근무시간이 가끔 18시간을 약간 벗어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제 103 조 직장알선에 응한다는 것의 의미

- (1) 직장알선에 응하는 사람은
1. 적절하며 제168조에 따라 당연가입대상인 직장에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조건으로
 2. 적절한 직장에의 취업, 적절한 직업양성교육, 향상교육 및 재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3. 지방고용사무소를 매일 방문할 수 있으며 지방고용사무소가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다. 직장생활에 대한 본인의 태도 때문에 피용자로서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은 직장알선에 응하고 있지 않다.
- (2) 적절함을 판단하는데는 실업자와 피보험자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한다.
-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연방고용청이 시행규정을 통하여 정한다.

제 104 조 각출료 납부 기간

지난 3년중 360일 이상 각출료를 납부한 사람은 각출료 납부기간의 조건을 충족시킨다. 이러한 3년의 기간은 실업된 날부터 소급되어 적용된다.

제 105 조 실업사실의 통지

실업자는 개인적으로 관할 지방고용사무소에 실업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 106 조 지급기간

- (1) 실업수당 지급기간은 156일이다. 지급기간은 지난 7년간(준거기간) 각출료 납부한 기간과 실업자의 연령에 따라 연장된다.

제 110 조 지급기간의 단축

실업수당 지급기간은 제119조에 따른 지급정지 기간만큼 단축된다.

제 111 조 실업수당 수준

- (1) 실업수당은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공제한 임금의 68%가, 그리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이의 63%가 지급된다.
- (2) 연방노동사회성 장관은 시행규칙을 통하여 1년간 적용되는 급부수준을 정한다.

제 112 조 측정임금

- (1) 제111조 1항 의미에서의 임금은 실업자가 준거기간동안 평균적으로 취득한 주당임금이다. 초과근무수당, 해고때문에 받는 상여금 및 보너스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임금측정기간은 실직전 3개월이 기준이 된다. 하지만 임금이 고용관계 종료전의 1년 동안 상당히 많이 상승했을 경우 임금측정기간은 9개월이 된다.

제 116 조 노동쟁의시의 중립성

- (1) 연방고용청은 실업수당의 지급을 통하여 노동쟁의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노동쟁의에 관련되지 않은 기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쟁의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다.

- (2) 근로자가 국내의 노동쟁의에 참여함으로써 실업이 되면 실업수당 청구권은 쟁의가 종료될 때까지 정지된다.
- (3) 본인이 직접 관련하지 않은 국내의 노동쟁의를 통해서 근로자가 실직하였어도 다음의 경우에는 실업수당 청구권은 쟁의종료시까지 정지된다;
1. 만일 근로자가 취업하던 기업이 쟁의중인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영역과 지역적뿐만 아니라 전문직종상 일치하거나 또는
 2. 지역적으로는 일치하지 않지만 전문직종상 일치하며 해당기업이 속해 있는 지역의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것이 쟁의중인 단체협약과 중요내용상 동일하며, 노동쟁의를 통해 노동조합이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노동쟁의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도 적용될 것으로 기대될 때이다.
- (4) 노동쟁의시 3항에 따른 청구권의 정지가 특정 근로자 단체에 예외적으로 정당화되지 못할 때 주고용사무소의 행정위원회는 이들에게 실업수당이 지급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노동쟁의의 영향이 주고용사무소 관할영역을 넘어서까지 미칠 경우에는 행정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 (5) 3항 2번의 조건이 충족되는지의 여부는 중립위원회(제206a조)가 결정한다.

제 119 조 정지기간

- (1) 실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1. 고용관계를 스스로 파기하거나, 또는 부당한 행위로 해고의 동기를 제공하거나
 2. 고용주와 근무하는 직종을 명시한 직장알선에 응하지 않거나
 3. 직장양성교육, 향상교육 및 재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며
 4. 3번에 명시된 교육을 도중에 중단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배제될 동기를 제공할 때에는 8주간 지급이 정지된다.

제 119a 조 정지기간의 연장

제119조 1항 1번에 따른 지급정지 기간은 1985년 1월 1일~1995년 12월 31일 까지 12주로 연장된다.

제 120 조 출두지연

- (1) 지방고용사무소에 출두할 것을 요구함에도 실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 시작되는 날부터 2주간 실업수당 청구권은 정지된다.
- (2) 실업자가 1항에 의한 2주의 정지기간동안 지방고용사무소의 출두요구에 다시 응하지 않을 경우 실업수당은 실업자가 개인적으로 출두할 때까지, 최소한 4주간 정지된다.

제 129 조 관할권

- (1) 관할 지방고용사무소는 실업발생시 실업자가 거주하던 지역의 지방고용사무소이다.

제 132a 조 외부검사

- (1) 연방고용청은 급부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체내의 외부검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다.

제 2 절 실업부조금

제 134 조 청구요건

- (1) 실업부조 청구권은
 - 1. 실업상태에 있으며, 직장알선에 응하며, 지방고용사무소에 실업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실업부조를 신청했으며
 - 2. 각출료 납부기간의 부족으로 실업수당 청구권이 없으며

3.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4. 지난 1년중 실업수당을 수령했거나, 또한 지난 1년중 150일 이상 각 출료를 납부한 근로자에게 있다.

제 3 절 도산수당

제 141a조 원 칙

고용주의 임금지급 불능시 근로자는 임금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도산수당).

제 5 장 급부지급에 대한 공통적인 규정

제 155 조 의료보험 당연가입의 원칙

- (1) 실업수당, 실업부조 또는 생활비보조 수령자는 의료보험에 피보험된다.

제 157 조 의료보험 각출료

- (1) 제 155조에 따라 피보험된 사람의 각출료는 연방고용청이 부담한다.

제 162 조 조업단축 수당 및 악천후 수당 수령자의 의료보험 가입

- (1) 근로자가 조업단축 수당이나 악천후 수당을 수령하는 한 그의 공적의료보험에 대한 가입상태는 지속된다.

제 166 조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각출료

- (1) 조업단축 수당이나 악천후수당 수령기간 동안 근로자의 연금에 대한 당연가입상태는 지속된다.

제 6 장 비용의 조달

제 1 절 보험료

제 167 조 각출료 부담

연방고용청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적립금에 의해 충당되지 않을 때에는 피용자와 고용주로 부터 각출료를 징수하며, 피용자와 고용주에게 동일한 각출료율이 적용된다.

제 168 조 당연가입 대상자

(1) 당연가입대상자는 제169~169c조에 의하여 가입이 면제되지 않는 한 노동자나 사무직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또는 직업양성교육을 위해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다.

제 169 조 가입면제자

가입면제자들은 공무원, 판사 및 직업군인처럼 직업자체가 보장체제를 가지고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제 169a 조 시간적으로 제한된 고용관계

(1) 시간적으로 제한된 고용관계(제102조)에 있는 근로자는 당연가입이 면제된다.

제 169b 조 학생 및 대학생

학생 및 대학생이 취업할 경우 이들은 당연가입이 면제된다.

제 169c 조 기타 가입면제자

가입면제자는

1. 65세 이상의 근로자
2. 공적연금제도에서 취업불능연금을 수령하는 사람
3. 취업능력의 감소로 직장알선 대상이 되지 않는 근로자이다.

제 171 조 피용자 각출료의 부담

피용자 임금이 표준소득월액 상한선의 1/7이하일 경우 고용주 혼자서 각출료를 부담한다.

제 174 조 보험료

피용자와 고용주의 각출료는 각각 표준소득월액 상한선 이내 임금의 3.15% 이다.

1991년 4월 1일~1991년 12월 31일까지 이는 3.4%이었다.

제 175 조 각출료 산출

- (1) 각출료 산출 기준은 공적연금의 각출료 납부 한계액 이내의 당연가입 대상자의 임금이다.

제 2 절 생산적인 겨울철공사 촉진의 납부금

제 186a 조 생산적인 겨울철공사 촉진-비용의 조달

- (1) 행정사무비와 기타 비용을 포함한 겨울철공사 촉진의 비용은 제77조~80조의 급부지급을 통하여 임시고용이 촉진되는 건설업의 고용주에 의하여 조달된다. 납부금은 건설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총임금의 일정비율로서 매달 징수된다. 행정사무비와 기타 비용은 일정액으로

징수된다.

제 3 절 도산수당의 납부금

제 186b 조 비용의 조달

- (1) 행정사무비와 기타비용을 포함한 도산수당의 비용은 직업협동조합에 의해서 매년 차후적으로 징수된다.
- (2) 행정사무비와 기타비용은 일정액으로 징수된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연방노동사회성 장관이 정한다.

제 4 절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제 187 조 연방정부의 용자·보조의무

- (1) 각출료수입 및 제220조 2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연방고용청의 지출을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연방정부는 제220조 4항에 따라 적립된 금액 만큼 용자한다.
- (2) 연방고용청의 지출이 1항에 따른 용자에 의해 충당될 수 없을 때에는 연방정부는 헌법 제120조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한다.

제 188 조 위탁사업의 비용부담, 사무행정비

실업부조 및 제3조 5항에 따라 연방고용청에 위탁된 과제에 소요 되는 비용은 연방정부가 부담한다. 그러나 사무행정비는 부담되지 않는다.

제7장 연방 고용청

제1절 조 직

제 189 조 연방고용청의 법적형태 및 구조

- (1) 연방고용청은 자치운영의 공법상의 법인체이다. 본부는 뉴른베르크에 위치한다.
- (2) 연방고용청은 본부, 주고용사무소 및 지방고용사무소로 구성된다.
- (3) 州고용사무소와 지방고용사무소의 관할지역은 행정위원회가 관련 주 관리와의 협의와 경제적 관련사항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 (4)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 과제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위원회는 필요 시 특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190 조 자치운영 기관

연방고용청의 기관은 행정위원회, 이사회, 주고용사무소의 운영위원회 및 지방 고용사무소의 운영위원회이다.

제 206a 조 중립위원회

- (1) 중립위원회는 이사회에 속해 있는 피용자 및 고용주 대표 그리고 연방 고용청 총재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연방고용청 총재이다.

제2절 예산 및 자산

제 215 조 재원의 사용

연방고용청 재원은 단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허용된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 220 조 적립금

- (1) 수입이 지출을 초과할 때 연방고용청은 이를 노동시장의 상황이 악화될 때 연방고용청의 지불능력을 보장하는데 기여하는 적립금에 사용해야 한다. 지불능력을 보장하는데 적립금이 필요하지 않으면 수입초과분은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적립금은 이자수익이 있는 데에 투자되어야 한다.
- (2) 연방고용청의 지불능력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만기가 1년 이내인 곳에 투자되어야 한다.

IX. 형사관련법

형사복권법

제 1 장 복권 및 추가청구권

제 1 조 반법치국가적인 재판의 취소

- (1) 통일조약 제3조에 명기된 가입영역에서의 1945년 5월 8일부터 1990년 10월 2일까지의 기간중 독일국가법원에 의한 형사재판이 특히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이유로 자유법치국가질서의 기본원칙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재판은 신청에 기하여 법치국가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취소된다(복권).
1. 그 재판이 정치적인 소추에 이용된 때, 이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규정에 의한 유죄판결의 경우가 해당된다:
 - a) 배반적인 정보의 전달(구동독 형법 제99조)
 - b) 반국가적인 인신매매(구동독 형법 제105조)
 - c) 반국가적인 선동(구동독 형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2항 및 제3항)
 - d) 불법단체조직에의 가입(구동독 형법 제219조)
 - e) 불법적인 국경통과(구동독 형법 제21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4항)
 - f) 1949년 10월 7일 구동독 헌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태업선동 및
 - g) 내용상 상기의 a)호 내지 e)호에 명기된 규정에 상응하는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2. 선고된 처분과 기초가 된 범죄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때
- (2) 발트하임 지원인 험니츠 지방법원의 1950년 재판은 자유법치국가 질서의 기본원칙과 양립하지 아니한다.

- (3) 재판이 수개의 형벌규정의 위반을 근거로 하고 동시에 제1항의 요건이 그 형벌규정의 일부에 있어서만 성립하는 경우 처분의 선고에 있어 그 밖의 법률위반이 중대한 것이 아닌 때에는 재판의 전부가 취소될 수 있다.
- (4) 재판의 전부취소가 고려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 조 제1항의 요건이 성립하는 재판의 부분을 취소한다.
- (5) 법원의 재판이 아닌 형사처분에 대해 이 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 (6) 동일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하여 허용된 복권 및 파기 신청에 대해 1990년 10월 2일 이후 확정력이 발생한 재판이 행해진 때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이전의 신청이 인정되리라고 입증한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 조 반범치국가적인 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

이 법의 규정은 법원이나 기타 관청에 의한 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이 정치적인 박해나 그 밖의 사실과 다른 목적을 위해 행해진 때에는 이에 대해 준용된다.

제 3 조 추가청구권

- (1) 제1조에 따른 재판의 취소는 이 법에 따른 신청에 기하여 행해진다.
- (2) 목적물의 몰수나 재산몰수가 취소된 때에는 재산법 및 투자법에 따라 재산의 반환이 이루어진다.

제 4 조 집행의 종료

- (1) 형사법원재판의 집행이 아직 종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는 취소된 재판의 확정력 발생과 동시에 종료된다. 아직 집행되지 아니한 처분의 집행은 제1조에 따른 신청에 의해 연기되지 아니한다. 법원은 집행유예나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 (2) 법원은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이미 집행된 처분을 고려하여 불균형할 때에는 그 집행의 종료를 선고할 수 있다.

제 5 조 연방중앙등록부

- (1) 법원의 확정력이 발생한 재판은 연방중앙등록부에 통지한다. 단, 이는 당사자가 사망한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2) 이 법에 따라 취소된 법원의 재판에 근거한 동독 형벌등록부 중앙등록부에서 말소한다. 취소된 재판이 동독 형벌등록부나 연방중앙등록부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연방중앙등록부에 기록하지 아니한다.
- (3) 불복이 제기된 법원의 재판이 연방중앙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때에는 제1조에 따른 신청의 각하를 연방중앙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불복이 제기된 재판이 동독 형벌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록이 연방중앙등록부에 인도되고 신청의 각하가 기재된다. 이는 연방중앙등록법 제64조 a제3항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
- (4) 연방중앙등록법 제36조 제3호 및 제64조 a 제5항은 기간의 산정에 준용된다.

제 6 조 벌금, 소송비용 및 당사자의 필요경비의 상환

- (1) 재판이 취소된 때에는 납부한 벌금, 소송비용 및 당사자의 필요경비의 상환청구는 동독마르크화와 독일마르크화간에 2:1의 비율로 한다. 이미 실시된 상환이 고려된다. 제17조 제3항이 준용된다.
- (2) 정확한 확정이 불가능하거나 지나친 비용으로만 가능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상환청구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 (3) 제25조 제1항이 준용된다.

제 2 장 재판절차

제 7 조 신 청

-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조에 따른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1. 재판에 의해 직접 그 권리를 가진 당사자 또는 그의 법률상 대리인
 2.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반법치 국가적인 재판의 당사자의 복권에 대해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 또는
 3. 검찰관
- (2) 신청은 법원에 서면으로 제청하거나 서기과의 조서로서 진술할 수 있다. 신청에는 그 이유를 설시하여야 한다.
- (3) 신청은 일정한 항고사항으로 제한할 수 있다.
- (4) (본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명기된 소송관계인은 대리인을 통해 대신할 수 있다. 이 법의 효력범위내에서 인가받은 변호사 및 독일대학의 법학교수는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그 밖의 자는 법원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의 동일한 규정이 소송비용원조에 있어 적용된다.

제 8 조 관할법원

- (1) 제1조에 따른 재판에 대해서는 제1심 형사소송절차나 수사절차가 행하여졌던 구역의 지구법원이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1심에서 동등 최고법원이 재판한 경우에는 베를린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2) 불복이 제기된 재판의 선고 이후 법원의 관할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불복이 제기된 재판의 선고 당시 제1항에 따라 관할하였을 법원이 토지 관할을 가진다.

제 9 조 복권부의 구성

- (1) 지구법원과 지방법원은 각기 3인의 직업판사로 구성된 복권부를 통해

재판한다.

- (2) 1990년 10월 3일 이전에 가입영역에서 직업판사나 검사로서 재직하였던 자가 독일법관법 및 통일조약상의 기준에 따라 법관의 자격을 갖지 못한 때에는 그는 법률에 의하여 복권재판부에 참여할 수 없다. 가입영역에서 1990년 10월 3일 이전에 직업판사나 검사로서 재직하였던 자는 판사로서 복권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

제 10 조 사실관계의 수사

- (1) 법원은 직무상 사실관계를 수사한다. 법원은 기속재량으로서 수사 특히 가능한 증거조사의 방법 및 범위를 정한다.
- (2) 법원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재판에 필요한 증거자료와 그 밖의 증거방법을 제출 또는 제시하고 신청의 기초가 된 사실을 입증시킬 수 있다. (연방) 민사소송법 제294조 제1항이 준용된다.
- (3) 신청인의 요청이 있고 가능한 경우 신청인에게 불복이 제기된 재판 및 기소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4) 법원은 개별적인 수사의 실시를 검찰에 위임할 수 있다.(본조) 제2항이 준용된다.

제 11 조 재판절차

- (1) 신청이 사회적 긴급성이나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우선하여 처리된다.
- (2) 법원은 재판하기 전에 검사에게 의견개진의 기회를 부여한다. 검사가 신청을 제출한 때에는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청권자는 청문할 수 있다.
- (3) 법원은 원칙적으로 구두변론 없이 재판한다. 법원은 사실의 그밖의 사유로 인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두변론을 명령할 수 있다.
- (4) 법원은 신청인의 출석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이 이러한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은 절차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6개월

이내에 절차의 계속을 신청할 수 있다.

- (5) 신청에 대한 재판이 제3자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제3자도 절차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1항 및 제3항 제1문이 준용된다.

제 12 조 복권재판

- (1) 법원은 서면절차에서 결정을 통해 재판한다.
- (2) 결정에는 판사, 소송관계인 및 그 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한다. 결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1. 불복이 제기된 재판의 명칭
 2. 불복이 제기된 재판의 취소 및 처분의 확정
 3. 불법으로 인한 자유박탈의 기간
 4. 제6조에 따라 상환되는 벌금액 및 사유상 제6조에 따른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확정
- (3) 결정에는 그 이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소송관계인간에 다툼이 없는 복권신청이 인정된 때에는 이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결정에는 상소에 대한 고지가 있어야 하고 결정은 소송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 13 조 항 고

- (1) 결정의 송달 후 1월 이내에 이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 (2) 선고된 형의 경감에 재량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항고할 수 없다. 단, 이는 승소하여 취소될 경우 추가로 자유형이 경감될 수 있는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3) 항고에 대해서는 주정부가 소재하는 구역의 지구법원이나 고등법원이 재판하고 베를린의 경우 베를린고등법원이 재판한다. 항고법원은 복권사건특 별항고부를 통해서 재판한다. 제9조가 준용된다.
- (4)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포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및

튀링엔주는 합의에 의해 항고법원에 지정된 임무를 제3항에 따라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다른 주의 영역에 있어서도 이를 관할하는 주의 법원에 위임할 수 있다.

제 14 조 소송비용 및 필요경비

- (1) 소송비용은 인상되지 아니한다.
- (2) 신청이 전부 또는 일부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의 필요경비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신청인에게 필요경비를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한 때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부담시킬 수 있다.
- (3) 제2항 제2문에 따른 재판은 취소할 수 없다.
- (4) 항고절차에 있어 신청인의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연방)형사소송법 제 473조 제1항 내지 제4항이 준용된다.

제 15 조 법원조직법 및 형사소송법의 적용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조직법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 3 장 사회적 조정급부

제 16 조 사회적 조정급부

- (1) 복권과 함께 당사자에게는 자유박탈로 인하여 발생한 물질적 및 건강상 손실에 대한 사회적 조정급부의 청구권이 부여된다.
- (2) 이 법에 따른 사회적 조정급부는, 권리자나 권리가 파생된 자(피해자)가 인도주의 및 법치국가질서의 원칙을 위반하였거나 달리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상당한 정도로 그의 지위를 남용한 때에는 제공되지 아니한다.

- (3) 제1항의 사회적 조정급부는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른 일시적인 금전보상으로서와 제21조 내지 제24조에 따른 원호로서 제공된다.

제 17 조 금전보상

- (1) 금전보상은 자유법치국가질서의 기본원칙에 배치되는 자유박탈의 각 1월에 대해 300마르크씩으로 한다. 1989년 11월 9일까지 가입영역에 주소나 상시주거를 가졌던 권리자는 각 1월에 대해 추가로 150마르크씩의 금전보상을 지급받는다.
- (2) 금전보상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실에 기초하여 제출된 그 밖의 보상급부 특히 구금자지원법에 따른 보상급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이에 대한 확정이나 확정력이 발생한 법원의 재판이 있기 전에는 이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제 18 조 원조급부

- (1) 특별히 그 경제적 지위를 침해받음으로 인하여 제17조 제1항에 따른 권리를 갖게 된 자가 특히 연령이나 근로능력의 결여로 인해 다시 생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상당한 기간내에 근로를 통해 최저소득 이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 당해자는 구금자지원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과거 정치적 구금자 후원재단으로부터 자유박탈의 매 1월에 대해 추가로 최고 150마르크까지의 원조급부를 제공받는다. 구금자지원법 제22조 및 제23조가 준용된다.
- (2) 당해 권리자의 사망 이후 그의 배우자, 자녀 및 부모가 그 자유박탈로 인해 적지않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이 이들에 대해 준용된다.

제 19 조 곤경규정

특히 이 법 제17조 제1항 제2문의 적용으로 인해 추가의 금전보상을 지

불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특별한 곤경에 처하게 된 때에는 주무관청은 신청인에게 이러한 급부를 허가할 수 있다.

제 20 조 비용규정

연방은 이 법에 따른 급부로 인해 주에 발생한 지출의 50%를 부담한다.

제 21 조 피해자원호

- (1) 자유박탈로 인해 건강상의 피해를 입은 자는 연방원호법에 따라 신청함으로써 이러한 피해로 인한 건강상 및 경제상의 손실을 이유로 원호를 제공받는다. 단, 이는 그 자가 동일한 피해를 이유로 연방원호법이나 연방원호법을 준용하도록 한 법률을 근거로 이미 원호를 제공 받을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2) 연방원호법 제1조 제2항 e호 및 f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고에 의해 야기된 건강상의 피해는 본조 제1항의 의미상 피해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 (3) 연방원호법 제10조 제4항이나 제5항과 관련하여 본조 제1항이나 이 법 제22조에 따른 권리자나 급부수령자로서 또는 연방원호법 제8조 a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필요한 간호를 위한 간호인으로서 건강상의 피해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원호를 제공받는다.
- (4) 신체에 부착하는 보조기구, 안경, 콘택트렌즈나 의치의 손상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의미상 건강상의 피해에 해당된다.

제 22 조 유족의 원호

피해의 결과로 인하여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은 연방원호법에 따라 신청함으로써 원호를 제공받는다. 단, 이는 그의 유족이 연방원호법이나 연방원호법을 준용하도록 한 법률을 근거로 이미 원호를 제공받은 때

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법 제21조 제3항과 연방원호법 제48조 및 제52조는 준용된다.

제 23 조 청구권의 경합

- (1) 이 법 제21조에 따른 청구권과 연방원호법 제1조나 연방원호법을 준용하도록 한 법률에 따른 청구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모든 피해로 인한 근로능력의 감소를 고려하여 이 법에 따라 원호가 제공된다.
- (2) 이 법 제21조나 제22조에 따른 급부가 연방원호법이나 연방원호법을 준용하도록 한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급부와 경합하는 때에는 연방원호법 제55조가 적용된다.
- (3) 양친부양연금을 확정하는 경우 연방원호법상 피해로 인해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자녀도 고려해야 한다. 연방원호법에 따라 양친부양연금 청구권이 이미 발생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양친부양연금은 제공되지 아니한다. 제1문 및 제2문은 연방원호법을 준용하도록 한 법률에 따른 양친부양연금 청구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방원호법 제51조 제2항 제2문이 준용된다.

제 24 조 연방원호법의 적용

연방원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준용에 관한 규정은 1990년 8월 31일 통일조약 제1부속의정서 제8장 K부문 제3절에 명시된 기준과 함께 적용된다.

제 25 조 관 할

- (1)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급부의 제공과 제16조 제2항 요건의 심사 에 대해서는 복권재판이 행해진 관할구역의 주법무부가 관할한다. 주 정부는 법규명령을 통해 기타 관할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제16조 제2항과 제17조 및 제19조의 적용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서는 제8조

에 따라 관할이 있는 법원이 결정한다. 이 법 제2장의 규정이 준용된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신청은 제1문에 따른 결정의 송달 후 1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른 급부는 (다음의 1에 대해) 구금자지원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증명을 받은 자에게도 제공된다.

1. 증명이 이 법의 시행 전에 신청된 경우 독일법원에 의한 유죄판결이나 제1조 제5항에 명기된 형사처분에 근거한 구금에 대해 또는
2. 상기의 자가 통일조약 제3조에 규정된 영역내에서 독일법원에 의한 유죄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조 제5항에 규정된 형사처분에 의하지 아니하여 구금되었다는 이유로 구금자지원법 제1조 제5항 제1문에 따른 구금에 대해.

제1문에 따른 권리자에 대한 급부의 제공에 대해서는 구금자지원법 제10조 제2항 제3문 및 1990년 8월 31일 통일조약 제1부속서 제1장 D부분 제3 절 제3호에 규정된 기관이 관할한다.

- (3) 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은 법규명령에 의해 제2항에 따른 청구권에 근거한 급부의 제공시기와 회수를 사회적 긴급성에 따라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 (4)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급부의 제공에 대해서는 연방원호법의 시행관청이 관할한다. 전쟁희생자 원호시행청이 관할을 가진 때에는 전쟁희생자원호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절차에 의한다.
- (5) 이 법이 전쟁희생자 원호행정청에 의해 시행되는 때에는 사회법원이 공법상의 분쟁에 대해 재판한다. 이는 사회법원법 제51조 제2항 제2문에는 영향이 없다.

제 4 장 경과 및 종결규정

제 26 조 경과규정

- (1) 계류중인 복권 및 파기절차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계속한다.

- (2) 법원이 이 법의 시행전에 계류된 절차에 있어 토지관할을 가진 경우 이 관할은 이 법의 시행후에도 계속된다.
- (3) 복권절차가 이 법의 발효전에 종결된 때에는 추가청구권에 대해 이 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파기절차가 1990년 10월 3일 이후 이 법의 시행 이전까지 효력있는 규정에 따라 종결된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추가청구권이 보상청구권을 대신한다.

제 27 조 변호사보수

- (1) 연방변호사보수규정은 다음의 규준에 따라 이 법 제2장에 따른 복권 절차에 적용된다.
 - 1. 제1심의 경우 제8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고 구두변론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84조가 준용된다.
 - 2. 이 법 제13조에 따른 항고절차의 경우 형사부 항소절차 보수규정이 준용된다.
- (2) 그 밖의 경우에는 연방변호사보수규정이 다음의 규준에 따라 적용된다. 즉 법원의 재판신청절차나 상급종결재판에 대한 항고절차(본법 제 25조 제1항 제3문 내지 제5문 및 제13조)의 경우 변호사는 제31조에 규정된 보수 대신 보수총액의 1.5배를 받는다.

제 28 조 규정의 폐지 및 개정

- (1) 1990년 8월 31일 통일조약 제18조 제2항은 더이상 적용되지 아니한다.
- (2) 1990년 8월 31일 통일조약 제1부속의정서 제3장 A부문 제3절 제14호 h) 및 k)에 명시된 규준은 더이상 적용되지 아니한다.
- (3) 1990년 8월 31일 통일조약 제1부속의정서 제3장 A부문 제3절 제1호에 명시된 규준이 (제2항 제8호의) 파기와 관련된 때에는 그 규준은 더이상 적용되지 아니한다.
- (4) 1990년 9월 23일 법률 제1조 및 1990년 9월 18일 추가협정 제3조

제6호 에 따른 규준과 함께 존속되었던 1990년 9월 6일 복권법은 폐지한다.

- (5) 1990년 8월 31일 통일조약 제1부속의정서 제3장 A부문 제3절 제19호 c)에 명시된 규준은 더이상 적용되지 아니한다.
- (6) 1990년 8월 31일 통일조약 제1부속의정서 제3장 A부문 제3절 제26호 d)에 명시된 규준은 더이상 적용되지 아니한다.
- (7) 1990년 9월 18일 추가협정 제4조 제3호 a)에 의해 (보정된) 1990년 8월 31일 통일조약 제1부속의정서 제3장 A부문 제3절 제26호 e)에 명시된 규준은 더이상 적용되지 아니한다.
- (8) 통일조약 제1부속의정서 제3장 A부문 제3절 제14호 d)에 포함된 규준의 제4문 및 제5문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기절차나 복권절차가 실시되었거나 복권절차가 실시될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입영역에서의 반법치국가적인 형사처분으로 인한 피해자의 복권 및 보상에 관한 법에 따라 복권에 대해 관할을 가지는 법원이 그 신청에 대해 재판한다.”

구동독 국가안전부 문서법

제1장 총 칙

제1조 동 법률의 목적과 적용범위

- (1) 이 법률은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구동독의 국가안전부, 그 전신 및 후계조직의 문서의 등록, 발굴, 관리 및 이용을 규율한다.
 1. 개인적인 운명에 미친 국가안전부의 영향을 규명할수 있도록 국가공안부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관련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2. 국가안전부에서 수집된 개인관련 정보의 유포로 인하여 인격권이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3. 국가안전부 활동의 역사적, 정치적 및 법률적 정보를 보장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4.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에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 (2) 이 법률은 연방과 주의 공공기관, 자연인 기타 민간기관에 소재하는 국가 안전부문서에 적용된다.

제 2 조 국가안전부 문서의 등록, 보존 및 관리

구동독의 국가안전부 문서를 위한 연방수탁자는 이 법률의 규준에 따라 국가안전부 문서를 등록, 보존, 관리 및 이용한다.

제 3 조 개인의 권리

- (1) 모든 개인은 연방수탁자에 소장되어 있는 문서에 그 개인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문서에 개인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은 이 법률의 규준에 따라 문서상의 정보청구권, 열람권 및 인도권을 갖는다.
- (2) 모든 개인은 연방수탁자로부터 입수한 정보 및 문서를 일반적 법률의 범위내에서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 (3) 정보제공, 문서열람이나 문서인도에 의하여 보호가치가 있는 타인의 중대한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 조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국가안전부 문서 이용의 허용

- (1)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은 문서를 입수할 뿐이며 이 법률이 이를 허용하거나 명령하는 경우에 한해서 문서를 이용할 수 있다. 당사자, 제3자, 행방불명자나 사망자의 근친, 국가안전부 구성원이나 보조자가 그들 스스로 자신들에 관한 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를 제출한 경우, 문서는 제출당시의 목적을 위해서도 허용될 수 있다.

- (2) 연방수탁자가 문서상의 개인관련 정보가 사실이 아님을 확인 또는 그와 같은 사실을 통지받았거나 관련 개인의 정확여부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별도의 용지에 기재하여 문서에 첨부한다.
- (3) 제20조 내지 제25조에 따른 요청에 근거하여 개인관련 정보가 송부되고 송부후에 당해 정보가 사실이 아님이 입증된 경우, 사실관계의 판단에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보의 수령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 (4) 문서의 이용에 의하여 보호가치가 있는 타인의 중대한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 조 특별한 이용금지

- (1) 의도적인 정보조사나 기밀정보조사를 포함한 당사자의 감시에 의해서 입수된 당사자나 제3자에 관한 개인관련정보는 당사자에게 불이익하게 이용될 수 없다. 이는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당사자나 제3자의 관련사항이 정보에 근거하여 그 전부 혹은 일부가 정확하지 않다고 입증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2) 관할 검찰청이나 법원이 연방수탁자에게 일정기간동안 문서의 이용이 형사절차의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명시한 경우, 제한된 일정기간동안은 문서의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문서의 이용이 허용되지 않음으로써 권리행사에 지나치게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문서의 이용은 검찰청 또는 법원의 협조를 얻어 이루어질 수 있다.

제 6 조 개념규정

- (1) 국가안전부 문서는 다음과 같다.
 - 1. 등재형태를 불문하고 정보를 담고 있는 모든것. 특히
 - a) 소송기록, 데이터 축적장치, 서류, 카드, 설계도, 영화, 그림문서, 녹음, 기타의 기록집
 - b) 상기의 사본, 등본과 기타의 부분 및

c) 이용에 필요한 보조수단 특히 자동 데이터처리 프로그램

단, 국가안전부나 인민경찰의 제1수사업무분야의 문서로 이들 기관이 소유하고 있거나 이용을 위해 이들 기관에 인도된 경우에 한한다.

2. 국가안전부에 인도된 법원과 검찰청의 기록

(2) 다음은 국가안전부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 송부한 국가안전부의 서한 및 그 첨부물 단, 이 기관들이 국가안전부에 법률적으로나 사실상 지시할 권한이 없을 때에 한한다.

2. 관할권을 이유로 다른 기관에 재이송 또는 환송된 문서로 국가안전부가 조치를 취하였다거나 이를 지시하였다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문서

3. 1945년 5월 8일 이전에 그 처리가 종결된 문서로서 국가안전부가 문서 발굴 이외에 이를 이용하였다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문서

4. 당사자나 제3자가 국가안전부에 의해 불법적으로 압류당했거나 유치된 목적물 및 문서 단 서류의 경우, 연방수탁자는 동 문서의 사본을 취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국가안전부가 의도적인 정보조사나 기밀정보 조사를 포함한 감시에 의하여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자이다.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정보수집이 단지 국가안전부를 위한 활동의 준비 및 선전 또는 그 활동의 통제에만 공하는 경우에 국가안전부 구성원

2. 정보수집이 원조에 관한 행위의 준비나 통제에만 공하는 경우에 국가안전부 보조자

(4) 국가안전부 구성원은 직원과 비공식 협력자로 구분된다.

1. 직원은 국가안전부의 공적인 근로 또는 직무관계에 있는 자와 특별배속된 국가안전부 장교를 말한다.

2. 비공식 협력자는 국가안전부에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자이다.

(5) 국가안전부 구성원에 관한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 준용된다.

1. 국가안전부 구성원에게 국가안전부를 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지시를 부여할 권한이 있었던 자

2. 인민경찰의 제1수사 업무분야의 비공식 협력자

(6) 보조자란

1. 국가안전부로부터 특히 직업상 또는 기타 경제적인 이익의 제공을 통하여 주로 지원 받는자

2. 국가안전부 또는 그 영향으로 형사소추가 면제된 자

3. 국가안전부의 양해, 용인 또는 지원을 받아 범죄를 조장, 예비하거나 범한자를 말한다.

(7) 제3자는 국가안전부가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던 그 밖의 자들을 말한다.

(8) 국가안전부 구성원, 보조자, 당사자, 혹은 제3자인지 여부는 각 정보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그 확정의 기준은 어떠한 목적으로 정보가 문서화되었는지 여부이다.

(9) 문서의 이용에는 문서의 전달, 문서상의 정보의 송부 및 기타 정보의 처리 및 이용이 포함된다. 이 규정에서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민간기관에는 종교단체도 포함된다고 하는 규준과 함께 연방정보보호법 제2조 및 제3조의 개념규정이 적용된다.

제2장 국가안전 부문서의 등록

제7조 국가안전부 문서의 발견, 통제의무

(1) 모든 공공기관은 국가안전부 문서의 발견을 위한 조사 및 그 문서의 인수시 연방수탁자를 원조한다. 모든 공공기관은 국가안전부 문서가 동 기관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거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되는 경우 연방수탁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방수탁자는 국가안전부 문서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그 등록부, 문서 및 기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 (3) 자연인과 기타 민간기관은 동기관 등에서 국가안전부 문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즉시 연방수탁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제 8 조 공공기관의 인도 의무

- (1) 모든 공공기관은 동기관에 존재하는 국가안전부 문서 및 그 사본, 등본, 부분을 그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연방수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2) 공공기관이 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서를 제20조 내지 제23조 및 제25조의 목적범위내에서 필요로 할 경우 동 문서의 부분을 이용할 수 있다. 문서의 원본은 개별적인 경우에 임무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분은 그 요청이 있으면 연방수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3) 당사자에 관한 문서는 연방과 주의 정보기관으로 부터 연방수탁자에게 예외없이 전부 인도하여야 한다.

제 9 조 민간기관의 인도 의무

- (1) 모든 자연인 및 기타 민간기관은 국가안전부 문서를 그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연방수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단, 국가안전부 문서가 자연인이나 기타 민간기관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소유권취득의 증명은 자연인 및 기타 민간기관이 한다. 자연인 및 기타 민간기관 스스로 작성한 제10조 제4항에 따른 문서들은 그 소유로 볼 수 있다.
- (2) 문서를 연방수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할 경우에는 문서의 사본 및 기타 부분도 인도하여야 한다.
- (3) 모든 자연인 및 기타 민간기관은 그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연방수탁자에게 사본, 등본, 또는 기타 부분의 작성을 위해 그가 소유하고 있는 국가안전부 문서를 인도하여야 한다.

제 10 조 독일사회주의 통일당 및 그 제휴정당과 대중조직의 문서 및 기타 국가안전부 관련문서

- (1) 연방수탁자는 그 임무수행을 위해 관할관청에 구 독일민주공화국 독일사회주의통일당, 그 제휴정당 및 대중조직의 문서의 종류, 내용 및 보관장소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2) 연방수탁자는 문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한 문서의 조사시 그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3) 국가안전부 활동과 관련이 있고, 그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문서의 부분은 그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연방수탁자에게 인도된다. 동 문서의 부분은 제6조 제1항에 의한 문서의 구성요소가 된다.
- (4) 제1항 내지 제3항은 구독일민주공화국의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이 국가안전부와 협조하여, 국가안전부의 제시나 그 명령 또는 권유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는 문서에 대해서 준용된다.

제 11 조 연방수탁자에 의한 타관청 문서의 반환 및 인도

- (1) 연방수탁자는 국가안전부가 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지시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를 발견 할 수 없는 타관청의 문서를 다음 각호의 경우에
 1. 요청이 있거나
 2. 임무수행시 그러한 문서의 존재를 발견한 경우
관할관청에 반환하여야 한다. 연방수탁자는 그 문서의 부분을 이용할 수 있다.
- (2) 연방수탁자는 연방과 주의 보안사항에 속하는 기밀과 극비문서 및 정보 기관의 문서를 연방내무부장관이나 관할 주관청에 인도하여야 한다. 연방 수탁자는 그 문서의 부분을 이용할 수 있다.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 및 외국의 문서로 기밀사항에 속하고 국제법상의 조약에 근거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이 권한없이 열람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가 있는 그러한 문서는 국가 치안당국인 연방내무부장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3) 국가안전부에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편입 내지 병합된 기업시설, 기술적 방식 및 기업부지의 환경악화시설에 관한 문서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현재의 처분권자에게 인도되어야 한다. 연방수탁자는 그 문서의 부분을 이용 할 수 있다.
- (4) 연방수탁자는 목적물 및 기타 물건에 관한 문서 특히 보급선 및 전화선에 관한 평면도나 설계도에 관한 문서를 현재의 처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연방수탁자는 그 문서의 부분을 이용할 수 있다.
- (5) 국가안전부의 직원이 공직에 임용되었거나 이에 계속 종사할 경우, 이러한 사람들의 인사기록에 관한 문서는 필요한 범위내에서 인사기록을 관장하는 사람들의 인사기록에 관한 문서는 필요한 범위내에서 인사기록을 관장하는 관할관청에 인도되어야 한다. 연방수탁자는 그 문서의 부분을 이용할 수 있다.
- (6) 국가안전부의 전직원이 연금수령자인 경우에는 그러한 자의 인사기록에 관한 문서는 필요한 범위내에서 원호담당기관에게 인도되어야 한다. 연방수탁자는 동 문서의 부분을 이용할 수 있다.

제 3 장 국가안전부 문서의 이용

제 1 절 당사자, 제3자 및 국가안전부 구성원 및 보조자의 권리

제 12 조 당사자, 제3자, 국가안전부 구성원 및 보조자를 위한 절차규정

- (1) 문서에 관한 정보, 열람 및 인도신청은 서면으로 한다. 신청자는 관할 주관청의 확인에 의해서 동일인임과 그가 법정대리인으로 활동한 경우, 그의 대리권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의 대리권을 증명하여 대리인에 의해서 신청된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보가 제공되며 문서열람이 보장되거나 문서가 인도된다.

1. 당사자, 제3자, 구성원 및 보조자
2. 변호사

- (2) 개별적인 경우 다른 형태의 정보가 적절하지 아니한 한, 정보는 연방수탁자에 의해 서면으로 제공된다. 그는 기속재량에 따라 결정을 한다.
- (3) 정보청구에 대한 신청이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될 경우, 특히 급박한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한다. 복권, 보상, 인격권에 대한 위해방지 또는 국가안전부예의 협력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가 필요한 경우는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 (4) 열람은 문서원본이나 부분에 대하여 실시된다. 문서가 신청자의 개인 관련 정보외에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 관한 개인관련 정보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문서의 원본의 열람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실시된다.
1. 다른 당사자나 제3자가 승락하였거나
 2. 다른 당사자나 제3자에 관한 정보의 분리가 가능하지 않거나 막대한 비용에 의해서만 분리가 가능할 경우 및 비밀유지를 통해서 보호되어야 할 다른 당사자나 제3자의 이익이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 그외에 부분의 열람은 다른 당사자나 제3자에 관한 개인관련 정보가 익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 보장된다. 열람은 중앙관청이나 지청에서 이루어진다.
- (5) 문서는 다른 당사자나 제3자에 관한 개인관련 정보가 익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형태로만 인도된다.
- (6) 열람권 및 인도권은 이용에 필요한 보조수단(제6조 1항 1호 c)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문서가 발견될 수 없거나 그 발견에 막대한 비용이 지출될 경우, 문서이용에 공하고 신청자에 관한 개인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색인의 부분에 대하여도 열람권 및 인도권이 보장된다.

제 13 조 당사자 및 제3자의 정보청구권, 문서열람 및 인도권

- (1) 당사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자신에 대한 문서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

다. 신청서에는 문서의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정보제공의 목적은 기재될 필요가 없다.

- (2) 정보는 당사자에 관한 문서의 기재 및 중요한 내용의 복사를 포함한다. 정보는 문서가 존재하며 당사자가 그러한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는 통지로 제한할 수 있다.
- (3) 당사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문서의 열람이 실시된다.
- (4) 당사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문서의 부분이 인도된다. 부분에는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 관한 개인관련 정보는 익명으로 한다.
- (5) 당사자가 열람하였거나 그 부분을 얻었던 문서에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평가한 구성원이나 그 구성원을 지휘하였던 구성원의 성명이 암호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 국가안전부 문서를 통해서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구성원의 성명, 기타 인적사항을 그의 요구가 있을 때에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문은 밀고의 내용이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불만한 경우 당사자를 서면으로 밀고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성명이 비밀유지에 대한 구성원과 밀고자의 이익은 성명공표를 방해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 (6) 제5항 제1문 및 2문은 국가안전부 구성원이나 밀고자가 당사자에 대한 활동시 18세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7) 제1항 내지 제6항은 신청자가 정보의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기준하에 제3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보는 정보제공에 드는 비용이 신청자에게 유용할 정보이익과 비례할 때에만 제공된다.

제 14 조 당사자 및 제3자에 관한 개인관련 정보의 익명화 및 말소

- (1) 당사자 및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안전부 문서 및 그 문서 발견에 공하는 보조수단에서 개인관련정보는 익명화 된다. 신청은 1997년 1월 1일부터 제출할 수 있다.
- (2)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익명화 되지 않으며,

1. 타인이 현존하는 입증의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된 정보의 이용에 명백하고 중대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정보가 정치적, 역사적 청산을 위한 연구에 필요한 경우
 3. 이러한 문서에 관한 관할관청의 자료제공 요청이 계류중인 동안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신청자의 익명화에 대한 이익이 포기되어야 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문서에 포함된 신청자의 개인관련 정보는 익명화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그의 동의 없이도 양도되거나 이용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은 국가안전부 구성원의 신상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에 존재하는 신청자에 관한 개인관련 정보에 대해서도 준용된다.
- (4) 익명화가 가능하지 않거나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 익명화하는 대신 동 문서를 폐기한다. 문서가 익명화되어도 읽을 수 있는 경우에는 문서를 폐기하는 대신 등재된 관련 정보를 말소한다. 문서가 다른 당사자나 제3자에 관한 개인관련 정보도 포함하고 있으나, 이들이 문서의 폐기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문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5 조 행방불명자나 사망자의 근친의 정보청구권, 열람 및 인도권

- (1) 근친은 다음 각호의 경우, 신청에 의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1. 행방불명자나 사망자의 복권을 위하여
 2. 행방불명자나 사망자의 인격권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국가안전부에 협력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위해
 3. 행방불명자나 사망자의 운명을 규명하기 위해 신청서에는 정보입수의 목적이 명시되어야 하며 행방불명자나 사망자에 대한 친족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 (2) 제13조 제1항 제2문 및 제2항 내지 제6항은 준용된다.
- (3) 근친은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 (4) 행방불명자나 사망자가 다른 처분을 유언했거나 다른 상황에 비추어 그의 반대의사가 명백한 경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 16 조 국가안전부 구성원의 정보청구권, 열람 및 인도권

- (1) 국가안전부 구성원은 그의 신상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관련 정보를 신청에 의해 제공받을 수 있다.
- (2) 정보에는 보고된 활동, 인적집단 및 보고빈도의 방법과 범위가 포함된다.
- (3) 구성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그의 신상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의 열람이 허용된다. 제12조 제4항 제2문 제2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 (4) 구성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이에 대한 법적이익이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 그가 제출한 보고서에 기한 정보제공 및 열람이 보장된다. 비밀유지에 대한 당사자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 우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5) 구성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그의 신상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의 부분이 인도된다. 부분에는 당사자나 제3자에 관한 개인관련 정보는 익명으로 한다.

제 17 조 보조자의 정보청구권, 열람 및 인도권

- (1) 보조자의 정보청구권, 문서 열람 및 인도권에 대해서는 제16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이 준용된다.
- (2) 보조자는 정보의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3) 관할 연방최고관청이나 관할 주관청이 연방수탁자에게 정보제공 및 문서의 열람 또는 인도된 중대한 공익을 이유로 중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8 조 국가안전부에 인도된 법원 및 검찰청 문서의 정보청구권, 열람 및 인도권

연방수탁자에 의해 보존된 법원 및 검찰청문서에 대한 정보청구권, 열람 및 인도권에 대하여는 제12조 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7조, 제43조 대신에 각각의 법률상 절차규정이 적용된다.

제 2 절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국가안전부 문서의 이용

제 19 조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문서이용, 절차규정

- (1) 연방수탁자는 문서의 이용이 제20조 내지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 통지하고, 문서의 열람을 허용하며 문서를 인도한다.
- (2) 요청은 임무를 수행하는 관할 공공기관이 연방수탁자에게 한다. 민간기관을 위하여 요청을 하는 자는 서면으로 법적근거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 (3) 연방수탁자는 토지, 열람, 인도에 대한 요청이 이용목적과 관련이 있는지, 수령자의 임무범위내에 속하는지 여부 및 어느정도까지 전술한 목적을 위해 이용이 필요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법원, 검찰청 및 검찰청의 보조기관인 경찰의 요청의 경우, 연방수탁자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여부만을 심사한다.
- (4) 개별적인 경우 다른 통지형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 통지는 연방수탁자에 의해 서면으로 행한다. 이 결정은 기속재량에 의하여 행한다.
- (5) 통지요청이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경우, 특히 급박한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한다. 아래의 경우는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1. 복권, 보상 및 인격권에 대한 위해방지 또는 국가안전부와의 협력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지가 필요한 경우
 2. 구독일민주공화국 및 그 지역에 거주하는 구권리자의 재산 및 상업적 조정분야에 속하였던 재산의 규명, 파악 및 보전시
 3. 제20조 제1항 6호, 7호 및 제21조 제1항, 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심사시
 4. 제23조 제1항 제1문 1호 a, b 및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추

와 위해방지시

- (6) 통지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열람이 허용된다. 제12조 제4항은 신청자 대신에 요청과 관련된 자에 대하여는 규준하에 준용된다.
- (7) 요청을 하는 기관이 통지나 열람만으로는 불충분하거나 열람을 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고 소명하는 경우에는 문서가 인도된다. 문서의 원본은 특히 입증목적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에만 인도된다. 문서의 원본이 이용목적을 위해 더이상 필요없을 때에는 즉시 연방수탁자에게 반환한다. 문서가 요청과 관련된 자에 관한 개인관련 정보외에 다른 당사자 및 제3자에 관한 정보도 포함하는 경우, 제12조 제4항 제2문 및 제3문이 준용된다.

제 20 조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당사자나 제3자의 개인관련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문서의 이용

- (1) 문서가 당사자나 제3자에 관한 개인관련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은 필요한 범위내에서 다음 목적을 위하여 동 문서를 이용할 수 있다.
1. 구금지원법에 따른 당사자, 행방불명자 및 사망자의 복권, 보상 및 급부
 2. 인격권의 보호
 3. 행방불명자의 운명 및 규명되지 아니한 사망사건의 규명
 4. 원호증지법에 따른 생활보장급부 중지 및 원호증지법이 준용되는 급부의 삭감, 박탈 또는 중지
 5. 구 독일민주공화국 및 그 지역에 거주하는 구 권리자의 재산 및 상업적 조정분야에 속하였던 재산의 규명, 파악 및 보전
 6. 관련규정의 규준과 그의 양해에 따라 18세 종료 이전의 국가안전부를 위한 활동이 문제되지 않는 한, 그가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국가안전부를 위하여 활동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심사
 - a)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구성원 및 기타 공법상의 공무원계에 있는

자

- b) 자치단체 대의기관의 의원 및 직원
 - c) 제39조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구성원
 - d)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독일연방공화국이 가입한 국제적, 국가간 기구를 포함하여 연방과 주의 공무원계에 있는 자 및 교회업무에 종사하거나 계속 종사할 자
 - e) 공증인 또는 변호사로서 계속 활동할 자
 - f) i) 법인형태 기업의 이사회 임원, 업무집행자, 사장 또는 간부 직원
ii) 인적결합형태의 기업에서 법률, 정관, 조합계약에 의해 사원의 대표자로 임명된 자, 업무집행자, 사장 또는 간부직원단, 재판 절차가 문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만을 한다.
 - g) 아래에 규정된 자의 보안심사
 - i)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실, 목적물, 정보를 위탁받은 자로 이를 입수하거나 입수할 수 있는 자
 - ii) 생존이나 방위를 위해 중요한 시설의 보안을 요하는 직책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 이 확정에는 외국 정보기관을 위한 활동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7. 18세 종료 이전의 국가안전부를 위한 활동이 문제되지 않는 한 그가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국가안전부를 위한 활동이 문제되지 않는 한 그가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국가안전부를 위해 활동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그의 동의에 따른 심사
- a) 하부 자치단체 이상의 정당의 지도부
 - b) 명예판사로 활동하는 자
 - c) 명예 교회직에 종사하는 자
 - d) 연방과 주의 조합에서 지도적 임무를 수행하는 자, 단 재판절차가 문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만을 한다.
 - e) 경영협의회
 - f) i) 상기의 경우 또는
ii) 제6호 a 내지 f의 경우에, 해당관직, 직무에 대한 허가 또는

고용을 신청한 자

iii) 이 확정에는 외국 정보기관을 위한 활동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국가안전부나 외국의 정보기관을 위한 활동협약에 대한 사실상의 근거가 있는 경우, 피심사자의 동의 대신에 양해가 있으면 족하다.

8. 무기법, 연방수렵법, 폭발물법, 전시무기통제법 및 대외경제법에 따른 허가여부나 박탈을 위한 절차시, 단 문서에서 국가안전부의 구직원에 대한 인적 신뢰도에 관한 자료가 나타나는 경우에 한한다.
9. 구 국가안전부 직원의 연금환산가능기간의 승인, 연금의 지급 및 심사
10. 혼장에 관한 사항

(2) 제26조의 적용은 배제되지 않는다.

(3) 제1항 제6호, 제7호 소정의 목적을 위한 이용은 15년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기간은 이 법률의 시행일에 개시된다. 기간 경과후에는 국가안전부를 위한 활동 사실은 구성원의 법률행위시 더 이상 비난사유가 되거나, 그에게 불이익하게 이용될 수 없다. 연방중앙등록법 제52조 1항의 예외는 준용된다. 구성원의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타인의 권리, 활동의 법률상 효과 및 활동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법원 또는 행정기관의 결정은 그대로 존속한다.

제 21 조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당사자나 제3자의 개인관련 정보가 포함된 문서의 이용

(1) 문서가 당사자나 제3자에 관한 개인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은 필요한 범위내에서 다음 목적을 위하여 동 문서를 이용할 수 있다.

1. 구금지원법에 따른 당사자, 행방불명자 및 사망자의 복권, 보상 및 급부
2. 인격권의 보호
3. 행방불명자의 운명 및 규명되지 아니한 사망자의 규명

4. 원호증지법에 따른 생활보장급부 중지 및 원호증지법이 준용되는 급부의 삭감, 박탈 또는 중지
5. 구 독일민주공화국 및 그 지역에 거주하는 구 권리자의 재산 및 상업적 조정분야에 속하였던 재산의 규명, 파악 및 보전
6. 관련 규정의 기준과 그의 양해에 따라 그가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국가안전부를 위하여 활동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심사단, 그 확정이 제20조 소정의 문서와 관계되지 않고 18세 종료 이전의 국가안전부를 위한 활동이 문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a) 연방정보나 주정부의 구성원, 기타 공법상의 공무원계에 있는 자
 - b) 자치단체 대의기관의 의원 및 직원
 - c) 제39조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구성원
 - d)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독일연방공화국이 가입한 국제적, 국가간 기구를 포함하여 연방과 주의 공무원계에 있는 자 및 교회업무에 종사하거나 계속 종사할 자
 - e) 공증인 또는 변호자로서 계속 활동할 자
 - f) i) 법인형태 기업의 이사회 임원, 업무집행자, 사장 또는 간부직사원.
ii) 인적결합형태의 기업에서 법률, 정관, 조합계약에 의해 사원의 대표자로 임명된 자, 업무집행자, 사장 또는 간부직원단, 재판절차가 문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만을 한다.
 - g) 아래에서 규정된 자의 보안심사
 - i)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실, 목적물, 정보를 위탁 받은 자로 이를 입수하거나 입수할 수 있는 자.
 - ii) 생존 및 방위를 위해 중요한 시설의 보안을 요하는 직책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
7. 이 확정에는 외국정보기관을 위한 활동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확정이 제20조 소정의 문서와 관계되지 않고, 18세 종료 이전의 국가안전부를 위한 활동이 문제되지 않는 한 그가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국가안전부를 위해 활동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그의 동의

에 따른 심사

- a) 하부 자치단체이상의 정당의 지도부
 - b) 명예판사로 활동하는 자
 - c) 연방과 주의 조합에서 지도적 임무를 수행하는 자, 단 재판절차가 문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만을 한다.
 - d) 연방과 주의 조합에서 지도적 임무를 수행하는 자, 단 재판절차가 문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만을 한다.
 - e) 경영협의회
 - f) i) 상기의 경우 또는
 - ii) 제6호 a내지 f의 경우에 해당관직, 직무에 대한 허가 또는 고용을 신청한 자
 - iii) 이 확정에는 외국정보기관을 위한 활동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국가안전부나 외국의 정보기관을 위한 활동혐의에 대한 사실상의 근거가 있는 경우, 피심사자의 동의 대신에 양해가 있으면 족하다.
- (2) 제5조 1항의 특별한 이용금지 조항의 적용은 배제되지 아니한다.
- (3)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소정의 목적을 위한 이용은 15년의 기간이 경과한다. 기간 경과 후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기간은 이 법률의 시행일에 개세된다. 기간 경과 후에는 국가안전부를 위한 활동사실은 구성원의 법률행위시 더 이상 비난사유가 되거나 그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수 없다. 연방중앙등록법 제52조 제1항의 예외는 준용된다. 구성원의 활동과 관련해서 발생한 타인의 권리, 활동의 법률상 효과 및 활동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법원 또는 행정기관의 결정은 그대로 존속한다.

제 22 조 의회의 조사위원회의 목적을 위한 문서의 이용

- (1) 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회의 조사위원회의 증거조사권은 국가안전부 문서에도 확장 적용된다.

(2) 제1항은 주의회의 조사위원회에 대해서도 준용된다.

제 23 조 형사소추 및 위해방지 목적을 위한 문서의 이용

(1) 문서가 당사자나 제3자에 관한 개인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용될 수 있다.

1. 다음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소추를 위하여

a) 구 독일민주공화국 체제와 관련된 범죄, 특히 국가안전부, 기타 다른 공안, 형사소추, 행정기관 및 법원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

b) 형법 제211조, 제212조 또는 제220조 a, 제239조 a, 제239조 b, 제306조 내지 제308조, 제310조 b 제1항, 제311조 제1항, 제311조 a 제1항, 제312조, 제316조 c 제1항, 또는 제319조의 범죄 및 아래의 범죄

i) 무기법 제52조 a 제1항 내지 제3항, 제53조 제1항 제1문 제1호, 제2호, 제2문의 범죄

ii) 전시무기통제법 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0조 제1항이나 제2항, 제21조 또는 제22조 a 제1항 내지 제3항의 범죄

iii) 마약법 제29조 제3항 제1호, 제4호, 제30조 제1항 제1, 2호의 범죄

iv) 범죄가 영업적 또는 조직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 한해서 마약법 제30조 제2항 제4호의 범죄

c) 나찌체제와 관련된 범죄

d) 이 법률 제44조의 범죄

2.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하고 현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히 급박한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제5호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이용금지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2) 기타의 문서는 형사사법공조를 포함한 기타 범죄의 소추 및 공공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히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

제 24 조 국가안전부에 인도된 법원 및 검찰청문서의 이용

- (1) 연방수탁자에 의해 보존된 법원 및 검찰청문서의 이용에 대해서는 제 19조 내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 내지 제30조 및 제43조 대신에 각각의 법률상 절차규정이 적용된다.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범죄가 문제될 때에 한해서 제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2) 연방수탁자는 제1항 제1문 소정의 문서를 요청에 의하여 법원, 검찰청 및 검찰청의 보조기관인 경찰에 인도한다. 문서가 이용목적을 위해 더이상 필요없을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 25 조 정보기관의 목적을 위한 문서의 이용

- (1) 문서가 당사자나 제3자에 관한 개인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정보기관에 의하거나, 동 기관을 위하여 이용될 수 없다. 단 아래와 같은 개인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는 예외이다.
 1. 연방, 주 또는 연합군 정보기관 구성원에 관한 개인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기관의 구성원 또는 동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그 이용이 필요한 경우
 2. 기타 정보기관의 구성원에 관한 개인관련 정보를 포함하며 방첩을 위해 그 이용이 필요한 경우
- (2) 문서가 당사자나 제3자에 관한 개인관련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상의 일부범위 내에서의 연방과 주의 정보기관에 의해서나 정보기관을 위해 또한 연합군의 정보기관을 위해서나 그 기관에 의한 문서이용은 아래와 같은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연방헌법 보호법상

1. 간첩 또는 방첩
 2. 폭력적인 극단주의나 테러주의 분야에 관한 정보
- (3) 제1항 제2문의 경우에는 제5조 제1항의 적용은 배제되지 아니한다.
 - (4) 제1항 제2문 및 제2항의 경우에, 연방내무부장관은 연방수탁자에게 문서를 잔류시키는 것이 연방 또는 주의 안녕에 불이익을 줄지도 모른

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문서의 인도를 명령할 수 있다. 동 명령은 의회의 연방 정보기관 활동의 통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회의 통제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5) 그외에 제26조 소정의 문서는 법률상의 임무범위내에서 정보기관에 의하거나 정보기관을 위해서 이용될 수 있다.

제 26 조 업무지침 및 조직배치표의 이용

국가안전부의 준칙, 지침, 조직배치표는 당사자나 제3자에 관한 개인관련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이는 국가안전부의 건물 및 기타 물건에 관한 시설도 및 목록, 특히 보급선 및 전화선에 관한 평면도, 설계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제 27 조 요청에 의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에의 통지

- (1) 연방수탁자가 제37조에 따른 임무수행시 아래에 규정된 자에 관해 국가안전부를 위해서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활동한 사실을 밝혀낸 경우
1. 제20조 제1항 제6호 a 내지 c상의 관직 또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
 2. 언제라도 휴직될 수 있는 공무원이나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계약직 공무원
 3. 기관의 장인 공무원 또는 계약직 공무원
 4. 선거에 의하여 선임되는 공무원이나 명예직 공무원
 5. 판사 또는 검사
 6. 변호사 또는 공증인
 7. 교회직 업무에 종사하는 자
 8. 그의 활동으로 인해 제20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문서의 이용이 허용되는 자
- (2) 연방수탁자가 제37조에 따른 임무수행시 동 문서를 통하여 아래의 사실에 대한 근거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

1. 국가안전부 활동에 관련된 범죄
 2. 제23조 제1항 제1호 b에서 규정된 범죄
 3. 공공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
 4.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제21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된 재산의 현존 직권으로 관할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3) 연방수탁자가 제37조에 따른 임무수행시 문서에 연방헌법보호법상의 간첩, 방첩, 폭력적인 극단주의나 테러주의에 관한 정보가 있음을 확정한 경우에는 즉시 국가 치안당국인 연방내무부장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4) 제1항 내지 제3조에 따른 통지는 요청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제 28 조 요청에 의하지 아니한 민간기관에의 통지

- (1) 연방수탁자가 제37조에 따른 임무수행시 다음에서 규정하는 자들이
1. 하부 자치단체 이상의 정당의 지도부
 2. 연방 또는 주의 조합에서 지도적 임무를 수행하는 자.
 3. 법인형태기업의 이사회 임원, 업무집행자, 사장 또는 간부직원
 4. 인적결합형태의 기업에서 법률, 정관, 조합계약에 의해 사원의 대표자로 임명된 자, 업무집행자, 사장 또는 간부직원이 국가안전부를 위해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활동하였음을 밝혀낸 경우, 연방 수탁자는 직원으로 관할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요청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제 29 조 목적에의 기속

- (1) 제19조 내지 제23조 또는 제25조, 제27조 및 제 28조에 따라 송부된 개인관련 정보는 송부된 목적을 위해서만 처리되거나 이용될 수 있다. 이와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제20조 내지 제23조의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처리되거나 이용될 수 있다.

- (2) 당사자나 제3자에 관한 개인관련 정보가 제1항 제2문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처리되거나 이용되어야 할 경우, 연방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3) 제1항 및 제2항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보관중인 문서상의 개인관련정보에 대하여 준용된다.

제 30 조 송부의 통지

- (1) 연방수탁자가 제21조,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당사자에 관한 개인관련정보를 송부한 경우 당사자에게 송부된 정보의 종류 및 그 수령자를 통지한다.
- (2) 당사자가 다른 방법으로 송부사실을 알았거나 막대한 비용에 의해서만 통지가 가능할 경우에는 통지의무는 없다.
- (3) 관할 연방최고 관청이나 주의 관청이 연방수탁자에게 송부통지가 연방이나 주의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주고 그 안녕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로 확정한 기간동안은 통지하지 아니한다.

제 31 조 관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방수탁자의 결정에 대한 법원의 심사

- (1) 연방수탁자가 관청의 통지, 열람 또는 인도요청을 거부한 경우, 관련 관청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고등행정법원은 이 거부의 적법성에 관하여 구두변론을 거친 후 결정으로써 판단한다. 동 결정은 항고할 수 없다. 준비절차는 행하지 아니한다. 연방수탁자가 소재한 지구내 고등행정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 (2) 재판장은 특별한 이유에 의해서 기록 혹은 기록의 일부의 열람, 초본 및 동본의 작성도는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동 결정 및 행정법원법 제99조 제2항에 따른 문서제출의무에 관한 고등행정법원의 결정은 항고할 수 없다. 그밖에 참여자는 기록열람에 의해서 취득한 사실에 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제 3 절 정치적 역사적 청산을 위한 국가안전부 문서의 이용 및 신문, 방송을 통한 국가안전부 문서의 이용

제 32 조 국가안전부 활동의 청산을 위한 문서의 이용

- (1) 국가안전부 활동의 정치적, 역사적 청산을 위한 연구 및 정치적 교육의 목적을 위해 연방수탁자는 아래의 문서를 제공한다.
1. 개인관련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 문서
 2. 개인관련 정보가 익명으로 되어있는 문서의 부분
 3. 아래 규정된 자에 관한 개인관련 정보가 포함된 문서
 - i) 역사가, 정치적 직무담당자, 직무집행 공무원으로서 당사자나 제3자가 아닌 경우
 - ii) 18세 종료이전의 국가안전부를 위한 활동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의 국가안전부 구성원
 - iii) 국가안전부 보조자단, 이용에 의해서 위의 자들이 보호가치가 있는 중대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4. 관계자의 서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동인의 개인관련 정보가 포함된 문서
- (2) 제37조 제1항 제3호 b내지 d에 따라 특별관리되는 문서는 연방내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 (3) 개인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공표되며
1. 개인관련 정보가 공표될 당사자가 동의하였거나
 2. 아래의 자에 관한 정보의 경우
 - i) 역사가, 정치적 직무담당자, 직무집행 공무원으로서 당사자나 제3자가 아닌 경우
 - ii) 18세 종료이전의 국가안전부를 위한 활동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의 국가안전부 구성원
 - iii) 국가안전부 보조자공표에 의해서 상기한 자들의 보호가치가 있는 중대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제 33 조 절 차

- (1) 연구 및 정치적 교육목적을 위해 연방수탁자의 중앙관청이나 지청에서 문서의 열람을 할 수 있다.
- (2) 문서열람은 문서의 중요성 또는 보존상태를 이유로 부분의 열람으로 제한될 수 있다.
- (3) 문서의 열람이 허용된 경우는 요청에 따라 문서의 부분이 인도될 수 있다.
- (4) 제3항에 따라 인도된 문서의 부분은 수령자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곳으로 재인도할 수 없다.
- (5) 개봉되지 아니한 문서의 열람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 34 조 신문, 방송, 영화에 의한 국가안전부 문서의 이용

- (1) 신문, 방송, 영화 그 보조기업 및 언론종사자의 문서이용에 대해서는 제32조 및 제33조가 준용된다.
- (2) 연방법상의 방송국에 의한 개인관련 정보의 공표시 동인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당사자의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 그 반대의견은 개인관련 정보에 첨부, 함께 보관된다. 이러한 정보는 반대 의견과 함께 다시 공표될 수 있다.

제 4 장 국가안전부 문서를 위한 연방수탁자

제 35 조 구동독 국가안전부 문서를 위한 연방수탁자

- (1) 구 독일민주공화국 국가안전부문서를 위한 연방수탁자는 연방내무부 업무소관의 연방관청이다. 그는 베를린소재 중앙관청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포 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및 튀링엔주 소재 지청을 갖고 있다.
- (2) 이 관청의 장은 연방정부의 제청으로 독일 연방하원에 의해 법정 의원

정족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된다. 그는 선출시 35세를 종료하였어야 한다. 선출된 자는 관청의 명칭을 자신의 관직명으로 사용한다. 그는 연방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3) 연방수탁자는 연방내무장관앞에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본인은 독일국민의 복리에 헌신하고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며 불이익을 개선하고 기본법과 연방법을 준수하고 수호하며 본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할 것임을 선서합니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 빕니다.”

본 선서는 종교적 의식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수행될 수 있다.

(4) 연방수탁자의 임기는 5년이며 1회의 연임이 가능하다.

(5) 연방수탁자는 이 법률에 따라 연방과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있다. 그는 임무수행시 독립되어 있으면 단지 법률에만 기속된다. 그는 연방정부의 법적 감독을 받는다. 직무감독은 연방내무장관이 이행한다.

제 36 조 연방수탁자의 법적지위

(1) 연방수탁자의 근무관계는 임명장의 교부와 동시에 개시된다. 이는

1. 임기의 경과
2. 면직으로 종료된다.

연방대통령은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종신판사의 경우 적용되는 면직사유가 있어 연방정부가 제청하는 경우 연방수탁자를 면직한다. 근무관계의 종료시, 연방수탁자는 연방대통령으로부터 임기종료증서를 받는다. 면직은 동 증서의 교부로 발효한다. 연방내무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방수탁자는 그 후임자의 임명시까지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2) 연방수탁자는 자신의 관적이외에 다른 유급관직, 영리행위나 다른 직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사장단, 감사위원회 또는 관리위원회 및 연방 또는 주의 정부나 입법기관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연방수탁자는 유상으로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감정을 행

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연방수탁자는 연방내무장관에게 그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선물에 대해 통지하여야 한다. 연방내무장관은 선물의 이용에 관하여 결정한다.
- (4) 연방수탁자는 직무관계의 종료후에도, 관직에 종사함으로써 알게된 사항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이는 업무교류시의 통지나 공표되었거나 비밀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실에 관한 통지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연방수탁자는 그가 재직중에 있지 아니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에 관해 연방내무장관의 허가없이 법원이나 법원외에서 진술하거나 설명해서는 안된다. 범죄신고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해행위시 이를 수호할 법률에 기한 의무는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 (5) 증언에 대한 허가는 그 진술이 연방 또는 주의 안녕에 불이익을 주거나 공공임무 수행을 현저하게 위협하거나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거부된다. 감정에 대한 허가는 그 감정이 직무상의 이익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거부될 수 있다. 1985년 12월 12일 공포된 연방헌법 재판소에 관한 법률(연방관보 1.2229면) 제28조의 적용은 배제되지 아니한다.
- (6) 연방수탁자는 직무관계가 개시된 달의 1일부터 직무관계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까지 제1항 제6문의 경우에는 업무수행이 종료되는 달의 말일까지 연방공무원의 B9호봉에 해당하는 급료를 받는다. 연방여행비용법 및 연방 이전비용법이 준용된다. 그밖에 1989년 12월 18일자 연방각료법(연방법률 관보 2210면)제13조 내지 제20조가 연방각료법 제15조 1항상의 2년의 임기 대신 5년의 임기를 적용한다는 규준하에 적용된다. 위 제3문 및 연방각료법 제15조 내지 제17조와는 달리 연방수탁자의 연금은, 연방수탁자로 선임 되기전에 공무원이나 법관으로서 적어도 B9호봉에 달하기전 통상 계속적인 직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여 연금지급이 가능한 재직 기간으로서의 임기가 가산되어 산정된다.

제 37 조 연방수탁자의 임무 및 권한

- (1) 연방수탁자는 이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갖는다.
1. 국가안전부 문서의 등록
 2. 문서관리원칙에 따라 문서의 평가, 분류, 등록, 보관 및 관리
 3. 중앙관청내 중앙문서보존소와 지청의 지방문서보존소의 문서의 관리: 다음의 서류는 분류 보관된다.
 - a) 국가안전부에 인도된 법원 및 검찰청의 기록
 - b) 제11조 제2항 제2문상의 문서의 부분
 - c) 연방과 주 및 연합군 정보기관의 구성원에 관한 문서
 - d) 아래의 문서
 - i) 기타 정보기관의 구성원에 관한 문서
 - ii) 간첩, 방첩, 테러분야에서 수단과 방법의 투입가능성에 관한 기술적, 기타 전문적인 지침이나 설명이 담겨있는 문서. 이는 연방내무장관이 개별적인 경우에 문서의 공표가 공공의 안정을 해하거나 기타 연방 또는 주의 안녕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위와같이 분류 및 보관된다. b 내지 d에 따른 분류 및 보관에 대해서는 비밀급수가 VS 또는 그 이상의 비밀사항의 취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4. 문서상의 정보제공 및 통지, 문서의 열람 및 인도
 5. 국가안전부의 구조, 활동방법 및 작용에 관한 대중공개를 통한 국가안전부활동의 청산: 개인관련 정보의 공표에 대해서는 제32조 제3항이 적용된다.
 6. 문서열람 및 문서부분의 인도를 통하여 국가안전부 활동의 역사적, 정치적 청산에 관한 연구 및 정치적 교육의 지원
 7. 자연인, 민간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안내 및 상담: 동 안내 및 상담은 지청에서도 행할 수 있다.
 8. 자료 및 전시센터의 설치 및 유지
- (2) 연방수탁자는 그 임무수행시 원칙의 준수를 보장한다.

- (3) 연방수탁자는 독일연방하원의 요청에 의하여, 그밖에는 적어도 2년마다, 최초의 활동보고서는 1993년 7월 1일까지 제출한다. 정기적인 제 2차 활동보고서 이후부터 연방수탁자는 언제 어떤 범위의 문서가 그 임무수행에 더이상 필요하지 않게 됨을 보고해야 한다. 독일연방하원이나 연방정부의 요청에 의해 연방수탁자는 감정서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방수탁자는 언제라도 독일연방하원에 청원할 수 있다. 입법기관의 업무에 있어 그는 이러한 기관에 직접 보고한다.

제 38 조 주수탁자, 연방수탁자와의 관계

- (1) 제37조에 따른 임무수행시 연방 수탁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베를린, 브란덴 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 포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및 튀링엔 주에 구독일민주공화국 국가안전부 문서를 위한 주수탁자로서 특정기관을 정할 수 있다. 상세한 규정은 주법에 따른다.
- (2) 연방수탁자는 주수탁자에게 이법률 제3장에 따른 문서이용시 해당주의 특수한 사정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 (3) 주법은 주수탁자가 제13조 내지 제17조에 따른 권리행사시 관계자에게 상담을 제공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제12조에 따른 절차 종료후 심리적, 사회적 상담에 대해서도 확대될 수 있다.

제 39 조 자문위원회

- (1) 연방수탁자에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람으로 구성된다.
1.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포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및 튀링엔 주에서 임명된 9명의 구성원
 2. 독일연방하원에서 선출된 7명의 구성원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은 연방 내무장관에 의해서 5년의 임기로 임명된다.
- (2) 연방수탁자는 기본적 또는 다른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자문위원회에 보고하고 이와 상의한다. 자문위원회는 연방수탁자에게 특히 아래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1. 국가안전부 문서의 완전 등록 및 제10조에 따른 문서의 평가
 2. 문서의 평가, 분류, 등록, 보관 및 관리시 문서보존원칙의 확정
 3. 열람 및 인도에 대한 단일적 원칙의 확정
 4. 제20조 제1항 제6호, 제7호 및 제21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 있어서 평가기준의 확정
 5. 개인의 신청,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요청시 우선권의 확정
 6. 자문활동에 있어서 지청의 임무의 확정
 7. 국가안전부 활동의 청산 및 대중공개를 위한 실행 계획
 8. 연구 및 정치적 교육지원 나아가 자문위원회는 제37조 제3항 제1문에 의한 활동보고서에 관하여 사전에 자문한다.
- (3) 연방수탁자는 자문위원회의 의장이다.
- (4) 자문위원회는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 규칙을 제정한다.
- (5)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은 그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된 사실에 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이러한 비밀유지의무는 자문위원회 구성원직을 사임한 후에도 계속된다.

제 40 조 문서의 보전을 위한 조치

- (1) 연방수탁자는 문서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적, 기술적 조치를 취한다.
- (2) 특히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취한다.
 1. 연방수탁자의 구성원은 오로지 임무범위내에서만 문서 및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문서의 이용 및 그 이유는 기록해 둔다.
 2. 문서발견수단의 권한없는 제작, 정보의 권한없는 교부 및 등재된 정보의 권한없는 열람, 수정이나 삭제를 방지한다.
 3. 어떤 문서나 문서상의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인도 또는 송부되었는지 기록한다.
 4. 어떤 정보가 언제 데이터처리 시스템에 입력되었는지 사후에 확정 또

는 심사할 수 있다.

5. 국가안전부 문서가 보관된 건물을 권한없는 자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한다.
6. 권한없는 자는 기록 및 문서상의 정보가 처리되는 데이터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한다.
7. 문서를 권한없이 구독, 복사 및 수정, 폐기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
8. 문서 및 데이터기기는 그 운송시 이를 권한없이 구독, 복사, 수정, 삭제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9. 관청내부 기구를 정부보호의 특별한 요청에 부합되도록 조직한다.

제 41 조 자동처리절차, 정보처리의 위임

- (1) 국가안전부 문서상의 개인관련 정보는 연방수탁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서만 자동 데이터집적고에 등재, 수정 및 이용할 수 있다. 이 데이터집적고는 문서의 발견 및 이에 필수적인 사람의 신원파악에 필요한 정보만을 포함한다. 동 데이터에 대해서는 연방정보보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 (2) 송부를 목적으로 한 자동출력장치의 설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3) 문서상의 정보처리의 위임은 연방수탁자의 수단으로써는 정보처리가 가능하지 않거나 막대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및 이 정보처리의 적합여부에 관한 특별한 고려하에 수임자가 선발된 경우에만 공공기관에 한하여 허용된다. 수임자는 연방수탁자의 지시에 의해서만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 5 장 종결규정

제 42 조 비 용

- (1) 제13조 내지 제17조에 따른 직무행위 및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민간기관에 대한 직무행위에 대해서는 비용이 징수될 수 있다. 당사자

및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문서열람에 대한 비용은 징수되지 아니한다.

- (2) 연방내무장관은 법규명령으로 비용지불의무에 관한 구성요건 및 비용 원칙을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제 43 조 이 법률의 우선 적용

이 법률의 규정들은 개인관련 정보의 송부허용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연방정보보호법은 이 법률 제6조 제9항 및 제41조 제1항 제3문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정보보호통제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44 조 벌 칙

이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당사자나 제3자에 관한 개인관련 정보가 포함된 문서의 원본 또는 부분을 전부 또는 주요부분만 공표한 자는 3년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당사자나 제3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45 조 과 료

- (1)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사항에 위반한 자는 질서위반범으로 처벌한다.
1. 제7조 제3항에 반하여 통지하지 않거나 적시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9조 제1항에 반하여 연방수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문서를 인도하지 않거나 적시에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3. 제9조 제3하에 반하여 문서를 연방수탁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 (2) 질서 위반범은 50만 마르크이하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제 46 조 형벌면제

국가안전부 문서를 범죄행위로 취득한 자라도 이 법률의 시행후 3개월 이내에 제7조 제3항 따른 통지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제 47 조 규정의 폐지, 공무원의 법률관계

- (1) 1990년 8월 31일자 통일조약 제1부속의정서 제2장 B부문 제2절 제2호 b(연방관보. 885.912 면)의 규정들은 폐지된다.
- (2) 제1항에서 언급된 규정에 근거하여 임명되어 이 법률의 시행시 존재하는 공무원의 법률관계는 이 법률에 따른다. 통일조약에 근거하여 제정된 보수 및 연금에 관한 경과규정은 준용된다.

제 48 조 시 행

- (1)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 (2) 제35조 제2항 제1문은 현재의 공무원의 임기만료후 연방고등판청의 장의 신규임명시 1회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

위 법률은 아래의 자에 의해서 서명되어 연방법률관보에 공포된다.

1991년 12월 20일, 본

연방대통령

연방수상

연방내무장관

연방법무장관

연방재무장관

X. 재산법

제1절 총 칙

제1조 적용범위

- (1) 이 법은 다음 각호의 재산가치에 대한 재산법상의 청구권을 규율한다.
1. 무보상수용으로 인민소유가 된 재산
 2. 구동독시민에게 지급된 금액보다 소액의 보상을 댓가로 수용된 재산
 3. 국가관리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재산 또는 인민소유가 된 후에 처분권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재산
 4. 1972년 2월 9일 각의의 결의와 그와 관련된 규정에 근거하여 인민소유로 이전된 재산
- (2) 차임이 비용을 상각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초과를 이유로 한 수용, 소유권포기, 증여 또는 상속포기를 통하여 인민재산으로 이전된 건물 및 건물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이 법이 적용된다.
- (3) 이 법은 부정한 방법(취득자 또는 행정청 및 제3자의 권력남용, 부패, 강요와 기망)으로 취득한 재산가치에 대한 청구권 및 이용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4) 이 법은 다음 사항도 아울러 규율한다.
1. 출국요건인 승인을 얻지 않고 동독지역을 떠난 시민의 재산에 대한 국가신탁관리의 폐지
 2. 서독시민의 재산 및 서독에 주소를 둔 법인의 재산에 대한 법정위임을 받은 동독국가기관의 임시관리의 폐지
 3. 동독정부에게 위임된 외국재산관리의 폐지
(이하 국정관리로 한다) 그리고 이 법은 전3호와 관련된 소유자와 청구권자의 청구권을 규율한다.
- (5) 이 법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재산과 관련된 채권 및 여타 권리의 처

리를 포함한다.

- (6) 이 법은 1933년 1월 30일부터 1945년 5월 8일 사이에 종교, 인종, 정치 또는 사상을 이유로 박해받고, 강매 및 수용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상실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도 준용된다.
- (7) 과거 법치국가에 반하는 형벌과 질서형벌 및 행정법상의 결정을 현재 다른 법규정에 의하여 폐지하는 경우에 그와 관련된 재산의 반환에 대해서도 이 법은 준용된다.
- (8) 이 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1. 점령당국법 및 점령고권에 입각한 재산의 수용
 - 2. 동독측이 국가간 협정을 통하여 규율한 재산법상의 청구권
 - 3. 구채상환공채에 대한 지분권
 - 4. 지방자치단체재산법(1990. 7. 6 동독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편입주의 각지역단체의 청구권

제 2 조 용어정의

- (1) 이 법에서 “청구권자”라 함은 제1조에 언급된 조치가 자신의 재산과 관련있는 자연인, 법인, 개인회사 및 그의 권리승계인을 말한다.
- (2) 이 법에서 “재산”이라 함은 건물있는 토지와 건물없는 토지 및 법적으로 독립된 건물과 건조물(이하에서는 건물 및 토지로 한다),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이용권 및 물권, 동산, 영업상의 보호권, 저작권, 인접보호권을 말한다. 또한 이 법에서 재산은 예금자산 및 금권채권 및 동독지역 밖에 주소를 둔 기업 또는 기업의 영업소/지점에 대한 소유권/참여권을 포함한다.
- (3) 이 법에서 “처분권자”라 함은 기업반환의 경우에는 몰수된 기업에 대한 소유권 및 처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 및 자본회사의 경우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본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 및 기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소유권자 또는 처분권이 귀속된 자를 말한다. 국가관리자도 처분권자에 해당한다. 제1문에

따라 처분권자에 대한 지분권이 신탁공사에게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신탁공사만이 처분권자가 된다.

(4) 제1조에 따른 제반조치는 이 법률이 규정한 손해로 한다.

제 2 절 재산의 반환

제 3 조 원 칙

(1) 제1조의 조치에 의하여 인민소유재산이 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된 재산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 청구권자에게 반환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반환이 배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원상회복청구권 또는 손실보상청구권은 양도되거나 담보로 제공될 수 있다. 기업의 반환을 신청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청구권자는 소유권침해가 이루어진 시점에서의 개개의 재산에 국한된 반환신청을 할 수 없다. 제6조 제6항의a 제1문은 제한없이 적용된다.

(2) 동일한 재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제1조의 조치에 의하여 제1순위에 해당되는 자가 청구권자가 된다.

(3) 재산법상청구권의 신고규정(1990. 7.11 제정 8. 21 개정, 이하 신고규정)에 따라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권자는 청구권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물권행위 또는 장기간의 채권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다음의 각호의 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법률행위는 예외로 한다.

1. 소유권자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행위 특히, 건축법 제177조의 개량 및 수리명령에 따라 결함을 제거하기 위한 행위
2. 재산의 유지와 운영을 위한 행위

개수조치에 지출된 비용을 임대인인 처분권자가 법의 규정에 따라 매년 임대료로 반영시킬 수 있는 경우의 개수조치도 예외로 한다. 개수조치에 따른 임대료인상을 통하여 비용이 상각되지 않고 즉시 소유권반환에 대하여 존속력을 지닌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한하여 청구권

자는 지출된 비용을 처분권자에게 변상한다. 조치의 비용이 자치단체나 다른 행정청에 의하여 건축법 제177조 제4항과 제5항의 기준에 따라 변상된 경우에는 건축법 제177조에 의거한 명령없이 시작된 제2문 제1호에 언급된 유형의 조치에 대하여 제2문은 준용된다. 처분권자는 청구권자의 현실적 또는 예상된 의사에 비추어 청구권자의 이익에 따라 법률행위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처분권 자가 운영하는 기업의 전체적인 이익이 청구권자의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러한 경우에 민법 제678조가 준용된다. 다만, 현재의 처분권자의 권한은 건축법 제177조, 이 조의 제3문과 제5문이 적용되는 경우 및 투자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제한 받지 아니한다. 1개월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권자가 임시지시발부신청을 하지 않거나 그러한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처분권자는 강제집행을 회피할 의무는 없다. 이 규정은 신청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 (4) 신고기간(신고규정 제3조)이 경과되고 연락한 신고도 없는 경우에는 처분권자는 소유권을 처분할 수 있으며 또한 채권상 및 물권상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소유권에 대한 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권자는 처분권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매득금만을 청구할 수 있다.
- (5) 처분권자는 처분행위를 하기 전에 제3항의 신고가 없다는 사정을 확인해야 한다.
- (6) 반환문제를 관할하는 행정청은 기업에 대한 처분권자 및 신탁공사(제2조 제3항 제3문의 경우)에게 신청후 3월내에 반환신청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3자에게 기업을 양도하거나 장기간의 임대를 하게 할 수 있다. 단, 제6의 a조에 의거하여 제기된 청구권자의 반환신청 또는 임시지시신청에 대하여 아직 존속력있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다음 각호와 같은 경우에 한한다.
 1. 조치가 다음 각목의 목적에 적합한 경우
 - a) 고용의 창출과 보장
 - b)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투자

2. 청구권자가 기업을 계속 운영하거나 합리화하는 데에 필요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취득자나 임차인이 인적 경제적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기업을 계속 운영하거나 합리화하는 데에 필요한 보장책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경우에 한하여 제1문에 따라 1993년 12월 31일까지 제기된 청구권자의 신청을 행정청은 받아 들인다. 취득자나 임차인이 처음 2년동안 약속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거나 현저하게 조치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재청산을 명령한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양도나 임대차의 시점에서 예상할 수 없던 경영상의 필요에 기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7) 관할행정청은 제6항의 요건하에 바로 처분권자에게 제6항 제1문 제1호에 기술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처분권자가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기자본을 기업에 투자할 의사가 되어 있고 처분권자가 행정청이 정한 기한 내에 자기자본을 끌어 들인 경우에 한한다. 투자된 자기자본은 투자후 5년간 동안 매년적자액을 보충하기 위해서만 이용가능한 자본준비금으로 적립된다. 청구권자는 투자허가신청을 통보받는다. 청구권자가 제6조의 a에 따른 신청의 범위안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투자조치를 약속하고 그리고 조치의 실시가 소명된 한도에서 투자허가는 거부된다. 투자허가조치에 존속력을 발생함으로써 반환청구권은 소멸한다. 제6항 제3문이 준용된다. 반환청구권의 소멸시점에서 청구권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권자가 반환대상이 되는 기업의 거래가 가치에 해당하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반환청구권이 소멸한다.
- (8) 제6항 제1문 또는 제7항 제1문에 따른 행정청의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은 집행정지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제 3 조의a 처분제한의 유예

- (1) 공법상 지역단체 또는 신탁공사가 토지, 건물, 기업에 대한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제3조 제3항 내지 제5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재산이 다음에 열거한 투자목적을 위하여 제3자나 청구권자에게 영도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1. 토지 및 건물의 경우에 다음의 목적을 위한 양도, 임대차, 용익대차한 경우에는 투자목적이 인정된다.
 - a) 고용창출과 보장 특히, 영업시설 및 서비스 제공기업의 설치에 의한 경우
 - b) 주민의 현저한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 c) 전술한 계획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조치의 실시

그러나 당해 부동산이 이러한 목적에 기여해야 하고 전술한 계획에 상당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
 2. 기업이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양도 또는 용익대차되는 경우에는 투자목적이 인정된다.
 - a) 고용창출과 보장 또는 경쟁력제고를 위한 투자
 - b) 청구권자가 스스로 기업을 운영하겠다는 보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진 양도 또는 용익대차

신탁공사는 자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된다. 신탁공사는 자회사의 동의없이 처분한 경우에 한하여 자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2) 계약의 체결전에 재산권을 청구권자에 반환하라는 존속력있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제6조의 a에 따라 청구권자가 잠정적으로 기업을 인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 임대차, 용익대차는 유예된다.
- (3) 처분권자는 관할행정청과 그가 알고 있는 청구권자에게 양도, 임대차, 용익대차 하려는 의향을 통보한다. 처분권자는 청구권자에게 입장 표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양도, 임대차, 용익대차에 관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처분권자는 행정청이 알고 있는 청구권자 및

제3자가 제6조의 a에 따른 신청의 범위내에서 동등한 또는 유사한 투자조치의 약속여부 그리고 실시에 관한 소명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반환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행정청에게 결정을 통보한다. 결정은 청구권자에게도 송달된다.

- (4) 처분권자의 결정에 대한 이의와 항고에는 집행정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5) 제1항에 따라 처분권자가 재산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반환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청구권자는 처분권자에게 매각대금을 한도로 금전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매각대금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매각대금이 양도의 시점에서 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거래가치를 훨씬 하회하는 경우에는 청구권자는 거래가치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 (6) 임대차와 용익대차의 경우에는 투자법 제1조의a 제5항이 준용된다.
- (7) 재산의 취득자가 처음 2년동안 약속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거나 현저하게 회피한 경우에 재산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정한 계약만이 유효하다. 다만, 그러한 사정이 계약체결 시점에서 예상할 수 없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야기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투자법 제1조의 d 제5항이 준용된다.
- (8) 이 조항에 따른 양도는 토지거래법상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등기소에 대한 입증자료로는 처분권자의 승인서만으로 충분하다.
- (9) 1992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이 조항은 적용된다. 투자법과 이 법 제3조 제6항은 이 조항에 의하여 승인된 양도, 임대차, 용익대차의 효력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4 조 반환의 배제사유

- (1) 소유권 여타 재산권의 회복이 사물의 성격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복이 배제된다. 영업활동이 중지되고 상인적 평가기준에 따라 기업활동의 회복에 필요한 사실상의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 한하여 기업의 반환이 배제된다. 기업이 다음의 규정에 입각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기업의

반환이 배제된다.

1. 동독지역에서 외국인 참여기업의 설립과 활동에 관한 규정 (90.1.25)
2. 신탁공사설립에 관한 결의(90.3.1)
3. 신탁공사법(90.6.17 제정 91.3.22개정)
4. 사기업의 설립과 활동 및 기업참여에 관한 법(90.3.7)

제3항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 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2) 자연인, 종교단체, 공익단체가 재산의 소유권 및 물권적 이용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반환이 배제된다. 그러나 취득에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가 1989년 10월 18일 이후에 이루어지고 또한 그러한 법률행위가 신고규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당해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제1문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3) 다음의 경우에는 통상 부정한 취득으로 간주한다.

1. 취득의 시점에서 동독의 일반적인 법규정, 절차원칙, 행정실무관행에 어긋나고 취득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2. 취득자가 부패 또는 개인적인 권력남용을 통하여 취득의 시점, 조건 및 취득대상물의 선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3. 취득자가 원소유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가 가한 강박 또는 사기를 이용한 경우

제 5 조 토지 및 건물소유권 반환의 배제사유

- (1)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반환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특히 다음의 경우에 배제된다.

1. 토지와 건물이 현저한 비용의 지출로 인하여 이용방법이나 목적규정상 변경이 초래되었고 이러한 이용에 대한 공적인 이익이 성립한 경우
2. 공동이용에 제공된 경우

3. 복합주거건물로 이용된 경우
 4. 영업적으로 이용되거나 기업의 일체로 편입되어 기업에 현저한 손실을 야기하지 않고서는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 (2) 제1항 제1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요건이 1990년 9월 29일에 구비된 때에만 소유권반환이 배제된다.

제6조 기업의 반환

- (1) 기술적인 진보와 일반적인 경제발전을 고려하여 현재 반환청구기업이 수용시점에서의 수용기업과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에 따라 기업은 청구권자에게 반환된다. 지분권과 사원권의 반환청구는 제2조 제3항에서 기술된 이러한 권리의 보유자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기업의 반환청구는 제2조 제3항에 열거된 처분권자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반환의 시점에서 확정될 재산 및 수익상태가 본질적으로 개선 또는 악화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해야 한다. 본질적으로 악화된 경우에는 신탁공사 또는 행정청(독일마르크 대차대조표법 제24조 제1항 제1문)이 채무자(개선된 경우에 채권자)가 된다. 다만, 그러한 행정청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분권자와 관련을 맺고 있어야 한다.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제공이 기술적·경제적 진보를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변화되지 않았거나 과거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다른 것으로 대체된 경우에는 그 기업은 수용된 기업과 동일한 것이다. 기업이 하나 또는 다수의 다른 기업과 결합한 경우에는 원래의 기업부분만이 동일한 것이다.
- (1a) 제6조와 제12조에 따른 기업반환의 경우에 청구권자라 함은 제1조에 따른 조치가 자신의 재산권과 관련된 자를 말한다. 100분의 50이상의 사원권지분으로 결합한 청구권자 또는 그의 사원 또는 조합원 또는 권리승계자가 기업반환청구권 또는 반환청구권자의 사원권 지분의 반환청구권을 신고한 경우에는 청구권자는 수용전에 등기된 회사명의 하에 해산상태로 존속한다. 과거회사의 명의하에 반환청구권자의 존속을 위하여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갖추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을

반환청구할 수 없다. 제2문은 편입지역에 소재하는 재산을 상실하고 이 지역 밖에 소재하는 재산에 관하여 회사 또는 재단으로 영업활동을 한 회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나 재단만이 청구권자가 된다.

- (2) 1990년 7월 1일 독일마르크 대차대조표법에 따른 개업대차대조표작성시에 또는 반환을 위한 종결대차대조표 작성시에 법정최저자본에 비하여 채무초과 또는 자본미달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산상태가 본질적으로 악화된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독일마르크 대차대조표법 제24조, 제26조 제3항, 제28조에 입각한 청구권은 기업에 귀속하며 이러한 청구권은 거절되지 아니한다. 독일마르크 대차대조표법 제28조의 경우에 자본상각계정은 의무자가 변제한다. 수용의 시점에서 자기자본의 비율이 양호하지 않았음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제2문의 반환청구권은 소멸된다. 처분권자는 채무의 면제나 인수를 통하여 필요한 자기자본을 조달함으로써 제2문의 청구권을 만족시킬 수도 있다. 독일마르크 대차대조표법 제24조, 제26조 제3항, 제28조에 따른 청구권이 재산법에 근거하여 금액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마르크개업 대차대조표는 정정되어야 한다.
- (3) 독일마르크 대차대조표법에 따른 독일마르크개업 대차대조표작성시에 또는 반환을 위한 결산대차대조표 작성시에 독일마르크 대차대조표법 제25조의 조정채무가 발생하고 수용시점에서 기업이 결산총액과 비교하여 보다 적은 자기자본을 보유한 사정이 입증된 경우에는 재산상태가 현저하게 개선된 것이다. 조정채무 산정시 청구권자, 조합원, 사원에게 수용된 재산이 고려되고, 가장 높은 경우에는 독일마르크조정법에 따른 가치하락을 고려하여 수용시점에서 시간의 가치를 포함하여 재산에 추가되는 가치가 고려된다. 조정채무가 청구권자, 조합원, 사원의 소유가 전혀 아니었던 토지와 건물의 가격에 상당한 경우에는 자기자본이 보다 작다는 사정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본질적인 개선이 조정되지 않는 한에서는 독일마르크 대차대조표법 제25조 제1항의 조정채무는 소멸한다. 기업이 신용가치가 없는 경우라면 조정채무는 면

제되거나 독일마르크 대차대조표법 제16조 제3항의 채무로 전환된다. 조정채무가 이법에 근거하여 금액상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독일마르크 대차대조표는 정정된다.

- (4) 1990년 7월 1일 시작된 영업년도 이후에 기대된 매상고가 일반적인 경제발전을 고려하여 수용시점에서 보다 현저하게 높아지거나 낮아진 경우에는 수익상황이 현저하게 변화된 것이다. 과거와 동등한 수준의 매상고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어야만 하는 경우에 변상청구권은 불가피한 개발비용을 한도에서만 인정된다. 다만, 기업의 재건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매상고가 수용시점보다 현저하게 높은 경우 특히, 신제품개발로 그러한 경우에는 개발비용이 차변에 아직 기장되지 않는 한 그러한 개발비용의 한도내에서 조정채무가 인정된다. 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제2항의 재산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5) 수용된 기업의 반환은 당시의 법형식에 따라 소유권자에 귀속된 권리를 반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반환될 기업이 하나 또는 둘이상의 기업과 함께 새로운 전체기업을 이루고 해체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여 전체기업의 장부가격과 반환될 기업의 장부가격을 비교하여 상응하는 가액에 대한 지분권을 청구권자에 반환한다. 청구권자를 포함한 모든 관련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기업의 해체가 경제적으로 합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체를 요구할 수 없다. 기업해체에 의하여 많은 일자리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지분이 신탁공사에게 있는 경우 특히, 현저한 가격등귀를 조정하기 위하여 그러한 경우에는 지분은 이 법에 따라 양도받을 지분 소유자가 취득할 수 있다.
- (5a) 반환청구권을 이행하기 위하여 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1을 지시할 수 있다.
1. 처분권자에 대한 지분 또는 사원권은 청구권자에게 양도한다.
 2. 채무를 포함한 전재산 또는 처분권자의 영업시설은 청구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또는 포괄승계의 방식으로 양도한다.

3. 처분권자에 대한 지분 또는 사원권은 청구권자의 조합원 또는 사원 또는 그의 권리승계인에게 지분 및 사원권의 비율에 따라 양도한다.

제3호에 따라 반환청구가 이루어지려면 청구권자의 모든 조합원 또는 사원 또는 청구권자의 승계인은 반환에 앞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자기의 지분 또는 사원권의 가액을 한도로 변제의 책임을 진다. 내부 관계에 있어서는 사원 및 조합원은 자신의 지분 또는 사원권의 범위에 비례하여 구상의무가 있다.

(5b) 청구권자의 조합원 또는 사원 또는 그의 권리승계인은 자신의 박탈된 지분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또는 사원자격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분반환과 사원자격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상업등기 또는 조합등기는 말소등기의 말소 또는 등기회복을 통하여 정정된다. 간접적인 손해를 이유로 한 청구권자의 사원 또는 조합원 또는 그의 권리승계인의 청구권도 전술한 방식으로 기업이 반환됨으로써 만족된다.

(5c) 청구권자가 특히 신용거부 또는 조세인상 또는 수용적성격의 부과에 기하여 국가행정청에 자본참가한 경우에는 자본참가는 청구권자의 조합원 또는 권리승계인에게 귀속된다. 다만, 제1조 제3항의 요건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합원과 그의 권리승계인은 국가내의 자본참가의 종료와 동시에 자기에게 참가분의 양도를 요구할 수 있다. 참가시의 출자 또는 보수는 동독 2마르크 대 서독 1마르크로 환산되고 조합원과 그의 권리승계인은 참가분의 소유자에게 이를 반환한다. 다만, 이 금액이 독일마르크 대차대조표법 제11조 제1항 제1문에 의한 참가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앞서 말한 권리에 따라 형성된 상법 제249조 제1항의 예비비도 아니고 불입금도 아닌 기금은 아직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될 기업의 자기자본으로 귀속된다. 제1문에서 말한 자본참가분을 환매하려면 청구권자는 매매계약을 철회하고 제1문 내지 제4문에 따른 반환 또는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6) 조합원, 사원 또는 그의 권리승계인 및 반환청구권자는 누구든지 기업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 청구권자의 신청은 동일한 청구권이 귀속되는 모든 청구권자를 위하여 제기된 것으로 본다. 어떠한 청구권자라도 반

환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반환 대신에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수용시점 이전에 청구권자가 지분 및 사원권을 박탈당한 경우에는 지분 또는 그의 승계인이 행한 자신의 지분과 사원권에 대한 반환신청은 동시에 기업의 반환 신청으로서 효력이 있으며, 기업에 대한 반환신청은 동시에 지분 또는 사원권에 대한 반환신청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 (6a) 제4조 제1항 제2문에 의하여 반환이 일부 또는 전부 배제되는 경우에는 청구권자는 수용시점에서 자신의 소유물 또는 그 대표물인 재산이면 어느 것이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권에 대하여 처분권자의 채권자의 청구권이 우선한다. 다만, 이러한 청구권이 연방정부, 주정부, 자치단체, 공법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도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가 반환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 제2항 제1문이 준용된다. 처분권자가 기업 또는 제1문에 따라 반환대상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했기 때문에 처분권자에게 반환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1항의 a에 따라 기업이 양도될 수 없는 경우에는 청구권자는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양도매득금을 한도로 처분권자에 대하여 금전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매득금이 없거나 매득금이 기업 또는 제1문에 따라 반환대상인 재산이 양도시에 보유한 거래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청구권자는 거래가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조 제3항 제6문과 제7문에 반하여 기업에 대한 강제집행이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한도로 제2문의 채무를 고려하여 개별재산의 거래가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7) 제1항 제1문에 따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청구권자가 손실보상을 받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는 인민소유 또는 국가관리대상으로 인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독일 마르크화로 지급된다. 당시 유지된 매매가격 또는 청산금은 동독의 2마르크가 서독의 1마르크로 환산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제6항의 a에 의한 급여는 남은 손실보상청구권에 전액 합산된다.
- (8) 제1조 제1항 제4호에 있어서 이 법의 발효시점에서 이미 반환이 이루어

어진 경우에는 청구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반환이 심사되고 그 반환이 법정조건에 적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9) 연방법무장관은 연방재무장관 및 연방경제장관의 협의하에 연방참여원의 동의를 요하는 법규명령을 통하여 기업의 반환 및 손실보상 및 자본참가에 대한 절차 및 행정청의 관할을 규율할 수 있으며 또한 기업의 재무상황변동계산 및 기업의 평가에 관한 규정을 발할 수 있다.
- (10) 반환청구권자 주소지법원은 제1항의 a 제2문의 요건하에 신청이 있으면 청산인을 임명한다. 반환청구권자 및 청산인의 해산등기전에 등기부상 청구권자에 대해 기재된 말소표시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청구권자에 대한 등기부기재가 더 이상 없는 경우에는 청구권자가 제1항의 a 제1문에 따라 계속한다면 청산인은 청구권자를 상업등기부 등기시에 해산중인 것으로 신고한다. 나아가 당시에 청구권자에 대하여 적용된 법이 청산에 관해서도 적용된다. 반환될 재산이 조합원이나 사원에게 아직 분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권자의 계속 이 결의될 수 있다. 신청제기권자가 청구권자가 계속될 수 없고 청구권자의 사원 또는 그의 권리승계인에게 직접적으로 반환청구가 이 행될 것을 결의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기재나 말소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제 6 조의 a 임시지시

- (1) 청구자격이 증명되고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른 청구권자가 우선권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제6조에 따라 청구권자에게 반환될 회사의 인수를 잠정적으로 지시해야 한다. 다음의 요건하에 청구자격이 소명된 경우에 임시 지시가 내려진다.
1. 청구권자 또는 기업운동을 위해 임명된 자가기업을 규정에 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어떤 근거도 없는 경우
 2. 기업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청구권자가 성과적인 계획을 추진하는 경우
- (2) 제25조에 따른 관할행정청은 3월 이내에 제33조 제3항에 따른 결의

로서 지시를 결정한다. 제1항 제16문의 경우에 승인가한이 도과한 후의 지시는 승인된 것으로 인정된다. 행정청의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은 집행정지효과가 없다. 제1항 제1문의 경우에 청구권자가 매매를 결정하지 않는 한에서 청구권자와 처분권자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용익임대차계약의 규정이 준용된다. 행정청은 수용된 기업에 대한 반환신청을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있으면 용익차임 또는 매매대금을 결정해야 한다. 용익차임과 매매가격은 반환에 대한 존속력있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지속된다. 차임과 매매가격은 기업이 청구권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 소멸한다. 청구권자와 기업운영을 위해 임명된 자는 영업활동시 정상적이고 그리고 양심적인 관리인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정을 유의해야 한다.

- (3) 청구권자는 재산상황의 본질적인 악화분을 제6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잠정적인 지시가 내려진 시점에서 이미 조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 계속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의무자는 기업의 계속을 다른 형식을 통하여 특히, 보증의 방법으로 보장할 수 있다.
- (4) 청구권자와 처분권자가 반환될 기업을 잠정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약정한 경우에는 행정청의 결정이 필요하지 않다. 약정은 행정청에 통지해야 한다.

제6조의b 해체

- (1) 제6조에 따라 단수 또는 복수의 반환청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하여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적으로 독립된 기업 또는 재산총체(영업시설)로 해체할 수 있다. 제6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그와 같이 형성된 재산총체에 대하여 각각 적용된다. 해체여부에 대하여는 청구권자 또는 처분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33조 제3항에 따른 의결로써 행정청이 결정한다. 신청자는 해체신청을 해체될 기업의 경영협의회의 청문을 거쳤음을 행정청에 보고해야 한다.

- (2) 지분권 또는 사원권만 처분권자에게 인정되고 청구권자가 동의한 경우에 기업의 해체는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다. 조합해체의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총회(청산인이 임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해체에 필요한 다수의 총회)가 해체에 동의한 경우에 신청에 따라 해체된다.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행정청이 의무에 합당한 재량으로 결정한다.
- (3) 행정청은 요구에 따라 3개월이 넘지 않는 기한에 해체기업의 결산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표를 제시해야 한다. 결산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표에는 독일마르크개설 대차대조표에 근거한 금액과 그에 따른 재산목록표도 제시되어야 한다.
- (4) 제33조 제4항에 따른 양도각서에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해체될 기업의 명칭 또는 상호, 주소 및 해체를 통해 새로 생긴 기업의 양수인의 명칭 또는 상호, 주소 및 법적 대표자
 2. 새로이 창설된 지분 또는 사원지위가 결산이익에 대한 지분청구권을 보장하는 시점 및 이러한 청구권에 관한 상세한 모든 사정
 3. 양도기업의 활동이 인수인의 계산으로 되는 시점
 4. 해체될 기업의 적극 또는 소극재산을 다른 기업 또는 재산총체로 하는 엄정한 지정 또는 분할, 재산의 양도에 있어서 개별적인 권리 승계에 관하여 일반적인 규정에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은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토지등기법 제28조가 적용된다. 나아가 개별재산의 지정을 그 내용상 가능하게 하는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표와 같은 문서는 인용될 수 있다.
 5. 조정채권, 조정채무 또는 각 재산총체에 부속되어야 하는 보증반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업이 창설되어야 할 경우에는 현재의 법형식상 기준이 되는 설립규정이 준용된다. 설립심사는 요구되지 않으며 그러한 한에서 등기법원의 심사업무는 관할행정청에 부과된다. 해체기업의 독일마르크화 개설대차대조표는 새로운 재산총체의 형성에 맞게 해체된다. 대차대조표는 분할의 취지상 해체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결제된 것으로 간주된다.

- (5) 반환목적상 새로운 기업이 설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법형 식상 기준적인 설립규정이 준용된다. 설립심사는 요구되지 않으며 그러한 한에서 등기법원의 심사업무는 관할행정청에 부과된다. 해체 대상 기업의 독일마크개업 대차대조표는 새로운 재산군의 형성에 따라 분할된다. 분할의 취지상 해체가 효력을 발생하므로써 대차대조표는 결제된 것으로 간주된다.
- (6) 분할된 재산의 범위내에서 채무를 인수한 자로부터 양도기업의 채권자가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해체에 참여한 다른 모든 자도 연대채무자로서 이러한 채무에 책임이 있다. 새로운 재산총체에 의한 지급지시가 없고 해석을 통하여도 지급지시를 밝혀낼 수 없는 경우에는 해체에 관여한 모든 자가 연대채무자로 책임을 진다. 기업이나 영업소를 양도받은 특정인 또는 신탁공사가 채무이행을 보증하였음을 행정청이 확인한 경우에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공사는 해체가 실시되지 않았더라면 채권자가 획득했을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진다.
- (7) 제33조 제3항의 결의를 다투지 못함으로써 행정청의 결정에 따라 양도각서에 지정된 재산은 결의에서 예상한 분배방식에 일치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경우에 따라서 전체로서 지정된 자에게 양도된다. 지분권은 즉시로 결의에 지정된 개인에게 양도된다. 양도기업은 결의에 따라 계속될 수 없게된 때에 소멸한다. 재산이나 채무가 양도되지 않았음 사이에 밝혀진 경우에는 행정청은 해체에 적용된 원칙에 입각하여 결의에 지정된 자에게 재산 또는 채무를 배정한다. 다만, 사물의 성격상 다른 지시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 (8) 행정청은 해체결의에서 지정된 자를 관할하는 등기법원 및 지정된 토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게 등기부 및 문서의 정정 및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기입을 요구한다.
- (9) 영업소가 경영조직법 제1조에서 언급된 노동자숫자를 결정할 수 있고 또한 당해영업소가 경영협의회가 존재하는 기업내에 편입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이 해체되더라도 경영협의회는 직무를 계속하고 경영협의회에 종래 부속된 영업소를 위한 영업활동을 계속 수행한다.

영업소에서 새로운 경영협의회가 선출되고 선출결과가 공표되면 즉시 임시위임업무는 종결되고, 늦어도 기업해체의 효력발생후의 3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다양한 영업을 할당받은 영업소들이 하나의 사업체로 결합된 경우에는 선거권있는 노동자 수에 따라 가장 큰 영업소에 부속된 경영협의회가 임시위임업무를 담당한다. 사업체들이 새로운 단일 사업체로 결합된 경우에는 제3문이 준용된다. 해체에 관련된 기업들간에 경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경영협의회의 참여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 7 조 가격조정

재산반환의 경우(제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에는 인민소유재산으로 양도된 이래로 국가의 예산지원을 통한 가격 상승분 및 가격하락분은 확정되고 조정되어야 한다. 가격변동상황을 확정하는 경우에 자산평가법규정이 적용된다.

제 8 조 선택권

- (1) 제3조에 따라 청구권자에게 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권자는 반환청구 대신에 손실보상을 선택할 수 있다. 소유권의 포기, 증여, 상속포기로 인해 자신의 재산을 인민소유로 양도한 자는 예외로 한다.
- (2) 청구권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선택권은 공동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제 9 조 보상원칙

- (1) 제4조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손실보상은 금전으로 지급된다. 제1조 제2항의 취지상 소유권포기, 증여, 상속권포기 등을 통하여 인민소유재산이된 토지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 (2) 토지가 제4조 제2항을 근거로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등한 가액의

다른 토지로 대물보상된다. 대물보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금전으로 지급된다. 대토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21조 제3항 제1문과 제4항이 준용된다.

(3) 상세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0조 동 산

- (1) 동산이 매각되어 제3조 제3항 및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반환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기금으로 부터 매각대금을 한도로 하는 청구권이 청구권자에게 인정된다. 다만, 매각대금이 손실보상기금구좌의 대변에 기장되지 않거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 (2) 동산의 매각시에 매각대금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청구권자는 손실보상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 3 절 국가관리의 종료

제11조 원 칙

- (1) 재산권에 대한 국가관리는 청구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행정청의 결정으로 종료된다. 국가관리종료를 신청하는 대신에 청구권자는 소유권을 포기하고 제9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선택할 수 있다.
- (2) 청구권자가 신고기한(신고규정 제3조)의 도과 때까지 자신의 청구권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관리자는 관리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청구권자가 신고기간의 도과후에 관리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신고한 경우에는 재산에 대한 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 (3) 관리자는 처분전에 신고규정에서 정한 신고가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 (4) 처분의 경우에 매각대금은 청구권자에게 귀속된다. 청구권자가 청구권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기금을 담당하는 행정청이 그 매각대금을 관리한다.
- (5) 국가관리하의 금전재산이 불평등하거나 매우 불리한 내용규정에 의하

여 감소되었다면 조정되어야 한다. 그 밖의 상세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12 조 국가관리기업 및 기업참여

국가관리기업 및 기업참여의 반환문제는 제6조에 따라 규율된다. 수용의 시점대신에 관리개시시점이 적용된다.

제 13 조 국가관리자의 책임

- (1) 운영규정이 명하는 의무를 국가관리자가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국가관리기간 동안에 그에게 부과된 다른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관리하의 재산에 대한 청구권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위법하게 야기한 경우에는 국가관리자는 이러한 손해를 전보해야 한다.
- (2) 손해전보는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확정되고 손실보상 기금에서 지급된다.
- (3) 국가관리자 또는 직근상급기관에 대한 조정금 청구권은 손실보상기금에게 귀속된다.

제 14 조

- (1) 관할국가기관이 국가관리를 근거지우는 실질적인 요건의 존재를 알지 못했거나 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했거나 그리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그러한 존재를 알 수 없었음을 이유로 재산이 국가 관리자로 위임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권자에게 전보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2) 재산에 대한 국가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청구권자가 알았거나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청구권자에게 전보청구권이 배제된다.

제 15 조 국가관리자의 권한

- (1) 국가관리의 종료시까지 국가관리자에 의한 재산가치에 대한 보호와 합리적인 관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2) 국가관리자는 국가관리가 종료될 때까지는 소유권자의 동의없이 장기간의 계약상의 의무를 지거나 물권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조 제3항 제2문과 제5문은 준용된다.
- (3) 소유자가 국가관리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제한은 신고기간(신고규정의 제3조)의 도과후에는 해소된다.
- (4) 국가관리자는 처분전에 제3항에 규정한 신고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제 4 절 청구권자와 제3자간의 법률관계

제 16 조 권리의 의무의 인수

- (1) 소유권의 반환 또는 국가관리의 종료를 통하여 재산소유권으로부터 파생하는 권리의무는 청구권자 자신 또는 청구권자에 의해 지정한 관리자가 행사한다.
- (2) 소유권의 반환 또는 국가관리의 종료 또는 임시지시(제6조의a)를 통하여 청구권자는 현재의 재산에 관련하여 존재하는 모든 법률관계를 승계한다.
- (3) 현재의 법률관계는 현재 적용되는 법규정에 근거해서만 변경되거나 종료된다.

제 17 조 임차권 및 이용권

토지와 건물의 반환 또는 국가관리의 종료에 의하여 임대차 및 이용관계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임차인 또는 사용자가 계약체결시에 제4조 제2항과 제3항의 의미에서 부정한 방법을 이용했다면 제1문의 규정은 제1조 제3항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18 조 토지부담

- (1) 토지가 반환될 경우에 인민소유재산으로 양도된 시점에서 존재했던 물적 부담은 다시 등기부에 등재된다. 수익자가 국가에 의하여 이미 만족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기초가 된 채권은 손실보상기금으로 양도된다. 이러한 경우 관할행정청의 요구에 따라 보전저당권은 손실보상기금을 위하여 등기부에 등재된다. 다만, 채권이 사전에 청구권자에 의하여 변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 (2) 인민소유 금융기관을 위하여 설정되고 토지를 인민소유재산으로 양도한 후에도 존속한 저당권으로부터 발생한 인적 채권은 청구권자에게 토지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소멸된다. 손실보상기금으로부터 나온 보상액은 금융기관의 법적 승계자에게 귀속된다.
- (3) 신용인수에 상응하는 가치증가적 또는 가치유지적 건축조치가 실시된 경우에는 건물저당권은 청구권자가 인수한다.

제 19 조 토지에 대한 제3자의 기타의 청구권

- (1) 주거지, 휴양지, 업무 용지의 이용자 및 임차인은 토지와 관계에서 자신이 지출한 비용에 입각한 청구권을 채권의 만기와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지출이 동독의 실정법상 소유권자의 의무사항이거나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 비용변제채권, 가격전보채권, 적절한 손실보상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한다.
- (2) 신고는 제6절의 절차에 따른다.
- (3) 청구권자가 청구권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약정이 성립되어야 한다.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에 의한다.
- (4) 국가관리의 종료 또는 반환은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영향받지 아니한다.

제 20 조 선매권

- (1) 일가구용주택 및 이가구용주택 및 국가관리하의 휴양목적토지 또는

반환청구대상인 휴양목적토지의 임차인과 이용자는 신청을 하면 토지에 대한 선매권을 인정받는다.

- (2) 소유권 및 물권적 이용권을 제3자가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청구권자는 신청을 통하여 토지에 대한 선매권을 인정받는다.
- (3) 선매권의 등기신청은 제6절의 절차에 따른다.

제 21 조 대 토

- (1) 일가구용주택 및 국가관리의 휴양목적토지 또는 정당한 반환청구대상인 휴양목적토지의 임차인과 이용자가 당해 토지를 구매하려면 청구권자에게 처분가능한 대토를 제안할 수 있다. 청구권자는 대토를 청구할 의무는 없다.
- (2) 제9조 제2항의 신청이 우선적으로 준용된다.
- (3) 청구권자가 같은 도시 또는 같은 계마인데지역내에서 자치단체소유토지가 처분가능하고 아울러 그러한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정당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없음을 인정한 경우에는 제1항 제1문에 따른 신청이 준용된다. 이 규정은 특히 임차인과 이용자가 물건의 가치제고 또는 가치유지를 위하여 현저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 (4) 대토의 가격과 당해 토지의 가격간의 차이는 관리개시시점 또는 소유권 박탈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된다.
- (5) 국가관리토지의 청구권자에게 대토가 양도된 경우에 국가관리자는 토지를 임차인이나 이용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제 5 절 조 직

제 22 조 재산문제처리의 실시

이 법의 규정과 설립될 손실보상기금과 관련한 업무는 메클렌부르크-포아포메른, 브란덴부르크,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겐, 베를린 등의 주에 의

하여 실시된다. 대토지보장, 가격조정, 손실보상에 관한 결정은 연방정부의 위임에 따라 각주가 담당한다.

제 23 조 주행정청

모든 주는 재산권문제의 규율을 위하여 행정청을 설치한다.

제 24 조 하급주행정청

각군, 주특별시 및 베를린을 위하여 하급주행정청으로 재산문제처리청이 설립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다수의 군을 위해 하급행정청으로서 그러한 행정청이 설립된다.

제 25 조 상급주행정청

각주에 재산문제처리 주행정청이 설립된다. 제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조치, 제6항에 따른 기업의 반환 및 해체, 제6조의a에 따른 임시지시의 문제는 주행정청의 전속관할사항이다.

제 26 조 이의심사위원회

- (1) 재산문제처리 주행정청에 이의심사위원회를 둔다. 필요한 경우에는 복수의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의장과 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2) 이의심사위원회는 이의에 대하여 지시받지 아니하고 다수결로 결정한다.

제 27 조 직무상 및 법상의 응원

모든 행정청과 법원은 이 절에 규정된 행정청에 대하여 직무상 및 법률상으로 응원한다.

제 28 조 경과규정

- (1) 하급주행정청이 설치될 때까지 군청 또는 특별시청이 이 법의 업무를 담당한다. 신고규정에 규정된 신고는 재산문제 처리청이 설립된 후에도 동행정청을 통해 군청 또는 특별시청이 계속 처리할 수 있다.
- (2) 각주는 군청 또는 특별시청을 통하여 일정기간 하급행정청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 29 조 재산문제처리 연방행정청

이 법의 업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연방행정청을 설치한다. 연방행정청에 고문을 둔다. 고문은 제22조에 열거한 편입주에서 4명의 이익단체대표자와 4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제 29 조의a 연방의 특별재산

- (1) 제7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손실보상, 대토에 대한 비용은 권리능력없는 연방의 특별재산에서 지출된다.
- (2) 재산문제처리 연방행정청은 연방재무장관의 지시감독에 따라 특별재산을 관리한다.
- (3) 특별재산은 자신의 명의로 거래를 할 수 있고, 원고 및 피고가 될 수 있다. 특별재산의 보통재판적은 베를린이다.
- (4) 연방은 특별재산의 채무에 책임을 진다.

제 6 절 절차규정

제 30 조 신 청

- (1) 이 법에 따른 청구권은 관할행정청에 신청을 통하여 적법하게 된다. 처분권자와 청구권자간에 반환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청은 신청에 대하여 결정한다. 반환신청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

며, 포기할 수 있다. 신청은 개개의 절차단계에 제한될 수도 있다. 신고규정에 따른 신고도 반환신청 또는 국가관리의 종료신청으로써 효력이 있다.

- (2) 제6조 제1항과 제6조의 b의 경우에 당사자들은 행정청이 아니라 제38조의 a의 중재법원에게 결정 또는 일정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사를 통해서 당해결정이 제3자의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정이 밝혀지면 행정청은 당사자들에게 이러한 가능성을 고지한다. 행정절차가 이미 시작된 경우에도 제1문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 31 조 행정청의 의무

- (1) 행정청은 직무상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신청인은 조사에 협력해야 한다.
- (2) 행정청은 당해 권리보유자 또는 국가관리자 및 절차개시로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게 되는 제36자에게 신청문서 및 부대서류를 송부함으로써 신청상황에 대하여 고지하고 그 후의 절차를 알려야 한다.
- (3) 신청인은 자신의 청구권 실현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행정청에 대한 정보청구권을 보유한다. 청구권한에 대하여는 소명하면 된다. 정보는 문서로서 교부된다. 기업의 반환신청시에는 행정청은 신청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기업의 활동공간 및 모든 시설에의 출입 및 감시권을 신청인에게 인정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그러한 청구권한을 소명한 경우에 한한다.
- (4) 행정청은 권리보유자, 현재의 소유권자, 국가관리자 및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자에게 정보전반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
- (5) 행정청은 절차의 각단계마다 청구권자와 처분권자가 적절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영향을 미친다. 적절한 합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점이 행정청에게 고지된 한에서 행정청은 절차를 유예한다. 청구권자의 청구를 전부 또는 일부 만족시키는 합의에 도달한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제33조 제4항 및 제6조의b 제4항에 의한 양도협정서와 관련된 제33조

제3항의 의결로서 합의가 확정된다. 제2문은 영향받지 아니한다. 결의에서 정한 기한(1개월한도)내에 결의의 철회가 유보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결의에 즉시 존속력이 발생한다.

- (6) 당사자들이 제30조 제2항 제1문 전단에 입각한 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신청을 허가한다. 다만, 신청이 제3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행정청은 중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중재법원에 알려야 한다. 행정청은 중재법원의 결정에 구속된다.

제 32 조 결정과 선택권

- (1) 행정청은 합당한 결정을 신청인에게 문서로 전달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태도결정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에 신청인에게 제31조 제3항의 정보전달가능성 및 제2항의 선택권이 인정된다.
- (2) 행정청이 결정을 하지 않는 동안에는 신청권자는 재산의 반환 또는 국가관리의 종료 대신에 제9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선택할 수 있다. 이 항은 제8조 제1항 제2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3) 신청자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정보가 도달된 후 빨라도 1개월 후에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결정한다.
- (4) 이 절에 따라 기한이 정해진 결정과 통지는 이해관계가 있는 권리자에게 전달된다.

제 33 조

- (1) 신청인이 손실보상을 선택한 경우에는 결정은 청구권한의 유무 및 선택권 행사여부의 확정에 국한된다. 그 후의 절차는 개별규정에 따른다.
- (2) 제7조에 따른 가격조정청구 및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및 제14조에 따른 손해전보청구권에 대하여 각각 결정한다.
- (3) 결정에 관하여 관련자에 대하여는 서면결의가 송달된다. 결의에는 이유를 붙이고 불복수단을 고지하여야 한다.

- (4) 결정이 있으면 반환합의서는 관련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반환합의서는 제19조의 소유상황, 재산상황, 체결된 합의, 신고된 권리 및 반환될 재산에 대한 중요한 특수규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기업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합의서는 제6조 제4항에 열거된 사항을 포함한다.
- (5) 이의가 없는 경우에 결정은 송달된 후 1개월의 경과로 존속력을 발생한다.

제 34 조 소유권양도, 등기부정정, 국가관리등기의 말소

- (1) 소유권 또는 기타 물권의 반환결정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이들 권리는 청구권자에게 양도된다.
- (2) 부동산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 내지 물권을 반환하는 경우에 행정청은 등기소에 등기부정정신청을 한다. 등기부정정에 관한 수수료는 면제된다.
- (3) 청구권자는 토지취득세의 납부의무가 없다.
- (4) 국가관리가 종료된 경우에는 행정청은 등기소에 국가관리등기의 말소를 신청한다.
- (5) 제1항 내지 제4항이 기업의 반환 및 해체의 경우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적용된다. 기업 및 영업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포괄승계방식으로 양도된다.

제 35 조 지역관할

- (1) 국가관리 재산에 대한 결정은 신청인의 최후주소지에,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최후의 주소지에 소재하는 재산문제 처리청이 관할한다. 징발되어 인민소유가 된 재산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 (2) 기타의 경우에는 재산소재지의 재산문제 처리청이 관할한다.
- (3)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재산소재지의 재산문제 처리청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제1항에 의하여 관할권을 부여받은 행정청은 이 경우에 절차

를 중단한다.

- (4) 관할권 없는 행정청에게 신청이 전달된 경우에는 이러한 행정청은 즉시 신청을 관할 재산문제 처리청으로 송부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 36 조 이의절차

- (1) 재산문제 처리청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는 결정이 통보된 후 1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린 행정청에 문서로써 한다. 이의에는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의를 시정할 수 없거나 전혀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의는 이의심사위원회에 송부된다.
- (2) 이의제기자 이의의 자가 결정의 폐지 또는 변경을 통하여 이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의에 대한 재결을 내리기 전에 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3) 이의재결에는 이유가 부기되어야 하고 불복수단을 고지하여야 한다.
- (4) 제25조 제2문에 의한 주행정청의 결정에 대한 이의절차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 37 조 소송의 가능성

- (1) 불복하는 자는 이의재결에 대하여 또는 제36조 제4항의 이의절차가 배제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재결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법원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 (2) 판결에 대한 상소와 법원의 기타 결정에 대한 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행정법원법 제133조와 제135조에 따른 항고불허에 대한 항고 및 법원조직법 제17조의a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불복수단에 대한 결의에 대한 항고 및 행정법원법 제80조 제5항에 따른 집행정지명령의 신청에 관한 항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불복수단의 재결에 대한 항고의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제17조의a 제4항 제4문 내지 제6문은 준용된다.

제 38 조 비 용

- (1) 행정절차 및 이의절차의 비용은 없다.
- (2) 소송대리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의절차상 전권위임이 권리실현을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이의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의제기자는 위임의 비용을 변상받는다. 본안결정을 내릴 경우에 비용부담에 대해서도 결정한다.

제 38 조의a 중재법원 중재절차

-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결정 또는 제6조의b에 언급한 해체를 위한 중재법원은 양당사자간(청구권자와 처분권자)의 중재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중재법원은 당사자가 각1인씩 임명한 2인의 배석위원과 배석위원이 임명한 의장으로 구성된다. 배석위원은 법관의 자격있는 자를 의장으로 임명한다.
- (2) 중재계약 및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25조 내지 제104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31조 제5항은 준용된다. 민사소송법 제1045조의 법원은 제37조상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중재판정 및 중재법원에 의한 조정조서는 행정청을 구속한다.
- (3) 중재판결에 대하여는 4주 내에 제2항 제3문에 따른 관할법원에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위 기간 내에 취소의 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취소의 소가 법적으로 배제되었거나 양당사자가 중재판결이 내려진 후에 소권을 포기하거나 중재법원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중재판결의 내용 또는 중재법관의 조정이 확정되어 있는 제33조 제4항에 의한 양도협정서와 결부되어 있는 제33조 제3항 제1문에 의한 결의를 발한다. 이러한 결의는 즉시 존속력을 발생하며 제34조의 효력을 보유한다.

신·탁·법

제 1 조 재산의 양도

- (1) 국유재산은 사유화되어야 한다. 국유재산의 소유권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 군 및 공공기관에 양도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수행과 서어비스제공에 필요한 국유재산은 본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될 수 있다.
- (2) 동독각료회의는 국유재산의 사유화 및 재편성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인민의회는 이를 감독할 권한이 있다.
- (3) 각료회의는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의 수행을 신탁청에 위임한다.
- (4) 신탁청은 본법의 규준에 따라 국유경제등기부에 등재된 국유콤비나트, 국유기업, 각종 사업장 및 기타 법률상 독립된 경제단위(이하 경제단위라 함)의 조직변경을 통하여 설립되거나 또는 본법 발효 이전에 이미 설립된 자본회사의 지분소유권자가 된다.
- (5) 국유재산의 권리담당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때에는 본조의 규정들은 당해 국유재산에 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 가
 2. 독일체신 및 그 산하기관, 독일제국철도, 수도관리청, 공공도로관리청 및 기타 국영기업
 3. 지방자치단체, 시, 군, 주 산하기업 및 사업장
 4. 본법 발효시까지 국유경제등기부에 청산표시가 등재된 경제단위
- (6) 농업 및 임업 부문에서의 국유재산의 사유화 및 재편성을 위한 신탁업무는 동 부문의 경제적·생태학적·구조적·소유권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행한다.

제 2 조 신탁청의 지위 및 임무

- (1) 신탁청은 공법기관이다. 신탁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유화 및 매각 임무를 수행한다.

- (2) 신탁청은 수상의 감독하에 둔다.
- (3) 신탁청 장관은 수상이 인민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신탁청의 업무규칙은 각료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신탁청에 관하여는 공화국 직속 공법인의 법적형태를 갖춘 기업 및 관리에 관한 공화국 예산규정 제96조 제2항, 제3항을 적용한다.
- (6) 신탁청은 특히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을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발전시키고 이들의 사유화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경제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야 한다. 신탁청은 합목적적인 기업구조의 해체를 통하여 시장능력있는 기업의 창출 및 효율적 경제구조의 생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7) 신탁청은 사유화에 따른 매각수익을 예상하여 서독과 동독간에 체결된 국가조약 제27조 소정의 범위 내에서, 동조항의 규준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정상화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8) 신탁청의 본사를 베를린에 둔다.

제 3 조 신탁청의 이사회

- (1) 신탁청은 이사회에 의하여 운영되며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각 이사들이 신탁청을 대표한다.
- (2) 이사회는 신탁청 총재 1명 및 최소 4명의 이사로 구성한다. 신탁청의 총재와 이사들은 관리위원회가 임명한다.
- (3) 이사회는 각료회의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사회는 각료회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사유화 진행에 관한 현황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 4 조 관리위원회

- (1) 관리위원회는 이사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지원한다. 관리위원회는 이사회의 업무 감독 및 지원을 위하여 이사회로부터 정기적인 보고를 받는다. 신탁청 총재는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모든 주요업무에 관하여 보

고하여야 한다. 관리위원회는 신탁청 이사회에 대하여 특히 사회적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한 국유재산의 사유화, 매각 등 기본문제 및 제2조 소정의 모든 임무에 관하여 자문을 행한다. 관리위원회의 동의를 요하는 업무는 신탁청 정관에 규정되어야 한다.

- (2)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위원 7명은 각료회의가 임명한다. 위원 2명은 인민의회가 인민의원 중에서 선출하되, 그중 1명은 야당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나머지 의원 7명은 수상의 추천에 따라 인민의회가 임명한다. 관리위원회 위원으로는 특히 기업의 운영, 정상화 및 자본시장에서의 기업 활동에 관하여 고도의 전문 지식과 폭넓은 경험이 있는 인사들을 우선적으로 임명한다.

제 5 조 수입과 지출

- (1) 신탁청의 수입은 우선적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수평적 재정 조정을 포함한- 사용하며, 2차적으로 국가예산 및 신탁청의 운영비용 충당을 위하여 사용된다. 수입금의 사용에는 각료회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2) 국유재산의 현황과 수익성을 파악하고, 경제구조의 조정과 국가재정의 정상화를 위하여 국유재산을 우선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추후 동독마크와 서독마크를 2:1로 교환하는 경우 감소될 예금액에 대하여 가능한 한 그에 상응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지분증권을 예금자에게 공여할 수 있다.

제 6 조 연말결산서 및 현황보고서

신탁청 이사회는 연말결산서와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연말결산서 및 현황보고서의 감사 및 공고에 관하여는 자본회사에 적용되는 제반규정을 준용한다. 연말결산서 및 현황보고서는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신탁주식회사

- (1) 신탁청은 그 임무의 범위와 목적규정에 따라 기업경영의 원칙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사유화 및 매각을 보장하는 신탁주식회사가 중심이 된 분권조직을 통하여 그 임무를 수행한다.
- (2) 신탁주식회사의 주식은 양도할 수 없다. 신탁주식회사의 정관은 신탁청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신탁청 관리위원회는 신탁주식회사의 정관승인시 합목적적 관점에 따라 신탁청 보유지분을 각 신탁주식회사에게 배정한다.

제 8 조 신탁주식회사의 임무

- (1) 신탁주식회사는 기업자문회사, 판매회사, 은행 및 기타 적절한 기업들의 자문을 받아 자신의 업무영역내에서 다음 임무들이 최대한 광범위한 분권을 통하여 기업적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1. 영업지분이나 재산지분의 매각을 통한 사유화
 2. 기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 보장
 3. 정상화가 불가능한 기업 또는 그 일부 재산의 폐업 및 매각
- (2) 신탁주식회사는 사유화 업무의 진행현황을 신탁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신탁주식회사의 기타 임무

- (1) 신탁주식회사는 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보장을 위하여 해당분야 기업들에 있어 시장조건과 사회적 시장경제의 목적달성에 부합되는 구조를 조성하여야 한다.
- (2) 신탁주식회사는 해당분야 기업들이 금융 및 자본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능한 한 조속히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기업의 수익상태 개선 및 정상화계획 작성을 위하여 적절한 경우 외부 고문을 참여시킬 수 있다.

- (4) 신탁주식회사는 해당분야 기업들의 강화를 위하여, 특히 정상화 조치와 관련하여 대출을 받거나 채무보증을 담보하는 등 시장경제의 모든 가능성을 활용할 수 있다.

제 10 조 신탁주식회사의 조직

- (1) 신탁주식회사 내에서 신탁청을 대표하는 감사는 신탁청이사회가 임명한다. 감사에 대하여서는 제4조 제2항을 준용한다.
- (2) 근로자의 기업운영 공동결정에 관한 법률중 근로자 대표 선정절차에 관한 규정은 동독지역 내에서의 서독법규 발효에 관한 법률의 규준에 의하여, 신탁주식회사 감사회의 근로자 대표에 대하여는 1991년 3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시점까지는 신탁주식회사가 지분을 소유한 자본회사를 대표하는 노동조합들이 근로자 대표 선정을 위한 추천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 이 경우 노동조합들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3) 신탁주식회사 이사회는 기업경영의 경험, 특히 기업의 정상화 및 영업지분의 매각에 경험이 있어야 한다.

경제단위의 자본회사로의 조직변경

제 11 조 조직변경

- (1) 1990년 7월 1일까지 자본회사로 조직변경되지 아니한 제1조 제4항 소정 경제 단위들은 다음과 같이 자본회사로 조직변경된다. 국유콤비나트는 주식회사로, 콤비나트 소속기업 및 다른 경제단위들은 자본회사, 특히 유한회사로 각각 조직변경된다.
- (2) 전항의 경제단위들은 1990년 7월 1일부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된다. 기업의 조직변경은 조직변경과 동시에 종전에 경제단위의 기금보유체에 속하였던 재산 및 권리담당자에 속하였던 토지를 자본회사의 소유로 이전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3) 다음 경우에는 제1항 소정의 조직변경이 배제된다.

1. 본법 발효시까지 국유경제등기부에 청산표시가 등재된 경제단위
2. 독일체신 및 산하기관, 독일제국철도, 수도관리청, 공공도로관리청 및 기타 국영기업
3. 지방자치단체, 시, 군, 주 산하에 있던 사업체와 사업장
4.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사이에 체결된 통화·경제 사회공동체 창설에 관한 조약 제1부속의정서 제8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채권이나 채무를 서독화폐로 청산하여야 하는 청산절차 진행중인 대외 무역기업
5. 국유농장 및 국유산림기업

제 12 조 조직변경의 법적효과

- (1) 콤비나트로부터 조직변경된 주식회사는 1990년 7월 1일 이전에 콤비나트에 소속되어 있던 유한회사의 지분을 보유한다.
- (2) 제1항 소정의 주식회사는 유한회사의 이사가 요구할 경우 적정액의 보상으로 유한회사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신탁청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13 조 조직변경의 등기

경제단위의 자본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직권으로 본법의 규준하에 당해 경제단위가 등재되어 있던 등기부에 등기된다.

제 14 조 상 호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조직변경된 자본회사의 상호는 「설립중의 주식회사」 또는 「설립중의 유한회사」라는 표시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 15 조 자본회사의 등기

- (1) 자본회사는 직권으로 본법의 규준하에 상업등기부에 등기된다.
- (2) 자본회사는 상업등기부에의 등기를 위하여 늦어도 1990년 7월 16일 까지 등기법원에 다음 사항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종전 경제단위의 명칭
 2. 회사의 명칭 및 소재지
 3. 기업의 대상
 4. 임시이사의 성명
- (3) 자본회사는 제2항 소정의 사항들을 신탁청 및 관할 신탁주식회사에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외에 자본회사는 1990년 7월 31일까지 신탁청 및 관할 신탁주식회사에 조직변경 당시 자본회사의 재산목록 및 임시영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기적으로 재산총액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1990년 7월 1일까지의 구체적 총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 (4) 정관에서 자본금이 정하여질 때까지 유한회사의 자본금은 50,000 도 이치마르크,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100,000 도이치마르크로 한다.

제 16 조 임시이사

- (1) 신탁청은 1990년 6월 31일까지 임시이사를 임명한다. 그 임명전까지 이사회 또는 사원총회의 임무는 회사를 경영중인 총지배인 또는 지배인이 수행한다.
- (2) 이사회의 지위 및 책임에 관한 주식회사법 또는 유한회사법상의 규정은 제1항 소정의 자들에게 준용한다. 신탁청은 이들의 의무위반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대위책임을 진다. 다른 법률규정에 의하여 신탁청이 이들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청구권은 영향받지 아니한다.

제 17 조 주식회사의 임시무기명주식; 유한회사의 임시출자액

- (1)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의 정관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당해 주식회사의 주식은 무기명주식으로 하며, 액면금액은 50도이하 치마르크로 한다.

제 18 조 영업년도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설립된 자본회사의 영업년도는 역년(1월 1일부터 12월 31 일)으로 한다.

제 19 조 설립의 개시

상업등기부상 설립중의 주식회사 또는 설립중의 유한회사라는 등기가 경료되는 즉시 각 회사의 임시운영기관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조치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 20 조 신탁청에 대한 초안 제출; 신탁청의 임무

- (1) 자본회사는 1990년 10월 31일까지 신탁청에 다음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법률규정의 자본금 및 계획중이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자액이 표시된 정관의 초안
 2. 경제단위의 조직변경일 기준 결산대차대조표 및 개시대차대조표, 모든 권리와 의무, 채권과 채무, 은행과 체결한 모든 약정사항 및 회사의 추가설립에 정시 권리승계인에 관한 규정. 대차대조표는 회계감사원,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3. 설립보고서 및 경제단위의 전영업년도의 영업경과 및 현황을 표시한 현황보고서
 4. 자본회사의 토지구모에 관한 사항
- (2) 본법 효력 발생 이전에 기업조직변경신청서 및 그에 필요한 서류를 규

정대로 신탁청에 제출한 경제단위에 대하여는 제1항 소정 요건이 구비된 것으로 본다.

- (3) 1990년 10월 31일 이후 신탁청은 자본회사의 협력하에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각 정관을 확정할 수 있다. 위 기간 도과 이후 신탁청은 자본회사의 비용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법인에게 설립보고서, 현황보고서 및 개시대차대조표의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제 21 조 신고; 보충문구 「설립중인」의 삭제

- (1) 임시운영기관은 제19조에 의한 조치들의 수행을 상업등기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시 다음 각호 소정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정 관
2. 개시대차대조표
3. 설립보고서
4. 회계보고서

- (2) 제20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청은 신고를 종용한다.

- (3) 자본회사 등기를 위한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면 등기법원은 자본회사의 기존 상호에서 「설립중」이라는 보충문구를 삭제한다.

제 22 조 자본회사의 해산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설립된 자본회사는 1991년 6월 30일까지 제19조 내지 제21조에서 요구하는 조치들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 일자의 도과로 해산된다.

제 23 조 조직변경명령에 의한 조직변경

제11조 제2항 및 제15조 제3항은 1990년 3월 1일자 국유콤비나트, 국유기업 및 시설의 자본회사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명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조직변경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제 24 조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 (1) 본법 규정은 불법적인 몰수 또는 몰수유사침해를 이유로 제기될 수 있는 원상 회복 또는 보상에 관한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 본법은 1990년 7월 1일자로 발효된다.
- (3) 본법 발효와 동시에 다음 각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1990년 3월 1일자 국유재산의 신탁관리를 위한 기구의 설립에 관한 내각결정(법률관보 I 제14호 제107면)
 2. 1990년 3월 15일자 국유재산의 신탁관리를 위한 기구의 지위에 대한 내각결정(법률관보 I 제18호 제167면)
- (4) 본법 시행령은 각료회의가 제정한다.

투자우선순위법

제 1 절 투자우선

제 1 조 기본원칙

재산법에 따라 반환청구의 대상 또는 대상이 될 수 있는 토지, 건물, 기업은 아래 규정상의 기준에 따라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특별한 투자목적 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권리자는 이 경우 이 법의 기준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

제 2 조 처분제한의 중지와 투차조치

- (1) 재산법 제3조 제3항 내지 제5항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즉 처분권리자가
 1. 토지나 건물을 매각 또는 임대, 용익임대하는 경우,
 2. 토지 또는 건물에 부당한 조건 없이 다른 토지에 대한 투자계획을 위

하여 허용될 수 있는 지상권 또는 역권을 설정하는 경우,

3. 토지 또는 건물에 부분소유권 또는 주택소유권을 설정하고 양도하는 경우,
 4. 토지에 건축물 또는 건물을 건축, 증축 또는 재건축하는 경우,
투자우선순위결정을 통하여 확실하고 특별한 투자목적에 기여함이 확정된 때이다. 부동산의 생산설비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또는 건물의 증축으로 간주된다.
- (2) 재산법 제3조 제3항 내지 제5항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즉, 처분권리자가

1. 지분 또는 재산가치의 양도로 기업을 매각 또는 용익임대하는 경우,
 2. 기업에게 기업으로부터의 보증없이 이에 필요한 자본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고 이를 확정기간내에 제공하는 경우,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통하여 확실하고 특별한 투자목적에 기여함이 확정되어 당해조치가 시행되는 때이다. 위 제1문 제2호의 경우 공급된 자기자본은 조달된 후 5년 동안 매년 부족액의 청산을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자본 적립금으로 투입될 수 있다.
- (3) 재산법 제3조 제3항 내지 제5항은 투자조치에 있어서의 계획시행을 위한 모든 확실한 법률행위와 사실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3 조 특별투자목적

- (1) 특별투자목적은 토지와 건물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용될 때 존재한다.
1. 일자리의 보장 또는 창출, 특히 영업소 또는 서비스기업의 설치 또는 유지
 2. 시건축조치의 범주내에서 1세대용주택과 2세대용주택을 건축 또는 재건축하는 경우에 있어서 새로운 거주공간의 재건축
 3. 투자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이로부터 야기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조치

의 창출

위의 경우에 있어서 토지 또는 건물은 투자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할 때 특별투자목적에 위하여서만 이용되어 질 수 있다.

- (2) 특별투자목적은 기업에 필요한 토지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용될 때 존재한다.
1. 일자리를 창출 또는 보장하거나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투자를 가능케 하기 위한 경우
 2. 권리자가 기업을 계속하거나 정비하기 위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또는
 3. 상업적 판단에 따라 장기간 피할 수 없는 지불불능 또는 채무초과시 기업의 청산 또는 공동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 (3) 신청된 투자조치를 위한 투자우선순위 결정은 토지나 건물의 매각 대신 지상권의 설정이나 부분 또는 주거소유권의 성립과 양도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될 수 없다. 이는 예상 가능한 방식의 계획을 위하여 임대 또는 이익임대가 통폐가 아닌 한 임대 또는 이익임대의 허용시 준용된다.

제 2 절 투자우선순위 결정

제 4 조 절 차

- (1) 제2항에 따른 관할기관은 의도한 계획을 위하여 제2조 내지 제3조 소정의 요건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계획실행자가 그의 개인적, 경제적관계에 비추어 계획의 실현을 위해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확정하여 그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한다. 이러한 절차는 1995년 12월 31일까지만 진행될 수 있다.
- (2) 이 법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처분권리자가 투자우선순위결정을 한다. 처분권리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재산가치의 소재지인 군 또는 군에 속하지 않은 시가 투자우선순위결정을 한다.

- (3)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하기전에 계획의 중요한 특징이 기술되어야 한다. 계획에는 적어도 계획실행자의 이름과 주소, 당해재산가치, 예상비용, 그 종류 및 예상실행기간, 매매가격이 제시되어야 하며, 계획의 종류에 따라서는 그 조치를 통해 보장되고 창출되는 일자리의 수 및 창출 또는 재건축되는 거주공간의 규모도 제시되어야 한다.
- (4) 재산법 제2절에 의한 반환양도절차는 이 법에 따른 절차의 개시로 중단된다. 이러한 절차의 중단은 미해결 재산문제 처리관청이 이 법에 따른 절차개시에 관한 고지나 신청서 교부를 위한 최고로 개시되고, 결정의 집행개시로 종료되는 바, 늦어도 위 고지의 송달후 3개월이 경과되면 종료된다. 위 기간의 진행시 투자증서에 관한 잠정적 법적보호를 위한 소송절차가 계류중인 경우에는 반환양도 절차가 이 절차의 종료시까지 중단된다.
- (5) 신청자의 친족이 아니면서 법률행위 또는 강제집행을 통하여 재산법적 청구권을 취득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신청자의 청문

- (1) 관할기관은 투자우선순위 결정전에 미해결재산문제 처리관청, 기업이 관련되는 경우에는 토지나 건물이 소재하거나 기업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미해결 재산문제처리를 위한 주관청, 재산법에 따라 반환신청을 한 자(신청자)에게 당해 재산가치가 제3조상의 투자목적으로 이영되어짐을 통지 해야 한다. 신청자에 대한통지에는 투자계획이 첨부된다. 신청이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다.
- (2) 신청자는 통지 및 투자계획의 송달후 2주일 이내에 투자조치의 허용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기회를 부여받는다. 의사표시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시간준수 또는 청문이 포기되지 않는 한, 위 기간의 경과전에 결정이 행하여지지 아니한다. 위 기간 경과후에는 의도된 계획에 반하는 신청자의 의사표시는 고려되지 않는다. 이는 위 기

간내에 신청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3) 신청자가 자신의 계획을 공표한 경우에는 통지와 투자계획의 도달후 6주일 내에 신청자 자신의 계획 제출을 통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결정이 가능하다.
- (4) 절차시행의 예상소요시간이 투자계획실현을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신청자의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6 조 자치단체의 통지

- (1) 토지 또는 건물의 처분권리자가 그 토지와 건물이 소재하는 자치단체가 아닐 경우에는, 자치단체는 최고의 도달후부터 2주일 내에 재산귀속법 제7종에 의한 절차가 개시 또는 준비되었는지에 대한 의사표시의 기회를 가진다.
- (2) 오직 이 법에 따라 매각된 경우에는 건축계획법의 규정에 따른 자치단체의 선매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건축법 제28조에 의한 통지의무는 소멸된다.

제 7 조 결 정

- (1) 관할기관은 심사절차종료후 당해계획에 대하여 투자우선순위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관할기관은 시청자가 기간내에 계획실행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투자조치를 승락한지 여부 및 그 실행을 담보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우선권을 가진다. 신청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제일 먼저 재산을 상실하게 된 자가 우선권을 가진다. 그 목적물을 위하여 적절하고 동등한 가치가 있는 대체토지가 동일 조건으로 사용되는 경우, 신청자의 계획은 나대지에 있어서 고려될 필요가 없다.
- (2) 특별투자목적에 위한 계획과 관련하여, 신청자의 재산법 제5조에 따른 반환이 투자우선순위 결정에서 배제됨을 확정할 수 있다. 미해결 재산문제 처리관청은 위 청구권이 통례적으로 성립되는 한 위 확정

기속된다.

제 3 절 투자우선순위 결정과 투자계약

제 8 조 투자우선순위 결정과 투자계약의 내용

- (1) 투자우선순위 결정은 재산법 제3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당해재산가치에 적용되지 않음을 확정한다.
- (2) 투자우선순위결정은 재산가치가 토지 또는 건물인 경우 등기법 제28조에 따른 기재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승락된 조치의 실행을 위한 기간
 - b) 제10조와 제12조에 의한 기간의 제시
 - c) 지상권의 매각 또는 설정에 관한 계약자에 투자우선순위 결정의 취소시 대지 또는 건물의 반환양도를 위한 의무가 있다는 조건의 제시
 - d) 사법적 처분권리자에 있어서 거래가치의 지불을 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표시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의 제시 투자계약에는 계약별칙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 (3) 재산가치가 기업인 경우 결정에서 표시된 계약별칙규정 외에, 취득자가 첫 2년 동안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이로부터 중요한 것을 회피하였을 때에는 기업을 반환양도하는 의무규정이 포함되어야만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이 기간은 재산가치의 인도, 늦어도 계약의 발효와 함께 개시된다. 이는 기업과 관련하여 매각되거나 또는 용익임대 되어진 토지 또는 건물에도 적용된다.

제 9 조 투자우선순위 결정의 공표

- (1) 투자우선순위 결정은 신청자에게 송부되어야 하며, 이는 신청자가 청문을 포기하거나 청문으로부터 제외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토지, 건물 또는 기업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미해결 재산문제 처리관청은 투자우선순위 결정의 사본을 소지하며, 반환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에 이

- 를 통지한다. 그 밖의 사변은 신탁청이 처리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상 기금에 송부된다.
- (2) 투자우선순위 결정은 아래의 경우 알려지지 않은 신청자에게 송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 a) 결정기관과 그 주소, 불복고지절차, 계획과 당해재산가치를 적시한 결정을 연방관보에 공고한 경우
 - b) 알파벳순서에 의해 공고된 후 2주일이 경과한 경우

제 10 조 투자우선순위 결정의 집행

투자우선순위 결정은 그 공고후 2주일이 경과되기 전에는 집행될 수 없다. 이는 법률행위 종료전 또는 투자조치 실행전에 권리자에 대한 자산가치의 반환이 결정되었거나 권리자가 재산법 제6조 a에 의하여 기업에 흡수된 경우에는 더 이상 집행될 수 없다.

제 11 조 투자우선순위 결정의 효력

- (1) 투자우선순위 결정은 토지거래령에 의한 토지거래허가, 연방주 또는 자치단체의 자체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다른 허가 또는 동의 및 건축법 제28조에 의한 증명을 갈음한다.
- (2) 재산법 제2절에 의한 재산가치의 반환양도는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근거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재산가치가 투자우선순위 결정의 취소, 특별투자목적의 불이행 또는 기타 법률행위의 재청산을 위하여 처분권리자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반환양도청구권이 회복된다.
- (3) 특별투자 목적을 위하여 임대하거나 또는 용익임대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재산법에 의하여 약정된 임대 또는 용익임대 기간전에 권리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571조, 제572조, 제573조 1항, 제574조 내지 제576조, 제179조가 준용된다.
- (4) 지상권 또는 역권이 설정된 경우 권리자는 담보설정된 토지나 건물의 반환만을 요구할 수 있다. 부분 또는 주택소유권이 성립되고 양도되어

- 진 경우 권리자는 잔여공유지분만의 반환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 (5) 처분권리자가 확정된 기간내에 제2조에 의한 투자조치를 스스로 실행하는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이 계획에 다른 투자조치를 위하여 청구되는 한 반환양도청구권이 소멸된다.
- (6) 반환양도청구권이 소멸되거나 또는 소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산법 제6절에 의한 절차상의 권리가 확정되어질 수 있다.

제 12 조 투자의 법적보호와 보증

- (1) 상급관청이 주나 연방의 최고관청이 아닌 경우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이의와 취소소송이 허용된다. 이는 집행정지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 (2) 집행정지명령을 위한 신청은 투자우선순위 결정의 공고후 2주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새로운 사실은 계획실행자가 계획실행을 시작한 시점까지 제출되어야 고려되어질 수 있다. 새로운 투자계획은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이는 투자우선순위 결정시 신청자에게 고지될 수 있다.
- (3) 투자우선순위 결정의 취소시까지의 재산가치가 반환 양도되어질 수 있다. 기업에 있어서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또는 건물에 있어서는 부가적으로 토지거래법 제20조에 의하여 개별적 사항이 규정된다. 투자우선순위 결정의 취소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반환양도청구권과 가치보상청구권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존재하지 아니한다.
1. a) 신청자가 투자우선순위 결정의 공표후 2주일 이내의 또는 소송에 있어서 집행정지명령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b) 위 a)상의 기한내에 한 신청이 확정적으로 각하된 경우
 2. 승인된 투자의 사실상 실행이 개시된 경우

제 4 절 투자실행과 실패된 계획의 재청산

제 13 조 기본원칙

- (1) 투자조치는 확정된 기간내에 실행되어야 한다. 기업과 이에 필요한 토지에 있어서는, 승인된 조치가 첫 2년 동안 실행되면 충분하다. 투자 계획은 중요한 사항이 완성되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 (2) 관할기관은 계획실행자 또는 처분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련자의 청문후에 계획실행자가 승인된 조치를 행하거나 또는 계획을 실행하였다는 것을 확정한다. 이 확정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우선 순위결정은 취소될 수 없으며 승인된 조치의 불이행으로 인한 반환양도청구를 할 수 없다.

제 14 조 실행기간의 연장

- (1) 신청자의 청문후 투자자의 책임없이 관할관청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계획이 달성될 수 없고 그 기간 만료전에 연장신청이 되어졌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계획실행자의 신청에 따라 계획실행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연장에 대한 결정은 신청자에게 송부된다.
- (2) 기업에 대한 투자계약의 경우 취득자의 귀책사유없이 승인된 조치를 실행할 수 없었고 아직도 그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간이 중단된다. 계획의 불이행 또는 중요한 변경이 계약체결시 예측할 수 없는 절박한 영업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계약에 기한 반환양도 의무가 소멸한다.

제 15 조 투자우선순위 결정의 취소

- (1) 토지 또는 건물이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반하여 동 결정상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더 이상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우선순위 결정은 권리자 또는 신청자의 신청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다. 계획이 개시

되었고, 동 계획의 불이행이나 중대한 변경이 절박한 영업적 필요에 의한 때는 취소권이 배제된다.

- (2) 토지 또는 건물이 투자목적을 위하여 임대 또는 용의임대되어진 경우, 처분권리자는 제1항에 의한 투자우선순위 결정이 취소된 때는 동결정을 근거로 체결된 계약을 해지기간 도과 후에도 해지할 수 있다. 주거공간에 대한 임대차 관계종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배제되지 아니한다.
- (3) 제1항에 의한 투자우선순위 결정이 취소되어 다룰 수 없는 경우,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처분권리자는 취소를 근거로 하여 발생한 권리를 행사할 의무가 있다.

제 5 절 권리자를 위한 조정

제 16 조 재산목적물의 현재가치에 대한 권리자의 청구

- (1) 매각으로 인하여 처분권리자에게 재산가치를 반환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개의 권리자는 그 권리의 확정 또는 증명후 요구한 재산가치의 몫에 해당하는 계약상 금전급부 범위내의 금액지불을 처분권리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에 대한 결정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미해결재산문제 처리관청 또는 주관청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 수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재산가치가 투자우선순위결정의 집행시점의 거래가치에 미달하거나 처분권리자가 직접 투자조치를 실행한 경우에는 권리자는 거래가치의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역권이 설정되면 역권 설정으로 인하여 부과된 토지상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토지의 거래가치가 저하된다.
- (2) 처분권리자는 소유권 반환양도시 임대 또는 용의임대를 근거로 재산가치에서 발생하는 이득에서 이에 대한 유지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권리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청구는 소유권의 반환양도로 만료된다. 각 계약당사자는 비교가능한 재산가치에 비추어 해당지방자치

- 단체 입장에서 통상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으로 기존의 임대료나 용익임대료를 향후 조정할 것을 다른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최초의 조정후 3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일정한 기간의 임대차관계 또는 용익 임대차관 계가 설정되었다면 임차인 또는 용익임차인은 위 조정에 있어서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 (3) 지상권의 설정이나 부분 또는 주택소유권의 성립의 경우에 있어서 권 리자는 재산가치 또는 매각되지 않은 고유지분의 반환을 포기할 수 있으며, 토지 또는 건물상에 지상권이나 부분 또는 주택소유권이 성립할 당시의 거래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 (4) 반환양도청구권이 회복된 경우에는 처분권리자는 재산법에 의한 반환 양도에도 불구하고 권리자에게 지불된 금액이 보상될 때까지 재산가 치를 점유할 권한이 있다.

제 17 조 권리자의 선택권

다른 규정에 의하여 권리자에게 보상권이 주어지는 한, 권리자는 제16 조에 의한 권리 대신 위 보상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제 6 절 특별절차

제 18 조 건축 및 개발계획의 이행

- (1) 재산법 제3조 제3항 내지 제5항은 건축 및 개발계획의 대상이 건축법 제246조 a 제1항 제1문 제6호와 건축계획 및 허가규정 제55조에 따 른 예규상의 구성부분일 경우에는 위 계획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 절 내지 제5절에 의한 조치는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 (2) 신청자는 건축법 제246조 a 제1항 제1문 제6호 및 건축계획 및 허가 규정 제55조 제3항의 규준에 의하여서만 관여할 수 있다. 신청자는 위 예규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만 계획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

다.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미해결 재산문제 처리관청은 건축법 제246조 a 제1항 제1문 제6호와 건축계획 및 허가규정 제55조에 의한 절차개시에 관한 통지를 한다. 이 경우 모든 신청자에게 그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한 청구사실을 지체없이 알린다.

- (3) 재산법에 의한 반환양도의 절차의 예규에 관한 결정시까지 계속 진행된다. 이 결정에 의하여 위 예규가 폐지 또는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획실행을 위하여 정해진 기간의 경과시까지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
- (4) 이 예규는 토지거래령에 의한 토지거래허가 및 연방, 주 또는 자치단체의 자체 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다른 동의 또는 허가를 갈음한다.
- (5) 제11조, 제16조, 제17조는 준용된다.
- (6) 제12조는 집행정지명령신청에 갈음하여 결정된 예규에 대한 가집행명령이 신청된다는 기준하에 준용된다.
- (7) 행정법원절차에 있어서 1달의 기간이내에 상응한 법원결정의 공표를 신청한 신청자는 소환될 수 있다. 이 결정은 연방관보 및 통일조약 제3조상에 규정된 이외의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표된다. 이 결정은 취소할 수 없다.

제 19 조 공적 경매절차

- (1) 제21조에 의한 신평이 도지 않는 경우, 공공의 지역단체와 신탁청은 계획 실행자에게 공개적으로 투자신청을 제출토록 최고할 수 있다 (공적 경매절차). 낙찰에 대한 결정은 신청자에 대하여 투자우선순위 결정의 효력을 갖는다. 최고의 경우 경매신청을 위한 기간이 확정되면, 다른 계획실행자에게 추후의 경매신청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한 신청자의 추후 경매신청은 고려되지 않는다.
- (2) 최고는 가입영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발간되는 초지역적 일간신문에 공표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은 포함해야 한다.
 1. 제3조의 청구에 대한 제시
 2. 경매신청절차에 참가하라는 취지의 신청자에 대한 최고

3. 원칙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경매신청을 함에 있어 신청자가 우선권을 가질 수 있음을 제시
- (3) 처분권리자는 토지 또는 건물소재지의 미해결 재산문제 처리관청에서, 신청유무, 알려진 신청자에게의 통지 또는 최고사본의 송부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4) 등록자의 특별한 청문은 말소된다. 낙찰은 호가가 가장 좋은 다른 낙찰자의 그것과 동등하거나 거의 유사하면 자기의 권리를 확실히 이행한 신청자에게 원칙적으로 이루어진다. 다른 신고가 낙찰되면 어느 신청자에게 계획의 송부하에 통지되어야 한다. 신청자는 2주일 이내에 자신의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그전에는 낙찰이 이루어질 수 없다.
- (5) 신청은 투자계획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고려되어야 한다.
- (6) 절차의 실행은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다. 낙찰은 이 경우에 처분권리자로부터 증명되어야 한다. 이의와 소송은 처분권리자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제 20 조 다수토지에 대한 계획

- (1) 재산법에 의하여 반환청구의 목적물인 다수토지에 대해 서로 관련된 계획이 실현되어야 할 경우 모든 청구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결정은 공동처분을 통하여 공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2) 공동처분은 각 관련자가 독자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행정법원절차에 있어서 1달의 기간이내에 상응한 법원결정의 공표를 신청하고 신청자는 소환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표된다. 이 결정은 취소할 수 없다.
- (3) 신청자의 청문은 계획관련서류를 열람목적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될 수 있다. 이는 알려진 신청자에게 교부장소의 제시하에 통지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를 위한 제척기간은 통지의 도달로 기산된다.
- (4) 신청자에 의한 투자조치의 기간내 승락은, 동조치가 전체계획에 비유될 수 있는 한 그의 우선권의 범위내에서 인정되어질 수 있다.

제 21 조 신청자의 투자신청

- (1) 신청자가 처분관리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제2조와 제3조상의 조치를 신청한 경우, 권리가 정당하고 신청자가 자신의 개인적, 경제적관계에 따라 계획수행을 위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면 처분관리자가 제3절의 규준하에 신청자의 계획을 위한 투자우선순위결정을 할 의무가 있다. 처분관리자가 투자우선순위 결정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는 관할기관에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처분관리자가 신탁기업인 경우에는 신탁청에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처분관리자는 투자우선순위 결정후 투자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
- (2) 제1항의 경우에 있어 투자목적은, 주거건물의 하자 또는 폐허가 현대화 또는 개량을 통해 제거되어야 하고 분리 또는 독립해 임대할 수 있는 각 주거 또는 영업공간을 위한 현대화와 개량의 예상비용이 평균 2만마르크를 초과할 경우에 존재한다. 이는 신청자가 아닌 계획실행자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 (3) 제1항에 의한 절차에 있어 다른 신청자가 투자조치를 승락하면, 처음에 재산상실에 관련된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우선순위를 갖는다.
- (4) 처분관리자는 신청이 도달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신청자가 아닌 계획실행자의 투자조치에 대한 승락을 할 수 있다. 신청자가 다른 계획실행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투자조치를 승락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우선권을 갖는다.
- (5) 재산법 제2절에 의한 절차에서, 신청자에게 권한이 없었음이 확정되면, 결정에 관련한 미해결 재산문제 처리관청은 신청자에게 재산가치의 거래가액을 지불한다.
- (6) 제1항에 의한 신청시 미지의 계획실행자를 위하여 제4조에 의한 독립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제4조에 의한 절차가 진행되면 제1항에 의한 신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 7 절 종결결정

제 22 조 목록 C에 의한 토지와 건물

이 법은 구제구그 프로이센, 국방군, 주, 군과 자치단체 재산의 토지를 위한 등기부와 토지대장의 정정에 관한 1961년 10월 11일자 동독 재무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의 공동지침 C절의 목록상에 기재된 토지, 건물 또는 등기부에서 유대인공동체의 교회당 또는 묘지로 인정될 수 있는 토지와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23 조 재판관할

- (1) 투자계획과 제16조에 의한 분쟁에 대하여는 결정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통상의 불복절차에 의하며, 그밖의 경우에는 행정소송에 의한다. 행정소송에 의하는 경우에는,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한 기관의 주사무소 소재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 (2) 판결에 대한 항소 및 다른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배제된다. 이는 행정법원법 제135조 및 제133조에 의한 재심의 불허용에 반한 항고와 법원조직법 제17조a 제2항, 제3항에 의한 불복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조직법 제17조a 제4문 내지 제6문은 불복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고에 준용한다.

제 24 조 관할규정, 교부

- (1) 다수의 관할기관은 공법적인 계약으로(행정절차법 제54조), 공공기관이 이 법에 의한 결정으로 할 수 있음을 합의할 수 있다. 계약에 갈음하여 타기관의 동의를 요하는 관할은, 관할의 집중을 통하여 하나의 기관에 통합될 수 있다.
- (2) 군에 속한 시 또는 자치단체가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후 2주일내에 관련절차를 소속군에게 양도할 수 있다. 해당군은 이

양도에 기속된다.

- (3) 주정부는 법규명령으로 자치단체, 시, 군과 주의 투자조치를 위하여 이기관의 관하를 달리 정할 권한이 있다. 주정부는 이 권한을 법규명령으로 주의 최고관청에 이양할 수 있다.

제 25 조 신탁청을 위한 특별규정

- (1) 신탁청은 총체적 영업지분 또는 주식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신탁청에 소속된 자본사회(신탁기업) 소유의 재산가치에 대하여 신탁청은 신탁기업과의 관계에 있어 동기업의 동의없이 처분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신탁청이 절차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
- (2) 신탁청은 토지, 건물과 신탁기업의 영업부문에 관할 개별의 절차를 스스로 진행할 수 있다. 신탁청은 이러한 절차에 대한 통지를 신탁청에게 관할권을 이양한 군 또는 자치시에 하여야 하며, 동 통지의 송달로 위 군 또는 자치시의 관할권이 상실된다.
- (3) 이 법률위 규정은 통일조약 부속의정서 II 제2장 A부분 제3절 기준 d에 의하여 반환양도청구권의 대상이거나 대상이 될 수 있는 토지, 건물, 정당과 대중조직의 기업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 26 조 타법의 적용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주법령이 제정될 때까지는 주관청에 의하여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 행정송달법 및 행정집행법이 적용될 수 있다.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資料 94-03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研究調整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4725, FAX : 232-5341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 266-0892

印刷日 1994年 12月 日

發行日 1994年 12月 日
